

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원 선거
분야별 공약 해설집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발간사]

새로운 진보정당, 새 대한민국을 향하여

꿈꾸자 정의, 복지, 평화의 새 시대

지난 연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손을 맞잡고 통합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결성. 그렇게 우리는 새 출발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전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다짐합니다.

들판에서, 일터에서, 배움터에서 여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웃들의 숨결을 잊지 않겠습니다.

반칙, 특권, 독점, 차별을 걷어내고, 합리와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시민들 삶의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통합진보당이 분투하겠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국민과 더불어 정의, 복지, 평화의 새 대한민국을 일구워 가겠습니다.

이루자 의회권력교체, 정권교체

넓은 정치, 보수적 담론과 헛된 권위에 안주하는 정당, 정치인들의 행태를 꾸짖는 국민의 목소리가 준엄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며, 우리의 분발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 역시 절실합니다.

통합진보당이 해내겠습니다.

4.11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의회권력을 교체합니다.

연말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교체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의회권력 교체,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한국정치를 바꾸는 차돌맹이가 되겠습니다.

이 책자에 앞으로 4년 저희 통합진보당이 해내고자 하는 다짐, 약속을 담았습니다.

지켜보아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2012. 2. 28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공동의장 노항래, 신언직, 이의엽

■ 목 차

0	핵심공약	1
경제		
1	금융·인환	15
2	산업·통상	47
3	재벌·중소기업	65
4	조세·재정	87
5	주택·부동산	125
6	일자리·노동	147
7	농업	177
8	중소상인	215
9	빈민	235
사회		
10	사회복지	247
11	의료	261
12	교육	279
13	문화	305
14	언론·미디어·정보통신	331
15	생태·환경	361
16	에너지·기후	403
17	여성	419
18	장애인	453
19	성소수자	489
정치		
20	정치	501
21	국회	537
22	사법·인권	553
23	지방자치	589
24	평화	609
25	통일	653
26	외교	673
27	청년세대	695

19대 국회의원 선거

분야별 공약 해설집

0권. 핵심공약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이 약속하는

5대 특권 혁파

8대 민생 과제

20대 부문 100대 세부과제

[설명문]

통합진보당은 아래와 같은 기초에서 총선공약을 설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 측근비리, 4대강 사업 등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검찰은 특권권력을 비호하고 야당 정치인, 민중 대표자들을 표적수사로 공격하여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돈 봉투와 지역주의, 헛된 권위주의에 찌든 의회와 정치권은 특권세력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민생을 외면하고 매년마다 예산안 강행처리를 거듭했으며, 한미FTA 등 악법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통합진보당은 새 국회에서 MB정권의 범죄적 국정파탄 행위를 응징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특권·비리·정치 검찰 및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하며, 국민소환제, 정당비례대표제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국회에 수렴되도록 정치혁명을 이룩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여야 한다.

땀 흘려 일한 노동자·시민들의 수고가 배반당하고, 성과는 악탈적 금융체제를 지배하는 투기적 금융자본과 1% 재벌들에게 독점되고 있다. 고환율과 부자감세 등 사회적 희생을 통해 이룬 재벌의 천문학적 수익은 국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 및 부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경영총수 일가와 외국인 주주들(30대재벌에서 40%이상의 주식을 보유)에게 배당되어 낙수효과, 동반성장의 꿈이 사라진 지 오래이다.

통합진보당은 경제체제 전반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사멸 직전의 공룡’과 같이 비대해진 독점재벌을 해체하고 ‘상생,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건강한 혁신형 대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이끄는 한편, 외국투기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시켜 소득재분배를 공정하게 보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벌법을 제정하고, 외환거래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제도화하며,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투기행위를 통제할 것이다. 부자-재벌 증세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보육, 교육,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공공성을 확고히 실현하고, 주거, 노후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보편적 복지체제를 정착시키며,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하고 파견법 폐지와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고히 세워 비정규직 양산체제를 끝낼 것이다.

또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생산비를 보장하여 농업을 지키고 먹거리 안전 공급 체제 실현과 식량자급률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어 낼 것이다.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장하고 원하청 공정거래를 실현시켜 내수경제를 살리며, 참혹했던 용산참사를 새기고 성찰해서 누구도 삶터와 일터에서 쫓기고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파괴된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죽음의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

공약체계는 핵심 공약으로 「5대 특권 권력 해체 및 민생개혁 8대 과제」가 있으며, 분야별 공약으로 「20대 부문 100대 세부과제」가 있다.

자료집에는 해당 부문을 찾기 쉽도록 더욱 세분화시켜 27개 부문으로 서술하였다.

아무쪼록 이 공약들이 당의 진로를 밝히고, 총선에서 노동자, 농민, 시민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진정을 전하는 정책의제, 한국사회 혁신의 꿈이 되기를 소망한다.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5대 특권 권력 해체

1. MB 권력 청산

→ 4대강, 언론장악, 측근비리 ! MB정권을 8월 국회 청문회로 !

2. 의회 권력 교체

→ 금권정치·지역주의 청산하고 정당비례대표제(지역:비례=1:1)로 정치혁명

3. 재벌 독점 해체

→ 계열분리명령제로 30대 재벌을 3000개 전문기업화

4. 외국자본 투기 금지

→ 외국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제한 및 외환거래세 도입 ! 룩스타 사태 재벌방파책 마련!

5. 검찰 권력 통제

→ 대검 중수부 폐지하고 검찰 및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99%를 위한 민생 개혁 8대 과제

1. 보육에서 노후까지 사회가 책임진다

- 무상보육(공공보육시설 30%로 확충[현재 5.6%], 아동수당 제공)
- 무상교육(고등학교까지 등록금·급식·교복·학습준비물 제공)
- 무상의료(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및 동별 보건지소 설립하여 주치의 서비스 제공)
- 주거안정(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 공정임대료·계약갱신권으로 전세값상한제 도입)
- 실업급여 연장(1년), 청년 실업부조 제공(취업까지), 노인연금(20만원)

2. 재벌 중세, 서민 복지

부자 중세로 OECD수준의 복지 재정 마련, 재정건전성 실현

3.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노동3권 전면보장으로 노조 조직률 20%로(현재 9.8%)!

4. 식량자립은 주권이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생산비 보장하고 가격 안정 실현

5. 내수경제가 희망이다

골목상권 재벌 진입 금지,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 부과.

6. 공공성 보장이 물가인정 실현한다

민영화 중단! 금융·통신·정유 공공성 강화! 은행수수료 면제, 통신비 반값, 유류비 인하!

7. 탈핵 2040년 생태사회로 전환

파괴된 4대강 재자연화하고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8. 평화는 번영과 복지의 기반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조기 달성과 군축으로 민생복지 실현

20대 부문 100대 세부 과제

1. (금융·외환) 외국투기세력의 현금자판기가 된 금융시장 규제

-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 외환거래세(토빈세) 도입으로 단기 투기자금 유출입 통제
- 대형은행에 서민·지역 금융지원 의무화
- 금융실명제 위반 차명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도입
- 상장회사 임원별 보수와 보수 결정방식 공개 의무화

2. (산업·통상) 한미FTA 폐기 및 내수경제 확대로 경제주권 확립

- 한미FTA 등 불공정한 조약 폐기
- 중소기업이 주체인 부품·소재와 내수산업 육성으로 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구조 실현
- 은행, 통신, 정유산업에 연기금, 공적기관의 지분 확대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
- 금융감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개편으로 공공성 강화
- 철도, 산업은행, 인천공항,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민간위탁) 전면 중단

3. (재벌·중소기업) “재벌법”으로 재벌그룹 해체, 초과이윤공유제로 중소기업 보호

- 상법,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 등의 재벌 관련 조항을 하나로 묶어 “재벌법” 제정
-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금산분리(은행 및 제2금융권 진출제한), 계열 분리명령제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하여 문어발 계열사 분리
-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및 노동자경영참가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 불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3배) 및 납품원가 연동제 도입
-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초과이윤 일정액을 납품업체 노동자 인건비 및 교육비용 인상에 사용)

4. (부동산·주택) 서민주거 국가책임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값 상한제로 주거

안정 보장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 의무화
- 공정임대료제도 및 계약갱신권 도입으로 전세값 상한제 실효성 보장
- 저소득 하위 20% 무주택자에 소득대비 월임대로 부담 30% 이하 보장(차액분 지원)
- 다주택자 주택대출 규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선매권 도입
- 내 집에서 쫓겨나는 뉴타운 사업 중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 추진

5. (노동) 노동3권 전면보장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 노동조합 조직률 20%(현재 9.8%), 단체협약 적용률 50%로(현재 10%)
- 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 남용 규제,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 노동자성 확보(특수고용, 돌봄노동 등 3권 보장),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순차적으로 개선

6. (농업)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생산비 보장 및 가격 안정 실현

- 식량자급률 50% 실현으로 안정된 먹거리 보장, 식량주권 강화
- 친환경 공공급식 및 저소득층 기초농산물 지원으로 먹거리 복지 확대
- 생산, 유통, 가공, 판매의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 보장
- 중소농 협업화로 생태농업 단계적 확대
- 농가소득 단계적 보존(도시근로자가구 대비 95% 소득보장, 차액 정부지원)

7. (중소상인)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금지로 중소상인 보호

- 동네슈퍼와 지역유통을 중소상인 고유 업종으로 지정, 재벌 진입 금지
- 중소상인 지역공동물류체계로 재벌이 장악한 지역 유통망 개선
-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 가맹점SSM, 대기업이 경영하는 상가를 모두 사업조정대상에 포함

시키고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현재는 대기업 지분 50%이상만 조정대상)

- 카드수수료를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1%로 동결

8. (조세·재정) 부자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실현 !

- 1억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 소득세율 40%,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법인세율 30%로 인상
-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OECD 수준으로 복지재정 확보, 국가부채 책임관리 및 재정건전성 실현
- 실업급여 수혜기간 1년으로 연장하고 실업부조 도입으로 취업준비기 청년층 지원
-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으로 노후생활 지원

9. (의료) 무상의료 실현 !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 인구 5만 명당 1개 보건지소 100개 건립하여 읍면동별로 1차진료의 공공거점 마련
- 보건지소에서 아동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주치의 서비스 제공
- 모든 진료(미용 성형 제외)에 건강보험 적용하여 보장성 90% 달성
-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 100만 원 이하로 제한
- 국고지원 확대 및 대기업 건강보험 기금 조성

10. (교육) 무상교육 실현 !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급식, 교복, 학습준비물 보장

- 국공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등록금 보장
-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금지 법제화(채용, 임금, 직무, 승진)
-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과 전인교육 실시(초등 100%, 중학교 50%, 고등학교 30%)
- 초등학교 평등, 생태, 평화, 인권 등 보편적 교양과 창의활동 강화
- 무상보육 전면 실시, 아동수당 제공

11. (여성·소수자) 대표성 강화와 삶의 질 확보로 평등한 사회 실현

- 여성의 정치·경제적 대표성 강화 : 국회의원 여성공천할당제 30% 의무화, 고위직 30% 의무화
- 여성의 일자리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0% 확대 (OECD 평균수준)

- 워킹 맘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종합적 고려 : 노동시간 단축, 기업문화 개선, 출산, 양육, 가사 돌봄 지원 강화
- 다양한 가족 형태와 다문화 사회의 수용을 위한 법/제도화 : 1인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신분보증제 폐지
-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22개의 차별 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법 제정

12. (장애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실현

- 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탈시설-자립생활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 3%→ 5%, 중증장애인, 장애여성에 대한 의무할증제 시행
-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주거 편의의 제공을 통한 주거권 보장
- 정치참여 보장 : 비례대표제 할당제 (10%)와 정치참여 활동 보조 지원 확대

13. (녹색생태) 파괴된 4대강 생태·자연 복원 및 핵발전소 폐쇄

- 4대강 청문회 실시, 시민 참여 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4대강 보 해체 및 영주댐 건설 중단, '자연의 권리' 법제화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모든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강화
- 전기요금 체제 개편 : 주택용은 내리고, 산업용(재벌 특혜)은 올리고

14. (정치) 금권정치와 지역주의 보수독점 정치를 극복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한 정당정치 활성화

- 독일식 정당명부제(지역:비례=1:1) 도입으로 이념과 정책에 따른 사회적 대표성 확대, 민주주의 강화
-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 부의권 도입으로 국민의 참여정치 강화
- 상시국회로 일하는 국회 실현, 교섭단체 기준 완화로 다원 민주주의 실현, 돈봉투 금권정치 처벌 강화, 당비와 국고보조금에 의한 투명한 정당 운영

-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을 활성화하고 고액기부 제한
-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허용하는 정치 기본권 강화

15. (평화·통일) 6.15, 10.4 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체제 실현

- 남북 간 대화체제 복원 및 6.15, 10.4 선언 이행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조기달성을 위한 일괄타결 실현
- 과도한(국가 재정 15%) 국방비 축소, 민생복지예산으로 전환
- 복무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제정
- 동아시아 안보협력 증진 및 제도화로 미·중 대결체제 예방

16. (언론미디어) 표현의 자유와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실현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실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실현
- 지역미디어 활성화와 신문 산업 지원으로 미디어 생태계 유지
- MB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해직 언론인 복직
- 종편 사업권 전면 재검토, 미디어법 개정

17. (사법·인권) 검찰 등 사법부 개혁과 집회시위/통신의 자유 확대

-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무부 탈 검찰화
- 법관의 독립성 강화, 노동법원의 도입, 변호사의 공적 영역 확대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공안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불법감청 근절, 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 반인륜·반인권의 과거사 철저히 청산

18. (지방자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단체 비리 근절, 지방분권 실현

-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수 및 수도권 집중완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 지방정부 재정여건 개선 및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 기초단체장의 행정이권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민감시 강화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여 지방선거제도를 혁신
- 재보궐선거에서 전자투표 및 인터넷투표와 모바일투표를 도입

19. (국회)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소통의 국회, 상생의 국회

- 상임위 중심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
-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및 겸직금지 강화하고 국민소환제 실시
- 직권상정을 폐지하고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 국회 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
- 돈 봉투 추방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20. (청소년·청년) 청년에게 기회, 더 젊은 대한민국

- 청소년 인권법 제정
- 반값등록금 시행, 청년주거대책 마련, 취업지원부조제도 시행
- 청소년 및 취약청년층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대책 시행
- 청년고용할당제, 질 좋은 일자리 정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선거참여 확대(투표권 연령 18세로 인하), 청년 정치참여 기회 확대

19대 국회의원 선거

분야별 공약 해설집

1권. 경제분야

통합진보당 2012 총선

금융·외환 공약

금융주권 실현, 금융공공성 강화

1. 투기 금융 모델 청산
2. 금융민주화와 공공성 강화
3. 지역·서민·중소기업금융 지원
4. 외국 투기자본 규제와 환율 안정

정책전문위원 임수강(linsk@hanmail.net)

1. 투기 금융 모델 청산

공약

1.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 투기금융의 원인 제공자인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2. 금융기관 매각 중단, 은행 지분에 대한 공적 소유 확대

⇒ 은행 매각(사유화) 중단

⇒ 은행지분에 대해 국가와 공적기관의 소유 확대

3. 사모펀드, 헤지펀드 규제 강화

⇒ 사모투자, 헤지펀드 규제 강화로 금융 투기 활동 억제

4. 상장회사 임원별 보수와 보수 결정방식 공개 의무화, 임원 성과급 제한

⇒ 임원 보수공개와 성과급 제한으로 단기 경영 폐해 완화

1.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 현황과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 은행은 경제의 주춧돌이자 사회 인프라(기간산업)라 할 수 있음. 그리하여 주요 나라들은 자사주 보유, 소수지분을 가진 전략적 투자자들에 의한 분산소유, 대주주 자격 심사, 엄격한 감독 규정 등을 통해서 외국자본의 은행 소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국내 은행 가운데 몇몇은 외국자본 손으로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갔고 나머지 은행들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이 크게 높아짐.

〈표〉 주요 은행 외국인 지분율(2012. 1. 6. 기준)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우리금융지주
지분율	61.0%	62.7%	63.2%	70.6%	21.0%

주) 외국인이 경영권을 소유한 SCB 제일은행, 시티은행은 상장 폐지

자료: 한국거래소

- 그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외국자본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M&A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임.

○ ‘선진금융기법’이라는 이름으로 투기금융 기법만 전수해준 외국자본

- 외국자본이 장악한 국내 은행들은 ‘선진금융기법’이란 명목으로 개인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수수료 위주의 영업을 하고, 부자 마케팅, 디-마케팅(담보가 부족하거나 가난한 개인, 중소기업은 쫓아내는 영업) 기법 등을 도입함.
- 그러나 이러한 ‘선진금융 기법’은 투기금융을 조장하는 ‘후진’ 금융기법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금융과 산업의 연계 약화, 금융 배제, 금융산업의 독점이익 증가, 서민·지방금융의 위축, 부동산 담보 대출 증가와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 양극화 등은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장악과 무관하지 않음.
- 금융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자산양극화, 금융배제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해야함.
- 세계 주요 나라들에서 메이저 은행의 대부분을 외국자본이 장악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움.

■ 목표

- 은행업법의 대주주 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전·사후 심사 강화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하향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예외 없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간주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은 의무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
- 외국사모펀드 허가제

- 은행이사의 국적 제한
- 금융기관 인수합병 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외국자본이 통제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 지분 소유 한도를 설정
- 정부 지분과 우리사주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주 집단 형성

■ 방법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축소, 사모펀드의 은행소유 금지, 은행이사의 국적 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법” 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외국사모펀드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제를 도입하고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인수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를 추가
- “은행법” 개정을 통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은행이나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게 제한

2. 금융기관 매각 중단, 은행지분에 대한 공적 소유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IMF 구제금융 제공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융기관 사유화

-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IMF 요구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을 차지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공공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매각정책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
- 현 정부는 금융산업을 통한 성장정책을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공금융기관 사유화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음.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보증기관 등의 사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공공 금융기관 사유화의 문제점

- 공공금융기관 매각을 서두를 경우 그 금융기관이 경영능력이 가장 뛰어나 사람의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자본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람의 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큼.
- 국제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공공금융기관을 매각할 경우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외국 사모펀드, 국내 재벌 등에 지나지 않을 것임. 이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 매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
- 금융기관 사유화와 이와 병행해서 추진되는 금산분리 완화로 외국자본과 재벌에 의한 금융 지배가 더욱 심해질 것임.
- 재벌들이 금융산업을 사유화하면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예금형태로 제공한 신용을 무기로 무한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에 패퇴한 재벌들의 구제비용은 결국 국민경제 전체에 끼치게 될 것임(손실의 사회화).
- 중소기업 신용 배제, 고리채 등의 정책 실패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바, 정책금융을 오히려 확대해야함.

■ 목표

- 금융기관 매각 중단과 은행에 대한 공적 지분 확대로 금융기관의 공공적 역할 증대

■ 방법

-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등의 매각 철회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등의 지분매각, 통폐합 계획 철회
- 정부기관, 연기금 등의 은행 지분 소유 확대와 이를 통한 공적 개입 능력 증대
- 은행 우리사주 주식의 확대

3. 사모펀드, 헤지펀드 규제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서 거액의 자금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사회기반시설(SOC), 무기회사 등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자유롭게 투자함.
- 우리나라는 2004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제도의 도입을 유도한 이래 2011년에는 이른바 “한국형 헤지펀드” 제도 도입을 허용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진개 과정에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시스템 위험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에 따라 여러 나라들은 이들 펀드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려함.
- 사모펀드는 가입자의 비밀을 보장해주면서 그 자금운용 대상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규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금융기구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투기적 활동을 펴기에 가장 유리한 금융 수단임.
- 이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 또는 불법자금의 이동이나 운용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사모펀드는 단기 경영을 조장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 인력을 실업자 대열로 몰아냄.
-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사태에서 보듯 사모펀드는 투자 주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기도 어려움.
- 경제를 투기 활동으로 이끌고 비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모 펀드(사모펀드의 일종인 헤지펀드를 포함하여)를 철저히 규제해야 함.

■ 목표

-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 폐지(차입한도, 파생상품 거래 한도 등)
- 역외 소재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허가제

■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각종 추가 규제완화 특례 폐지
- 역외 소재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허가제 도입

4. 상장회사 임원별 보수와 보수 결정방식 공개 의무화, 임원 성과급 제한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 총액을 기재해야 함.

○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목적

- 지배주주 또는 최고경영자가 임원의 보수 결정과정을 통해 이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 이사의 독립성 강화
- 지배주주가 임원 보수의 명목으로 우회 배당을 하거나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
- 임원 보수와 직무수행이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임원 보수를 설계함으로써 임원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억제하고 단기 성과주의를 규율
- 현행 제도는 개인별 공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임원 보수의 총액만 공시함으로써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여러 나라들의 현황

- 이미 여러 나라들이 개인별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표>임원보상 공시제도에 대한 세계증권거래소연맹(WFE) 서베이(2003년) 결과

구 분	거 래 소		
	숫자	비율	명 칭
공시 없음	12	30.0	리마, 상파울로, 스페인, 브르셀, 암스테르담, 룩셈부르크, 파리, 자카르타, 오슬로, 상하이, 대만, 토론토
총액만 공시	13	32.5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멕시코, 부다페스트, 리스본, 헬싱키, 한국, 태국, 필리핀, 스위스, 동경, 바르샤바, 유블리아나
개인별만 공시	3	7.5	아멕스, 뉴욕, 아일랜드
총액+개인별 공시	12	30.0	호주, 독일, 홍콩, 이태리, 쿠알라룸푸르, 런던, 뉴질랜드, 센첸, 뭄바이, 테헤란, 비엔나, 요하네스버그
총 계	40	100.0	

자료: 재정경제부.

- 미국은 보수가 많은 순으로 상위 5명에 대해 최근 3개년의 임원 보수를 보상요소, 보상 정책 등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공시
-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개별 이사 보수를 공시하며 임원의 단기기업적주의를 막기 위해 주식연계 보상에 대해서는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영국은 최근 5년간 경영진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내역, 보수 정책, 비현금성 혜택, 성과평가방법 등을 표로 제시하게 함.
- 일본은 2009년 회계연도부터 상장사 임원의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함. 상장회사들(회사채를 발행하는 비상장회사 포함)은 임원의 현금, 스톡옵션 등을 포함한 보수 총액 외에 지급형태와 보수의 결정 방식까지 반드시 공개해야 함.

○ 최근의 논의 현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노린 경영자들의 단기경영 폐해가 드러나면서 기업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
- 특히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고액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수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

■ 목표

- 상장회사(회사채 발행 비상장회사 포함) 임원별 보수, 스톡 옵션 공개 의무화
- 지급 형태와 보수의 결정방식까지 공개 의무화
-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 제한, 보수 최고 한도액 설정

■ 방법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예금자 보호법” 등의 법개정

2. 금융민주화와 공공성 강화

공약

1.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도입

⇒ 유명무실화한 금융실명제 실질화로 투명한 금융, 공평한 과세 실현

2.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규제

⇒ 가계부채 문제의 진앙지인 주택 담보대출 규제

⇒ 담보대출을 투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방지

3. 최고 이자율 인하와 단일화

⇒ 이자율 규제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경감

4. 금융통합위원회, 금융위원회 개편

⇒ 부유층과 재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금융통화위원회·금융위원회 구성

1.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

-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 거래
- 금융거래 시 비밀 보장
- 비실명자산에 대한 차등 과세
- 처벌 규정: 비밀 보장 위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거나 경미함.

○ 유명무실화한 금융실명법

- 금융실명제는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처벌 조항이 없

거나 경미한 것이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 현행 금융실명법은 차명거래를 무효로 하고 있지는 않음. 판례에 따르면,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계약은 성립이 안 되지만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금융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함. 차명으로 거래를 한 예금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금융실명제 실질화의 필요성

- 금융거래의 정상화: 비실명이나 차명에 의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임. 기업들의 비자금 관리 철폐. 불법정치자금, 뇌물 수수 관행 근절. 자금 세탁 방지.
- 조세 형평성과 탈세 방지: 금융실명제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금융종합과세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탈법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방지할 수 있음. 또한 금융거래의 분석을 통해 사업소득의 세원을 포착할 수 있음. 세무행정을 과학화하여 징수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
- 지하경제의 축소와 상거래의 정상화: 사채시장 축소, 무자료거래 등의 축소, 유통거래질서의 정상화, 기업들의 리베이트나 로비 관행 철폐.

■ 목표

- 차명거래의 무효화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을 무효화 하는 것처럼, 차명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무효화
- 차명 예금주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 . 차명거래 금지를 위반했을 때는 형벌(징역, 벌금)로 처벌하고 이와 함께 30%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 신설
- 금융실명법 위반 교사·방조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 . 금융실명법 위반 교사·방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차명거래 명의를 제공하거나 명의 사용을 묵인한 자에 대해서도 형벌(징역, 벌금)로 처벌
- 금융기관의 금융실명확인 기록과 보존 의무 규정 신설

■ 방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2.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규제

■ 현황과 문제점

○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에서 벗어난 주택 담보대출

-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금융기관들의 공공성이 크게 후퇴함. 가장 큰 후퇴는 금융기관들이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 곧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자금을 유통해주기보다도 비생산적인 부동산 부문에 자금을 몰아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임.
- 금융이 본질적인 역할에서 이탈함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소수 계층의 신용 독점, 이와 연관된 부동산 가격 폭등, 계층 지역 사이 자산 양극화, 담보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금융 배제 증가 현상 등이 나타남.
- 금융이 본질적인 역할을 다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 계층에 집중된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2002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함. 당시에는 감독당국의 지도 공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함.
- 지도 공문을 통한 담보대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2007년에는 규제 내용을 감독 규정화함.
- 현재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대출취급건수(복수대출, 미성년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표〉 현재 주택담보대출 감독 규제 내용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취급 건수
목적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의 부실화 방지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출의 부실화 방지	투기적 성격의 대출 수요 억제
내용	담보 물건당 대출 가능 금액 제한	차주당 대출 가능 금액 제한	투기지역 대출 건수 제한 - 동일 차주에 대한 복수대출 규제(투기지역) -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문제점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감독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는 탓에 규제근거로서 미흡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 근거가 약함.
- 또한 이러한 제도들이 금융기관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제도라는 데에 한계가 있음. 문제는 소수 계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독점하여 투기적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지만 이들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신용 독점 현상을 막지 못함.
-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여, 소수 계층이 신용을 독점하여 이를 투기에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함.

■ 목표

- 금융기관의 안정성 개념과 나란히,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금융의 형평성 개념을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 개념 정립과 정책 제시
 - .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또 다른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함(총 담보 제공액이 6억 미만일 때는 담보대출 취급 가능).
 - . 미성년자(기혼자 제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대출 취급할 수 없도록 함.
 - .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
-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 방법

- 특별법 제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법제화

3. 최고 이자율 인하와 단일화

■ 현황과 문제점

○ 살인적인 고금리

-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국내 사금융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금융업체는 번성함.
- 제도 금융기관에서 배제당한 서민들은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력적인 채권추심을 당함.
-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시장논리를 내세워 고금리 제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
- 고금리 폐해가 극에 달하면서 금리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최고 금리가 너무 높고 적용 대상은 너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짐.
- 대부업과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은 대부업법의 법정이자율(연 39%)이 적용되는 반면, 개인간 금전대차의 경우 이자제한법(연 30%)이 적용
- 법정 최고 금리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50%(시행령 39%), “이자제한법”의 경우 30%(시행령 연 3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현재의 시장금리가 5~8%대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금리를 더욱 낮추어야 함.

○ 외국의 이자규제 사례

- 일본은 최고 금리를 15~20% 수준에서 규제
- 미국의 경우 뉴욕 주가 연 16%, 캘리포니아 주가 연 10%로 규제
-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 독일은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이자 상한으로 정함.

■ 목표

- 현행 대부업에서 39%까지 허용하고 있는 특혜금리 즉시 폐지
- 최고 이자율 인하
- 무등록 대부행위의 이자율은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규정
- 대출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일원화

■ 방법

- 최고 금리를 인하하고 최고 금리가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자제한법” 개정

4.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원회 개편

■ 현황과 문제점

○ 금융통화위원회 : 현황과 문제점

- 현대 금융제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국민들의 자산, 부채 규모가 늘어나면서 중앙은행이 펴는 금융정책이 부의 분배와 흐름에 주는 영향의 강도가 커짐.

<표> 개인 금융자산과 부채(2009년 기준)

	총액	1인당 평균
개인 금융자산	1995.6조원	4,094만원
개인 금융부채	854.8조원	1,753만원
개인 순 금융자산	1,140.7조원	2,340만원

※ 2009년 통계청 추계인구 4,875만 명

- 한국은행의 의결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금리를 결정함으로써 특정한 계층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렇게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금통위의 중요한 덕목임.
-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의 위원(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체 대표, 은행 업계 대표만 들어가 있고 노동자와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서민의 대표는 들어가 있지 않음.
-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현행의 금통위 구조를 바꿔야 함.

○ 금융위원회 : 현황과 문제점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권한과 감독 실패에 따른 사후처리 권한까지 가짐.
-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결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 부실 방지를 예방하려는 유인을 줄어뜨리게 함.
- 이에 따라 정책과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임.

■ 목표

- 금융통화위원회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여 권한과 책임 관계를 명확해 함.
-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기구로 전환,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
- 감독 당국의 도덕적 해이, 직무유기, 배임행위로 인한 감독부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방법

-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개편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 지역·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

공약

1. 리딩 뱅크를 지정하여 은행 공공성 견인

- ⇒ 은행 공공성을 견인할 리딩 뱅크 지정
- ⇒ 리딩 뱅크를 통해 서민·지역·중소기업 금융 강화

2. 지역·서민금융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 ⇒ 대형 금융기관에 지역·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

3. 광역시도에 지역은행 설립

- ⇒ 1 광역시도 1 지역은행으로 지역금융 활성화

4. 과중채무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 법개정을 통해 과중채무 부담 완화

1. 리딩 뱅크를 지정하여 은행 공공성 견인

■ 현황과 문제점

○ 심각한 금융 배제 문제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은행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무너짐. 대표적인 사례인 금융 배제 문제에서 이를 살필 수 있음.
- 금융 분야의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 곧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란 사회의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이 제도 금융 기관(formal financial institutions)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상.
-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 금융의 전형적인 징후로, 금융이 발달한 미국과 영국에서 1980년대 중반의 금융 규제완화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함.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특히 카드회사 위기를

계기로 금융 배제 문제가 사회 표면에 떠오름.

- 개인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7~10등급) 사실상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들의 숫자가 현재 약 700만 명(성인)에 이룸.
- 영세 자영업이나 지역의 중소기업도 중요한 금융배제 대상임.

〈표〉 신용등급 현황

(단위: 천명, %)

신용등급	2007		2008		2009		2010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1~6	2,815	80.2	2,935	79.9	3,055	80.7	3,243	82.2
7~10	697	19.8	738	20.1	732	19.3	700	17.8
합계	3,512	100	3,672	100	3,786	100	3,942	100

자료: 코리아 크레딧 뷰로(KCB).

○ (개인) 금융 배제의 특징과 원인

- 사회에 집적되어 있는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아돌아서 발생함.
- (개인의 경우) 금융 배제자들의 자금 수요가 긴급한 생계비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규모도 소액임.
- 임금 소득자에서 일시적으로 탈락한 층(실업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반 임금 소득자(생계형 자영업자, 농민), 영세 상공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등이 주요한 금융 배제자 층을 이룸.
-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장악과 이들의 부유층 중심, 담보 위주 마케팅 전략
- 과거 서민금융을 전담했던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국책은행의 사유화
- 금융구조조정 이후 서민금융기관들의 위축
- 기본적인 복지 지출의 부족

○ 금융공공성을 견인할 리딩 बैं크 필요

-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을 복원하여 리딩 बैं크로 지정하고 서민·지역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른 은행들의 공공성을 견인해야 함.
- 조직형태는 과거 국민은행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국민은행은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면서 동시에 주식회사 형태를 가진 독특한 성격의 법인이었음.

○ 리딩 뱅크의 주요 업무

- 일반은행 업무
- 서민금융, 지역금융,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제공
- 서민금융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우체국, 연기금 자금 예수
- 서민금융에 관한 재정자금 지원과 집행의 단일 창구 역할
- 국민주택기금의 위탁업무 등 정부의 금융, 재정 위탁업무 수행

■ 목표

- 리딩 뱅크를 통한 서민·지역·중소기업 금융 강화로 금융배제 문제 해결
- 리딩 뱅크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영업 행태 변화 견인
- 지정된 리딩 뱅크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적인 지원

■ 방법

- 대형은행 가운데 한 곳을 리딩 뱅크로 지정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리딩 뱅크로 지정할 경우 과거 “국민은행법” 과 같은 법제정이 필요

2. 지역서민금융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 현황과 문제점

○ 수도권과 지역 사이 자금의 불균등 배분

-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이 197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커가고 있음. 이에 따라 오랜 숙제였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 지역 격차가 커가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자금의 수도권 집중.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도권의 대형은행들은 대형화 정책으로 몸집이 더 커진 반면 지역은행들의 역할은 크게 축소됨. 현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총 수신)의 30% 가량은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됨.
-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그 지역에서 순환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입됨에 따라 지역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음.
- 반면 수도권으로 유입된 자금의 많은 부분은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가면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은 손쉬운 돈벌이 수단인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초과 수익을 누림.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줌.
- 자금의 수도권 집중이야말로 국가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이런 의미에서 자금의 균형배분 없는 균형발전이란 있을 수 없음.
- 자금의 균형배분은 지역 균형발전의 전제조건임. 따라서 자금의 균형 배분을 촉진할 법안 제정 필요

○ 지역·서민 금융 강화법의 내용

- 대형금융기관들에게 서민과 지역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는 확대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일정하게 낮추는 의무를 부과
- 지방정부에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킬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의무를 부과

■ 목표

- 대형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방법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신용평등기회법, 일본의 금융평가법을 참조하여 “지역·서민금융활성화법(가칭)” 제정
- 농협, 우체국, 금융 공기업 등에 먼저 시행.

3. 광역시도에 지역은행 설립

■ 현황과 문제점

- 지역자금이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고 지역금융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금융활성화법과 나란히 지역에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 대형은행에 지역금융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금융을 충분히 살릴 수 없음.
- 지역에 은행을 만들어 자금 선순환의 축을 마련해야 지역금융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음. 지역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믿을만한 버팀목 역할을 함.

■ 목표

- 지역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이 지역은행을 축으로 선순환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의 금융 이용 가능성을 높임.

■ 방법

-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 전북에만 지역은행이 존재하며, 제주, 강원, 경남,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대전, 경북, 울산, 경기, 인천에는 지역은행이 존재하지 않음. 이들 지역에 먼저 지역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나아가 모든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지역은행이 설립되도록 노력.
- 광역시도별로 지역의회, 지역시민단체, 노조, 지역 상공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은행 설립 위원회”를 꾸려 지역은행 설립을 추진.
- 지역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지역은행을 되살리거나 또는 지역은행 신설을 추진할 수 있음.

■ 재원

- 지역은행 최저 자본금 250억 원. 지역은행이 없는 12 곳에 최소 규모의 지역은행을 설립할 경우 3,000억 원의 재원 필요
-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30%를 출자할 경우 최저 900억 원 필요

4. 과중채무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현황과 문제점

○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과중채무자 문제

- 과중채무자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제도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채권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표〉 우리나라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구분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9.4	2002.2	2004.9	1962.1
대상채권	협약 가입 기관(3,600개)보유채권	협약 가입 기관(3,600개) 보유채권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채무의 범위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담보채무(10억원), 무담보채무(5억원)	제한 없음
채무 조정 수준	- 무담보채권 채장 10년 - 담보채권 최장 20년 - 연체이자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50% 감면 - 변제기간 10년 이내	- 변제액이 청산가치보 다 클 것 - 변제기간 5년 이내	- 청산 후 면책
법적 효력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시 면책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시 면책	-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 청산 후 법적 면책

- 개인소득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채와 이자 지급 증가, 복지비 지출의 정체 또는 축소, 고실업률의 지속 등으로 앞으로 과중채무자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과도한 부채 덩어리에서 채무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 도입 필요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한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사정이나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함

■ 목표

-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 방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4. 외국 투기자본 규제와 환율 안정

공약

1.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

⇒ 직·간접 규제 수단을 통해 외환 거래를 규제하여 환율 안정

2. 외환 거래세 도입

⇒ 우리나라 단독으로 외환거래세 도입

3. 외평기금 축소(한도제 도입)

⇒ 외환 투자를 조장하고 재벌 지원수단으로 전락한 외평기금의 대폭 축소

4. 외환 세이프가드 실질화

⇒ 급격한 외환 유출입을 막기 위해 위한 긴급 장치의 실질화

1.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외국자본의 대부분은 투기성이 높은 포트폴리오 자금

- 급격한 자본유입은 통화 팽창, 자산 버블 형성 등을 낳고 그에 뒤이은 갑작스런 자본 흐름의 역전은 환율 급등, 통화가치 하락, 금융 위기, 경기 후퇴 등으로 이어지기 쉬움.
- 자본흐름의 급변(sudden stop)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쌓아두는 방식은 큰 유지비용을 발생시킴.
- BIS에 따르면 주요 신흥시장국의 1995~2005년 연평균 외환보유고 유지비용(carry cost)는 GDP의 1~2%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인 것으로 추정.
- 또한 환율이 하락하면 평가손(환차손)이 발생하여 중앙은행 수지 악화, 자본잠식으로 이어짐.
- 따라서 물가 안정, 환율 변동 방지, 국내 이자율 정책 자율성 확보, 금융 안정 등을 위해 자본이동을 직접규제, 간접규제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규제해야함.
-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대부분은 투기성이 강한 포트폴리오 자금이라는 사실을 감안

하면 자본 유입을 강하게 규제해야 함.

○ 주요한 자본이동 직접 규제 수단

- 여러 나라들은 자본 이동 규제 수단으로 외환건전성 규제(외환 포지션, 외화 유동성, 외화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대상, 외화표시 증권 보유한도 규제 등) 사용.

〈표〉 외환부문의 포지션, 유동성 규제 현황

	외국환 포지션 규제	외화 유동성 규제
브라질	자기자본 60%(순포지션)	
인도네시아	자기자본 20%(순포지션)	외화유동자산/총외화부채 : 3%
태국	자기자본(Tier 1) 15%(순포지션)	
콜롬비아	자기자본 20%(롱포지션) 자기자본 5%(숏포지션)	외화유동자산-부채:자기자본 50% 이내
칠레	자기자본 20%(순포지션)	외화유동자산/총외화부채 : 3%

- 건전성 규제 외에도 비거주자의 국내통화표시자산 취득 금지, 외국인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등의 규제 제도가 사용됨.
- 자본 유출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제한, 원리금의 대외 송금 제한 등이 사용됨.

■ 목표

- 자본유출입 규제를 통한 환율 안정
- 외환 보유하고 필요성 감축

■ 방법

- 현행 자기자본대비 선물환 포지션 비율 등 건전성 규제 대폭 강화
- 건전성 규제 외의 외환 규제 제도 도입
-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에 대한 여러 혜택의 축소폐지를 통해 사실상 포트폴리오 투자인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억제
- 외환거래법에 규정된 ‘가변예치의무금제’의 실질적인 활용

2. 외환 거래세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외환유출입에 무방비 상태인 우리나라 외환시장

- 우리나라는 IMF 이후 자본계정을 자유화하고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동요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됨.
- 달러가 약세일 때는 투기적 성격의 달러가 몰려들어 환율을 낮춤으로써 수출기업들을 어렵게 함.
- 국제 금융시장이 급변할 때는 이러한 투기성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국내 금융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림.
-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때 투기성 달러의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함.
-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고,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완화하는 간접 수단인 외환거래세를 도입할 필요 있음.

○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 케인즈(J.M. Keynes)는 '일반이론'에서 주식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가져오는 폐해를 말하면서, 투기는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행위이고 경제의 효율적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거래세를 통해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토빈(J. Tobin)은 1970년대에 단기적 투기자금의 국제적 이동을 막고 환율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를 통해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통화의 교환이 뒤따르는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길 것(무역거래나 실물자본 투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을 제안함.
-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외환) 거래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짐.
- 그 이전에 벨기에는 2004년 7월에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1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하는 법안 통과. 그러나 유럽경제통화연맹의 모든 국가들이 유사 법안을 채택할 때까지 유보
- 브라질은 2009년에 외화 유입 급증을 막기 위해 주식과 채권 투자에 대해 2%의 금융거래세 (IOF Tax) 부과(투기자본의 최소 구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음.)
- 브라질은 헤알화 강세를 이용한 파생상품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예정임.

○ 외환 거래세를 도입한 브라질의 사례

- 지금까지 외환거래세는 국제적으로 공조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세금으로 알려졌지만 브라질이 별 문제 없이 단독으로 외환거래세를 도입함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논리가 힘을 잃고 있음.
- 2009년 브라질 사례를 보면 금융거래세가 평가절상을 억제하며 증시에는 영향을 별로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 있음.
- 국제 공조를 통해 토빈세를 도입하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국제공조가 반드시 토빈세 도입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세

- 현행 금융거래세에는 증권거래세만 있음.
- 많은 나라들은 채권, 파생상품에 대해서까지 금융거래세를 부과함.
- 외국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이 심한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세를 외환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야함.

〈표〉 주요국의 금융거래세 현황

(단위: %)

국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은행출금	은행입금	비고
대만	0.3	0.1	0.0000125~0.6				
벨기에	0.17	0.07					
브라질				2.0		0.0165	
스위스	0.15/0.3	0.15/0.3					
아르헨티나	1.0	1.0			0.6	0.6	
영국	0.5	0.5					
프랑스	0.3/0.1	0.3/0.15					
홍콩	0.1		0.1				

자료: 조세연구원.

■ 목표

- 외환거래세를 도입하여 외국자본의 단기 투기 거래 억제
-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

■ 방법

- 외환거래세를 도입하여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를 목적으로 한 통화의 교환에 세금 부과 (금융기관 사이에만 적용, 단기 거래에만 적용)

3. 외평기금 축소(한도제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고환율을 유지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외평기금

-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하여 외환시장의 환율 급등락을 조정,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 한다는 명목으로 137.7조원 규모의 외평국채를 발행(2011년 말 현재)하여 외평기금을 운용함.
- 외평국채는 달러 약세가 본격화하는 2003년부터 발행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국가채무 증가 속도보다 빨리 증가함. 국가채무 대비 외평국채 비율이 2007년 30.3%에서 2011년에는 32.6%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39.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외평국채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e)	2013(e)	2014(e)
국가채무	299.2	309.0	359.6	400.4	422.7	445.9	460.0	466.4
외평국채	89.7	94.0	104.9	121.2	137.7	155.7	170.8	183.9
외평국채비율(%)	30.0	30.4	29.2	30.3	32.6	34.9	37.1	39.4

*자료 기획재정부

- 외평기금을 동원한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은 혜택을 받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음.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수출재벌기업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분배효과 발생.
- 외평기금을 통한 고환율 정책은 수출 주도 경제를 고착화시키는 효과도 있음.
- 또한 외평기금 증가는 투기 거래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음. 환율이 한쪽으로 흐르기 쉽다는 사실이 예상되면 투기 이득을 챙기기가 쉽고 그러면 투기세력도 더욱 몰려들기 때문임.
-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투기성 달러 유입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외평국채 발행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평기금 보유 자산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기 쉬움. 외환보유고 유지비용도 거대한 규모로 늘어남.
- 따라서 외평기금을 대폭 줄이는 것이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이익임.

■ 목표

- 고환율을 유지시키고 투자를 조장하는 외평기금의 축소
- 외평기금의 일부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재검토

■ 방법

- 외평기금 한도제 도입(GDP의 5% 이내)
- 한국투자공사 필요성 전면적인 재검토

4. 외환 세이프가드 실질화

■ 현황과 문제점

-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을 자유화하고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량의 투기자본이 유입됨.
- 이런 투기자본은 금융시장에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대량 유출되었다가 충격이 사라지면 되돌아오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외환시장을 크게 교란시킴.
- 우리나라는 국내 경제사정의 증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때 지급이나 거래의 중단을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할 수 있는 외환 세이프가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제수지, 또는 국제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외화자금이 들어오면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시키거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수단을 한국은행에 매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가변예치 의무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 외환거래법에 외환 세이프가드 제도와 가변예치 의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예외가 많고 발동 조건도 까다로워서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 목표

- 외환세이프 가드 제도의 실질화

■ 방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규정된 외환 세이프가드 발동 예외 조항 완화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산업·통상 공약

통상주권 수호 !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

1. 한미FTA 폐기
2. 철도, 산업은행,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
3. 통신, 정유 공공성 강화

연구위원 송중훈(menwchen@gmail.com)

1. 통상주권 수호

공약

1. 약탈적 한미FTA 발효 저지 및 폐기

⇒ 어떤 무역협정보다 약탈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 폐기.

2. 한중FTA 협상 중단

⇒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노동자 대량해고 우려되는 한중무역협상 중단

3. 호혜 평등, 재분배, 경제주권, 노동중심의 대안무역질서 확립

⇒ WTO-IMF-World Bank 중심의 신자유주의 국제금융무역질서 재편하고 호혜 평등, 재분배 실현, 경제주권, 노동중심의 대안금융무역질서 확립

1. 한미FTA 등 불평등 조약 폐기

■ 현황 및 문제점

- 한미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자유화규정으로 한국의 경제주권과 경제 시스템을 위협함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불법화하고 자유화 및 개방 후퇴 금지제도(레킷 조항)와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를 빌미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제도 정책 및 조례까지 위협하고 있음
- 미국은 한국의 관세, 조세, 통관절차, 수량제한, 규제 체제, 농축산물, 의약품, 자동차, 금융서비스, 방송광고, 라벨링,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음.
- 미국은 현재 한미FTA 미국 이행법안과 대한민국 이행법안을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 한미 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도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한국의 경제주권을 제약함

한미FTA 독소조항

- 1) ISD : 투자자-국가분쟁 강제중재제도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없이 적용되는 공공정책조차도 사기업이 국제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하고,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식품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국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험한 제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법치주의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정문 제11장 제2절은 삭제해야 합니다.
-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히 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 그리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의 조치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한, 한미 FTA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 3) 네거티브 리스트 :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WTO 서비스 협정과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4) 역진방지 : 역진방지 조항은 우리 미래 세대의 정책 자율성을 훼손합니다. 따라서 협정문 제11, 12, 13장에 포함되어 있는 역진방지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 5)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 오렌지,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양허표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에 대한 현행 관세는 10년간 유지하고 그 후 5년간 5단계로 거쳐 관세를 없애는 방식으로 양허를 변경해야 합니다.
- 6) 개성공단 : 역외가공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수출된 재료를 개성공단에서의 생산 공정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쳐 만든 상품은, 이 상품이 한국으로 재수입되고 그 재료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한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 7) 급식 프로그램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급식 프로그램은 한미 FTA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한 학교 급식이 제외된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8) 허가-특허 연계 : 한미 FTA는 의약품의 시판허가와 특허 간에 아무런 연계가 없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정문 제18.9조 제5항을 삭제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9) 금융 세이프가드 : 부속서 11-사의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과 협정문 제13.10조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합니다. 가령 1년 이내의 발동 기간, 미국 투자자산의 몰수 금지, 그리고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는 제한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 10) 자동차 세이프가드 : 2010년 재협상에서 추가된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제도의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 목표

- 약탈적 한미FTA폐기로 통상주권 수호하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기반 마련

■ 방법

- 현재 한미FTA는 발효 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발효저지를 그리고 발효가 된다면 폐기를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함.

2. 실효 실질적인 통상주권 확립 없는 한중FTA 협상절차 중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통상교섭본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한중 FTA는 5월 협상을 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한민국의 전체 무역에서 한중 무역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어, 한중 자유무역은 한국에 이로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07년 전경련 조사에서 71.3%가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그러나 2010년 무역협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중 FTA에 대한 제조업 3,000개사 조사에서 한중 FTA를 지지하는 기업은 58.8%로 감소하였음. 이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한중 간 자유무역이 중소기업에겐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완성차 수출은 증가할 수 있는 반면 범용 기술을 사용하는 부품 중간재 무역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측 부품이 역수입 될 수 있어 한국 부품 생산 중소기업의 도산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해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표적인 수혜 산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한중FTA에 의한 피해업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발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점진적 FTA 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민감한 영역을 뒤로 미루자는 의도임. 민감한 영역은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중국 측의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 측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규제완화를 바라고 있는 부분임. 이는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한중 FTA 효과가 실제 현실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기업 측면에서도 한중FTA는 득보다 실이 많은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큼.
- 동시다발적 FTA체결은 국가경제에 득보다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최근 한EU FTA 무역수지 증가폭 감소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밝혀진 사실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 치적 쌓기에 골몰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국민 복지를 위한 무역 전망을 외면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식량자립도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중국산 식량수입은 한국의 식량자립도에 더욱 나쁜 결과를 미칠 것으로 보임. 한국의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 1998년 31.4% -> 2003년 30% 2010년 26.7%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한국의 식량 주권 및 농축수산업 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한중 FTA가 물고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시급한 실정임.

* 추진 현황

- 2004.9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민간공동연구합의
- 2006. 11. 아펙 각료회의,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
- 2007. 한중FTA 타당성 타진
- 2007. 정부 연구기관 및 전경련 기업지지 발표(기업의 71% 지지 발표)
- 2010. 4. 30 한중FTA 조속추진 정상 간 합의
- 6. 28 한중FTA 조속추진 정상 간 재확
- 2010. 9. 정부 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
- 2011. 5월 말 한중 정상 개시일정 확정
- 2011. 6월 개시선언
- 2012. 1월 한중 정상 간 협상타결가능성 확인, 국내절차 개시 표명
- 2012. 2월 중 30여 차례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의견 수렴(정부 전망)
- 2012. 하반기 국회비준추진(정부 전망)

* 한국 측 관심사항

- 자동차 화학 고부가가치품목의 조기 관세철폐
-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
- 투자자 내국민 대우 보장 및 기술이전 의무 부과금지
- 정부조달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완화,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반덤핑 등 무역 분쟁 협의

* 중국 측 관심사항

- 농수산물 섬유 기계 등 경공업 노동집약적 제품 시장개방
- 인력이동 교육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개방
- 동식물 검역 절차 및 제도개선 비관세장벽
- 반덤핑 등 무역 분쟁 협의, 대중국 특별 세이프 가드 해제

■ 목표

- 공정하고 주권이 존중되는 대외무역 추진

■ 방법

- 실질 실효 없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협정인 한중FTA 협상 중단

3. 호혜 평등, 재분배, 경제주권을 위한 국제무역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전문가들 또한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고 대안적 무역협정에 대한 상이 필요함.

- WTO·IMF·World Bank 중심의 신자유주의 국제금융무역질서 재편하고 호혜 평등, 재분배 실현, 경제주권, 노동중심의 대안금융무역질서 확립이 시급함.
- 약탈적 한미FTA와 계속 추진되고 있는 FTA를 대신 할 수 있는 대안무역협정은 호혜평등, 재분배 실현, 경제주권, 노동중심의 대안무역질서 확립임. 이는 1995년 개시된 WTO 체제를 개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될 수 있음. 현재 국제금융무역질서는 WTO·IMF·World Bank 중심의 신자유주의 국제금융무역질서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공동체를 해체하고 있음. 따라서 대안적인 체제 마련이 시급하고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인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약탈적 신자유주의적 무역질서에 저항해 다양한 대안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미국 시민사회와 노조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신통상법(미국 민주당 버전 공정무역론)과 EU의 신통상법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유럽’ 과 이에 저항하는 유럽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S2B(시애틀에서 브뤼셀까지)’의 “사회적 유럽을 위한 대안 무역-투자 정책” 그리고 ALBA(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비안 대안)와 TCP(민중무역협정)가 결합한 ALBA-TCP 등이 있음.
- 미국식 대안무역 구상인 ‘신통상법’은 첫째, 서비스부문에서는 (1) 네거티브리스트대신 포지티브리스트의 채택 (2) 필수 공공서비스부문에 대한 민영화 및 탈규제 반대. 둘째, 투자와 관련해서는 (1) ISD 적용 배제 (2) 투자, 투자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 (3)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 제한 (4) 미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권리 제한 등으로 미국 조차 현재 한미FTA 같은 약탈적 무역협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 유럽의 대안 무역 구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유럽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대안 무역(Towards an Alternative Trade Mandate for the EU)”은 유럽시민사회가 대거 참여하여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대안무역 및 투자 권고임. 여기에는 <Seattle to Brussels Network>, 각국의 Attac, 공정무역관련 단체, Oxfam, Transnational Insti

tute 등 노동, 환경, 공정무역, 여성, 인권, 농민 등 유럽의 주요한 NGO 다수가 참여하고 있음. 이들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EU가 추진하려고 하는 글로벌 유럽이라는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이자 동시에 사회적 유럽을 건설임.

- 아메리카 대륙의 대안 무역 구상은 “아메리카 대륙을 위한 볼리비안 대안”인 알바(ALBA)와 민중무역협정(TCP)이 결합하여 제안한 주장임. 이는 다음과 같음.

- 민중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원국의 에너지부문을 통합한다.
- 미국과 지역 내 신자유주의 매체와 균형을 맞추고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을 증진하기 위해 대안매체를 창출한다.
- 회원국내 토지재분배와 식량안보를 확보한다.
- 국영기업을 발전시킨다.
- 회원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초산업을 육성한다.
- 노동운동, 학생운동 그리고 사회운동을 촉진한다.

- 끝으로 노동중심의 대안무역협정 마련을 위해 주요하게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을 예로 들면, 무역협정 체결과 이것의 발효에 의해 야기 될 수 있는 실업, 무역수지 적자, 사회적 불안 발생 등을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정 체결 양 당사국이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해야 함을 들 수 있음. 이는 1948년 쿠바의 아바나(Havana)를 참고 한 것임. 아바나 헌장은 2차 세계대전 후 UN이 국제무역기구(ITO)를 위한 계획으로 무역과 고용에 대한 UN회의에서 기초된 것임. 아바나 헌장을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위시한 선전국과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들 대통령이 서명한 총 54국이 참가한 국제협정이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본 협정문의 의도와 관련된 고용, 생산, 그리고 수요의 중요성
 - 1.1 조약 체결 양 당사국은 실업을 최소화 하고 고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 개별국가만의 고려사안이 아님을 합의한다. 또한 실업을 최소화 하고 고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 무역의 확대와 이를 통한 양 당사국의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 안녕을 포함하여 본 협정문의 일반적 의도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합의한다.
 - 1.2 양 당사국은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극대화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원칙적으로 양 당사국의 국내 조치에 의존하는 반면, 이러한 양 당사국의 국내조치는 본 협정문에 따라 설립된 고용및경제활동협력위원회의 지원 아래 협력적 행동에 의해 보완되어야함을 합의한다.
 - 1.3 양 당사국은 고용과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보와 양 당사국의 견해를 교환한다. 이는 고용및경제활동협력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 국내 고용의 유지

2.1 양 당사국은 일방 체약국 과 타방 체약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제도에 부합하는 조치를 통해 당사국 영토 내에서 완전한 그리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수요의 성장을 달성 및 유지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2.2 11 지속 가능한 고용, 생산, 그리고 수요에 대한 조치는 본 협정문의 다른 목표와 조항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제수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¹¹ 조치는 회피하여야 한다.

3. 국제수지 불균형의 제거

3.1 일방 체약국의 국제수지 내의 지속적인 불균형이 타방 체약국의 국제수지에 어려움의 원인과 연루 되어 있을 경우, 일방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의견이 고려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동안,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3.2 조항 3.1과 관련한 행동은 세계무역기구와 이에 준하는 무역기구와 협정의 관행보다는 본 협정문의 일반적 취지와 목표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본 협정문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아바나 헌장 중(1948)

■ 목표

- 무역 대상 국가들의 경제주권과 재분배를 보장하고 호혜·평등한 조건에서 경제협력과 무역을 강화함

■ 방법

- 동시다발적 FTA를 폐기 및 중단시키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대안무역협정과 FTA 상설 감시를 위한 기구 설립

2. 기간산업 공공성 강화

공약

1. 공기업 민영화 중단,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보장

⇒ 외국인과 재벌에게 알짜배기 공기업을 넘겨주는 민영화를 중단하고, 전 국민에게 저렴하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보장

2.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실현

⇒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하고 독립성 보장

3. 통신, 정유사 공공화로 독점가격 통제

⇒ 민영화이후 과도한 주주 배당으로 통신요금, 석유 값 폭등으로 서민생계 곤란, 민영화 폐해가 드러난 기간산업의 공공성 강화로 실질 서비스비용 인하

1. 민영화 중단,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이후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와 경쟁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인천국제공항, 철도(KTX), 산업은행, 대우조선, 상수도 등의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영화 논리가 확대되고 있음
- 민영화된 기업들은 부실한 공기업이 아니라 KT, KT&G, 포스코, SKT 등 수익성이 높은 ‘알짜’기업들임
- 총자산 145조원의 산업은행과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 철도의 황금노선인

KTX, 세계적으로 서비스 1위이며 영업이익 7천억 원 및 당기순이익 3천2백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인천공항 등을 매각하는 것은 심각한 국부유출임. 이러한 거대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투기자본과 재벌뿐임

민영화로 이윤 중심 경영이 실시되면 공공서비스가 부자들에게 편중 공급되어 국민들의 보편적 서비스가 제한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게 됨

■ 목표

○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편적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함

- 시설의 보편성,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지역차별을 방지하여, 벽지주민에게도 공공서비스가 균등하게 공급되어야 함. 시설은 골고루 건설되어야 하고, 생산원가의 차이는 사회가 보전해야 함. 이를 위해 수익극대화 경영전략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필요함.
- 요금의 공공성,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공공적 요금체계가 수립되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이 제약되지 말아야 하며 계층 차이를 반영한 사회적 요금체계가 요구됨. 이로 인한 경영적자는 부실이 아니라 사회연대와 평등을 위한 사회적 적자로서 전체 사회가 보상할 의무를 지님.
- 대규모 기간산업의 생산력 성과가 재벌에게 독점되지 않고 전체 국민에게 향유되어야 함. 기간산업은 일부 경쟁체제가 도입되어도 규모의 특성과 생활 필수재 생산으로 독과점을 형성하게 되어 공급자의 독점이윤이 형성될 소지가 크므로 국민을 상대로 이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공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통해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해야 함

■ 방법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민영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성, 국가 재정, 국가 안보와 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함

2.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말 현재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약 24만 8천명이고, 전체 공공기관 예산은 464조 3천억 원으로 GDP대비 43.7% 수준이며, 정부 일반회계 예산(2010년)의 2.3배 수준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보험, 에너지, 교통, 주택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필수품임
- 공공기관이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주의의 결손(democratic deficit)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목표

- 공공기관이 정부의 기능 수행을 위해 정부에서 파생된 조직이라 한다면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익의 실현에 기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반영하여 시민들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방법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민영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지배구조 민주화를 위해 이해당사자 참여형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법 전면 개정
 - ‘공공성’ 구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체제 전면 재구성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참여형’ 공공기관 의사결정 구조 확립,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개별 공공기관 이사회 의 개혁,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혁신,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독립기구 설치)
 - 낙하산 방지(전관예우 근절)
 - 예산지침 근거규정을 공공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폐지, 대안평가제도 도입
 -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평가가 아닌 공공서비스 운영 평가
 - 평가부문 및 지표체계의 개선, 평가방식 변경

-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민주적 운영 실현
 - 지방공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전면 개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3. 통신, 정유사 재공공화로 독점가격 통제

■ 현황 및 문제점

- 우편과 유선전화 대신 휴대폰과 인터넷 전국민시대가 되었고, 정유회사도 국민 교통을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로 기간산업으로 볼 수 있음.
- 통신과 정유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주파수 또는 자원의 제한으로 독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역임.

- 한국통신과 대한석유공사가 민영화된 이후 이윤논리에 따른 결과 독점가격이 형성되어 국민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한국은 가처분소득 가운데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멕시코(4.6%)에 이어 OECD 2위(4.4%)를 기록(OECD 평균 2.7%), 석유 값은 인상폭이 가장 큰 품목으로 물가폭등의 주범임

- 무선통신은 SKT(51%), KT(31%), LGT(18%)로서 공기업 한국통신 무선부분을 1992년 대통령 사단인 선정그룹에 배정했고, 2002년 KT를 민영화하여 외국인들이 49%의 지분을 차지함
- KT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민영화 이전(2000~2002)에는 14.68%였는데 민영화 이후(2003~2010)에는 51.43%로 확대되었고, 배당총액 중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되는 비중은 민영화 이전 38.71%에서 민영화 이후 56.85%로 높아져 국부유출이 심각한 수준임(SK도 유사한 추세임).
- 2002년 민영화된 이후 무선통신 시장은 SKT(51%), KT(32%) 두 회사가 83% 점유율로 독점. 이들은 이윤 극대화 경영으로, 주주 배당은 늘리고 설비투자과 연구개발비는 줄였으며 비싼 통신비를 유지함. 현재 한국은 OECD국가 중 2위로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높은 나라로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2010년 14만 1,388원으로 2009년(13만 3,628원)보다 5.8% 급증. 통신비 급증의 원인은 통신서비스 지출 가운데 75.6%를 차지하는 이동전화요금(2009년 9만 5,259원 → 2010년 10만 3,370원)이 증가했기 때문.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2010년 7.1%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식사비 12.4%, 학원비 7.2% 다음으로 높음.
- 반면에 독점 통신사들은 비싼 통신비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늘렸고 2011년 영업수익도 증가 추세에 있음.

〈표〉 이동통신사 영업수익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영업수익	1분기	2분기	3분기
SKT	3,132	3,194	3,212
KT	1,727	1,750	1,712
LGT	823	847	861

출처 : 전웅휘(2011)

- 국가 기간망으로서 통신산업은 국가안보 및 공익, 문화개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여 독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함.

- 재벌 정유사 SK(35.3%), GS(26.8%), 현대오일뱅크(18.7%), S-Oil(14.7%)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95%를 넘으며 주요 3사의 점유율도 75%가 넘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됨. 이들은 모두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국내시장규모가 10조원을 넘음
- 석유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가격담합으로 초과이익을 누리고, 그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인데, 산업의 혈류라고 할 석유공급을 사기업들의 수중에 맡겨놓고, 국가는 공공서비스 제공 책무를 방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정유사의 유가담합을 적발하여 2006년 총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원래 정유산업은 대한석유공사가 담당했으나 걸프오일(미국)에 경영권을 넘겨주었고 1982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선경그룹(현 SK이노베이션)에 넘어가게 됨.
- 국내 석유가격은 정부의 가격고시제 등으로 묶여있었는데 1997년 1월 가격자유화를 실시해 실질적인 민영화 되었고 이후 기름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 정유사들은 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익에 기반을 두어 막대한 배당을 챙김. GS칼텍스의 경우 40%대의 배당성향을 보여 왔는데 2011년 배당총액은 3,460억 원으로 순이익의 48%에 달함. SK이노베이션은 2007년부터는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주당 2,100원의 고배당을 실시.
- 석유소비량이 세계 6위이며 100%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조건에서 석유 공급을 국가가 통제해야 적정소비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음.

■ 목표

- 통신과 정유에서 독과점 가격의 폐해를 없애고 공공서비스를 전 국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강화

■ 방법

- 기간산업인 통신과 정유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분을 지렛대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공적기관의 지분을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부문은 공기업화함
- 공공화에 필요한 재원은 KT의 경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8.7%) 지분을 지렛대로 하고 자사주를 공적기관에서 인수하면 공적통제가 가능함.
SKT의 경우 자사주와 (주)SK가 보유한 지분 합계가 35.2%이므로 시가총액의 약 40%(5조 223억원) 정도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3.1%)과 퇴직연금, 우리사주조합 등을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원을 통하여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음.
- 정유회사의 경우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SK에너지의 지주회사) 8.6%, S-Oil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지렛대로 공적기관에서 매입할 수 있음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재벌·중소기업 공약

재벌독점 해체 !

원하청 초과이윤 공유 !

불공정거래 근절 !

1. 재벌규제법으로 재벌독점 해체
2. 중소기업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연구실장 김성혁(ksh6501@hanmail.net)

1. 재벌규제법으로 재벌독점 해체

공약

1. 순환형 출자금지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계열분리명령제”로 총수의 지배력 유지 수단인 계열사 간 출자를 금지하여, 소수지분으로 계열사의 의결권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함.

2.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근절 제도화

⇒ 기업의 이익보다 기업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전용행위 방지

3.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 금지

⇒ 금산분리 강화로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

4.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 재벌 총수의 독단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감시 장치로, 국면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중소기업 이윤 탈취, 투자 기피, 과도한 주주배당 등을 통제

5.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로 실질적 경제민주화 실현

1. 순환형 출자금지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출자총액제한제는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상향조정 되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법 개정으로 공식 폐기됨.



-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해졌는데 30대 재벌의 자산 총액은 2011년 1,461조으로 국내총생산 (GDP) 1,080조원보다 26%가 더 많음
2011년 30대 재벌의 매출액은 1,134조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95%에 달함
- 계열사 출자가 자유로워져 계열사수가 2006년 645 개에서 2011년 1,019개로 증가
- 10대 재벌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2012년 1월 현재 681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1,244조원의 56%에 이 름

〈표〉 10대 재벌 상장사 시가 총액 비율

(단위 조원)

년 도	2008년 말	2009년 말	2011 8/1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	622	968	1,339
10대재벌 상장사 총액	277	448	699
비율	44.5%	46.3%	52.2%

자료 : 이정희 의원실(2011)

- 10대 재벌 제조업체 매출 비중이 2005년 34%에서 2010년 41%로 높아져 2007년 사실상 출자 총액 제한법 폐지 이후 경제력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음

〈표〉 10대 재벌의 제조업 매출 비율

(단위 조원)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제조업 매출	1,196	1,221	1,346	1,604	1,613	1,840
10대그룹 제조업 매출	412	440	474	591	612	756
비율	34.4%	36.0%	35.2%	36.8%	37.9%	41.1%

자료 : 이정희 의원실(2011)

- 또한 공기업인수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지분 10%이상)에 대한 출자예외인정 조항, 동종업 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직접적인 생산판매관련, 산업관련을 확인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한 출

자예외 인정 조항들은 사실상 재벌일가의 소유경영독점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여 왔음

- 순환형 출자는 계열사 간 피라미드 주식소유를 통해 가공자본을 만들어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
- 계열사 간 순환출자 등을 통해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함으로써 독과점화, 재무구조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목표

-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고,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여 경제 민주화를 유도하고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 방지

■ 방법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출자한도를 25%로 설정하여 문어발식 다각경영을 통제하며, 다양한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규제
- 공기업 인수,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회사, 외국인투자(외국인지분 10%이상), 법정관리·부실기업 등에 주어지는 예외인정을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함
- 순환출자 금지 제도화
- 상호출자 금지는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동안 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명무실해짐, 재벌 계열사 간에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이른바 고리형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소수지분으로 그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따라서 '상호출자 금지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함. 순환고리에 대하여 1%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

○ “계열분리명령제”로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 및 골목상권 독점 행위 차단

- 공정거래법 1조 목적에 현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방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동(담합) 규제를 통하여 ①창의적 기업 활동 보장 ②소비자의 보호 ③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실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과거보다 비대해진 재벌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새로운 규제의 틀과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계열분리명령제는 미국에서 시행중인데, 재벌계 금융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이 공정거래위가 직접 금융계열사(또는 일반계열사)에 계열분리를 명령하여 관계된 지분 매각 등을 조치하여 원인 무효로 만들 수 있음. 재벌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고 나아가 골목시장 빵가게 체인까지 잠식한 계열사를 분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임.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선정 수준의 자발적 질서만으로는 재벌 독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열분리명령제 또는 기업분할명령제 등의 강력한 제도가 필요함.

2.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10대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은 불과 1.1%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는 기업 이익의 1.1%만 가져가야 함, 그러나 계열사 등을 통한 지배력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45%에 달해 소유, 지배 괴리도가 큼
- 총수 일가, 2세, 3세들에게 그룹 전체의 안정적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자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2세, 3세들에게 전용하려는 유혹이 큼.
따라서 사익추구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제재 수단이 필요함

■ 목표

- 재벌 소유, 지배 괴리도가 커서 사익추구 행위가 일상화돼 있는 점을 극복

■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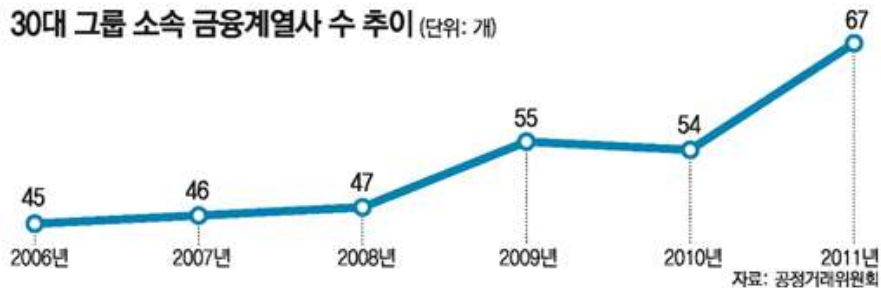
- 상장회사 대주주 자격제한 제도 도입(자본시장통합법 개정)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형집행 정지 후 5년간 의결권 제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10%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 규정 도입
- 상장회사 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상법 개정)
 -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끝난 후 5년 동안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음(은행법 제18조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시)
 - 다수의 외부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에 대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사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
- 독립이사제도 도입(상법 개정)

- 경력, 학력, 총수일가와 친분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된 인물만을 임용할 수 있음
- 상장회사 이사의 경우 친족이사의 비율을 법률로 제한
- 일감몰아주기 등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를 승인하고자 하면 친족이사 등 비독립이사는 제외되어야 함

3.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지배할 경우, 계열사가 부실해질 때 계열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부실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되어 자원의 낭비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최근 저축은행 사태는 부실과 비리로 금융회사를 운영할 능력도 자질도 없는 주체들이 불법으로 돈을 끌어 쓰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 계열은행이 재벌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어 경제적 집중이 강화되고 여타 경쟁기업이나 창의적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이 위축될 수 있음.
 - 재벌들은 제2금융권을 자회사로 거느려 이를 사금고화하면 부실 우려가 큼.
- 금산분리는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2009년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9%로 늘림
 - 더 나아가 산업자본이 은행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을 추진하여 국회 계류중임
- 30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 수가 2006년 45개, 2009년 55개, 2011년 67개로 높아지고 있고, 10대 그룹소속 금융계열사는 46개에 이름



〈표〉 10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 현황

(단위 원)

그룹	계열사	자산총액	자본총액	금융계열사
삼성	10	186조 5,610억	26조 1,070억	생보부동산신탁, 삼성벤처투자, 삼성생명보험,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삼성화재해상보험,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현대자동차	4	32조 3,080억	4조 6,050억	에이치엔씨투자증권,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SK	1	2조 9,680억	4,370억	에스케이증권
LG	1	5억	3억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롯데	10	11조 8,290억	1조 9,530억	마이비, 이비카드, 인천스마트카드, 한페이시스, 경기스마트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부산하나로카드, 충남스마트카드
포스코	1	370억	360억	포스텍기술투자
현대중공업	5	1조 8,370억	5,860억	하이자산운용, 하이투자증권, 현대기술투자, 현대기업금융, 현대선물
GS	1	70억	70억	지에스자산운용
한화	10	88조 9,590억	7조 4,600억	새누리상호저축은행, 대생보험심사, 대한생명보험, 대한티엠에스, 푸르덴셜자산운용, 푸르덴셜투자증권, 한화기술금융,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한화투자신탁운용
KT	3	2조 1,130억	2,750억	케이티캐피탈, 뱅가드사모투자전문회사, 케이티엘아이지에이스사모투자전문회사
총계	46	306조 6,195억	41조 ,4663억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1년 4월 기준, 공기업은 제외하되 민영화된 공기업은 포함

■ 목표

○ 금산분리를 강화하여 재벌이 금융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

■ 방법

○ 금산분리 완화책인 2009년 개정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원래대로 복구

- 은행법 개정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9%를 다시 4%로 제한하고 사모펀드 기준 강화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규제
- 산업자본이 소유한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금산분리 원칙 적용
-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으로 금융계열사 사금고화 금지

4.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및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재벌 총수의 소유경영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시가 필요함. 현재 재벌 주식은 총수 및 특수관계인지분을 제외하면 외국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이 대주주로 참가하고 있음. 외국인들은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 경영을 선호하고 있어 이들의 지분이 높아지는 것은 고용창출, 국내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경우가 많음
- 기관투자자 중 최대 규모인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2011년 말 62조 1300억 원을 투자하여 증시 시가총액의 5.1%를 보유. 국민연금은 KT, 포스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며, 보유지분 5% 이상 주요기업을 보면 KT(8.7), 삼성전자(6.0), 호텔신라(9.3), 포스코(6.4), 하나금융(9.4), 엘지전자(8.3), 엘지화학(6.7), 우리금융(5.1), SK텔레콤(5.1), 현대제철(9.1), 한화(7.2), 기아차(7.0), KB금융(6.1), 신한금융(7.1), S-Oil(6.0), 현대중공업(5.1), 하이닉스(9.2), 제일모직(8.7) 등이 있음.
- 현재는 정부의 입김으로 연기금이 경기 부양수단 또는 주식시장의 주가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아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관료들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함. 또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인 기금운용본부는 상설운용조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하고 있으나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함. 따라서 국민연금이 민주적 통제에 있기보다는 소수의 금융엘리트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임.

■ 목표

- 재벌 총수와 외국인 대주주의 단기성과식 경영을 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함
향후 대기업의 지배구조도 공적기관의 지분 확대, 국민연금기금, 종업원주식소유, 퇴직연금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연기금의 경영권 행사로 대기업 과점체제와 수직계열화 구조를 개선하고, 사내유보금을

쌓고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나, 중소기업 이윤 탈취 등을 감시·통제하여 시장의 공적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음.

■ 방법

-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높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정부와 별도의 독립기구로 운영.
-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주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참가하여 국내산업 발전, 고용확대, 공익성 강화의 방향으로 경영권에 개입하여야 함.
 - 지분율 5% 이상이면 해당 기업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사외이사 파견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등 기업경영 참여와 관련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비중이 조금만 더 높으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음.
 - 100개 이상의 우량 대기업에서 국민연금은 최대 또는 2~3대 대주주이므로 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며 사전공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함

5.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노동자 경영참가가 필요함.

- 재벌의 지배구조를 비롯한 개혁논의에 있어 재벌일가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재벌의 이해관계자이면서 내부감시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전혀 논의되지 못함.
- 산업경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노사협의회 수준을 넘어서 기업단위 최고의 사결정사항에 대한 민주적 지배구조의 구축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무엇보다도 필요.

○ 기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간산업/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넘어서는 노동자 경영참가의 필요성 대두

- 지금까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구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의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경영참가는 여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태
- 민주노총은 2001년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원회에서 ‘경영참가제도와 우리사주 활성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사주제도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적이 있음.
- 도산 및 경영악화, 구조조정의 일상화, 정리해고 및 대량해고 등과 같이 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 대부분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추진되므로 경영인사과정에 노동자의 참여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목표

○ 노사협의회법상 노동자대표의 개입력과 결정권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단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감사회에 노동의 참여결정권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음

■ 방법

○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단체교섭에서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규제 및 배제 규정 삭제 : 노동조건과 고용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영인사 사안에 대한 교섭권 보장
- 노사협의회법상 협의사항 확대 및 노동자대표의 결정권 강화 : 경영인사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회계장부 및 경영정보 요구권 보장

○ 종업원지주제(우리스주조합 포함)의 적용 확대 및 민주적 운영

- 증권거래법 개정: 우리스주조합의 정의 및 목적 변경, 비상장기업의 우리스주조합 활성화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 우리스주조합의 운영의 자주성과 민주성 보장: 규약의 재개정과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대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명문화
- 주식의 양도제한규정의 완화와 문제점 보완: 우리스주의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와 조합원 공동소유 활성화, 우리스주 구매기금의 조성 및 정부의 세제혜택

○ 중장기적으로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유럽식 노사공동결정법의 제정과 시행

-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1000인 이상) 경우 노동자대표 및 노조추천인의 이사회 및 감사회 노사동수 참여 및 결정권 부여
- 일정규모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사내외 이사수의 동수화, 사외이사의 1/2 노동자대표 선임. 노동조합에게 감사에 대한 추천 및 선임권 부여

2. 중소기업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공약

1.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 전환

⇒ 재벌의 성장이 가져오는 적하효과가 소멸되고 오히려 투자기피, 외주·아웃소싱, 불공정거래, 고환율로 물가폭등 등 국민경제 발전에 해악적인 결과 초래.

2.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

⇒ 대기업의 최종재 생산에 기여한 납품업체와 초과이윤 공유를 제도화

3.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편 및 중소기업자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과 고발권 부여

4. 중소기업에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원

⇒ 파견근로, 사내하청,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경우 지원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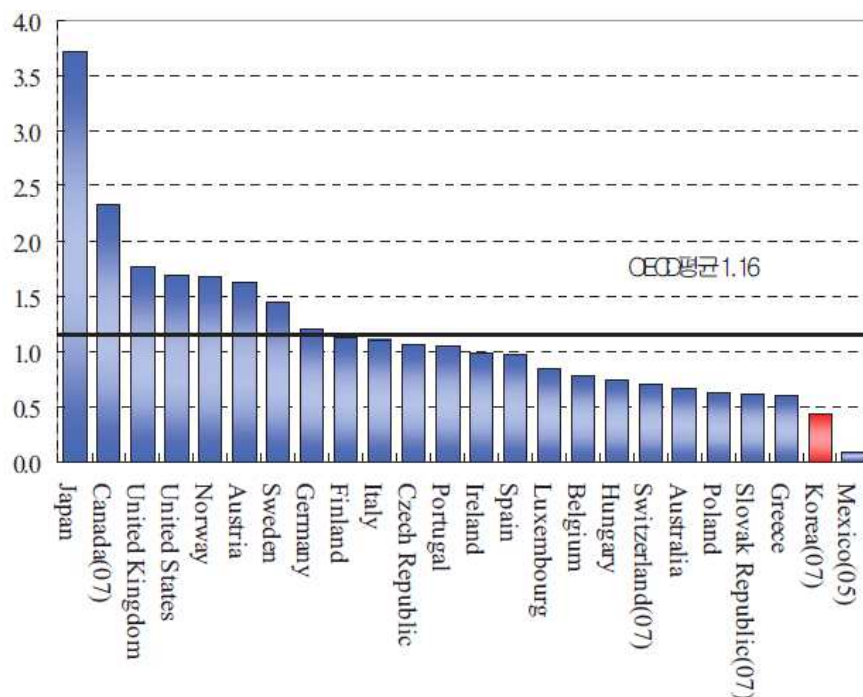
1.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은 양극화와 대외의존성을 심화시켜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재벌은 고환율과 부자감세, 규제완화와 독과점 등 온갖 특혜로 성장하였지만 그 성과가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적하효과가 소멸되었고, 오히려 국내투자 기피, 외주·아웃소싱으로 고용불안, 불공정거래, 물가폭등 등 국민경제 발전에 해악적인 결과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수출은 재벌의 소수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주도의 광범한 부품·소재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동반하지 못함
- 대기업은 중위기술에 바탕한 가공무역으로 완성품을 수출하는데, 수출 고부가가치지수(=수출단가지수/수출물가지수)가 2005년을 100으로 볼 때, 2010년 101.2로 정체되어 있음. 미국 115.2, 일본 108.5 등 주요 선진국(114.7)에 비추어 저가수출임.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는 OECD국가 중 23위로 낮은 수준임.

[그림] OECD 국가별 기술무역수지비



자료 : OECD. Stat,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 한국은 수출 1위 품목이 74개로 미국의 12% 수준임, 세계 수출 경쟁력 1위 품목수를 보면 한국은 74개로 중국 1239개, 미국 633개, 독일 852개, 일본 230개에 비해 크게 저조함.
- 최종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 비율이 한국은 37%로 미국(15%), 일본(17%), 중국(20%), 독일(24%)에 비해 매우 높음. 즉 한국 수출품의 부품 국산화율이 매우 낮아

수출이 증가해도 원자재 및 중간재가 더 빨리 증가하는 수입 의존적인 수출임. 중소기업이 주체인 부품·소재산업에서 고위 기술은 일본 등 미국, 유럽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저위 기술은 중국의 잠식이 발생하고 있음.

〈표〉 2010년 소재산업의 교역실적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일본	중국	중동	유럽	미국	중남미	합계
무역수지	-142	85	30	-4	-4	10	123

출처 : 지식경제부 (2011)

- 따라서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의존적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표〉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계수

년도	소비	투자	수출
1990	0.192	0.284	0.309
2000	0.211	0.346	0.367
2009	0.253	0.316	0.439

출처 : 경제통계국 「산업연관표」 한국은행(2011)

■ 목표

- 내수경제와 고용창출(전체 고용의 88%)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기업과 동반성장으로 경제의 양극화와 불균형, 대외의존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도모함.

■ 방법

-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을 폐기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 발전으로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
- 소수 대기업의 조립가공에 의한 최종재 중심 무역구조를 중소기업이 주체인 부품·소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부품·소재산업은 최종재 산업의 수출 성과가 내수로 파급되는 주요한 경로이며, 다품종대량생산으로 주된 생산주체가 중소기업이므로 균형 있는 경제발전의 지렛대가 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함)

2.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제도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가 대기업에게 이전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 등 대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왔으나 대·중기업 양극화 해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목표

- 대기업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업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실시하기 위함.

■ 방법

- 적용대상: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시행방식: 해당 대기업과 산하 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협약 체결
- 초과이익공유기금의 조성과 활용
 - 기금 조성방법 : 대기업의 목표이익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원하청이 정한 배분규칙(예 50:50)에 따라 납품업체 몫(50%) 중 80%는 산하 협력업체에게 재배분하고 나머지 20%는 ‘이익공유기금(2차 협력사 지원금 10%/손실대비 적립금)’으로 적립
 - 중소기업에 분배된 초과이익 중 50%이상을 인건비 인상, 교육비 등으로 종업원들의 임금·후생복지 인상에 사용하도록 함.
 - 기금관리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담당
- 이익공유기금의 조세특례제한법 8조 3항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시행업체 세액 공제혜택

제공

- 적용대상기금: 기존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이외에 이익공유기금 추가
 - 세액공제대상: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관리를 위탁한 이익공유기금 출연금액 중 협력사에 지불된 금액(대기업에 지불된 위험분담금 제외)
- 상생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이익공유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20조의3(이익공유제의 운영과 기금조성)을 신설하여 적용대상, 적용모델, 이익공유협약, 이익공유기금에 대한 내용을 삽입

3. 중소기업 보호,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저성장은 대기업이 수직계열화된 납품관계를 통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기술 및 인력 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획득한 성과물을 가져가기 때문임
-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당사자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문제 조사를 요구할 뿐,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없음, 이명박 정부 2008~2010년 동안 피해 업체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인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 건수는 대폭 축소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행위 처벌에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아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88%(금액기준)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짐(2010년), 또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41%로 내부거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분석 대상 20개 업체의 매출액 12.9조 원 중 71%인 9.2조원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2008년 69%, 2009년 67%), 이는 대기업의 폐쇄적인 내부시장 확대로 나타나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 목표

- 불공정거래와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룩하기 위함

■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편 및 독립성 강화
 - 정부 성향에 따라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일상적 감독 기능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 대통령의 임명뿐 아니라 국회의 추천비율을 넣어 공정성을 높여야 함

- 중소기업자조합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 및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핵심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과 중소기업과의 이윤 공유제 확산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대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임

- 기술자료 유용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불공정거래 행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위반자에게 손해액의 3배의 손해배상을 부과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과세 강화
 - 1년간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전체 매출액의 30%를 넘을 경우에 한함)과 일정 비율(전체 매출액의 5%로 상정)을 공제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함.

$$(\text{영업이익}) \times \text{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2011년 하반기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었으나 이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
 연간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한 비율과 총수일가 지분에서 3%를 공제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함. 정부안 : $(\text{세후 영업이익}) \times (\text{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 - 3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3\%)$
 - * 정부안은 세후 영업이익을 적용하고 세액산출시 몰아주기 거래비율의 30% 초과분만을 반영하므로, 영업이익을 적용하고 몰아주기 거래비율 전부를 반영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안에 비하여 산출 세액이 절반 이하.
 - *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하는 정부안의 기준만으로는 산업 구조상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하기 어려움.

4.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 소득세 법인세 공제
- 파견근로, 사내하청,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경우 해당 인원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보다 훨씬 낮은 영업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음.
- 경기악화와 경영위기 시 고용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조정지원’ 제도가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임
- 여러 가지 실효성 없는 제도보다는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정규직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정규직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해당기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 해 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계산한 정규직 전환자 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조세·재정 공약

강력한 부자중세!

복지재정확보!

공약	목표	방안
부자중세!	고소득 구간 세율 인상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인상
조세 형평성 확대!	자산과세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탈세 근절!	자본소득과세 신설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복지재정확보	비과세 감면 축소	특혜적 비과세 감면을 복지재정으로
재정 개혁!	SOC사업정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간이과세제도 정비
	지방재정확충	국가및 지방재정법 개정

연구위원 이정민(banlim15303@naver.com)

1.부자증세!

공약

1. 1억 2천만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 세율인상

⇒ 1억원 버는 사람과 100억원 버는 사람 세율이 같을 수 없음. 연봉 1억 5천만원(과표 1억2천만원)인 사람의 세율, 현행 35%에서 40%로 상향

2. 1,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세율인상

⇒ 42만 법인 중 단, 200여개에 불과한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재벌 기업 세율, 현행 22%에서 30%로 상향

3.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무력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하여 자산과세를 강화하여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4.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 자본이득 과세를 신설하여 고액주식투자자가 세금을 납부할 근거 마련

1. 1억 2천만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 세율인상

■ 현황

- 워렌 버핏 등 외국의 슈퍼리치들은 스스로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역설
- 반면 우리나라는 MB 감세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세율이 낮아짐
-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 세율인하의 혜택은 최고 소득구간이 가장 큰 혜택
- 명목세율이 40%가 되더라도 2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연봉대비 납부세율은 20% 이하
- 최고액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율을 40%까지 인상할 여력은 충분히 있음

[소득세율 변화 현황]

과세표준	1996	2002	2005	2009	2010
1,000만원 이하(1,200)	10	9	8	6	6
1,000만원 초과 ~ 4천만원 (1,200~4,600)	20	18	17	16	15
4,000만원 초과 ~ 8천만원 (4,600~8,800)	30	27	26	25	24
8천만원 초과(8,800)	40	36	35	35	35

*2012.12.31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표구간 3억원, 38%의 세율 신설

■ 목표:

-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천하는 근본적 방법은 조세 누진성 강화
-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유럽국가 및 미국, 일본 등 보다 낮은 수준
- 최상위 구간의 세율을 올려 조세형평성을 이룩하고 복지재정을 마련해야함

[소득세관련 정당 비교]

단위	소득세신설구간(과표기준)	세수증대효과	해당인원
새누리당	3억원(38%)	7,700억	0.17(3만명)
민주통합당	1억5천만원(38%)	1조	0.35(6.2만명)
통합진보당	1억2천만원(40%)	2조	0.56(10만명)

■ 방법:

- 연봉 1억5천만원 초과(과표 1억2천만원)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인상

■ 세수효과

- 2013년 약 2조원, 2017년까지 향후 5년동안 약 12.7조원의 복지재정 마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증가분]

(단위: 억 원)

연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계
2013	10,899	9,481	348	20,728
2014	11,819	10,628	374	22,821
2015	12,817	11,913	402	25,132
2016	13,900	13,353	433	27,685
2017	15,074	14,968	465	30,506

이정희의원실 추계(국회예산정책처 조력), 2011.2

2. 1,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세율인상

■ 현황

- 과표 1,000억원 이상 법인은 전국 42만개 법인 중 단 200개 재벌법인만 해당
-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미국 35%, 일본 30%, 프랑스 34%, 영국 28%, 등 주변의 경쟁국과 비교하여 세율 인상의 여력이 있음

[법인세율 변화 현황]

과세표준	1994	1995	1996	2002	2005	2008*	2009	2010
1억(2억*) 이하	18	18	16	15	13	11	11	10
1억(2억) 초과	32	30	28	27	25	25	22	22

*2008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으로 상향

■ 목표

- 200개 재벌기업(과세표준 100억원 초과)의 법인세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한다면 연간 12조원 이상 복지재정 확보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인세 납부의 여력이 있는 재벌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려 복지재정을 마련

■ 방법:

- 과표 1,000억원 초과 법인(약 200개)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

■ 세수효과:

- 2013년 약 12.4조원, 2017년 까지 향후 5년간 약 73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가능

[법인세 증가액 추정 결과]

(단위: 억원, %p)

연도	과세표준(A)	실효세율 차이(B)	법인세 증가액 (A×B)
2013	2,155,491	5.26	124,092
2014	2,574,274	5.26	135,420
2015	2,796,419	5.26	147,106
2016	3,026,605	5.26	159,215
2017	3,264,311	5.26	171,720

3.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현황

-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라면서도 종부세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세율 또한 원본잠식의 우려가 없어 과도하지 않다고 함.
- 세율과 과표구간을 지난 종부세 무력화 개정 이전과 동일하더라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 과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
- 참여정부 시절의 세율로 종부세를 정상화시킨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는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없음

[종부세율 변화]

'06~'08년			'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1%	-	6억이하	0.5%	-
3~14억이하	1.5%	150만원	6~12억이하	0.75	150만원
14~94억이하	2%	850만원	12~50억이하	1%	450만원
94억 초과	3%	1억250만원	50~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	7,650만원

■ 목표

- 무력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하여 자산과세를 강화하여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 1세대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 위주로 종부세를 강화하여 지방불균형을 해소

■ 방법

- MB 종부세 무력화 이전의 세율을 회복하여 1세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

■ 세수효과

- 2013년 약 1.5조원, 2017년 까지 향후 5년간 약 8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현행 및 개정(안) 세제 하의 종합부동산세수 차이]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현 행	10,749	10,854	10,960	11,068	11,176
개정(안)	26,178	26,430	26,685	26,942	27,201
차 이	15,429	15,576	15,724	15,874	16,025

4.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 현황

- 현재 주식양도차익을 통해 수 억원의 수익이 발생해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현실에서 근로소득에는 과세하면서 자본소득에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남
- 또한 비상장주식이나 법인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하면서 극소수의 대주주에 한해서만 양도차익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조세정의에 부합되지 않음
- 대주주의 범위는 특수관계인과 합해서 3%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임(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 6경이라는 전 세계1위 시장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도 불합리
- 연 단위로 손실금액을 공제하고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한다면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목표

- 자본이득 과세를 신설하여 고액주식투자자가 세금을 납부할 근거조항을 만들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이후, 다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과세

■ 방법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세를 전면도입
- 세율은 소득세법 기본세율 준용(6%~38%), 향후 40%적용
- 연간 양도차손 및 양도차익 상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 기본공제 1,000만원, 1년간 손실이월공제 허용, 장기보유공제 허용

■ 세수효과

- 주식등락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학계와 연구기관은 최소 연 10조원이상으로 파악

2. 조세형평성 확대!

공약

1. 비과세 감면 축소

⇒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이를 저 소득자가 유리한 재정사업으로 전환

2.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 연간 5만명만 해당이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확대하여 금융자산만 수 억원을 가진 사람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3. 상속세 및 증여세 강화

⇒ 실질적인 완전포괄주의로 개정하여 변칙상속을 막아 부의 재분배 도모

4. 금과, 보석 과세 신설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 마련

1. 비과세 감면 축소

■ 현황

- 비과세 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수혜대상
- 하위 50%에 가까운 과세미달자에겐 세금 감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
- 30조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함

■ 목표

-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확대하고 복지재원 마련

■ 방법: 비과세 감면의 정비 기준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제 1기준: 일몰 도래 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 종료, 반드시 필요한 조항은 조특법이 아니라 본법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연장하더라도 축소해서 연장해야 함
- 제 2기준: 조세지출 항목이 의도하는 정책적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실현가능한 다른 재정사업이 있다면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항은(저소득층은 세금납부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세지출 보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

<예시>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저소득층에게 연 1,800원 혜택주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신 월 10만원 혜택주는 아동수당 신설 등

■ 세수효과

- 2013년 약 10조원, 2017년까지 향후 5년동안 약 86조원의 복지재정 마련

[세제변화를 고려한 조세지출 비율 하락 및 임투 폐지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목표조세지출비율	12%	10%	10%	10%	10%
목표 조세지출액	330,456.8	294,287.3	314,373.2	335,785.1	358,610.8
(증가율)	-4.49%	-10.95%	6.83%	6.81%	6.80%
감면 정비효과	104,644.7	170,686.6	182,336.4	194,755.4	207,994.3
총국세수입	2,423,350	2,648,586	2,829,359	3,022,066	3,227,497

2.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 현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 합산하여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 반면, 자본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나 편의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있음
- 이러한 분리과세 제도로 조세의 형평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자, 배당 소득만 연간 4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연간 5만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

■ 목표

-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의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형평성을 강화

■ 방법

- 금융종합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4,000만원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추고 분리과세 상품을 대폭 정비

3.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강화

■ 현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방식을 개발하여 증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
- 그러나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된 이후에도 새로운 증여행위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어 완전포괄주의는 선언적인 조항에 그치고 있음. 이를 실질적인 완전포괄주의로 개정해야함

■ 목표

-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이전되었다면 그 형식에 상관없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여 조세형평성을 강화

■ 방법

- 새로운 증여행위에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증여행위에 증여가액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새로운 증여 행위에도 증여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완전포괄주의로 전환

4. 금괴, 보석 과세 신설

■ 현황

- 최근 금 등 귀금속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할 근거 조항 자체가 없는 실정

■ 목표:

- 금괴 등 귀금속의 양도차익에 과세 근거를 마련하여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의 원칙을 실현하여 조세형평성을 강화

■ 방법: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 소득 항목에 동 조항의 법적인 과세 근거를 마련

3. 탈세 근절!

공약

1. 차명거래 방지를 통한 지하경제 근절

⇒ 금융차명거래를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하경제의 자금줄인 금융차명 거래를 방지

2. 간이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세원 투명화

⇒ 현재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주의 세금은 늘지 않게 하고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가 탈세를 못하게 방지

3. 고액채납자 주변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 고액채납자가 주변 특수관계인을 통해 빼돌린 자산을 추적하여 고액채납을 방지.

4. 국세청 계좌열람권 도입

⇒ 고액채납 및 탈세와 지하경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5. 조세행정 투명성을 위해 납세자 보호 확립

⇒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정의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증세의 전제조건.

1. 차명거래 방지를 통한 지하경제 근절

■ 현황

- 차명거래는 지하경제의 자금줄임. 차명거래를 근절하면 지하경제, 불법수익의 원천을 차단
-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조항이 없음

■ 목표:

- 차명거래를 방지하여 불법수익, 탈세,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임

■ 방법:

-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모두 규제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여 명의 수탁자와 명의 위탁자의 이해관계를 통해 차명거래를 방지

■ 세수효과

-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0%로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 지하경제를 10%만 줄여도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세수가 마련

2. 간이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세원 투명화

■ 현황

- 현재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입 세액의 일부만 공제받음.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의 소득과약이 어려워짐.
-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24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영향 받지 않을 것임

■ 목표

-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여 세수과약의 기본이 되는 세금계산서 거래 관행을 개선

■ 방법:

- 간이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간이과세자를 위해 국선세무사 등이 도움을 주고 세액공제 등을 도입하여 간이과세자의 소득세 증가분은 전액 환급

■ 세수효과

- 간이과세자의 소득세증가분을 전액 환급한다 하더라도 연간 약 4조원의 복지재정 확보

[간이과세 정비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 억원)

	부가가치세	소득세	계
간이과세자	13,282	증액분 환급	13,282
일반과세자	22,683	6,424	29,107
계	35,965	6,424	42,389

윤종훈<한국형 신성장동력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개혁과제>2006.11

3. 고액채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 현황

- 채납발생 총액이 2,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 그러나 고액채납자의 경우 현재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 정보제공 등의 조치는 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목표

- 고액채납자의 은닉한 자산을 찾아내어 조세채권을 확보

■ 방법:

- 고액채납자의 특수관계인의 재산형성과정을 추적하여 고액채납자의 은닉자산에 채납세금을 추징하거나 또는 증여세를 부과
- 현 상증세법에도 직업, 연령, 소득 등을 통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음
- 고액채납자 주변 특수관계인의 재산형성과정을 추적하여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부과

4.국세청 계좌열람권 도입

■ 현황

- 현재의 계좌추적권은 조사대상의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야 가능
- 납세자의 비협조 등으로 기존의 국세청 조사기법으로는 탈세를 찾아내기가 힘들
- 체납자 가족등에게 재산을 빼돌려도 혐의에 대한 구체적 정황과 포착없이 계좌를 열람할 수도 없고 추적할 권한도 없음
-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추적을 위해서는 대상의 제한없는 계좌 열람필요

■ 목표

- 당사자 및 가족과 관계인을 포함한 계좌열람을 통해 체납은 물론 지하경제문제 해결

■ 방법

-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 계좌열람을 통해 탈세, 지하경제, 체납만 담당하는 특별부서설치와 분석원 배치
- 우려될 수 있는 계좌열람권 남발방지와 금융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 요청시 의무적으로 보고

5. 조세행정 투명성을 위해 납세자 보호 확립

■ 현황

- 세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을 없애는 것이 올바른 증세의 전제조건

■ 목표

- 납세자의 권리를 명문화 하여 세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경감

■ 방법

-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법률관계의 형평성을 회복하여야 함. 예를 들어 조세 부과권의 행사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의 차이를 일치시키고 환급가산금과 무납부가산세 이자율을 일치시켜야 함
-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협력의무 가산세를 개편하고, ▲가산세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입법화 하며,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리 실효성을 확보
- 세무조사절차를 법제화 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독립화하며 국세청장 임기를 법제화 하여 독립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을 확립

4.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공약

1. 납세자 권리 증진을 통한 납세자 보호
2.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형평성 확보하고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경감
3. 근본적 조세체계 정비를 통한 세법간편화
4.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1. 납세자 권리 증진을 통한 납세자 보호

■ 현황

- 현 세무행정은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만 고려하여 현 체계가 만들어짐. 본질적으로 납세자 보호에는 큰 관심이 없음.

■ 목표

-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경감함.

■ 방법

- 세무조사절차를 법제화 하여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차단함.
- 절차위반의 세무조사 거부권 행사, 절차위반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효력제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등을 통한 실질적 납세자 보호 장치 확보
- 납세자보호관을 독립화하여 실질적인 납세자보호에 힘쓸 수 있게함.
- 국세청장 임기를 법제화 하여 독립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을 확립함.

2.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형평성 확보하고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 경감

■ 현황

- 우리나라의 징세비용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함. 반면에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은 상당히 높음. 즉, 과세관청이 부담해야할 징세비용의 일부를 납세자가 부담해야할 납세 협력비용으로 전가시켰다는 의미임.

■ 목표

-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법률관계의 형평성을 회복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함.
- 납세자의 권리를 명문화 하고 세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립하여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해야함.

■ 방법

- 조세 부과권의 행사기간과 대비되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의 차이를 일치시켜야 함.
- 조세 부과권의 환급가산금과 대비되는 납세자의 무납부 가산세 이자율을 일치시켜야 함.
- 협력의무 가산세제도를 개편해야함. 자신의 납세의무가 아닌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남 이를 정비해야함.
- 가산세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법화를 통해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3. 근본적 조세체계 정비를 통한 세법간편화

■ 현황

- 현 조세체계나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음.

■ 목표

- 조세체계를 통폐합하고 큰 원칙을 마련하여 각 세법상, 각각에 다른 경제행위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들을 통일 시켜 이해하기 쉽고 경제행위를 왜곡하지 않는 세법체계를 만들.

■ 방법

- 실효성이 없는 세법, 조항, 부가세(surtax), 목적세 등을 통폐합 및 정비.
- 세법상 조항보다 행정입법이 더 방대함. 각 세법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위임을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함.
- 어려운 법률용어나 어려운 표현을 실생활에 맞는 표현으로 바꿈.

4. 조세정보 공개 확대

■ 현황

- 개인의 조세 비밀정보가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는 조세정보공개가 확대되어야함.
- 현재 수준의 조세정보공개로는 탈세의 유형, 취약한 부분 등을 알 수 없음.

■ 목표

- 조세정보공개 범위를 명문화 하여 탈세의 유형, 탈세의 취약한 부분, 조세형평성의 정도 등을 알 수 있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국세청에 의한 조사권

■ 방법

- 조세관련 샘플통계 자료를 비밀보장 범위내에서 공개하여야 함. 이를 통해 탈세 등에 취약한 부분을 국회, 연구자 국민이 알 수 있어야함.
- 특히, 각 계층별 특정 샘플 조사원별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정도를 알 수 있어야 계층별 조세부담이 어떤지, 조세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음
- 납세 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공개가 되지 않으나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한 후 샘플통계만 공개하는 것이므로 납세 정보 보호와는 관련이 없음.

5.재정개혁!

공약

1. 복지재정 확보

⇒ 부자증세에 기초에 2017년까지 수준의 조세부담률 23.7% 달성과 복지재정 2012년 92조 6천억에서 2017년 185조원 확보

2. SOC사업정비

⇒ SOC사업의 핵심으로 4대강 사업처럼 난개발 토건사업지출이 아닌 정책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전환

3. 국가재정개혁

⇒ 300조에 이르는 공기업 채무를 국가채무로 관리하고 국가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4. 지방재정확충

⇒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혁하고 방만 재정운영을 재조정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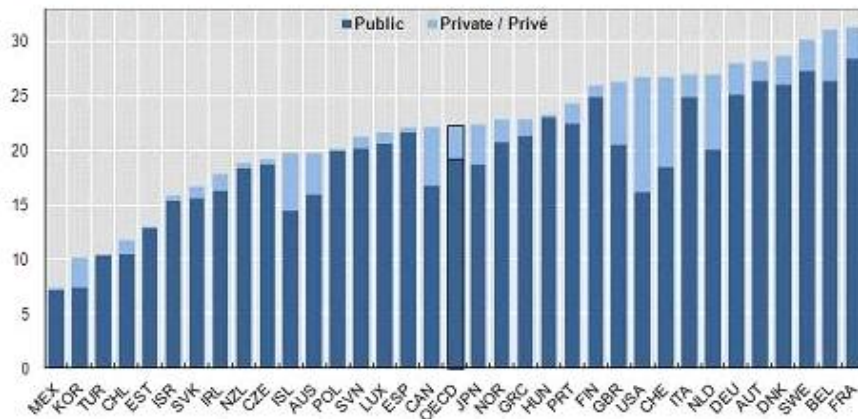
1.복지재정확보

■ 현황

- 한국의 국가재정지출규모는 2011년 OECD평균인 GDP대비 45.6%, 유럽평균 49.3%와도 거리가 먼 28%에 불과. 복지예산은 OECD평균인 21%의 3분의 1수준이며 멕시코에 이어 최하위 수준. 조세부담률 역시 OECD평균 25.8%에 한참 못 미치는 19.3%에 불과

[GDP대비 복지예산비교]

Public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 in percentage of GDP in 2007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0.

- 한국의 정부지출규모가 적은 것은 지출에 따르는 수입, 즉 세입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입확대의 기회가 원천봉쇄 되어 있는 상태

이명박 정부의 총 감세 규모

(단위: 원, 2008~2012년)

소득세 감세	25조8893억
법인세 감세	35조732억
부가가치세 감세	4조701억
기타	17조2367억
계	82조2693억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치권의 복지논쟁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은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완전 철회를 기본으로 앞으로 소요될 복지예산을 위해서 강력한 증세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세수규모를 추산

■ 목표

-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높여 매년 최소 30조~50조이상의 세수확대를 통해 차기정권이 끝나는 2017년에는 OECD수준에 근접하고 현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복지예산편성

[연도별 조세부담률] (단위:조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상GDP		908.7	975	1,026	1,065	1,172
조세	계	179.3	205	212.8	209.7	226.9
	(조세부담률,%)	19.7	21	20.7	19.7	19.3
	국세	138	161.4	167.3	164.5	177.7
	지방세	41.3	43.4	45.5	45.2	49.2

[통합진보당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 추진계획] (단위:조,%)

	2013	2014	2015	2016	2017
GDP(예상) ¹⁾	1,357	1,425	1,496	1,571	1,649
국세	242.3	264.8	282.9	302.2	322.7
지방세 ²⁾	55.4	58.2	61.1	64.2	67.4
조세부담률	21.9	22.7	23.0	23.3	23.7

■ 방법

- 정부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입의 확대가 절실한데 세수의 70%를 차지하는 3대 세수, 즉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중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해 늘릴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을 전면 무효화
- 세수를 늘릴수 있도록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새로운 최고구간을 설정하여 매년 13조에서 20조까지 별도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곧 2012년식 부유세의 부활을 의미
- 또한 임투공제및 R&D비용 등 연간 33조에 이르는 과도한 비과세감면 중 절반 가까이 되는 15조 이상을 정비하여 세수를 추가로 간이과세 정비를 통해 확보한 약 4조3천억원 외에도 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 10조, 차명거래 근절 및 지하경제 축소로 인한 20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상속증여세 확대, 외환거래세 신설 등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운 세수입 효과를 가산하면 추계된 연평균 39조원 이외에 세수 추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임.

1) 경상GDP상승률 매년 5%로 가정하여 산출

2) 매년 5% 증가를 가정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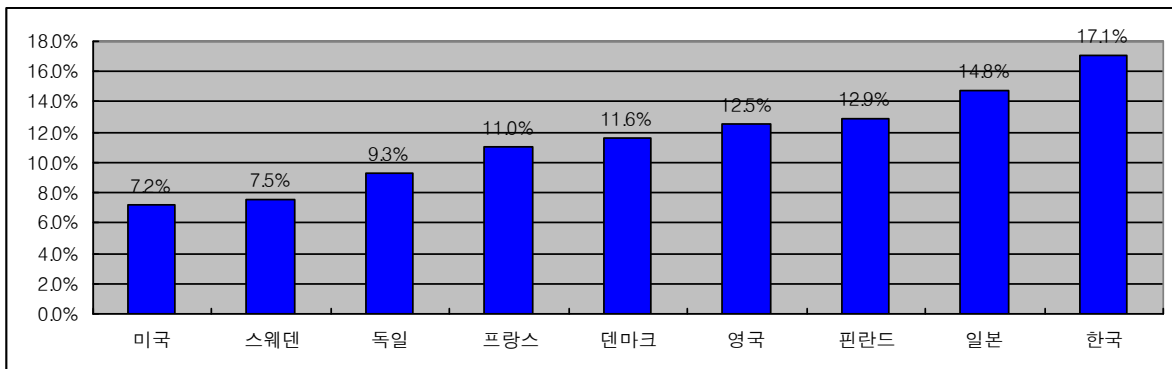
2. SOC사업정비

■ 선정 이유

(1)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건설업 비중

- U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업 비중은 7.0%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6.1%보다 0.9% 포인트 높음(34개국 중에서 7번째로 건설업 비중은 높은 나라)
-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규모가 OECD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SOC분야에서는 산출 및 성과 지표가 하위권에 머물러 보건, 교육, 기타분야 등 8개 지출분야 중에서 가장 낮은 지출 효율성 순위와 가장 낮은 효율성 지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 효율성이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선심성, 낭비성 국통 및 지역개발에 대한 쏟아붓기식 예산집행의 결과로 볼 수 있음.

주요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율(2001)



(자료) UN

(2)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저성장

-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은 1990년대 일본에서처럼 장기적인 저성장을 유발할 가능성,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비적인 사업이 아닌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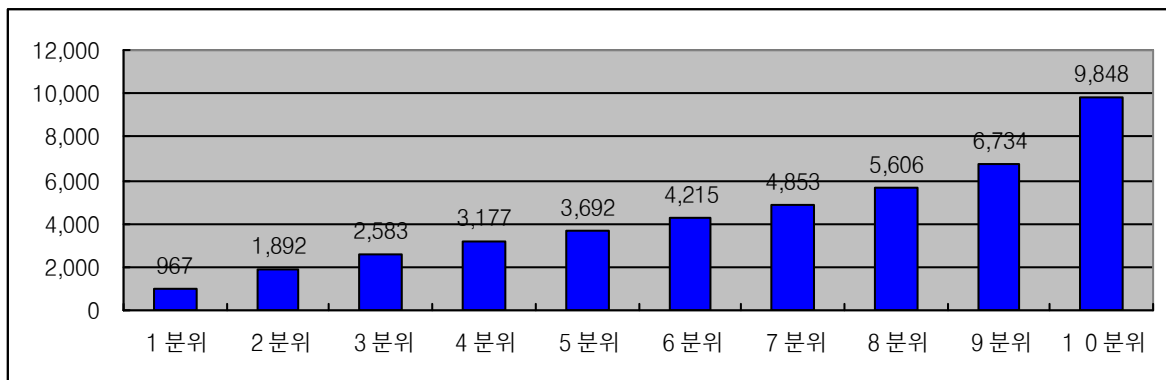
* 비효율적인 재원배분 → 저성장 →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소비 위축 → 경기 위축
→ 세수 감소, 국가부채 급증, 불안감 확대 → 저성장의 지속현상

■ 목표

(1)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SOC재정정책 전환

- 소득 중하위 계층의 경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2010년 소득 분위별 연소득(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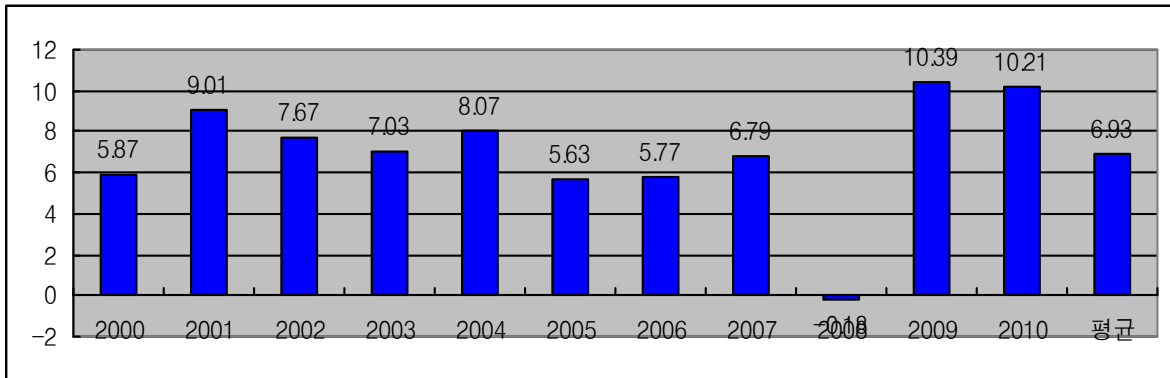


■ 방법

○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에 100조원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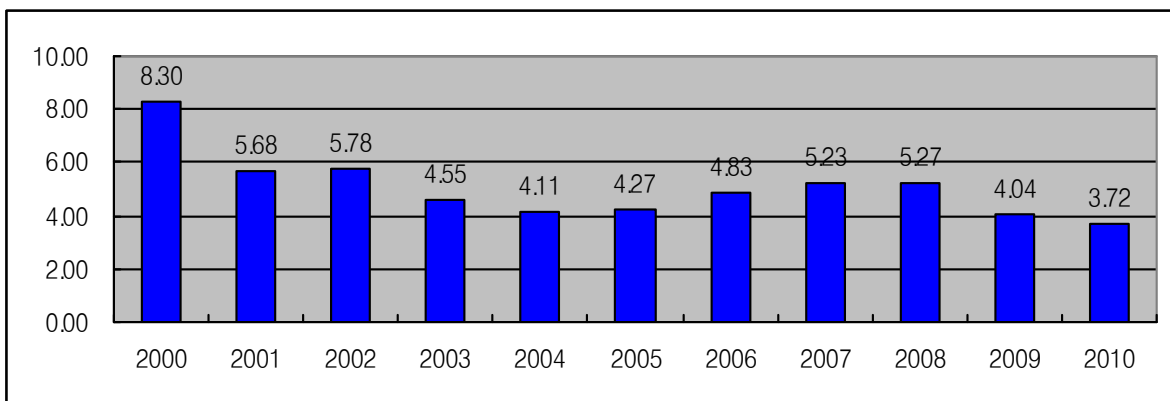
- 1차적으로 100만호에 대해 100조원을 투입하되, 그 중 50조원을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나머지 50조원을 국채에 의존하는 방안을 모색.
- 이 경우 국가의 임대료 보조 없이 임차인 임대료만으로 국민연금 수익률과 국채 이자율을 감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연평균 7%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5%의 이자율을 감당. (수익률과 이자율을 다소 높게 잡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건물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

국민연금 연간 수익률(단위 :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고채 수익률(3년 만기)



(자료) : 한국은행

■ 재원

- 국가의 임대료 보조 없이 임차인 임대료만으로 국민연금 수익률과 국채 이자율을 감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연임대료 700만원(월 58만원), 후자에 대해서는 연임대료 500만원(월 42만원)을 부과.

* 1억원 x 연이율 7% = 연간 700만원(월 58만원)

* 1억원 x 연이율 5% = 연간 500만원(월 42만원)

- 임대료 이외의 공과금이 월평균 20만원이라 할 때, 임차인 거주비용은 월 62~78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 공과금 제외시 임차인 거주비용 = 월 42~58만원

* 공과금 포함시 임차인 거주비용 = 월 62~78만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를 재정으로 지원

- 공공임대주택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절반으로 낮출 경우, 월임대료는 21~29만원이 되나, 이로 인한 재정 소요액은 연간 2.5~3.5조원에 달함.

* 정부 보조 없을 때 임차인 부담 월 임대료 : 월 42~58만원

* 정부가 임대료의 50%를 부담할 때 임차인 부담 월 임대료 : 월 21~29만원

* 정부가 임대료의 50%를 부담할 때 재정소요액 : 2.5~3.5조원

: 월 21~29만원 x 12개월 x 100만호 = 2조 5200억원~3조 4800억원

- 공공임대주택을 목표대로 200만호 확보할 경우 연간 재정소요액은 2.5~3.5조원의 2배인 5~7조원이 될 전망.

3. 국가 재정 개혁!

■ 현황

- 4대강 공사 참여 이후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9년 기준 29.1%에서 2011년말 126%로 치솟을 전망. 주요 공기업의 부채급증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위기가 닥칠 경우 국가재정으로 손실을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 채무임.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주요 공기업의 채무를 국가채무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목표 및 방법

- 국가 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관리)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함. 외평채 등 부채범위에 대한 재규정

※ 예비타당성제도 면제요건 강화

-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개정)
- 타당성 재조사 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종전 면제 대상 사업 중에서 법률의 개정으로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이 되는 경우에도 재조사 사업으로 추가함(국가 재정법 제50조 제2항 개정)

4. 지방재정 확충!

■ 현황

- MB정부 출범이후 지방재정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도 심해지고 있음.
-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상태가 열악한 이유도 있지만 중앙정부에 예측되어있는 지방재정 구조상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지방정부 스스로의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 지방재정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재정자립도에 개선정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 광역과 기초가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
-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52.6%의 자립도였으나 5년 이후인 2010년도는 51.9%에 불과한 실정.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 (2010년) (단위:%)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특별자치도	전국
최고	83.4 (서울)	70.0 (인천본청)	59.3 (경기)	67.4 (경기성남)	48.6 (울산울주)	82.9 (서울 중구)	26.1 (제주)	
최저		43.2 (광주본청)	11.5 (전남)	9.3 (전북남원)	8.6 (전남고흥)	11.4 (부산 서구)		
평균	83.4	56.3	31.6	40.0	18.0	35.4	26.1	52.2

- 출처: 행정안전부(2010a), “지방예산현황: 재정자립도”

-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서 2009년사이 매년 10% 씩 증가.
- 지방채 발행액은 2005~2008년까지는 전체 지방세입의 2% 내외인 3조 원 규모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09년 전년 대비 183.06% 증가한 8조5338억원에 이름
- 누적된 지방채무 잔액은 2009년도에 전년 대비 34.2%인 6조5045억 원이 증가하여 총 25조 5531억 원에 달함.
- 채무상환비율³⁾은 전년 대비 2.07%p 하락. 이러한 하락 추세가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어 지자체들의 지방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가중.

3) 지방채무 상환액 대비 지방채무 잔액 비율을 지칭.

○ 지방세 수입으로 월급을 못주는 지자체가 137곳이고 지방공기업 부채만 50조에 육박하지만 호화청사 건립 등 각종 낭비성예산 지출 등으로 정작 최소한의 용도로 투입되어야 할 각종 복지예산마저도 부족한 현실.

○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는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을 힘들게 하고 있음.
- 국회예산처의 감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전망치는 집권기간 동안 30조가 넘는 세수가 발생한다고 바라보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2009년에만 감세정책으로 인해 7조가 넘는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해마다 중앙정부의 국세수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전액과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고 있음.
- 하지만 '감세정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치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를 불러왔고, 소득세와 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 조치 또한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 모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또한 비과세 감면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고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으로 세수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추이]

(단위 :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방세 비과세 감면(A)	80,677	113,011	113,046	149,909	148,106
지방세 징수액(B)	412,937	435,242	454,797	451,677	491,598
A/(A+B)	16.3	20.6	19.9	24.9	23.2

○ 반강제적 매칭펀드 강화로 지방재정 부담

- 고령화와 기본적인 사회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지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은 작년 28 조 4천억으로 2008년 21조 6천억에 비해 6조 8천억이 늘어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원충당이 힘든 편.
-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국고사업인데 비해 재량권은 없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매칭펀드로만 사회복지사업을 감당하기가 지방정부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

[복지사업 국고보조비율]

사업명	비율	사업명	비율
0~2세무상보육사업(예정)	50%	지역아동센터	50%
양육수당(2013년 예정)	50%	장애수당	50~70%
기초노령연금	90%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급여	80%
국가예방접종	30%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80%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지자체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

- 대부분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본청과 구의 지방비 분담 비율과 도의 도본청과 시,군의 지방비분담 비율은 동일
-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본청과 구의 지방비 분담비율과 시, 군의 지방비분담비율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는 부랑인보호시설기능보강사업 한 가지이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 본청이 전액 부담하나, 도의 경우 도 본청이 50%, 시군이 50%를 부담

■ 목표 및 방법

○ 감세철회와 국세정상화

- 지방교부금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자주재원확충을 도모
- 기준금액을 낮추어 과세대상을 늘리고 세율도 강화하여 1조5천억 원의 지방재정 회복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

- 법인세, 소득세 인상으로 인한 지방교부금 5조원 이상 증가
- 현행 내국세의 19.24%와 20.27%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에 대한 단계적 상향
- 현행 부가세의 5%규모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15~20%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 특별교부세중 재해대책비를 제외한 불투명 예산 보통교부세로 통합
- 분권교부세를 사회복지교부금으로 개편

○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재정에 대한 재정적 보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007년 규모로 축소할 시 5조2천 원 이상의 지방수입 발생

○ 지방자주재원 확충

- 세외수입 확대(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공유재산관리 효율화, 자치단체 금고수입)

○ 방만한 재정운영 재조정

- 과다청사 방지
- SOC 등 중복투자 지양
- 각종 위원회 통합

○ 주민참여제도 확산

- 참여예산제도 적극 시행
- 투융심사 주민참여보장
- 재정투명성지표도입
- 지자체 예산분석 전문기관 설립

[관련자료]통합진보당 복지재원 조달방안

※ 통합진보당 5년간 세수확보 규모

(단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현 세제하 총국세 전망		2,131,901	2,277,010	2,431,490	2,596,450	2,772,601
개정 효과	소득세 증가분	20,728	22,821	25,132	27,685	30,506
	법인세 증가분	124,092	135,420	147,106	159,215	171,720
	종부세 증가분	15,429	15,576	15,725	15,874	16,025
	금융과세 증가분	26,555	27,071	27,569	28,086	28,651
	비과세감면정비	104,645	170,687	182,336	194,755	207,994
	합계	291,449	371,576	397,869	425,617	454,896
세제변화 감안한 총 국세전망		2,423,350	2,648,586	2,829,359	3,022,066	3,227,497

[추가 세수]

항목	세수규모
상장주식파생상품과세	10조+ α
간이과세 정비	4조
지하경제발굴	10조+ α (지하경제의 5%)
합계	24조+ α



총 39조(5년평균 기본세수)+24조(추가세수)+ α

=> 63조+ α

※ 통합진보당 복지영역별 예산 추계

항목	세부	비용
보육	- 0~5세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 1.6조원 - 아동수당 (취학 전 아동) : 3조원 - 0~5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장기적 지원책 필요)	4.6조
교육	- 초중고까지 친환경무상급식 : 2.9조원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1.3조원 - 아동수당 (초등학령아동) : 3조원 - 대학 반값등록금 : 7조원	14.2조
의료	- 건강보험 국가부담 20%에서 30%로 인상 : 6.5조원	6.5조
노후	- 기초노령연금 인상 : 6조	6.0조
노동	※ 별첨	19.9조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3.4조	3.4조
합계		54.6조+α

※ 별첨 <노동복지 분야 예산 추계안>

항목	세부내용	2011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1.5조
최저임금 현실화	시급 5,410원으로 인상	5.0조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감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사회보험 감면	3.3조
고용유지 지원	고용유지 지원확대, 노동시간단축 소득지원	0.72조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약 100만개 일자리 창출 (요양, 보육, 교육, 간병, 장애인보조 등)	3.38조
실업급여 및 청년실업대책	실업급여 수급율 및 수급기간 상향	4.55조
	실업부조제도 도입	1.25조
	공공기관 청년층 고용 의무화	0.19조
총계		19.9조

※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복지정책 및 자원방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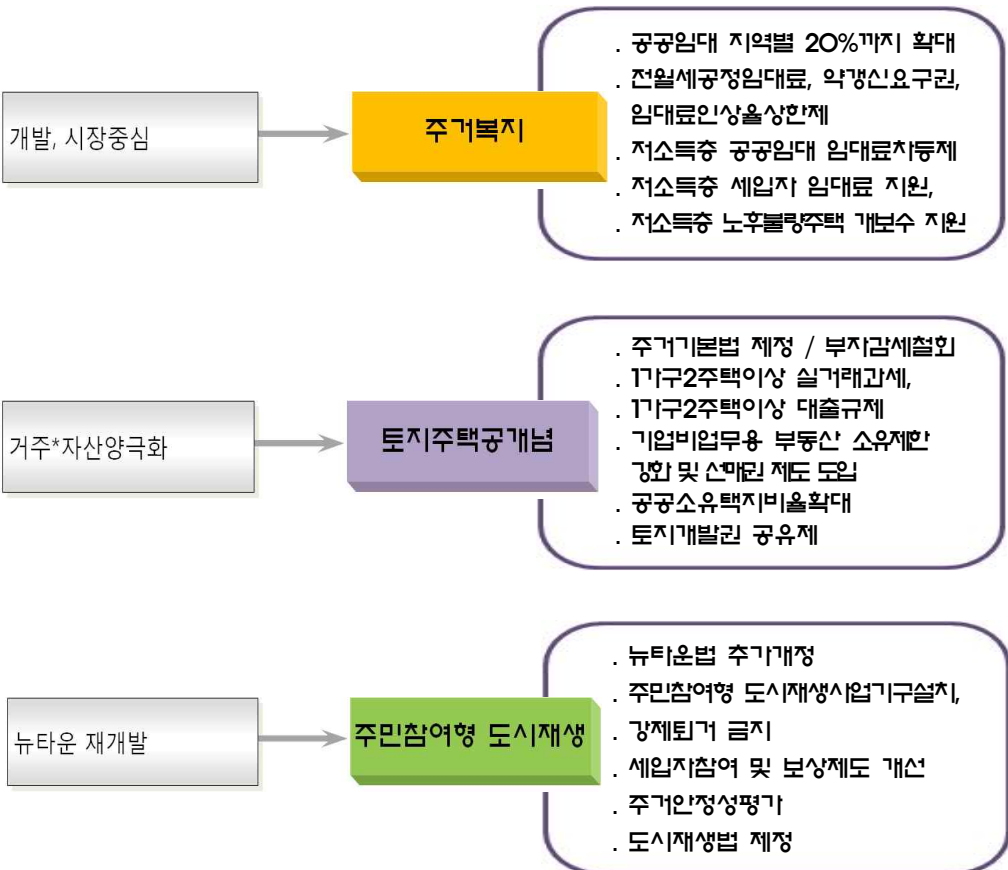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슬로건	강력한 부자증세-> 복지재정 확보		보편적 복지-> 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국가
기조와 방향	보편을 중심으로 잔여결합 (노동, 교육, 의료, 사각지대해소)		보편주의를 기본으로 선택주의 병행 (취약계층 우선지원+보편복지 결합)
재원마련 방식	감세폐기, 부자증세(소득세, 법인세 상향 등)를 기본으로 세출합리화		증세없이 재정, 복지, 조세개혁 등 3대개혁중심으로->증세선회
재원조달 방안	소득세:2.56조 법인세:14.76조 종부세:1.57조 비과세감면:11.36조 금융과세:2.76조 상장주식파생상품과세:10조 간이과세정비:4조 지하경제발굴:10조 매년 평균 63조		재정개혁:12.3조 복지개혁:6.4조 조세개혁:14.3조 등 매년 평균 33조원
주요항목 재원비교	1억2천(40%)	소득세과세기준 (현행3억,38%)	1억5천(38%)
	전면시행	주식양도과세기준 (현행3%,100억)	2%,50억
	2천만원	금융소득과세기준 (현행4천만원)	3천만원
	하향	간이과세기준 (현행4천8백만원)	8천만원으로 상향
조세부담률	23.7%(2017년)		21.5%(2017년)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주택·부동산 공약

국가가 집걱정 책임진다!

주거복지로 주택정책 대전환



연구위원 김현주(khj1022@empal.com)

1. 주거복지 실현

공약

1.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2. 전월세 폭등예방 ⇒ 공정임대료, 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율상한제
3.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도 도입
4. 저소득 1~2분위 무주택자 임대료 지원,
⇒ 월 소득대비 월임대료 부담 25%~30%이하로
5.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지원확대

1.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선언만 할뿐 실제 임대주택은 줄어들었고, 장기임대주택은 4.0%에 불과함.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공공주택건설비율에서도 임대주택보다 분양형보금자리주택에 치중하고 있음.
 -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거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이며, 자가주택 촉진정책의 전환 및 임대주택대폭확대 없이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없음. 더욱이 여러 정당들이 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현행의 총량중심의 공급확대는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야기하고 지자체간 갈등 요소가 됨.
 - 따라서 임대주택을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확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별 임대주택비율을 20%로 함.
- 소요주택 2010년 기준으로 280만호 정도 필요함.

■ 목표

-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집 걱정이 없도록 주거 공공성을 획득함.
-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최고 20%까지 확대함.

■ 방법

1단계(5년간)	2단계(5년간)	3단계(5년간)
임대주택 의무보유 제도화 (지자체별 도시계획수립) 임대주택 10% (연 20만호 공급)	⇒ 임대주택 15% (연20만호공급)	⇒ 임대주택 20% (5년간 55만호 이상공급)

- 지자체별 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를 의무화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다만 자가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수요가 적은 농어촌지역 지자체에 대해서 10~15%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광역시도 전체적으로 20%쿼터제를 실시하도록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공급유형(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규모(1인 가구, 장애인, 노인, 일반가구용)으로 다양화

- 임대주택, 대지소유와 건물소유를 분리한 주택, 부동산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할 미래부동산 소득 환수를 전제한 주택 등 전체 또는 일부소유권을 사회가 공익적으로 소유하는 사회주택을 포함하여 20%를 달성함
- 1단계 5년간 연20만호공급 = 100만호
2단계 5년간 연20만호공급 = 100만호 (15%달성)
3단계 5년간 연 = 55만호
- 사회주택의 공급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의 신설함.

■ 재원

- 지역별 임대주택 20%확보를 위한 소요재정마련 3가지 방안 병행
- 소요주택 주택 280만호 * 호당 1억 원 = 280억 원

	자금마련 방안	연간 소요예산
국민주택 기금	연 10조원 * 15년 = 150조원 확보(150만호)	분양주택예산삭감 연 8~12조원확보
국민연금 대출	100조원100만호 확보	이자분 50%를 정부지원(일반회계)

		연3.5조소요
	연간이자 7조원 발생(연 7%수익보장) 호당 연 이자 700만원(월 58만원이자 발생)**	
	30조원(30만호 확보)	
국채발행	연간이자 1.5조원(연 수익률 5%, 3년만기 국공채 수익률 최근 5년간 5%이하)	이자 50% 정부부담(7천5백억원)

* 총 소요액대비 연2.5% 재정투입 최고 3.8조원(기금보존을 위한 조치)

**임차인 본인 부담 50%로 하여 반값 임대료를 실현하고 단 주거비 월부담이 소득의 20%를 넘지 않도록 소득별 임대료차등제를 실시함

=> 연금대출 등으로 인한 정부이자부담 4.3조원 국민주택기금 이자에 비례한 정부출연 연3.8조원 일반회계재정에서 연 8.1조원 추가배정

* 청년주거 공약은 청년공약으로 별도 분류함

2. 전월세 대한 방지 3대 해법

⇒ **공정임대료, 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율상한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정부의 전세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늘리고 의무는 줄이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어나면 임대시장이 덩달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해옴. 2009년 이후 전월세가격은 연간10%이상 폭등하였고 전국의 전세가격이 평균 1억3천648만원임. 서울은 그 2배에 가까운 2억2천820만원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상태임.
- 하위 20%이내 저소득층의 경우, 연소득대비 평균전세가격이 서울지역 11배~15배, 전국 10배에 달하여 다수가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형태로 월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음
- 전월세가격폭등사태는 전세금반환, 2년계약보장뿐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도 직결되어 임대료 규제장치와 세입자의 지속적인 주거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서 촉발된 세계공황을 겪으면서 80년대 신자유주의와 함께 시작된 자가소유가 늘어나가던 일련의 조치들을 재고하고 자가소유, 공공임대, 민간임대 등 점유형태를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제기됨.
- 따라서 장기적 관점으로 봐서 공공임대주택확대를 20%까지 확보한다고 해도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함. 더구나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지나치게 오른 주택가격은 자가소유자에게까지 고통을 안기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확산과 같은 저임금노동자의 증가와 고용불안 등의 현상은 자가촉진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함.
- 주거안정성이 높은 복지국가를 보더라도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주거복지실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됨.

■ 방법

1. 세입자 계약갱신권 6년보장,

6년 이상 보장에 따른 인센티브제공(수선유지비 및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지원)

2.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 도입

3. 임대료 등록제 실시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등록 시 계약내용 동시 등록.

현행의 확정일자제 임대차계약내용이 등록되지 않고 임대인이 불합리한 가격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근거자료가 없음. 임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임대료가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되는 만큼 임대차 등록제를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동시에 장래 임대료 공시제도 및 공정임대료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4. 전월세보증센터 설치, 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5. 민간임대사업자부터 공정임대료 도입

기초자치단체별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고시하도록 함.

전면 실시 전 시범사업실시로 보완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는 임대사업자를 우선으로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함.

* 자발적 공정임대주택 등록제 및 공정임대료 제도 (시범실시 방안)

(1) 등록요건

- 임대인이 현행 세입자에 대해서 전세가 인상률을 매년 5%이내(월세전환이율 10% 상한제)나 계약기간 중의 물가상승률 중 낮은 비율로 인상할 것을 약정.
- 신규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임대료산정기관이 정하는 공정임대료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 임대차계약서와 공정임대주택 등록서류를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

(2) 입주 대상

- 임차인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함.
- (주거안정에 대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자 함.)

(3) 공공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관리, 국가 일부 재정부담

(4) 임대인 인센티브

- 공공등록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이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분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수선유지비 지원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지원
(융자 금액은 주변 전세가 인상률 120% 범위내)
- 다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수준

(5) 협약사행 미이행시 조치

- 수선유지비, 재산세,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반환 조치

3.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원가에 기반을 둔 임대료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임금을 책정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LH 임대주택 월평균임대료가 25만원(영구임대제외)⁴⁾, SH 임대주택 월평균임대료가 재개발임대아파트의 경우 평균 22만원⁵⁾으로 1분위 최저소득계층의 경우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관리비를 제외한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만 30%를 넘어서고 있음.
- 이 때문에 높은 임대보증금과 비싼 월임대료 부담하기 어려운 소득1분위 계층의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고 있고 임대료체불이 발생함

■ 방법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분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임대료차등을 적용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 수준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함.
- 또 5분위이상 소득자의 임대료를 상향 4분위소득자 주거비부담수준으로 상향조정함.
- 다만 2~4분위 소득자중 주거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차등임대료를 부과함.

4)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전환요율 0.067적용)

5)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전환요율 0.067적용)

4. 저소득 1~2분위 무주택자 임대료 지원,

⇒ 월 소득대비 월임대료 부담 25%~30%이하로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구의 36.4%가 순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등의 방식으로 월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음.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는 그 비중이 더 높아 각각 41%, 42%에 달함. 201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4분위 저소득계층의 평균 RIR(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은 평균 31.1%(중위수 28.2%)에 달하고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제도는 주거급여제도 미흡함과 사회공공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주거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에 해당함.

■ 방법

- 소득대비 임대료 등 부담이 1분위의 경우 25%, 2분위의 경우 30%를 상회할 경우 차액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함
- 대상 1~2분위 소득하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기금 영세민대출자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가족 수를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이 지켜지도록 함. 지역별 주거비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 주거비 산정은 월임대료, 전세자금 이자비용을 대상으로 함.

5.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지원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층의 경우 가옥주라 하더라도 소득범위내에서 자력으로 주택개보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주택의 노후정도가 심하며 최저주거기준이하의 환경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 반면에 뉴타운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 중 서울시의 경우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47.6%이며 경기도는 노후도 60%를 넘는 지역은 부천 소사(60.3%) 등 6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까지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되어 사회적 비용낭비가 심각함
- 특히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일수록 수익성이 낮아서 주민 자력에 의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어렵게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저소득 가옥주의 재정착이 어려운 상황임. 이와 비교해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입지가 좋은 곳들부터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
- 뉴타운 재개발 그런데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정부예산은 연 500억 원에 불과함. 도로 1개 개설 비용에도 못 미침

■ 방법

-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와 같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뉴타운식의 철거형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개별 주택별로 개량이 가능하도록 함.
- 주택에너지성능개선사업, 저소득 주택개량사업지원예산 확대

6.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 목표

- 임차인 자치 확대,
- 공급-배분-관리 통합,
-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 방법

1) 임차인 자치 확대

- 임차인 대표자회의 권한강화를 통한 실질적 임차인자치를 이루어냄
- 임차인대표자회의 전용공간확보
- 관리비 산정 및 집행결과, 관리업체선정 등에 대한 감사, 의결참여 보장

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 2011년 초 서울 SH공사가 일방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30%이상 인상했던 임대료폭등사태가 있었음. 이는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임차인대표자회의와 임대료인상을 사전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임.
- 재발을 막기 위해 임차인대표자 및 전문가들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 기준제시 및 주민합의를 통해 합리적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LH 임대료산정위원회 국토해양부 산하/ 지자체소유 임대주택 지자체산하에 설치

2. 투기근절, 토지주택 공개념 실현

공약

1. 주거기본법 제정
2. 1가구2주택이상 대출규제
3. 기업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강화 및 선매권 제도 도입
4. 공공주택지비율확대
5. 토지개발권 공유제 ⇒ 용도지역제 강화, 용도변경을 통한 지가상승시도 차단
6. 중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철폐

1. 주거기본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와 유엔 인권선언 제 25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 식, 주 등에 있어 적절한 삶의 질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에서 주거권을 언급하고 있음.
- 주거권은 국가가 그 이행 주체가 되어 '실질적 주거평등'과 분배 정의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함
- 하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주택공급확대만이 적절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하는 편향이 존재함.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전세대란에 허덕이고 있고, 특히 주거빈곤층은 옥탑,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면서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에서도 주거 빈곤층과 세입자들은 비자발적 퇴거를 당했으며 주거권에 대한 가장 극단적 침해형태인 강제철거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용산참사가 발생했고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누구나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조사와 해결방안을 마련함.
또한 예산확보 및 주거복지사업의 체계를 수립하여 다양한 주거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
하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복지실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방법

- 주거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강화 (주거지원 예산확대)
- 주거기본법제정

2. 1가구2주택이상 대출규제

■ 현황 및 문제점

①주거양극화 해소

- 거주주택제외한 부동산 소유 70%국민 0, 상위5% 64.8% 소유하는 등 극단적형태의 주택소유 양극화해소가 필요함. 다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이용한 담보대출 및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소유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 그 결과 상위 2%가구가 전체주택의 15%를 소유
-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빼면 전체 부동산 자산의 84.3%를 상위10%부자들이 소유하고 있음

〈표〉 부동산자산(거주주택 제외)⁶⁾

(단위 : 만원)

분위	가구 수	평균	점유율
1 ~ 7분위	3,731	0	0.00%
8분위	325	2,353	2.08%
9분위	507	9,886	13.65%
10분위	506	61,162	84.27%
Total	5,069	7,245	100.00%

*상위 1% 점유율 22.6%, 상위 5% 점유율 64.8%

1분위에서 7분위는 부동산자산(거주주택 제외)이 모두 '0' 이므로 하나의 구간으로 잡힘

자료 : 이정희의원실, 2009.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2000년~2007년)조사 분석

②금융공공성 실현

- 또한 이러한 주택담보대출문제는 금융 공공성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은 높아졌지만 공공성은 오히려 크게 후퇴함.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기관들이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 곧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자금을 융통해주기보다도 비생산적인 부동산 부문에 자금을 몰아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임.
- 금융이 본질적인 역할에서 이탈함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소수 계층의 신용 독점, 이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 계층간, 지역간 자산 양극화, 담보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6) 이정희의원실 보도자료

금융배제 증가 현상 등이 나타남.

- 금융이 본질적인 역할을 다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 계층에 집중된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담보대출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
- 그러나 이것들은 금융기관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제도라는 데에 한계가 있음. 문제는 소수 계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독점하여 투기적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지만 이들 제도를 통해서는 이러한 신용 독점 현상을 막지 못함.
- 신용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허가제, 또는 신규 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세 등의 아이디어가 제출됨.
- 우리 당은 신용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음.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함.

■ 방법

-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담보대출 규제제도 유지
- 1세대 2 주택 이상 담보대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지(제2금융권 포함)
-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최고 한도 설정
-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

3. 기업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강화 및 선매권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6월 재벌닷컴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0대그룹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섬.
- 6일 재벌닷컴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위권 그룹 소속 581개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조9638억 원으로 2009년 말 58조5238억 원보다 2조4400억 원 늘어남.
-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답보상태였으나 재벌기업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사상최고치를 기록함
- 최근 KT가 공과상태인 사옥들을 사용료를 받는 오피스공간으로 변경하는 등 사실상 고유목적을 벗어난 사실상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시도하고 있음.
- 또 삼성에버랜드는 빌딩자산관리 시장 독점 움직임과 함께 삼성계열사들의 오피스 빌딩매입이 급증하였음. KT나 삼성그룹의 움직임이 비업무용토지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재벌기업의 유보율이 2009년 1000%를 주력사업에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로 공간을 불리려는 시도가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재벌기업의 부동산 소유를 통한 공간불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택지, 공공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분양받은 택지라 하더라도 실시계획에 따라 기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환수함.(택지개발촉진법등 개정)
- 기업이 공공택지를 저가에 분양받았으면서도 직접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도 금지함.

■ 방법

-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제한을 강화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 -> 정부 -> 공공기관 순으로 우선 매입권(선매권)을 행사함.
이때 매입가격은 시중가격의 80%로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함.
이를 통해 기업 및 법인의 고유목적 벗어난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를 억제함.
* 1991년 “금융위비 업무용 부동산을 기한 내 매각하지 않은 재벌그룹에 대해
신규 부동산 취득 금지/ 금융 제재 조치 단행” 한 바 있음.
-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경우 선매권을 행사함. 지자체 -> 정부 -> 공공기관순 (이때 가격은 원금으로 하며 이자를 지불하지 않음.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로 함)

4. 토지개발권 공유제 ⇒ 용도지역제 강화, 용도변경을 통한 지가상승시도 차단

■ 현황 및 문제점

- 1999~2008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된 개발이익의 규모는 총 2,130조원에 이르나,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개발이익 발생 규모의 2% 미만에 불과. 광의의 개발이익은 36.9조원으로 개발이익의 환수수준이 1.7%에 불과하며, 협의의 개발이익 환수규모는 총 8.4조원으로 0.4%, 협의의 개발이익 환수규모는 총 1.8조원으로 0.1% 수준에 불과.
-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이용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개발이익의 사유화, 난개발, 가격폭등을 막아야 함.
- 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행정행위의 산물인 지목변경, 용도변경, 개발계획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환수되지 않고 사유화되고 있음. MB 정부의 4대강사업 등은 개발이익사유화가 무한 보장된 제도미비상태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난개발사업임.
- 이와 같은 제도 미비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한편,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수익까지 독점하여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킴 .
- 이에 맞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공익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개발권공유제를 제안함. 토지개발권공유제는 개발권 에 대한 결정이 도시계획 등 공공에 의해 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권 분리를 강화하고 개발권의 공적 결정을 분명히 하는 제도임. (현행제도에서도 토지 소유가 곧 토지를 마음대로 개발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와 용적률을 통해 개발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 용적률의 증가는 그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를 생성시키는 데, 서울의 경우 용적률 10%를 높이면, 총 250조원(서울시 연간 예산의 10배가 넘음)의 경제적 가치가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용적률 증가에 따라 발생할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서울의 도시의 개조, 공익적 개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함.

■ 방법

- 현재의 재산 가치는 현재의 주택·주택소유주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용용도와 용적률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함. 다만 용적률의 증가는 정부의 공공정책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고 도시계획 등에 의해 용적률이 증가한다면, 그에 따른 가치증가분은 공공이 소유권을 행사함.
- 용도지역제 및 개발행위허가제 강화, 용도별 밀도제한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

발권, 건축권을 철저히 관리함.

- 용도지역변경, 도시기반시설확대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의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조세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를 전제로 개발행위의 허가과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이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기위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는 개인에게 보상하도록 함.

■ 효과

- 소유자와 무관하게 용도지역변경, 도시기반시설확대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의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투기를 근절하고 공익적 이용을 강화함
- 거꾸로 공주, 경주, 수원 등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곳의 경우 공공정책에 의해 제한된 개발(예상)수익을 같은 원리로 보상받을 수도 있게 됨.

5.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철폐 * 조세제정 공약에 포함됨

3. 뉴타운 중단 및 주민참여 도시재생

공약

1. 뉴타운 법 개정 - 일몰제전면도입, 기반시설비용 공공부담
2.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기구설치, 주거안정성평가 실시
3. 세입자참여 및 보상제도 개선
4. 주거안정성평가, 강제퇴거금지
5. 주민참여형 도시재생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입후보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공약으로 시작됨.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은 주민소득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었음. 즉, 초기부터 주민은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헌집 주면 새집 준다’는 다소 허황된 사업성을 내세운 개발 집단에 의해 좌우되었음.
-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에서 재산권을 가진 가옥주와 세입자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하지만 그 지역에서 몇 십 년을 살아온 세입자보다 투기목적으로 집을 소유하면서 타지에 살고 있는 집주인들에 의해 진행되는 현행 뉴타운 사업 또한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마땅함.
- 전국 대도시의 기존도심은 전부 재개발지구라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955개가량의 재개발·뉴타운 지구지정이 남발되었음. 하지만 실제 착공단계에까지 도달한 것은 수도권 9.7%, 지방 2.2%에 불과함.

〈표〉재개발 지역 추가부담금

현소유평형	자산평가액	추가부담금
10평	5천700만원	3억2천만원~3억7천5백만원
20평	2억1천300만원	1억6천5백만원~2억2천만원
33평	2억8천100만원	1억~1억5천만원
45평	4억200만원	2억~2억6천만원

(출처: 경향신문 2008.7.23, 이주원 뉴타운아는것이 힘이다 재인용)

-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까지 과도한 추가부담금 때문에 집주인조차 재정착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임. 분담금뿐만 아니라 어렵게 입주를 한다고 해도 뉴타운 사업지구는 월 소득 653만 원 이상이 필요함
- 주거세입자 및 상가세입자 보상체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상태임. 보상의 주체인 조합이 설립되기 훨씬 전인 공람공고일을 세입자보상기준으로 정하다보니 다수의 세입자들이 보상을 못 받고 이사하게 되고, 공람공고일 이후에 이사 와서 철거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정작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상가세입자들의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혀 다른 곳에서 창업해야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영업권을 포기해야 함. 뿐만 아니라 법적 미비로 보상대상자이면서도 임대계약 만료와 함께 빈손으로 쫓겨나는 세입자들도 속출하고 있음.

■ 방법

1. 뉴타운법 추가개정

- 뉴타운 추가지정 중단, 일몰제 전면도입, 기반시설설치비용 공공부담, 구역별해제 및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기구 구성, 타당성조사, 가구별 추가부담금 조사
- 도시개발촉진법 폐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2.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기구설치,

- 중앙차원에서는 환경 산업 주거개선 등 도시재생 전반의 협의와 조정, 균형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기구로 함. 광역차원 지역재생사업을 위해 민관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방안 마련.
- 재정비 사업의 주체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
- 국가, 지자체의 역할.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주체로서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
- 중앙정부 및 광역차원의 재생사업기구 설치 : 중앙차원에서는 환경 산업 주거개선 등 도시재생 전반의 협의와 조정, 균형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기구로 함. 광역차원 지역재생사업을 위해 민관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함.

3. 세입자참여 및 보상제도 개선

- 세입자 조합원제도 운영
세입자대표 조직을 구성하여 그 대표로 하여금 조합원자격을 부여함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입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며
특히 세입자보상과 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함.
- 세입자보상 및 권한 강화
세입자 및 가옥주 이주대책, 상가세입자 폐업에 준하는 보상
공공지원을 통한 선 대책 후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반시설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발이익환수장치를 강화함.
-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 주거안정성 평가
- 임대인 명도금지, 세입자보상에 대한 조합의 구상권 청구 금지, 임차인 계약갱신권보장 등

4. 주거안정성평가,

- 재정착률이 일정수준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단계에서 주거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소득 등 주민여건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재정착이 보장
되도록 함.

5. 강제퇴거금지

- 용산참사는 물론이고 실질적 보상이나 이주대책 없이 강제로 진행되는 철거를 금지하는 법
률을 제정하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인정하는 주거의 권리를 보장함.
- 모든 종류의 강제퇴거는 합법적인 집행권한을 획득한 이후 퇴거집행 전 3개월 이전에 고지
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퇴거가구에 대한 주거 및
생활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특히 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대규모 개
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거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대책
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함

6. 도시재생법 제정

- 주택재개발에서 도시재개발로 전환. 도시재생법제정 : 현행 정비계획은 건축밀도 등에 대한
것만 있어 주택정책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도시계획으로서도 부적격임.
- 친환경적 도시재생 : CO2감축 방안 등 달라진 도시환경 및 정책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커뮤니티의 지속성 : 민간에 의한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발업자가 아니라 정착할 주민이 주도하여 커뮤니티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함.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일자리·노동 공약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

■ 대표 공약 ■

1. 노동조합 조직률 정상화(2017년까지 20% 실현)
2.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제도개선
3.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4.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평균의 50%로
5. 노동법원 도입으로 공정한 노사분쟁 처리

연구실장 김성혁(ksh6501@hanmail.net)

〈한국 노동 현실〉

○ 이명박정부 하 노사관계는 최악이며,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률이 한 자리수로 떨어짐

- OECD평균 노조 조직률은 29%이나 한국은 9.8%에 불과
- 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9.9%이나 비정규직 조직률은 1.7%에 불과
- 1천명이상 노조 조합원은 118만 명(72%), 50인 미만 조합원은 3만 명(2%)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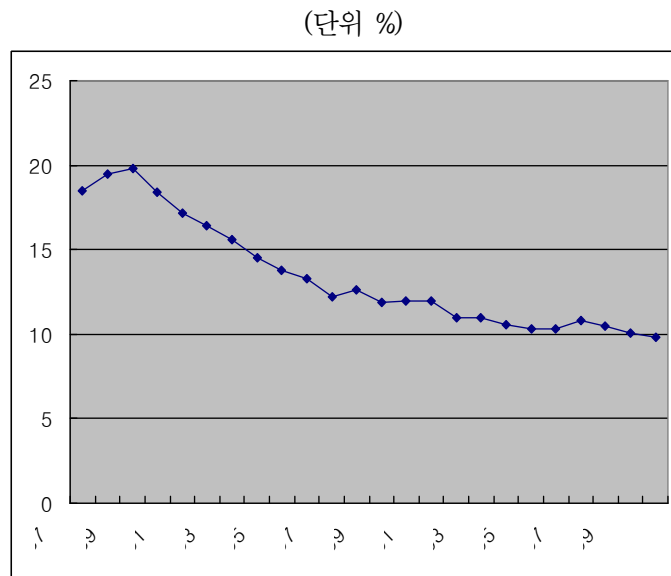
○ 국제비교 : 노동조합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국 가	노조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
스웨덴	68.3	90+
핀란드	67.5	90+
오스트리아	28.9	95+
프랑스	7.7	90+
이탈리아	33.4	80+
독일	19.1	68
영국	27.1	30+
캐나다	27.1	32
미국	11.9	14
호주	18.6	80+
일본	18.2	15+
한국	10.3	10
OECD 평균	29.2	60(64)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2009)

- 1989년 19.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으로 2010년 9.8%에 그침

-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자료 : 노동부

-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서 노조 조직률 20%, 단체협약 적용률 50%를 만들어야 대등한 노사관계 확립 가능

<정책공약 목표>

- 5년 이내(2017년까지)에

- ① 노조 조직률 20% 달성, 단협 적용률 50% 달성을 통한 노사 간 힘의 균형 개선
- ②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인 25% 가량으로 축소하여 노동시장 정상화
- ③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 달성
- ④ 노동자 평균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311시간 단축)

<추진 방식>

- ①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강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제·개정

- ②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기금 설치 등 재원 마련
- ③ 노동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사법적 구제 제도 강화
- ④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노사정 과제별 추진위원회를 설립 등 노사정대화 강화

〈추진 로드맵〉

년도	노조 조직률 목표	단체 협약률 목표	제도 개선	비정규 비율 목표
2013	11%	12%	· 전국공무원노조 등 모든 노동조합 인정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제도화 ·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개념 확대	45%
2014	13%	15%	· 24만 공공부문 대정부교섭(집단교섭) 실시 · 산별교섭 제도화(사용자단체·연합 의무화)	40%
2015	15%	20%	· 산업별 협약 효력확장제도 실시	35%
2016	17%	30%	· 노동법원 도입으로 노사분쟁 공정한 처리 · 산업별 협약 효력확장제도 확대	30%
2017	20%	50%	· 고용보험운영 노조 참가 및 사각지대 해소 · 노동 3권 완전 보장	25%

1. 노동조합 조직률 20%로!

공약

1.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
 학습지,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

2. 실질적 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3. 노조 설립신고 절차 개선

⇒ 행정관청의 남용 시정하고 공무원노조, 청년유니온,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시정

4. 간병, 청소, 보육 등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돌봄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원청의 직접고용, 상시고용으로 고용안정.

5. 산별교섭 제도화

⇒ OECD평균 수준으로 노조 조직률과 산별교섭 적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별교섭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함.

1.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현황 및 문제점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 (천 명)

	2009.8		2010.8		2011.8	
	빈도	%	빈도	%	빈도	%
특수고용	637	3.9	590	3.5	614	3.5
임금노동자	16,479	100	17,047	100	17,510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1)

-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있음.
- 특정 사업주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나 법원은 임의적·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근로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주요 직군별 종사자 현황

(명)

직군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화물 기사	덤프 기사	대리 운전자	퀵서비스 배달원
인원	19만5천	10만	1만4천	2만3천	35만	5만	8만3천	10~13만

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노동부 및 정부 관계부처합동(2006)

■ 목표

-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예외로 취급받고 있어 노조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함

■ 방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보완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노조법 제2조(정의) 개정
-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자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2. 실질적 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 현황 및 문제점

- 국제노동기구는 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07. 10. 16.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권고함
- 판례 역시 근로기준법에 비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넓게 보고 있으며, 학계의 다수의견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최소한 노동3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 또한 특수고용 내부에도 특정 사용자와의 종속성의 정도가 다양한 점에 비춰볼 때, 노동조합상의 노동자 정의규정을 통한 보편적 노동3권 보장은 가장 폭넓게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임.
-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와 자격요건은 해당 노조의 규약 등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개입을 해서도 안 되며, 같은 이유로 노조설립신고 등을 거부해서도 안 됨.
- 간접고용을 규율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하는 입법을 취하는 것임. 헌법상의 근로권 보장과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회의 금지의 원칙,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 금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기되고 있음.
- 간접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사용-피용의 지위가 원청사용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회사나 용역업체, 파견회사 등을 통해 이를 숨기는 데에서 발생함. 이에 따라 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관계의 사실(실질적인 사용-피용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세계적으로 승인된 보편적 원칙임.
- 우리나라 대법원 및 국가인권위원회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음.

■ 목표

- 헌법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함

■ 방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노조법 제2조(정의) 개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보완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자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무역 당사국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경제 보완성을 중시

3. 노조 설립 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노조법은 ‘노조설립 자유의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는 신고절차만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노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동조에 따른 별지 제1호 노조설립신고서 서식)은 위 서류 이외에도 ㉠ 노동조합의 형태, ㉡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부서, 직책), ㉢ 2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노조설립신고제는 본래의 원칙인 신고제가 퇴색한 채, 행정관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노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허가제의 성격으로 변질됐음.
- 이는 ‘결사의 자유의 허가제 금지’를 명시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도 어긋나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등록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거나 관할 관청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조 설립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며 결사의 자유를 사문화시키는 것’임을 지적했던 내용과도 충돌함.
- 이와 같은 정부의 자의적 법해석과 과도한 행정권 남용으로 이주노조와 청년유니온, 공무원노조 등의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상황이 거듭돼 왔음.

■ 목표

- ILO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 및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노조 설립의 자유를 확보하여야 함

■ 방법

- 노조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따라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사 범위를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으로 명확히 한정함(안 제12조제3항 단서 신설).

4. 간병, 청소, 보육 등 돌봄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이 기간제, 계약직, 단시간 등 비정규직노동자들로 고용불안, 저임금을 감내하며 상시적 노동.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계약 단가에 의해 매해 고용 여부와 노동조건, 임금 조건이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 상시적으로 필요한 노동은 비정규직 활용을 규제하고 진짜 사용자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 이를 위해 기간제 및 간접고용에 대해 규제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

■ 목표

-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3권 인정

■ 방법

- 간병, 청소 노동자 등 원청의 직접고용, 상시고용으로 고용안정
- 보육노동자 지자체 직접고용으로 허위임면보고 및 불법채용근절, 인건비지원 투명성 확보

5. 산별교섭 법제화, 산별협약 적용률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민주노총 조합원의 산별노조 전환율은 81%(55만 명), 한국노동은 30%로 전체 노동자들의 과반이 산별노조 조합원이므로 이러한 추세에 맞는 산별교섭 제도화가 필요함
-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교섭구조의 불일치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지난해 노조법 일방 개정 과정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단위를 “사업장”으로 제한 것은 산별교섭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임
- 산별교섭은 노동자들의 대표성과 교섭력을 높여 현재 9.8%인 노조 조직률과 비슷한 수치의 단협 적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본 전제임

■ 목표

- 5년 내 OECD평균의 80% 수준으로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끌어 올림

■ 방법

- 산별교섭을 제도화하여 노사관계 안정
 - 산업·업종·지역의 산별교섭 요구 시 사용자는 사용자단체 구성 및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함(노조법 제29조6 신설)
 - 사용자단체 구성의 요건을 완화함(노조법 제2조 제3호 후단 신설)

2.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공약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법제화하고 차별시정 절차 개선.

2.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 기간제를 사용을 금지하고 출산, 육아, 질병, 계절사업 등 명백히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3.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

⇒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파견근로자법 폐지

4. 고용안정제 도입

⇒ 재벌 총수의 독단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감시 장치로, 국면연금의 주주권을 행사 하여 중소기업 이윤 탈취, 투자 기피, 과도한 주주배당 등을 통제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노동시장은 기간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무기 계약직 등 탈법적 고용형태가 상존하고 있음,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탈법수단을 통한 차별적 처우, 정규직화 회피를 막을 방법이 없음
-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처우’ 를 금지하는 한편, 기간제법에 있는 차별시정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도입함으로써 ‘비기간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함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 비정규직 확산의 핵심은 ‘임금 차별’에 있음. 동일노동을 수행함에도 차별임금을 받는 것이 비정규직 차별과 확산의 핵심임.

■ 목표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채용, 승진에서의 차별 금지

■ 방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 금지,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장에 정한 차별시정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 근기법 제6조(균등한 처우) 개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거나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형사 처벌규정 신설 : 근기법 제110조(벌칙) 개정

2.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기간제한 방식’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지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반복적 교체사용을 조장하고 있음
-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근로자’로 한정된 결과 차별시정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임.

■ 목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의 확대와 고착화 방지

■ 방법

- 기간제 법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전면 개정
 - 제1항 본문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근로계약 원칙 확인
 - 제1항 단서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가능(사용사유 제한방식)
 - 제1호 :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 제2호 : 계절적 사업의 경우
 - 제3호 :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제4호 :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에 정한 기간제 사용사유가 소멸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
 -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우선고용의무 신설

○ 기간제법 제8조 내지 제13조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조치) 개정

- 차별시정 신청의 주체를 개별 근로자에서 그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 및 총연합단체로 확대
-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사용자의 자료제출의무 강화, 취업규칙 개정 등 사업장 내에 존치하는 차별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기간제법 제21조 (벌칙) 개정

-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형사 처분 부과
- 차별시정 명령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형사 처분 규정과 병존 가능

3.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제조업, 사무, 금융 등 전 산업에 걸쳐 불법파견, 위장도급 만연
 - 무분별한 외주용역화로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중간착취 구조의 제도화에 따른 폐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책임회피 / 중간착취구조의 제도화
 - 현행 파견법, 직업안정법은 ‘사용사업주는 책임회피, 파견사업주는 중간착취’ 구조를 조장하는 통로이자 합법화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임

■ 목표

- 중간착취 구조를 근절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함.

■ 방법

- 파견근로자법 전면 폐지
 -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파견법 전면 폐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노조법 제2조(정의) 개정
 -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명시,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업주’로 간주
- 직업안정법 제33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제33조의3(직접고용) 신설
 - 위장도급의 형태로 존재하는 불법파견을 금지하기 위하여 도급 등과의 구별 기준을 직업안정법에 명문화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4. 고용안정세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등은 경영곤란으로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가 많음
- 현재 거론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및 세액공제 제도는 예전에도 관련 제도가 존재하였으나 액수도 작고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했음.

■ 목표

- 중소기업 등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방법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지원
 - 연간 3조원 이상의 전환기금 확보 : 재벌 대기업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임
 - 해당 업종에서 평균이상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불안정고용 부담의 명목으로 고용안정세 납부
 - 정부출연금을 확보하여 전환기금을 보충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
- 전환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 지원
 -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3.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공약

1.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하여 2017년까지 평균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

⇒ 노사정 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산업별) 구성하고 생활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2. 연장근로 개선 근기법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주 52시간 초과노동만 지켜도 50만 일자리 창출

3. 모든 노동자에게 주 5일제 적용

⇒ 대형유통업체, 건설 현장, 영세사업장 모두 주 5일제 의무화

1.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연간 2,111시간 노동으로 OECD평균 1,692시간(2010년)보다 400시간 이상이 많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심각한 산업재해와 저임금을 양산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OECD평균에 못 미치며 비정규직은 임금노동자의 49.4%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

■ 목표

-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7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고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성평등을 실현하고, 산업구조 합리화, 내수 진작,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도록 함

■ 방법

- 특별법으로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와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사회적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
 -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예외 없이 적용함
 - 주 52시간, 월 200시간, 년 18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하루 최소한 연속 11시간 휴식, 일주일에 최소 연속 35시간 휴식권 도입
 - 소득보전 기금 설치 등을 통하여 임금하락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2. 연장근로 제한 근거법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현황 및 문제점

- 노동시간 단축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탄력근무제 및 단시간 노동을 확대할 수 있으며, 임금 삭감 등이 발생하여 노동자 생활을 위협할 수 있음
-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초과노동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주당 52시간까지 초과노동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당 최장 64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함

■ 목표

-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제한, 교대제 개선 등 세부내용을 보완함

■ 방법

- 사용자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총액으로 포괄하여 미리 약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포괄임금제 금지
- 교대제 근무 및 야간노동을 최소화하여 일자리 확대와 연결되도록 함

3. 모든 노동자에게 주 5일제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아직도 1~4인 규모 사업장 노동자 335만 명이 법정 노동시간의 규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유통업체 노동자들은 1년 무휴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 공사 건설 현장마저 오전7시 출근 오후6시 퇴근의 장시간 노동 및 휴일 휴식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목표

-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을 적용하도록 함

■ 방법

-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평일 및 공휴일 영업시간 제한, 주 1회 정기휴점제 시행) 및 공공 공사 건설현장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고 상시 근로감독 강화
- 영세·비정규직·5인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 적용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

4.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

1.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법 개정

⇒ 노사정 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산업별) 구성하고 생활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2.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

⇒ 공익위원 선출시 노사 추천권 보장

3.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 대형유통업체, 건설 현장, 영세사업장 모두 주 5일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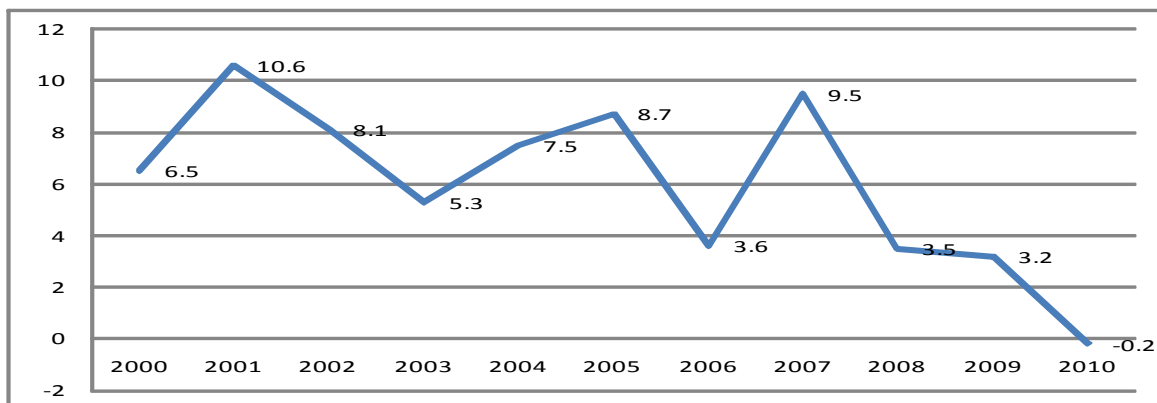
1.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 들어 실질최저임금인상률 계속 하락하여 2010년 마이너스 기록

실질 최저임금인상률

(단위 : %)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32% 수준의 열악한 최저임금으로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나, 2011년 대비 2012년 최저임금 6%인상[시급 4,580원(월 957,220원)]은 생계비 인상률(6.4%)에도 미치지 못함

■ 목표

-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임법을 개정

■ 방법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개정함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 제①항 개정 및 제5조(최저임금액) 제②항 폐지
- 평균임금 266만원(2010년)의 50%인 133만원을 최저임금으로 결정

2.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을 정부가 일방 결정함에 따라 노사의 의견이 대립되는 조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2001년에 비준한 ILO협약 제131호(공익위원 선출에 있어서 노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를 위반하는 것임

■ 목표

-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

■ 방법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사 추천권 보장

3.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규정이나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감사·단속 노동자에게 예외조항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법률에 있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함.

■ 목표

-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포함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함

■ 방법

-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 : 최임법 제3조 [적용범위] 제①항 개정 및 제45조(최저임금액) 제②항 폐지

5. 노동법원 도입으로 공정한 분쟁 해결

공약

1. 노동법원 도입하여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 실현

⇒ 노동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법원 도입

2. 노동법원에 노사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 노동법원에 제1심과 상소심 도입하고, 대법원에 노동전담부 구성하여 항소심까지 노동법원을 도입

1. 노동위원회 폐지하고 노동법원 도입하여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을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노동분쟁처리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노동위원회 심판업무에 대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5심화되어 권리구제가 지연됨, 이는 사건처리 장기화로 노사관계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국가적인 낭비를 가져옴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의 판정을 받아도 강제집행력이 없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 판정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이명박 정부시기인 2008~2011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평균 5.3%로 감소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정률	13.5	17.0	11.6	12.6	11.0	10.2	6.6	9.0	7.5	2.8	1.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각 년도

■ 목표

-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여야 함

■ 방법

- 노동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판결 보장

2. 노동법원에 노사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 현황 및 문제점

- 법원이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목표

- 재판장은 전문법관이 담당하고, 노사 당사자의 참여 보장으로 분쟁 심판의 공정성을 높여야 함

■ 방법

- 노동법원의 설치·관리·업무감독에 대하여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판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법관이 담당하도록 함. 전문법관 임명에 있어 노사단체의 추천 등을 입법에 포함
- 노동법원의 제1심과 상소심까지 도입하고 대법원에 노동전담부를 구성하여 항소심까지 노동법원을 도입해 가야 함
- 노동법원법안은 비직업 법관인 노사대표가 법관으로 평결에 참여하는 완전참심제를 도입.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참심제가 일반적임)

통합진보당 2012 총선

농업·먹거리 공약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민에겐 생산비보장! 국민에겐 가격안정!
안전한 먹거리로 식량주권 실현하겠습니다!

1. 식량주권,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2.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먹자!
3.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 권리보장!
4. 농가몰락저지, 농촌경제회복대책추진!(5대선결과제)
5. 지역복지공동체로 살맛나는 농촌, 행복한 농민!

농민국장 류화영(bsbkk@hanmail.net)

1. 식량주권, 국민기초식량보장법제정

공약

1.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 국가의 책임 하에 기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정

2.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격 상하한제 실시

⇒ 주곡에 대한 국가수매제와 축산물,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상하한제로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먹거리 접근성 보장

3. 공공급식 확대, 저소득층 기초농산물 지원확대

⇒ 먹거리양극화로 인한 건강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중고 무상급식 및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기초농산물 지원 확대

4. 식량자급률 50% 목표 실현

⇒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쌀 및 주요곡물의 자급률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감

5. 대북쌀지원 법제화와 남북농업협력강화

⇒ 남의 쌀 생산기반 유지와 북의 식량문제해결을 위해 대북쌀지원을 법제화 하고 통일시대 식량주권을 위해 남북농업협력을 강화

1.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 현황

- 신자유주의 농업정책과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식량생산기반이 파괴되고, 초국적농식품복합체의 식량독과점 심화, 투기자본에 의한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식량위기가 만성화 되고

있음.

- 원자재가격상승, 취약한 식량자급률은 국내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생산자인 농민과 국민 모두의 먹거리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음.
- 전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요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가격안정등을 담보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이 필요함.
- 태국은 ‘쌀 국가수매제’ 부활, 인도는 ‘식량보장법’을 통해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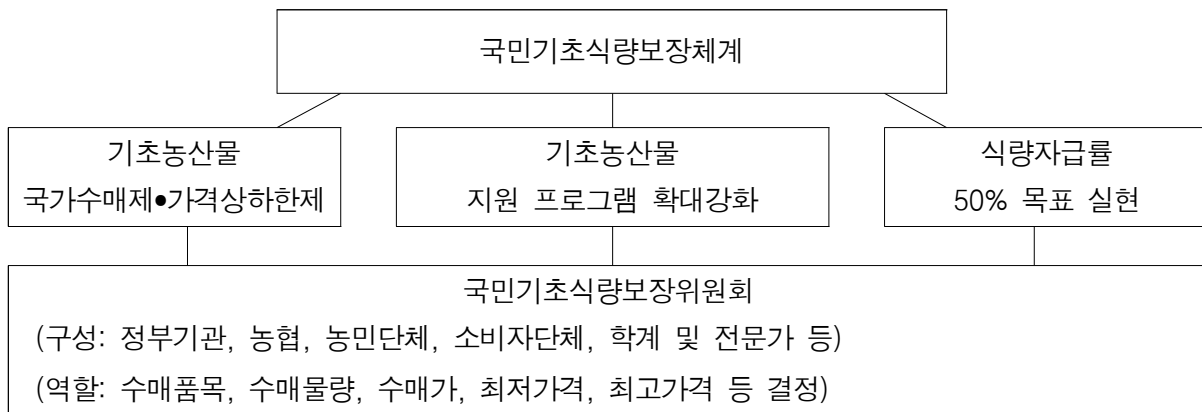
■ 목표

-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으로 먹거리기본권 보장

■ 방법

-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표]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한 주요 방안



2.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격 상하한제 실시

■ 현황

-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쌀값이 10년 전 가격수준으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며, 2010년 배추값은 한통에 2만원까지 폭등, 2011년 500원으로 폭락함.
- 농민은 가격폭락시 아무 보호도 받지못할 뿐 아니라 폭등시에도 생산량 감소로 피해를 받으며, 국민은 가격폭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목표

- 농민에겐 생산비 보장, 국민에겐 가격안정!

■ 방법

(1) 주요곡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 쌀, 밀, 보리, 콩, 옥수수등 주요곡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한 국가수매제 실시

(2) 가격상하한제

- 축산물, 주요 채소류에 대해 생산량의 50%를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실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폭락과 폭등 방지

■ 자원

- 수매제 : 현행 AMS(감축대상보조금, 2004년 수준에서 유지되고있는 1조 4900억 원), 최소 허용보조금(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총액 40조의 10%활용가능), 허용보조금(경관보존, 식량안보등 가격지지와 농민소득보장제도)제도 등을 이용
- 가격 상하한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3. 공공급식 확대, 저소득층 기초농산물 지원확대

■ 현황

- 먹거리 양극화와 건강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복지국가의 지향에 걸맞게 최소한의 인권인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도 신선한 제철에 난, 질 좋은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 현재 정부양곡할인, 결식아동급식지원, 노인무료급식프로그램, WIC 프로그램(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푸드뱅크·푸드마켓 등 저소득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은 결식 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수준임. 사업별 시행주체가 다르고 전달체계가 분명치 않아 사각지대가 많으며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먹거리의 안전성, 질, 신선도등이 보장되지 않음.
- 무상급식을 초·중·고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그 외 공공급식에 기초농산물 우선적 공급을 통해 소비와 생산을 계획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실현해야 함.

■ 목표

- 굶주림 없는 나라, 저소득층에게도 제철에 난,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보장! 공공급식에 기초농산물 안정적 지원!

■ 방법

(1) 공공급식 확대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급식지원센터로 확대. 초·중·고 무상급식과 공공급식에 1차 친환경, 2차 근거리 지역 기초농산물 우선공급

(2) 저소득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확대

- 체계적인 먹거리 복지 프로그램마련과 복지전달체계 일원화
- 먹거리생산과 먹거리복지 연계강화로 저소득층에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보장
예) 언니네딴밭 제철꾸러미⁷⁾를 쿠폰제로 도시지역 저소득층, 또는 WIC 프로그램용으로 제공, 중소농협업공동체의 농산물을 각 저소득층먹거리지원사업에 우선공급

7) 여성농민 생산자공동체에서 토종종자를 이용, 제철에 난 채소류와 전통 농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도시 소비자, 또는 소비자공동체와 직거래하는 사업

4. 식량자급률 50% 목표 실현

■ 현황

- OECD 평균 곡물자급률 91.5%(2005~07년), 우리나라는 2007년 30%로 OECD 33개국 중 28번째로 매우 낮음.

[표] 국별 곡물자급률 (2007)

(곡물 기준, 단위%)

국가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한국	일본
자급률	175	143	150	164	102	92	74	30	28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9)

- 식량의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4대 곡물메이저에 57%가 장악되어 있어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임.

[표] 곡물 메이저로부터의 한국 곡물 수입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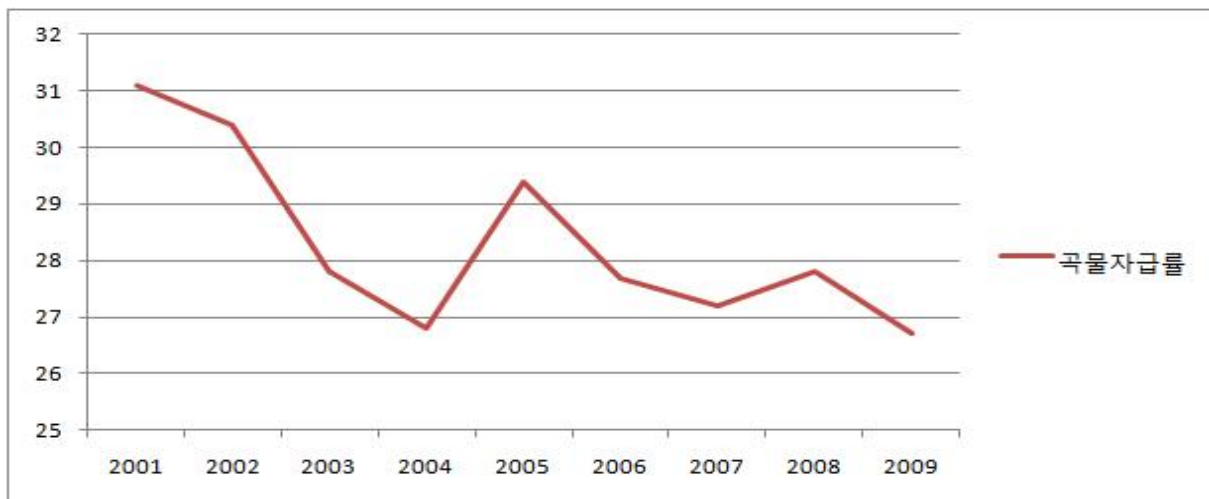
	4대 곡물 메이저				일본계	기타	메이저 비중
	카길	ADM	BUNGE	LDC			
소맥	28.9	15.4	2.4	0.0	15.3	38.0	46.8
대두	28.4	9.8	1.9	6.3	52.8	0.9	46.3
옥수수	33.3	18.1	7.3	3.7	10.8	26.8	62.4
3대 곡물	31.7	16.7	5.5	3.0	16.0	27.2	56.9

주)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도입량 기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新식량안보 전략’ 보고서

- 2009년 기준 곡물자급률 26.7%, 쌀을 제외하고는 3.7%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연도별 곡물자급률의 변화



자료 : 농림수산물부 주요통계

■ 목표

- 식량자급률 50% 달성으로 안정적 먹거리 보장

■ 방법

-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함. 2030년까지 장기목표로 50%달성을 설정함
- 대북쌀 지원재개, 쌀값 보장으로 현 쌀 생산기반 유지
- 밀, 보리, 콩 등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 이모작 등으로 경지이용률을 높여나감
- 중장기적으로 곡물사료 수입 감소를 위해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종, 축산 순환체계 확립
- 공공급식과 먹거리복지 프로그램 확대에 국내 농산물 조달시스템 구축으로 공공분야의 국내산 소비촉진

5. 대북쌀지원 법제화 및 남북농업협력강화

■ 현황

- 통일에 대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민족전체의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생산기반 유지 및 식량생산의 역할분담과 지리적 환경에 상응하는 분업생산 필요. 이에 대한 공동식량계획 수립과 남북농업협력을 높여나가야 함.

■ 목표

- 대북쌀지원 법제화, 통일대비 남북농업협력 강화

■ 방법

- 단기 : 북의 식량문제 해결과 남의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소득감소 해결을 위해 대북쌀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특별법’ 제정, 매해 50만톤 지원.
- 장기 : 남북 상호보완적인 농업협력을 통한 농업공동체 실현을 위해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단계적 목표와 계획 수립.

2.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먹자!

공약

1. 농지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보장

⇒ 농업생산의 필수요소인 농지와 종자에 대한 공개념을 강화하고 농민의 권리 보장

2. 목표소득직불제, 도시가구 평균소득대비 95%수준 농가소득보장

⇒ 66%의 도농간 소득격차를 목표소득직불제로 95%까지 높여 농가 소득 보장

3. 중소농협업공동체와 농촌공동체 리더 육성

⇒ 전체농가중 92.4%를 차지하는 3ha 미만의 중소농을 협업공동체화하고 농촌공동체 리더 육성으로 농업생산주체 강화

4. 생태농업으로의 전환과 지역먹거리체계구축

⇒ 상위 10%를 위한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전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생태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생산·가공·유통의 초국적시스템을 지역먹거리시스템으로 재구축

5. 먹거리안전관리 강화

⇒ 각 부처간 이원화 되어있는 먹거리안전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하고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1. 농지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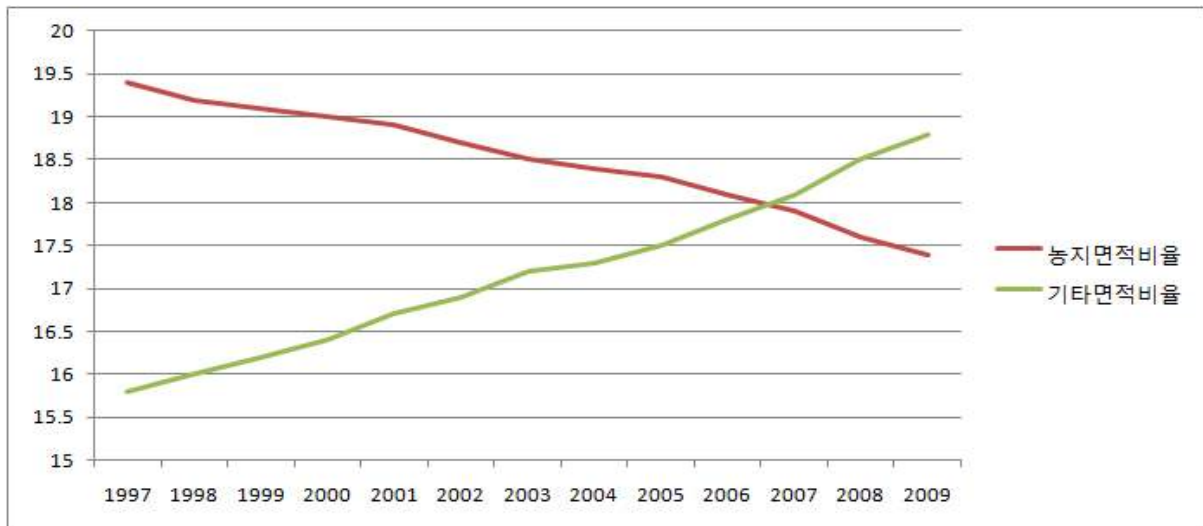
1-1. 농지공개념 강화로 안정적 영농 보장

■ 현황

-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도시화로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해마다 여의도의 60배가 넘는 엄청난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

[그림] 전체 국토면적 대비 농지면적 비율의 변화

단위 : %



주) : 기타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에서 농경지와 산림지역을 산술적으로 뺀 나머지 면적임.

자료 : 농림수산물부 주요통계

-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이용규제 완화로 2010년 현재 임대차 농지가 전 농지의 47.9%, 임차 농가가 전 농가의 62.2%에 이름.
- 농지가 상승에 의한 토지용역비 증가(쌀의 경우 생산비의 40~45%가 토지용역비임)는 농가 경영 압박,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신규후계인력의 영농접근성에 큰 제약이 되고 있음

■ 목표

- 농지공개념강화로 안정적인 영농보장 및 식량자급기반 확보, 농업의 다원적 가치 유지

■ 방법

- 비농민소유 농지 국가매입, 불법농지 강제처분으로 국공유 농지 확대

-> 낮은 임대료로 농민에게 장기임대하여 경작보장

(중소농 협업공동체, 신규농민, 여성농민 등 우선순위로 임대)

-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 농지은행제도를 확대, 보완하여 농지관리체계 강화
-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 강화, 농민대표 50% 이상 참가 보장, 지역임차료 결정 및 농지 보전, 효율적이용을 위한 농민의사 반영, 농민적 농지소유보장

1-2.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보장

■ 현황

- 외환위기 이후 국내 종묘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합병되어 종자주권을 잃어가고 있으며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에 따른 종자법개정으로 농민의 자가 채종이 불법화되고 있음.
- 종자는 인류공동자산이며, 대대로 농민의 손에서 이어져 내려옴. 현장에서 농민에 의해 보존될 때 기후변화에 적응가능하고, 종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음.
- 따라서 육종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종자법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농민의 종자보존을 보장하는 종자법 개정이 필요함.

■ 목표

-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 보장으로 종다양성 유지

■ 방법

- 토종종자현장보존지원 방안 등 종자법 개정
- 전국 거점에 농민이 주도하는 종자은행 설립
- GMO 종자 관리감독 강화 및 프리존 선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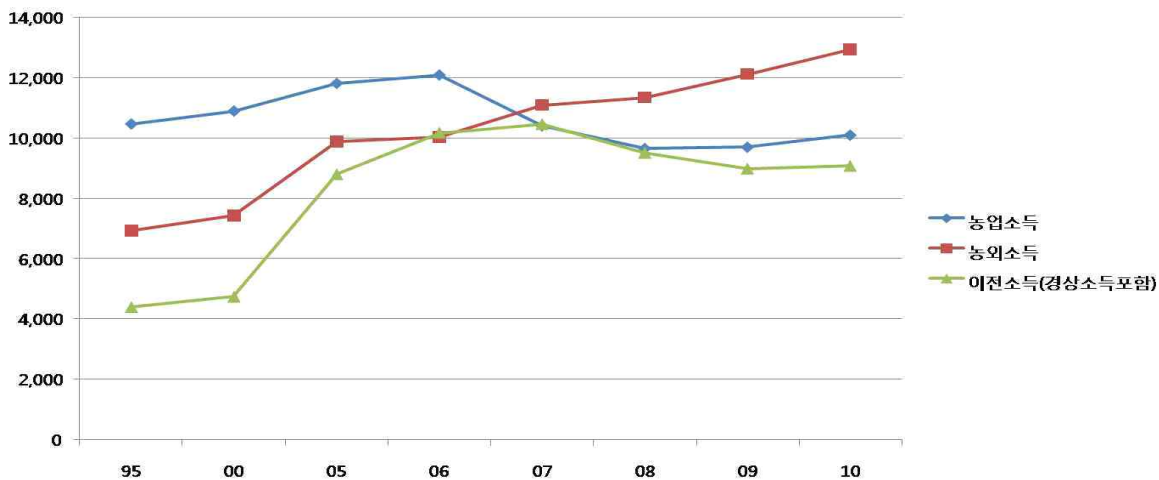
2. 목표소득직불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대비 95% 수준 농가소득보장

■ 현황

- 1995년 대비 2010년 농가소득은 47.3% 증가, 물가상승률은 66.1%로 실질 소득은 20% 가까이 감소함.
- 1990년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97%였던 농가소득이 2000년 80.6%, 2006년 78.2%, 2009년 66%로 해마다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현행 목표가격제도는 목표가격 자체가 시장가격 하락과 연동되어 기준년도 대비 농가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음.
- 2000년 이후 농가소득 구성 중 농업소득은 10년간 13% 감소하고, 겸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가 2003년 35.7%, 2005년 37.5%, 2008년 42%로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음.

[그림] 농가소득 구조의 변화

단위 : 천원



주 1) 2008년 결과는 표본개편에 의한 시계열 단층이 발생하여 연속성이 단절되므로 전년도와의 직접 비교, 분석은 주의해야 함

2) 비경상소득은 편의상 이전소득에 포함하였음

■ 목표

- 목표소득직불제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95% 수준으로 소득보장

■ 방법

- 직접소득보조 방식의 직접지불제도 도입하되 전·겸업별, 영농규모별, 작목별 기준마련
- 중장기적으로 95% 수준을 목표로 하되, 단계별로 목표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별 목표소득과 농가소득의 차이를 다양한 직접지불로 보전
- 경지면적별 구간을 설정하고 경지면적이 적은 농가에게 역누진율을 적용하고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WTO가 허용하는 허용보조를 최대 활용
 - > 논 변동직불금 폐지하고 고정직불금 확대
(현행 1ha당 70만원 -> 100만원이상확대)
 - > 밭농업직불금 19개 작목 1ha당 40만원 -> 작목확대, ha당 70만원으로 확대
 - >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상향조정
 - > 중소농협업공동체 조직화여부와 생태농업으로의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단계별 인센티브 적용 등

3. 중소농 협업공동체·농촌공동체 리더 육성

3-1. 중소농 협업공동체 육성

■ 현황

- 비효율적인 중소가족농을 도퇴시키고 규모화, 전업화, 기업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농업구조조정은 곡물자급률 26.7%라는 낮은 자급률, 농업, 농촌의 몰락으로 귀결됨.
- 2009년 기준 전체 농가 중 평균 경지면적 3ha 미만의 농가비율이 전체의 92.4%로 여전히 8)중소규모의 가족농이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중소농은 농촌 경제는 물론 기업농, 상업농이 못하는 농촌공동체 유지 및 문화유산보존,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유지 등과 같은 사회적, 공익적 역할을 담당함.

■ 목표

- 개별 정예농가 육성에서 중소농 협업공동체 육성으로 생산주체 육성정책전환
- 중소농 협업공동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중소농 육성 및 역량강화
 - ※ 중소농협업공동체육성을 통한 기대효과
 - 생산자원(토지, 기계, 종자 등)을 공유함으로써 생산비 절감효과
 - 가공, 유통, 판매에 있어 협상력을 가짐으로써 농민통제권 강화
 - 지속가능한 순환 재생산 환경농업 실천과 회원소득 보장
 - 사라져가는 농촌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 신규귀농인 정착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

■ 방법

8) 중소 가족농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아닌 농가의 노동력으로 규정하는데,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3ha 미만까지는 농가 노동력으로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ha 미만의 농가를 중소농으로 포함하였음.

- 중소농 협업공동체의 형태로 마을단위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권장
- 중소농 협업공동체별 생태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중소농 협업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신규인력을 농촌지역내 일자리가 없는 젊은 인력, 신규 귀농인, 농업고, 농업대학졸업자 등을 우선으로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국공유농지, 비농민 소유농지등의 경작권 우선지원
- 공동체지원농업, 지역먹거리체계등을 통해 소비와 생산을 계획하고 보장

3-2. 농촌공동체 리더 육성

■ 현황

- 초고령화된 농촌에서 중소농 협업공동체를 결성하고 추진해 나갈 인력필요
- 농촌공동체 리더는 중소농 협업공동체를 결성, 생태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종자, 물, 땅 등 생산자원을 보호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확대하는 역할, 지역단위 마을공동체의 풀뿌리 행정기능 등 지역을 가꾸는 농촌 리더 역할임

■ 목표

- 농촌공동체 리더 육성을 통한 중소농 협업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지역개발

■ 방법

- 농촌공동체 리더 육성교육 실시
농촌공동체 리더 협의회로 리더간 소통과 지속적인 교육, 관리 실시
- 공익적 역할에 따른 사회적 지위 보장(정부차원의 급여지급)

4. 생태농업으로 단계적 전환과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 현황

- 현재의 고품질농업(친환경, 브랜드화)은 신자유주의 시장지배체제에서 소수 상위계층 중심의 틈새시장(최대 10%)에서 생존 가능함, 이는 소득수준에 따른 먹거리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음.
- 녹색혁명이후 석유화학 고투입농업, 기계화, 규모화된 농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국적불명의 세계화된 먹거리체계는 먹거리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목표

-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도시와 농촌, 산업간 관계가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방법

- 중소농협업공동체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생산방식을 전환해 나감
-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보
 -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에 관련 분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먹거리정책을 세워나감
 - 농민장터, 지역내 공공조달, 기관구매, 지역 내 직거래유통과 급식·외식·일반유통(지역산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등 지역 내 유통활성화
- 도시생태농업활성화
- 식·농·환경 통합적인 국민식생활교육 강화

5. 먹거리 안전관리강화

■ 현황

- 먹거리 안전은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의 전 과정에 걸친 일관된 관리체계가 필요함에도 먹거리 안전 관리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허술한 관리체계로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 화학농업과 GMO(유전자조작생물체)의 증가, 국적불명의 수입농산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목표

- 먹거리 안전 보장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방법

- 먹거리 안전 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 생산자 안전성 입증의 원칙(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수입 먹거리 검사·검역체계 강화
- GMO(유전자조작농산물) 관리체계 강화

3.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 권리보장

공약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현재 법률 상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와 인력배치’가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2. 발작물 직불제 실시

⇒ 여성농민이 주되게 종사하고 있는 발작물 직불제 확대

3. 여성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가공 협업체 지원 확대

⇒ 여성농민이 주되게 참여하는 생산·가공 조직 및 협업체에 대한 지원을 여성할당과 같이 목표 수치를 지정하여 실시

4.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농업 정책에서의 성 인지 예산 확보

⇒ 성별영향평가 이후 평가를 반영하여 농업정책에서 일정 비율의 성 인지 예산 확보

5. 생애주기별 특성에 입각한 여성농민 지원제도 마련

⇒ 고령여성농업인에게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신규 여성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정책 마련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현황

- 여성농민은 농업생산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함에도 200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결과, 여성농업인 명의의 농지가 전혀 없는 농가 수는 78.7%이며,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여성농업인 소유 농지면적 비중은 16.3%로 고령 독거가구의 여성경영주 소유가 대부분임, 실제 농가 경영주가 아니면서 여성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농가의 8.3% 밖에 되지 않

음

- 또 11.1%의 여성농민 만이 농산물 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자신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있음. 여성농민의 역할에 비해 사회적,경제적지위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로부터 여성농민정책에 대한 업무를 맡아오던 부서가 농촌사회 여성팀으로 축소되었다가 현재는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없어짐.
- 지자체에서도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아닌 농업정책 담당자가 여성농민 정책을 병행하고 있어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여성농민이 농업생산에서, 농촌지역 공동체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사회적 지위보장과 지원을 위해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인력배치가 필수 임.

■ 목표

- 여성농민 정책을 지역과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삶의 질 향상

■ 방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을 개정하여 도와 시군에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함.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내용>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두어야 한다.

2. 밭작물 직불제 확대 실시

■ 현황

- 여성농민의 다수가 밭작물에 집중하여 영농을 책임지고 있음. 논농사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농민소득보장이 논농사 고정직불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나 밭농사에 대한 직불금은 미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농민의 소득보장에 한계가 큼.
- 밭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직불제 시행으로 여성농민의 소득보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보장필요.
- 최근 전라북도에서 밭농업 직불제가 시행됨. 도와 각 시군이 총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0.1~1ha의 밭을 경작하는 농가에 면적에 따라 2만~20만원을 지원함. 이로 인해 도내의 11만 농가 중 65%에 해당하는 7만 4천여 농가의 소득을 보장함.

■ 목표

- 모든 도와 시군에서 주로 밭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민에게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 방법

- 밭작물 직불제확대 실시(19개 품목 1ha당 40만원→ 품목확대, 1h당 70만원)

3. 여성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 · 가공 협업체 지원 확대

■ 현황

- 여성농민이 마을을 기본 단위로 하는 협업 공동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생산과 가공, 유통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보니 농촌지역 경제 유지와 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임.

■ 목표

- 여성농민의 생산 · 가공 협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농민의 생산자로서의 법적인 지위 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생산의 주체로서 지위 보장

■ 방법

- 여성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생산 · 가공 협업체 및 조직에 대한 우선지원
- 중소농 협업공동체 결성시 여성농민 30% 이상 참가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 중소농 협업공동체 여성리더의 경우 인센티브 등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확대

4.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농업 정책에서의 성 인지 예산 확보

■ 현황

- 지난 2010년 성인지 예산제도가 국가재정에 반영되고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 2013년부터는 지방재정에도 이를 반영해 실시됨.
- 2010년부터는 각 부처별로 시범사업이 실시돼 현재 농림수산물식품부는 22개 사업을 이미 진행 중임. 2012년도 농림수산물식품부의 경우 총지출 15조4106억 원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성 평등한 정책 시행이 미비한 상황임.

■ 목표

- 농촌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 인지 예산 확보로 여성농민의 현실과 조건에 맞는 정책 시행

■ 방법

- 농촌지역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와 농업정책에서의 성 인지 예산 단계적 확대

5. 생애주기별(고령 여성농민, 신규 여성농민 등) 특성에 입각한 여성농민 지원제도 마련

■ 현황

- 고령 여성농민을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의료 접근성 문제, 주거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신규로 농촌 지역에 들어오는 여성농민에 대해서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 마련

■ 목표

-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시 고령 여성농민, 신규 유입 여성농민의 특성에 입각하여 정책 추진의 소외와 배제를 없애고자 함.

■ 방법

- 고령 여성농민에게는 의료접근성, 공동주거에 대한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농촌마을 공동 급식 실시
- 이주여성농민과 귀농 여성농민 등 신규 여성농민에게는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등 실시

4. 농가몰락저지, 농촌경제복구대책 추진

공약

1. 한미FTA 폐기, 한중FTA 추진중단,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

⇒ 사상최악의 농업말살 협상 한미FTA 전면폐기, 그나마 버티고 있는 한국농업의 붕괴를 초래할 중국과의 FTA 추진 중단, 기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한 폐기 및 재협상

2. 농협법 전면 재개정

⇒ 지주회사방식의 농협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연합회 방식으로 개정,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농민조합원에 의한 직선제로 개정

3.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가부채 해결

4. 축산농가 생산기반유지와 가격안정

⇒ 사료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법 제정으로 축산농가 생산기반 유지, 축산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5.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및 농업재해보험제도 확대

⇒ 농업노동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이상기후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확대

1. 한-미FTA 폐기, 한-중FTA추진 중단,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

■ 현황

- 한미FTA는 사상최대의 농업개방, 사상최악의 농업말살 협상임.
- 관세철폐예외는 고작 1.9%에 불과하고 관세즉시철폐품목은 37.6%에 달함.
- 또한 FTA로 인한 국내농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인 세이프가드는 발동할 수 없으며 TR Q조차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과도하게 받아들였음.
- 한미FTA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면세유 등 정부의 각종 농업정책도 추진할 수 없게 됨.
- 농업인구가 300만 미만으로 떨어지고 농민소득 감소로 인해 농업이 급속하게 붕괴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한중FTA를 추진하고 있음.
- 이미 농산물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가 추진된다면 관세철폐로 인해 가격경쟁력에 우위를 가진 중국농산물로 인해 농업붕괴는 더욱 심화될것임.
- 농업의 붕괴는 식량주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검역조건등에서 미국과의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미침.

■ 목표

- 무차별적인 FTA추진 중단

■ 방법

- 한미FTA 폐기선언
- 한중FTA 추진 중단
- 한칠레, 한EU 등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

2. 농협법 전면 재개정

■ 현황

- 2011년 3월 11일 통과된 농협법이 2012년 3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현 농협법은 그동안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요구해온 신용사업, 경제사업의 분리가 연합회 방식이 아닌 지주회사방식으로 됨으로써 농민의 이익이 아닌 지주의 이익을 우선에 둔 농협이 될 것임.
- 농민들이 요구해온 농협개혁은 경제사업을 중심에 두기 위한 것임 .하지만 통과된 농협법은 농협의 자산 대부분을 신용사업에 배분하여 지주회사화하는 방안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는 빈 수레 지나지 않음.
- 연간 8조원에 달하는 무이자자금으로 농협의 인사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중앙회장 선출이 270여명의 대의원조합장에 의해 선출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각종 비리사건과 구속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실시되어야 함.

■ 목표

- 연합회 방식으로, 조합장 직선제로 농협법 전면 재개정

■ 방법

- 농협법 시행중단과 농협법 전면 재개정안 발의
- 농협법 재개정안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조항 삽입

3.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 현황

- 2010년 현재 농가부채는 농가당 2,721만원에 달하고 있음. 1995년 대비 197.0%나 늘어남. 도시가구 평균 부채가 1,600만원인 것에 비추어 대단히 높음. 게다가 농민소득에서 농가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음. 농가부채의 농가경제 압박이 매우 심각함.
- 역대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하에서 농산물 가격보장정책은 실시하지 않은 채 농업구조조정과 규모화를 병행하는 농업정책이 농가부채를 증가시킨 핵심 원인임.
-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으로 농민들이 농가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영농을 계속할 수 있음.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 목표

-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 방법

-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영세소농의 2천만 원 미만 소액부채 전액 탕감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 원 부채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

4. 축산농가 생산기반유지와 가격안정

■ 현황

- 배합사료 가격에 의해 축산물 생산비가 좌우되는 상황임. 현재 소값 폭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사료값은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해상운임 등 외부환경변화에 민감함.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세계 곡물가격의 상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의 사료값 부담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음.
-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축산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하지만 사료가격관리에 대한 정책은 부재함.
- 구제역이후 쇠고기 시장점유율은 이전 국산 대 수입쇠고기 3:7에서 5:5로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짐
-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축산기반유지, 축산물에 대한 가격 상하한제 필요

■ 목표

-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법 제정으로 생산비 절감
- 축산물 자급률 향상과 수급 및 가격안정

■ 방법

-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법 제정
: 농민과 사료업체,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의 사료안정화 기금 마련
: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료가격 안정실현
- 축종별 연합회 육성으로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가격안정
- 가격 폭락시 긴급 구매제, 긴급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수급안정
- 중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

5.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및 농업재해보험제도 확대

1) 농업노동재해 보험법 제정

■ 현황

- 젊은층의 이농으로 농촌사회는 초고령화됨. 농업노동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규모화정책에 의한 농약과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로 인한 농업노동재해와 농업노동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목표

-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으로 농민의 안전망 확충

■ 방법

-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강제가입방식으로 정부 50%, 농민10%, 농협 40% 부담
:적용대상은 농업노동사고, 농업노동질병으로 함.

2) 농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현황

-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의 피해도 빈번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 농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및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함.
- 농업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이 높고 적용대상이 소수이다 보니 가입률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특약으로 묶여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분담의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국가는 수수방관하는 상황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견인해야 함.

■ 목표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생산비 보장을! 농업재해보험확대로 소득보장을!

■ 방법

- 농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및 보상 현실화
- 농업재해보험의 농민부담을 완화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생산비보장

5. 지역복지공동체로 살맛나는 농촌, 행복한 농민

공약

1.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활력 있는 농촌

⇒ 농업축소에 따른 일자리 축소로 농촌 공동화와 빈곤 심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돌아오는 농촌, 농촌경제 활성화

2. 교육 걱정 없는 농촌

⇒ ‘농산어촌지역 작은 학교’ 유지로 농촌교육 근거지보존 및 창의력향상, 인성개발을 함양하는 학교로 특성화하는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3. 보육 걱정 없는 농촌

⇒ 면단위 1개소 이상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농어촌 무상보육 우선 실현

4. 의료 걱정 없는 농촌

⇒ 농촌지역부터 국공립거점병원 구축, 주민주치의 제도 우선 도입

5.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와 마을공동체까지 복지전달체계 확립

⇒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효율적,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실시

1.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활력 있는 농촌

■ 현황

- 농업축소, 농업생산액 감소로 농업을 둘러싼 전방위 산업이 축소됨으로써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지고 농촌경제의 빈곤을 초래함.
- 농업생산은 물론 청년들이 농촌에 남을 수 있는 다양한, 질 높은 일자리가 필요하며, 여성, 해외이주민, 고령농민들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고 농촌인적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함.

■ 목표

-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 방법

- 중소농 협업공동체 조직화 및 농촌공동체 리더 육성으로 일자리창출
- 신규귀농인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농지우선임대, 농가주택 및 정착지원금 등)
-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농산물 가공, 유통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농업생산, 자연경관, 문화자원을 연계한 농촌형 마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농촌마을 공동급식(먹거리복지+노인복지+보건정책+지역먹거리)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 고령농의 전통지식을 자원화한 일자리 창출
- 농업관련 연관 산업(농자재, 농기계) 농촌지역에 집중육성, 농공단지 가동률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교육 걱정 없는 농촌

■ 현황

-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과소화 및 통폐합으로 학업성취도의 도농격차 확대, 교육 불평등 심화.
- 도농간의 교육격차는 청년층의 귀농에 주요한 장애요소임.
-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과전담교사의 부족으로 교육 및 근무여건 악화.
- 농촌교육의 거점이며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의 근간으로서 작은 학교를 유지시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작은 학교의 특성에 맞는 창의력과 인성개발 교육학교로 특화해야 함.

■ 목표

- 도시, 농촌 교육격차 해소

■ 방법

-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농산어촌지역 작은 학교’ 유지로 농촌교육의 근거지를 보존하고, 창의력과 인성개발을 함양하는 학교로 특성화
 - 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자녀들이 타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통학비, 하숙비 지원, 또는 기숙사제공)
 - 교원의 임용과 근무조건 개선 : 근무 수당, 현저거주 인센티브,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배치 등
-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자녀, 조손가정자녀가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 및 교사 지원,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
- 방과 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로 사교육 걱정 없는 농촌 교육시스템 구축
- 고령·여성·이주민 등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3. 보육 걱정 없는 농촌

■ 현황

- 읍/면/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공공시설(복지관, 면사무소,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수준의 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통문제등 농촌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농촌보육교사 기피현상 심각

■ 목표

- 보육 걱정 없는 농촌

■ 방법

-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의 국공립화
-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접근성 재고
- 방과 후 보육, 종일 보육 서비스 지원
- 농촌보육 교사를 초등교원급으로 격상시켜 농촌에 부족한 보육교사를 공적지원으로 해결

4. 의료걱정없는 농촌

■ 현황

- 농촌의 초고령화와 농업포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농민들의 높은 노동 강도를 초래, 기계화에 따른 농업재해로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
- 가사부담과 육아노동 부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농촌 특성상 여성들은 더 과중한 노동으로 많은 질병위험에 노출.
- 도시보다 농촌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농촌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는데 반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넓은 인구분포,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기관들이 농촌진입을 꺼려 생활권 단위의 의료시설 접근 문제 심각.
- 의료기관의 종류와 진료과목 제한, 초임의료진 배치에 의한 서비스 질의 문제 등 의료서비스 격차가 큼.

■ 목표

- 의료 걱정 없는 농촌

■ 방법

- 농촌지역부터 국공립 거점 병원 구축, 농촌지역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주민주치의 제도를 농촌지역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도입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의료 보장범위 재고
- 접근성 재고를 위해 리단위 보건진료소 확충

5.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와 마을조합으로 복지전달체계 확립

■ 현황

- 복지서비스 수요가 높는데 비해 농촌지역 복지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가 마을까지 전달되는데 한계가 큼.
- 도시행정권 중심의 복지전달체로 인한 서비스 질 격차, 거리 및 접근성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가 시군단위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농촌지역 실정에 맞도록 마을단위까지 포괄하는 전달체계 확립 필요.
-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복지가 아닌, 실현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농촌의 제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필요.

■ 목표

-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보편적 복지 구현

■ 방법

- 시군단위 복지전담기구로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 설립, 민간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강화,
- 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인력 확충하여 효율적, 통합적, 사각지대 없는 농촌복지서비스 실시
-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주민역량강화와 전달체계 일원화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중소상인 공약.

1. 재벌의 골목상권진입 금지
2.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 부당거래관행 개선
3. 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4. 중소기업 역량강화

연구위원 김현주(khj1022@empal.com)

1. 재벌의 골목상권진입 금지

공약

1 소매점, 납품 등 지역 유통망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진출 방지 : 대기업이 중소형 소매점에 납품을 금지
- 중소형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등을 우선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함.

2.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 최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자정12:00~08:00까지 실시하기로 한 영업시간 제한규정을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함.

3.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가맹점 등 편법 SSM 사업조정대상 포함
- 관계기관에 의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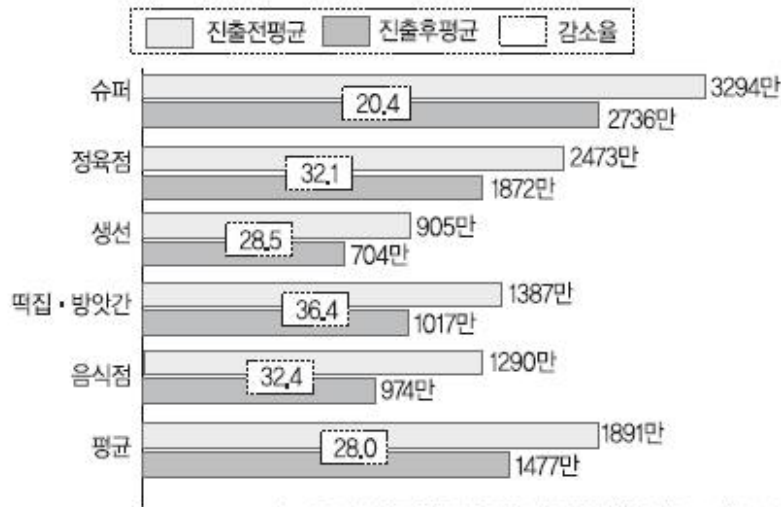
4.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방해꾼, FTA폐기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4년 동안 대형마트 9조2천억원매출증가 VS 재래시장매출 9조천억원감소
- 최근 4년 동안 대형마트 매출은 9조2천억원 증가한 반면에 재래시장 매출은 동일기간동안 9조원천억원이나 감소하였음.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이 중소상인 상권을 직접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통계청의 2009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통계조사 결과 에 의하면 2009년 12월 기준으로 슈퍼마켓 및 체인화편의점은 전년에 비하여 사업체수(6.7%, 10.7%) 및 매출액(12.5%, 11.3%)이 증가한 반면,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등의 성장으로 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구멍가게)은 사업체수(-3.8%) 감소 및 매출액(5.1%) 둔화됨
- 대형마트와 SSM 진출 전후 3년을 비교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한 인근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8%, 고객은 37%(일평균 22명) 감소했다. 유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10개 점포당 1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대형마트·SSM 입점 3년 전후 주변 중소상인 매출액 비교 (단위:원,%)



자료: 중소기업 연구원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2010.8)

○ 편법 SSM 진출 급증

〈표〉 SSM 증가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5
SSM	292	354	477	695	844(50)	902(81)
빅3대기업 SSM (비중)	166 (57%)	218 (62%)	327 (69%)	511 (74%)	636 (75%)	689 (76%)

* 빅3대기업SSM: 롯데슈퍼, 삼성 홈플러스, GS슈퍼

*() SSM 중 가맹점형 SSM임

출처: 2011.10. 중소기업연구원

- 특히 2009년이후 중소상인들이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SSM 제한 요구하자 2010년부터 현행법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SSM 급증함. 2010년이후 2011년5월 까지 전체 신규 SSM의 40%가 편법 SSM이었음.
-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서비스분야 중소기업 동반 성장 인식 조사(2011. 9,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중 60.5%

가 현재 대기업 사업장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86.0%가 대기업 진출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38.4%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80.0%는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정시기에 대해 63.8%가 “즉시 지정”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그럼에도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129개업종 230개품목에는 중소기업인들이 문제 제기했던 SSM 등 골목상권관련 업종은 빠져있음

■ 방법

1.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 슈퍼형 편의점 사업조정대상 포함
- 대기업가맹점 사업조정대상 포함(현행 대기업 지분 50%이상만 조업조정대상에 해당)
- 사업조정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의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여 사업조정 실효성을 높임.

2.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 영업시간제한 확대
- 최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자정12:00~08:00까지 실시하기로 한 영업시간제한규정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건강권확보 및 중소기업보호 효과를 확대해야 함.
- 허가제 도입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입점규제는 실효성이 없음. 전체 대형마트의 19.4%, SSM의 29.2%가 재래시장 500m 이내의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이미 입점해 있을 만큼 허가제가 아닌 현행은 규제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인을 보호할 수 없음.
- 대규모 점포 입점하고자 할 경우 상업시설의 면적 및 매출액, 지역 상권과 대규모점포신설 점포의 거리 등 주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허가제 도입정책은 FTA 폐지와 연동되어 있음.

3. 소매점 납품 등 지역 유통망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진출 금지 : 대기업이 중소형 소매점에 납품을 금지하도록 해당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함.

- 이에 따라 현재 대기업이 확장시도를 하고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등을 우선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함.

4. 중소기업 보호정책의 방해꾼, FTA폐기

- 한미 FTA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을 보호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고, 규제권을 유보 받지도 못한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중소상인들의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의 SSM 등록 규제,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제도 도입 등의 일련의 법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5. 재벌기업 순환출자금지 및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 재벌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떡볶이 빵집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 재벌들의 골목상권장악을 막기 위해 계열사를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임. (산업분야 재벌개혁공약으로 제출함)

2.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 부당거래관행 개선

공약

1. 대형매장의 “부동산 임대식 사업 금지 및 입점상인보호 강화”

- 대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해 부동산임대식사업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 부동산 임대식 사업방식을 유지할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준하는 입점상인을 보호 규정을 두도록 함.

2. 카드수수료 1%로 인하,

-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카드수수료율을 1%로 동결함.

1. 대기업매장 “부동산 임대식 사업 금지, 입점상인보호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 매장 중 백화점의 경우 3개 재벌그룹(롯데, 현대, 신세계)이 백화점 시장의 83.2%를 장악하고 있음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더하여 과점으로 시장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입점 또는 납품 업체와의 거래에서 39%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적용하거나 세일·판촉행사 참가 강요 등의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였음.
- 2011년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40일내 대금지급, 수령거부 및 지체 반품금지, 판매촉진비용전가금지, 종업원 사용금지,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금지, 경제적 이익제공요구금지,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상품권구입요구 금지 등을 규정함. 또한 이러한 부당거래 행위 발생 시, 정당성을 대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판매 수수료를 3~7%인하함으로써 대형매장과의 거래 공정성이 향상된 것은 사실임.
- 이런 거래 관행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표적인 대형업체들은 입점업체에게 판매수수료만 챙기는 부동산 임대식 사업은 지속하게 됨으로써 불공정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방법

- 대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해 부동산임대식사업 금지를 원칙으로 하여 해당 매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함.
- 부득이 부동산 임대식 사업방식을 유지할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준하는 입점상인을 보호 규정을 두도록 함.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개정
- 아울러 가맹점 계약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함

2. 카드수수료 인하

■ 현황 및 문제점

-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하락추세('05, 2.36% → ' 10, 2.10%)에 있으나, 여전히 소상공인은 대형업체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

〈 주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7개 전업카드사 중간값 평균, %) 〉

대영할인점	백화점	종합병원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실
1.85	2.30	1.50	2.52	2.9	3.28

- 2009년 카드사 수익 10조 원 중 60.5%가 가맹점 수수료로서 인하요인이 있음.
-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있었으나 여전히 중소 영세상인들은 동일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대형업체에 비해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차별개선이 필요함

1차 인하 2007.11

일반가맹점 1.5~4.5% →1.5~3.5%

영세가맹점(간이과세자) 2.7~4.0→2.0→2.2%

2차 인하(2008.11)

6개 카드사별로 카드수수료율 0.1~0.3%인하 (삼성, 신한, 비씨, 현대, 롯데, KB)

3차 인하(2009.2)

재래시자내 신용카드 가맹점 2.0~3.5%→2.0~2.2%

4차 인하(2010.4)

재래시장 내 가맹점(매출액 9600만원미만) 2.0~2.2%→1.6~1.8%

재래시장 밖 가맹점(매출액 9600만원미만)2.3~3.5→2.0→2.15%

5차 인하(2012. 7)

- 1.6~2.1% 영세가맹점(간이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 영업기간 등을 감안), 중소가맹점(전통시장 이외에 연간 매출이 20,000만원 미만인 가맹점), 전통시장가맹점(전통시장내 연간 매출이 20,000만원 미만인 가맹점)

- 이미용실(최고 3.28), 안경점(최고3.1%)문구업체(2.42~3.28%),

- 편의점(1.85~2.65%), 슈퍼마켓(1.5~2.45%), 골프장(1.5%)

■ 방법

- 한국은행법에 의한 수수료 상한을 규제함.
- 여신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함.
- 업종별, 업태별, 규모별 수수료 차등을 철폐함.
- 초과 지급된 카드수수료반환청구보장
- 금융위원회 원가공시표준안에 따른 수수료율 공개
- 카드사의 가맹점공동이용 의무화로 카드가맹점협상력제고
- 상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수수료 책정위원회를 설치,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용카드업자와의 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생존권보호

공약

1. 전국민고용보험제(노동분야 공약과 협의필요)

- 소득기준 하위20%에 속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본인부담 보험료 100% 재정지원으로 저소득층부터 가입하도록 함.

2.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 개발 및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파기 요건 강화 및 선보상 실현
- 전체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단 사행성 영업제외)

3.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현실화

- 선보상 후 퇴거
- 보상현실화(임시상가개설, 영업권보상을 포함한 폐업수준의 보상)

1. 고용보험가입 및 영세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소득하위 20%이내에 속하는 영세자영업자 수 170만 명. 전체 저소득층의 20%임
- 통계청에 의하면 2011년 10월 이후 매월 자영업자 비중이 10%~13%씩 늘어나는 현상임.
- 특히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장, 특히 최근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의 자영업창업이 증가하면서 50세 이상의 전통자영업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하위 20%범위 내에 속하는 170만 자영업자의 개인소득은 2009년 기준 707.5만원
- 임금노동자의 38%수준, 일반 자영업자의 33%수준임.
- 가구의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임금노동자 78.9%(임시일용직 제외), 자영업자는 159.2% 전반적으로 빚이 더 많은 상태이고,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57.6%가 순이익100만 원 이하 26.8%는 적자 또는 무수입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자영업자중 평균임금이하의 저소득층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폐업자영업자에 대한 실업

급여지급, 직업훈련을 통한 이직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하게 될 자영업자 고용 보험가입제도는 아직 자영업자를 임의 가입자로 분류하고, 부담금 100%로 되어 있음. 이 때문에 고용보험가입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선뜻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경영난과 저소득, 실업, 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가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방법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정망을 확충함.
- 현재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가입을 획기적으로 확대함.

가입	6개월 이상 영업실적자 의무가입
보장 내용	실업급여포함, 수급기간확대
수급 조건	▶최소 6월 가입, 폐업(양도 포함). ▶업종변경 혹은 상호변경의 경우 제한 규정
보험료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소득의 50% ▶보험요율(1.15%) : 영세자영업자 감면 (최임 이하는 면제) * 제조업 기준 0.45% 재정지원

① 1단계 : 현행법 (법 개정 전 임의가입단계)

- 소득기준 하위20%에 속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본인부담 보험료 100%를 재정지원으로 저소득층부터 당면 가입하도록 함.⁹⁾

	인원수	1인당 연간보험료
전체자영업자	571만명	
100만원 미만 평균 (931,531원)	151만명	최고 30,000원 (27,948원)

- 재정소요 : 151만 명 × 27,948원 = 422억 원

② 2단계 : 고용보험법개정

- 의무가입구간 확대, 자영업자 실업급여지급

9) 한국노동패널(2007) 조사 및 2009 고용동향(통계청)자영업자 수, 가계동향(통계청) 하위20%(1/5분위) 평균 소득 931,531원을 재구성하여 추계

2.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 방법

○ 폐업시 임대차 계약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 자영업자가 경기불황과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월임차료를 지불해야하므로 부도난 상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경영위기로 인한 폐업은 신고일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월임차료 부담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임(최소한 월차임 부담면제)

○ 계약갱신청구 및 임대료 상한제 강화

- 상가임차인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골고객확보하고 상권을 형성한 때문에 임차권을 갱신하여 임차기간의 연장이 곧 영업이익과 직결됨. 따라서 임대인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요구가 있더라도 재계약할 수밖에 없음.
- 주택임대차 개정안과 동일하게 5%이내 상한율을 정하고, 계약갱신기간을 6년으로 연장함. 일방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권고함.
- 임대료 상한율은 임차인에 의한 시설 개보수, 사업장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임대인의 노력에 의해 영업조건이 개선된 점(리모델링 등), 재산세 등 임대인의 세 부담 증가, 물가인상율, 금리 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임.
- 임대보증금 기준 이상의 상가에 대해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함.
- 재개발, 재건축, 상가철거 등을 이유로 임차계약종료이전이라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함.

3.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사업에서 상가에 대한 손실보상은 영업손실보상으로 함. 상가세입자들이 재개발 이주로 인해 손실되는 권리금, 이주에 따라 종전 영업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형의 자산손실 등이 모두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 때문에 용산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1인당 5억 4천만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주가·상가세입자들은 각 1,680만원 및 2,5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음.
- 폐업보상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4개월 휴업보상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행법으로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상가세입자가 주변의 동일한 규모의 상가로 이주하여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함
- 영국에서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을 이용하는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적 성질을 가지는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무형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GOODWILL(영업권)에 대해서도 보상함. 그 외 재고가치의 감소분이나 이주에 따른 판매손실, 새로운 이주장소에서의 광고비, 전화 등과 같은 사무실집기 등의 새로운 고정자산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새로운 영업용 부동산의 구입 및 수리·개조비용에 들어간 비용도 보상하며, 영업이전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과 법적비용 기타수수료도 청구가능함.
- 프랑스의 손실보상의 기본이념은 피수용자가 수용전과 유사한 상태를 회복하는데 두고 완전 보상 원칙을 채택함.
- 일본 역시도 우리 권리금과 유사한 임차인의 영업을 통하여 이룩한 이익에 대한 수익을 임차인에게 지급함. 이와 관련해 일본의 토지수용법은 경우 휴업 또는 영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단골고객을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액을 부대적 손실액으로 파악하여 보상에 포함.

■ 방법

- 토지보상법개정을 통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여 종전수준의 영업상태로 회복 가능하도록 보상을 현실화함. (영업권, 즉 권리금이 세입자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함)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현행의 영업손실보상에서 폐업보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4. 중소기업 역량강화

공약

1. 자발적 중소기업조직(협동조합 등) 육성

－ 현행 중소기업조합법, 중소기업 및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제 법률을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지원 및 상인조직활성화에 부합하도록 개정.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또한 금융지원, 경영자금 지원으로 협소하게 설정된 재정지원 영역을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함.

2. 지역신용보증재단확대

－ 정부와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특례보증 규모 확대함.

3.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중소기업계정 활성화

4. 중소기업 중심 지역공동물류체계 확립

－ 대기업들 중소기업 식자재 납품업 시장으로의 진출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로 제한함과 동시에 지역의 도소매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함.

1. 자발적 중소기업조직(협동조합 등)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대기업의 지역유통,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서, 재래시장과 같은 밀집된 상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인들의 조직화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상인조직률은 감소추세이며, 2008년 현재 25.5%에 불과함.
- － 조직된 상인들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의 경우는 20%미만에 불과하고, 대부분 임의단체와 재래시장상인회의 형태임.

- 친목회 수준을 조직을 제외한 자발적 상인조직의 부재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하고 중소기업들의 협업사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방법

- 현행 중소기업 및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제 법률을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들의 지원에 부합하도록 개정.

① 전국협동조합, 지방조합 등이 조합의 규모와 사업 영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 중소기업 신규인력 채용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용장려정책을 활용, 지원함.

② 지자체는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조직운영,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단체 건설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기초하여 신청할 경우, 그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1~2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지원함.

- 중소기업들의 협업적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조합법에 의한 적극적 지원.
- 중소기업조합법은 사업조합,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들이 자체의 협업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기존의 동종업종 협동조합이 있더라도 추가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도록 하고 있고 조합결성을 준비 중인 유통 상인들의 예처럼 대기업의 유통산업장악시도에 맞서기 위한 도매업, 소매업, 업종을 넘나드는 다양한 상인조직들의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상인조직들이 자체의 정책연구역량을 갖추고 자율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자립력과 정책 현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재정적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의 느린 걸음과 그에 따른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손실이 늘어나면서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생각하는 단계에 이른 소기업,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것.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정착된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 영업행태와 그에 따라 높아진 은행 문턱 탓에 생긴 자금난은 이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충분히 해소하는 데는 미치지 못함. 2009년 기준 총 보증규모는 11조원, 보증업체 수는 60만개에 지나지 않음. 이는 2008년 기준 총 보증규모는 6조원, 보증업체 수는 40만개였던 것이 지난 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폭 늘어난 것임.
-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보증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소기업을 비롯한 중소상인인의 자금줄에 숨통을 터주어야 함.

■ 방법

- 정부와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보증 규모 확대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확대
-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확대
- 저신용(신용등급 6~9등급) 근로자생계신용보증 확대

3.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중소기업계정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중소기업계정을 별도 운영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으나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제조업과 다른 자영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자금, 공동물류시설, 시장재개발에 한정되어 있는 기금 사용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복잡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상인 조직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함.

■ 방법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처를 다양화함.
단순 현안 파악에 머물러 있는 유통산업통계를 넘어서는 지역유통산업 현황 통계 등 실태조사 사업,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업 모델 연구 등 정책개발 사업, 상인협업조직 등 중소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전문인력(사무, 회계, 교육, 연구 등), 기능 활성화 소요자금 지원.
- 물류센터 건설 등에 지원되는 정부 자금을 기금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인조직의 접근성을 높이고, 1년 단위 예산계획으로부터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함.

4. 중소기업 중심 지역공동물류체계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대형물류센터 건설과 선별적 지원방식의 기존의 정책을 답습할 경우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하고 상인들의 자체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특히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들가게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이들에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 중소상인을 포함한 공동의 물류망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물류망에 포위될 수 있음.
- 실재 중소기업청이 이마트와 나들 가게에 상품공급을 위탁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몇몇 슈퍼마켓협동조합들은 실제로 이마트와 공동구매계약을 맺기도 함.
- 중소유통상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사로부터 구매단계부터 대기업처럼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도매물류시스템의 선진화 및 구조혁신과 중소상인들의 조직화(협동조합) 사업이 필요함
-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등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60%, 지자체가 30%, 상인자체 부담이 10%로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자부담이 5%로 하향 조정됨. 기존에 슈퍼협동조합이나 체인사업협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데 이 제도가 활용되었는데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방법

- 지역 내 중소기업 중심 지역 물류유통망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제조업에서 유통, 소매점에 이르는 지역경제의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감.
- 공동물류센터 건설 지원제도 활용하여 일부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생활잡화사업조합, 지역별 유통업조합 등 도매업과 소매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유통산업발전 모델 등 상인들의 자생적 요구에서 출발한 맞춤형 물류시스템 설계를 지원함.

통합진보당 2012 총선

빈민 공약

- 함께 사는 세상, 빈민도 당당한 시민 -

1. 노점상 생존권 보장!

- (1) 노점 말살정책 폐기
- (2) 도시의 다양성과 생존권 차원의 노점정책 수립

2. 용역 폭력 일소!

- (1) 재개발·노점 현장, 용역 폭력 근절

3. 강제퇴거 금지, 주거기본권 실현!

- (1) 강제퇴거 금지
- (2) 세입자·영세가옥주 주거권 보장
- (3) 노숙인 정책 전환

민생국장 이은정(mumung@paran.com)

1. 노점상 생존권 보장!

공약

1. 노점 말살정책 폐기

⇒ 단속 위주의 노점정책 폐기. 노점상인 자율적 질서 존중

2. 도시의 다양성과 생존권 차원의 노점정책 수립

⇒ 도시 미관 재구성 위주의 전시행정사업 폐기. 다양한 상행위 형태의 하나로 노점을 인정.
노점 생존권 보장

1. 노점 말살정책 폐기

■ 현황

- ⇒ ① 노점을 도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정도로 취급하는 정책 담당자와 관료의 편협한 시각이 여전함
- ② 노점상을 정당한 시민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3등 시민’으로 취급
- ③ 노점은 법질서 측면이 아닌 인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 목표

⇒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노점 단속정책을 폐기

■ 방법

- ⇒ ① 단속 위주의 노점정책 폐기
- ② 노점상인 자율적 질서 존중

2. 도시의 다양성과 생존권 차원의 노점정책 수립

■ 현황

- ⇒ ① 노점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불가피한 생존 수단의 한 방편임
- ② 단속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비공식부분 실체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 정책 전환이 필요
- ③ 취약계층의 생활근거지는 도시, 도심 내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효적인 조치임
- ④ 현행 법체계 안의 노점상

법률	내용
도로법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유 행위, 단속의 근거
민법	사회통념상 일정기간 일정한 장소 점유 시 점유권 인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노점상을 도로사용료 및 점용료 감면의 대상으로 규정
소득세법	노점상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
지방세법	지방세 납세 의무 면제
식품위생법	신고 또는 허가 받지 않고 하는 음식업은 불법

■ 목표

⇒ 노점 생존권 보장. 노점을 다양한 도시의 한 얼굴로 인정하여 관리

■ 방법

- ① 도시 미관 재구성 위주의 전시행정사업 폐기. 다양한 상행위 형태의 하나로 노점을 인정. 노점 생존권 보장
- ② 일자리 전환 지원
- ③ 노점상에 대한 불법 갈취행위 근절(처벌 강화)
- ④ 법체계 정비
- 지원을 규정한 내용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강화. 상충하는 법률은 현실에 맞추어 보완.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처벌 조항 유예·완화

2. 용역 폭력 일소!

공약

1. 재개발·노점 현장, 용역 폭력 근절

⇒ [경비업법] 개정 : 용역 폭력근절, 용역의 폭력·불법 행위에 경찰 개입과 제지 의무화. 의무사항 불이행시 경찰 처벌 및 처벌내용 강화

1. 재개발·노점 현장, 용역 폭력 근절

■ 현황

- ⇒ ① 재개발·노점 현장 등에서 행해지는 용역의 폭력 수준이 도를 넘은지 오래
② 철거 현장에서는 용역회사의 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고, 경찰은 용역의 횡포를 묵인하여 폭력을 방치·조장하는 상황
③ [경비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나 2012년 2월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음

■ 목표

⇒ 철거 현장에서 용역의 폭력 행위 완전 일소, 경찰권의 올바른 집행 견인

■ 방법

⇒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전환

(1) [경비업법] 개정

- ① 시설주와 용역회사(경비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
- ② 용역(경비원)의 자격과 휴대물·복장·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을 엄격히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수위 높임)
- ③ 용역의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의 개입·제지를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시 경찰에 대한 처벌 강화

3. 강제퇴거 금지, 주거기본권 실현!

공약

1. 강제퇴거 금지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정. 가건물(비닐하우스) 거주자 기본권 인정

2. 세입자·영세가옥주 보호, 주거권 보장

⇒ [주거기본법] 제정. 재개발과정에서 영세가옥주·세입자의 피해 방지 및 권리 보장. 재개발 논의 과정에 세입자 참여 보장

3. 노숙인 정책 전환

⇒ 재활 위해 현실성 있는 노동 기회 부여

1. 강제퇴거 금지

■ 현황

- ⇒ ① 무차별적인 뉴타운·재개발정책에 의해 도시는 획일화 되어가고, 영세가옥주와 주거세입자·상가세입자는 주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강제 퇴거 당하고 있는 실정
- ②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2012년 2월 현재 통과되지 않고 국회 계류 중

■ 목표

- ⇒ ① 뉴타운·재개발지역 세입자와 영세가옥주가 강제 퇴거 당하지 않고, 생존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함

■ 방법

⇒ 관련 법규 제정·개정 및 정책 전환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① 실질적 보상이나 이주대책 없이 강제로 진행되는 철거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인정하는 주거의 권리를 보장
- ② 모든 종류의 강제퇴거는 합법적인 집행권한을 획득한 이후 퇴거 집행 전 3개월 이전에 고지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퇴거가구에 대한 주거 및 생활대책을 마련
- ③ 특히 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거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 ④ ▲불법 철거·퇴거 현장 내 폭력행위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명시 ▲재정착을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정의 ▲재정착 대책의 구체적 내용 명시 등을 포함하여 제정

(2) [행정대집행법] 개정

- ① 현행법은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 수속을 거치지 않고 대집행 가능'하도록 규정. 절차 생략의 요건 강화 방향으로 개정

(3) 가건물(비닐하우스) 거주자 기본권 보장

- ① 가건물(비닐하우스) 거주자, 사회 정의와 인권 차원에서 기본권 인정
- ② 기본권 보장이 우선
→ 주거와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철거 금지

2. 세입자·영세가옥주 보호, 주거권 보장

■ 현황

- ⇒ ① 뉴타운·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에 찬성하지 않는)영세가옥주와 세입자(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는 원천적으로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음
- ② 재개발에 찬성한 영세가옥주의 경우에도, 사업 완료 이후 추가부담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결국 주거권이 박탈당하게 됨
- ③ 지자체는 도시미관 재구성이라는 명목으로 엄연히 도시의 구성원인 영세 시민을 배척하는 정책을 시행 중

■ 목표

- ⇒ 뉴타운·재개발지역에서 영세가옥주와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지역재개발 논의 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하여 권리 행사 가능하도록 함

■ 방법

- ⇒ ① 재개발과정에서 세입자와 영세가옥주의 피해 방지 방안 마련
- ②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강화(주거지원 예산 확대)
- ③ 재개발지역 세입자 참여 보장
→ 세입자 대표조직 구성하여 대표에게 조합원 자격 부여
- ④ 세입자 보상제도 개선

▲세입자 및 가옥주 이주대책, 상가세입자 폐업에 준하는 보상

▲공공지원을 통한 선 대책 후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 구상권 행사 가능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반시설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강화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 주거안정성 평가

▲임대인 명도금지, 세입자보상에 대한 조합의 구상권 청구 금지, 임차인 계약갱신권 보장 등

- ⑤ 저소득 무주택자 임대료 지원.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 ⑥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 ⑦ 임차인 자치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3. 노숙인 정책 전환

■ 현황

- ⇒ ①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된 노숙인의 숫자가 줄지 않는 상황
- ② 대부분 노숙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을 경우 재할하여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나 정책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 ③ 노숙인 정책은 주로 시설에 대한 지원 위주로 수립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재할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많음

■ 목표

- ⇒ ① 노숙인이 완전히 재할을 이루어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함

■ 방법

- ⇒ ① 시설 수용 위주가 아닌 현실적인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 ② 노숙인에 대한 사회 공동 책임의 인식 확인
- ③ 쪽방촌 등 무허가건물 거주자에게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보장 차원에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19대 국회의원 선거 분야별 공약 해설집

2권. 사회분야 공약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사회복지 공약.

보편적 복지 실현! 사각지대 해소!

1. 아동수당 도입!
2. 기초노령연금 인상!
3. 실업부조 도입!
4. 기초생활보장제도 획기적 보장!
5.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6. 무상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30%확충
7. 공공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보장
8. 국가가 책임지는 장례 ; 공공상조회 설립

연구실장 김수철(suchul-kim@hanmail.net)

보편적 복지 실현! 사각지대 해소!

핵심공약

○ 보편적 복지 확대

1. 아동수당 도입!

⇒ 미래를 위한 인적투자, 빈곤아동의 보호, 그리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아동수당 도입. 6세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지급 연령을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

○ 복지 사각지대 완전 해소

2. 기초노령연금 인상!

⇒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016년까지 약2배 증액(현행 A값의 5%→10%)하고, 지급대상을 현행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함. 장기적으로 약 3배 증액(현행 A값의 5%→15%)하여, 명실상부한 기초연금 역할을 하도록 함.

3. 실업부조 도입!

⇒ (노동 공약에서 해설)

4. 기초생활보장제도 획기적 보강!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조정, 최저생계비 현실화 조치로 빈곤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요람에서 무덤까지 ; 생애주기형 사회서비스 제공

5.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저렴한 비용에,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6. 무상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30%확충

⇒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임.

7. 공공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보장

⇒ 시군구별 지역거점 공공노인요양시설을 10% 확대. 요양비 부담 인하

8. 국가가 책임지는 장례 ; 공공상조회 설립

⇒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국가 장제비 지원 강화, 병원 장례식장 비용의 합리적 통제로 민영상조회의 소비자 피해와, 장제비 부담을 을 낮춤.

1. 아동수당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1) 아동의 보편적 기초생활 보장

- 출산율이 70년 4.53명에서, 06년 기준 1.13명으로 현격히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지만, 보육환경 부실과 사회양극화로 양육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
- 한부모 아동 증가, 빈곤과 학대 등 아동의 위기 심화 등 취약계층에 놓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
- 기존 아동수당은 시설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위기가 발생한 이후 대책의 성격이 강함. 사전 예방적이며, 빈곤아동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대응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2) 세계 88개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우리나라에 부재

- 북유럽 국가는 물론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 국가 대다수가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 88개 국가에 이름.
- 핀란드는 04년 기준 전체 아동(만 19세 이하) 인구의 19.9%에 100유로(1자녀 기준, 둘째 자녀 110.50유로)를 지급.
- 세계 경제 규모 15위권 국가에서 아동수당 부재는 복지 후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징표.

■ 목표

- 즉각적인 아동수당의 도입

■ 방법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동일 연령대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함
- 다만 소요 재원의 감안하여 지급 연령을 6세에서부터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 재원

- 광정숙 의원실 추계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할 때 3조 1,525억

원이 소요됨.

○ 연도별 소요비용 (단위 : 천명, 억 원)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7차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 아동수 ¹⁰⁾	2,627	3,045	3,455	3,857	4,250	4,634	5,014
연간지급예산액	31,525	36,542	41,463	46,284	50,996	55,608	60,165
전년대비 추가소요액	-	5017	4921	4821	4712	4612	4557

※ 2011년1월1일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으로 하고 국가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2012년 7세 미만의 아동, 2013년 8세 미만의 아동, 2014년 9세 미만의 아동, 2015년 10세 미만의 아동, 2016년 11세 미만의 아동, 2017년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는 규정에 의하여 1차 연도 6세 미만에서, 7차 연도 12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계.

10) 「통계청 인구추계」 2011년 현재 6세 미만, 2012년 7세 미만, 2013년 8세 미만, 2014년 9세 미만, 2015년 10세 미만, 2016년 11세 미만, 2017년 12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함.

2. 기초노령연금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베이비부머(55~63년생) 758만 명중 11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49.2%인 373만 명에 불과.
- 실직(失職)·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상태(연금 가입자이지만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있는 사람이 101만 명(13.4%), 전업주부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84만 명(37.4%).
- 이 세대의 54.5%(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연금 가입자)만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나머지 절반은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함
-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9만 원가량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최근 3년 평균소득의 5%에 불과해 노후생계를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

■ 목표

- 2016년 이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 단계적 3배 인상 계획 국회 입법화

■ 방법

- 현행 기초노령연금(현행 하위 70%, A값의 5%)을 명실상부한 기초연금 수준을 확대 발전
- 19대 국회 임기 내에 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 하위 80%에게 지급.
- 중장기적으로 A값의 15% (약 26만원) 수준으로 확대

■ 재원

-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9.4만원 지급(A값 5%) 시 2조 9665억 소요. 따라서 A값의 10%로 인상할 경우 약 3조원 추가 소요.

3. 실업부조 도입!

(노동 공약에서 해설)

4. 기초생활보장제도 획기적 보강!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으나, 까다로운 수급 조건으로 인해 실제 빈곤함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광범위하게 가구가 놓여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0%(약 150만 명)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4.27%,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28%,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빈곤층이 0.25%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임.
-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실제 빈곤한 가구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목표

- 사각지대 200만 가구의 수급권을 단계적으로 보장

■ 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60만 가구, 소득인정액 0.85억~1.35억 초과 84만 가구(1.35억~2억 26만 가구),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로 추산.
- 최저생계비 기준 현실화,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 이를 통해 최대 200만 가구의 수급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함.

소득수준					
PL의 120%→ 실제 최생 → 현최저생계비→ (PL)	차차상위 빈곤계층(마)				
	차상위 빈곤계층(라)				
			비수급 빈곤층(다)0.25%		
	L 비수급 빈곤층(가) (4.27%) J	H 부양 특례 F	D 기초보장 (3.0%) B	C 수급자 A	G 재 산 특 례 E
					K 비수급 빈곤층(나) (4.28%) I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 (소득, 재산)		일반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자동차기준	
				재산수준	

5.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과 더불어 산후조리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음
- 산후조리 시기는 신생아 간호와 새로운 가족을 위한 적응과 책임이 시작되는 시기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시기.
- 그러나 산후조리서비스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 등 서비스의질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2주 기준 2백만 원 내외의 산후조리에 따른 비용 역시 가계가 전적으로 부담.
-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통해 국가가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 방법

- 시군구별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 공공의료 전달체계로 확립된 지방의료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산모방·신생아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을 통해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산후조리비용은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해당 기관들과 협의 후 국가가 지원. 산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최소화하도록 함.

6. 무상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30%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 옴. 이미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만0~5세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가 전액지원되며,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소득하위 70%에 양육비가 지원

2011	2012	2013(정부 발표 계획)
만0세 100%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만0~2, 만5세 100%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만0~5세 100%아동 보육료 전액지원
만1~5세 하위70%아동 보육료 전액지원	만3~4세 하위 70% 보육료 전액지원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10~20만원 지급	장애아동 84개월 미만 지급	소득하위 70%로 지원 확대

- 그러나 보육시설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수요자의 다수가 공공보육시설 이용을 원하고 있으나 공급이 충족하지 못해 많은 1000~2000명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를 양산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국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5.3%에 불과.
- 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목표

-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 방법

- 1동1국공립 보육시설 원칙으로 접근성 높은 공공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
- 주민센터신축 시 보육시설 설치 유도 등 공공건물을 활용
-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 민간보육시설의 공공보육시설 전환 추진
-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을 위한 공동 직장보육시설 확충
- 광역별 재정자립도에 기초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용 지원으로 지역간 균형 확충을 실현

7. 공공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08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비율(치매 유병률)이 8.4%로 42만 명. 또 20년 마다 치매노인의 수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반면 국공립 시설 비중이 낮아 서비스의 제고와 비용통제에 어려움 발생. 국내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율은 4%에 불과. 일본의 10.2%나 독일의 10%에 비해 절반 수준. 국공립시설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민간기관이 집단적으로 비용 인상을 요구하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국가가 이를 조절 통제할 정책적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움.
- 또한 민간시설 요양비용이 월 2백만 원 가량인데 반해, 국공립은 월 50만원 수준.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에 신청자가 물리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200~300명의 대기자가 발생
- 이에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질 높고, 저렴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

■ 목표

- 시군구별 지역거점 공공노인요양시설을 10%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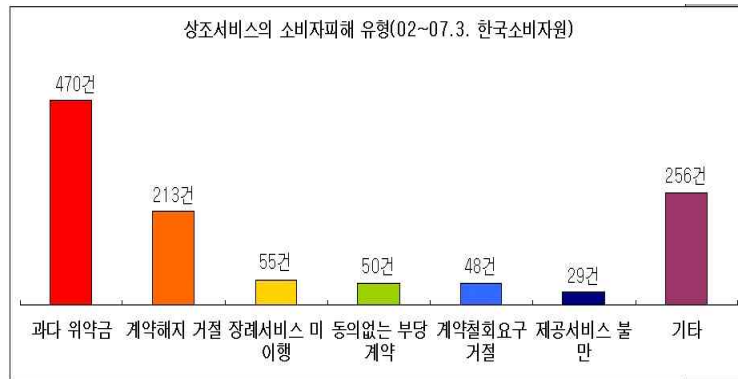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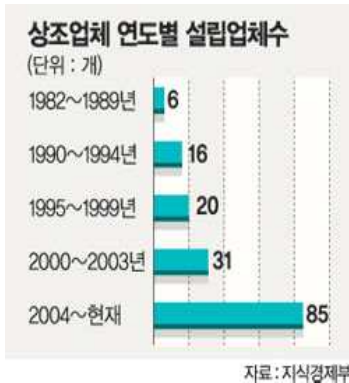
■ 방법

-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실시
- 기초자치단체가 공공 장기요양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을 설치
-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협의에 따라 직접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요양시설 과잉지역의 경우 민간요양시설에 공공요양시설 운영비용에 기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이용비용을 공공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함.

8. 국가가 책임지는 장례 ; 공공상조회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 ‘우후죽순’ 식 상조업체 증가와 소비자 피해 확산 경험.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 2000년대 초반 전국 100여 곳에 불과했던 상조회사는 2009년 기준 400여 곳. 과다 위약금, 계약해지 거절, 장례서비스 미이행 등 소비자 피해 확산.



- 최근 보험회사 ‘현물형 상조보험’ 출시, 장례비용 스스로 준비하는 풍토 형성. 상조보험의 인기는 보험업계의 새로운 경향. 2011년 하반기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나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현물형 상조보험 출시.
- 938만원에 이르는 높은 장례비용(한국소비자보호원 추산)과 지속적인 핵가족화로 장례비용 및 장례서비스를 가족과 친지가 아닌 상조업체와 민간보험사에 의존.
- 시장에서 장례서비스를 구매하는 장례행태는 존엄한 장례에 대한 욕구, 장례에 따른 비용 부담, 1~2인 가구 확산으로 심화될 전망. 사회양극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는 노인인구 증가
- 따라서 지나친 ‘시장의존형 장례’를 억제하고 ‘공공의존형 장례(공공상조)’를 제도화할 필요성 대두.

■ 목표

-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 방법

가. 국가 장제비 지원제도의 강화

- 1) 장제비 인상 및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빈곤층의 장제비 지원
 - 평균 장제비가 1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 장제비 지원이 합리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음.
 - 장제비 지원 대상 확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장제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 수급자가 전체인구의 3.0%(150만 가구)임. 사각지대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비수급 빈곤층 4.27%, 재산 기준 초과 빈곤층 4.28%, 최저생계비 초과 빈곤층 0.25%로 사각지대는 수급자의 약 3배.¹¹⁾ 따라서 사각지대 빈곤층 장제비 지원에 따른 비용을 아주 거칠게 추산할 때, 현행의 135억의 약 3배, 즉 약 4백여 억 원 추가될 것.

2)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및 장제비 부가급여 부활

-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 확대, 총액예산제 등 제도개선,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재정의 합리화 및 급여확대를 전제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제비 지원’을 부활할 수 있음.

나. ‘지역공동체 상조 사회적기업(또는 주민자치 조합)’ 육성

- 1) 장제비 지원 및 장례서비스가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전달체계는 주민에 밀착한 ‘기초자치단체’에 소관 책임을 두고 ‘공공상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2) 지방자치단체는 상조 가입, 예치금 관리, 현금 및 현물 지원 등의 업무를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상조 사회적기업(또는 주민자치 조합)’을 설립하여 수행토록 관리 감독하여, 지역공동체 취지가 반영되도록 함.
- 3) ‘상조 사회적기업(또는 주민자치 조합)’은 지역사회에 희망하는 모든 주민이 공공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한편, 공공상조 저소득층의 장제비 및 장례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4) 국가는 지역에 거점을 둔 ‘상조 사회적기업(주민자치 조합)’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공익적 장제비, 장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함.
- 5) 국가는 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등 유형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 시행의 수범사례를 마련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하도록 함.

다. 장례비용의 통제

1) 대형병원 장례식장 부대사업 가격의 합리적 통제

- 대도시 경우 넘비현상 등으로 대형병원 중심의 장례식장이 독점하는 구조. 장례비용의 합리적 가격통제 필요

2) 콜센터를 통한 장례 상담 서비스 제공

- 장례의 경우 가까운 지인 사망이라는 조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고, 장례식장의 정보에 주도성이 강함.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한 장례의 정보제공을 강화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의료 공약.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1.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미취학아동 완전 무상의료!!!

2. 산재보험과 의료급여의 공적의료보장 기능 강화

3. ○○ 시·군·구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

4. 우리 동네 도시보건지소 건립!

5.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6.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7.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8.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9.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무상의료를!

10. 건강불평등 해소! ‘우리지역 건강마을 사업’ 시범실시로!!

연구실장 김수철(suchul-kim@hanmail.net)

1.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핵심공약

1.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미취학아동 완전 무상의료!!!

⇒ 미용, 성형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도입. 미취학아동 본인부담 면제로 완전무상의료 실현.

2. 산재보험과 의료급여의 공적의료보장 기능 강화

⇒ 모든 산재직업병 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현행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사후 평가제도 실시. 의료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50% 이하인 400만 명까지 확대

3. ○○ 시·군·구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

⇒ 시·군·구 지역에 거점을 둔 국립병원 1개소 건립.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 갖추고 입원 및 중증질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를 제공.

4. 우리 동네 도시보건지소 건립!

⇒ 인구 5만 명 당 도시보건지소 1개소 설치로, 걸어서 찾을 수 있는 1차 공공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5.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 서민을 위한 전국민 주치의서비스의 도입.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년 단위로 국민이 주치의를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권 보장.

6.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 진료비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민영의료보험의 규제를 위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7.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중장기 입원 환자와 가족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8.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 OECD국가 평균 대비 절반에 불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간호인력 1인이 돌보는 환자 수를 대폭 낮추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9.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무상의료!

⇒ 정부행정, 국회 및 지방의회 입법에 ‘건강불평등 해소,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종합의료기관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원운영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무상의료 실현.

10. 건강불평등 해소! ‘우리지역 건강마을 사업’ 시범실시로!!

⇒ 소득, 지역에 따라 유병률, 사망률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건강영향평가 제도화하고, 우리 지역 건강마을 사업을 시범 실시

1.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미취학아동 완전 무상의료!!!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급여 영역이 넓어 보장성이 60%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며, 반면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높음. 이로 인해 중증질환의 경우 가계 전체가 위협받는 사례가만 들어지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 진료비의 공적부담을 높이고, 개인 부담을 낮추도록 함.

■ 목표

- 치료 목적 모든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장성 90% 달성
-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이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도록 함.

■ 방법

1) 보장성 90% 달성과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도록 함.
- 급여를 확대한 전제 위에서 연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제한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이 1백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함.

<건강보험 급여 확대 프로그램>

-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의 60%를 차지하는 주요 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한다.
- 모든 병원의 간호인력을 서울지역 대형병원 수준으로 늘려서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각종 치료재료와 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심장질환자와 뇌졸중 환자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한다.
- 노인틀니와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위와 같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더해, 만약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한다.

2) 급여 확대 재원 마련 방안

- 국고지원 40% 확대 및 대기업 건강보험기금(매출 0.1%~1%) 조성
- 현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총액약가 포함)로 전환
- 건강보험 누진률 적용 및 건강보험 상한선 폐지

2. 산재보험과 의료급여의 공적의료보장 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산재보험으로 적용된 산재직업병 환자는 8만 명 내외, 그러나 순전히 사고성재해(손상)로 인한 산재환자만 107만 명으로 추정됨. 직업성 질환까지 포괄할 경우 수백만 명의 산재환자가 산재보험 적용 못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부문(간병 등) 노동자 등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매우 많고, 산재직업병 발생의 원인 제공자인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 산재 후 원직장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보험으로서 기능을 거의 못하는 산재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급성기 치료 후 재활이 중단되어 결국 재발과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질병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사업주의 산재은폐를 조장하고, 기업 간 격차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체 국민의 3%에 불과할 정도로 빈곤계층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함

■ 목표

- 모든 산재직업병 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현행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사후 평가제도 실시
-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병인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의료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50% 이하인 400만 명까지 확대

■ 방법

-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개정
근로복지공단 사전승인절차 폐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구분 및 산재보험 신청 업무 대행, 산재심사평가원 도입, 적용 대상 범위, 단일보험요율제도, 산재치료 후 원직장복귀 의무화 제도 등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개정
- 사업주 부담 증가를 통한 재원 조달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 증액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 지원

3. ○○ 시·군·구 ‘지역거점(혁신)형 국립병원’ 건립!

■ 현황 및 문제점

- 이른바 ‘빅5’ 병원으로 쏠림이 심각하며, 이들 소수 대형 병원과 압도적 다수 병원간의 양극화 심화.
- 지역병원의 황폐화가 심각하며, 이제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위기까지로 심화.
- 이로 인해 지역 간, 계층 간 의료 수준의 격차가 날로 심화.

■ 목표

- ○○ 시·군·구 ‘지역거점(혁신)형 국립병원’ 10개 건립
-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관 지정

■ 방법

1) ‘혁신형 국립병원’ 신설 방식

- 시·군·구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이 부재하고, 총 병상 수가 과잉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역거점(혁신)형 국립병원’을 건립
- ‘지역거점(혁신)형 국립병원’은 자립적이며 안정된 운영을 위해 가능한 4백 병상 규모를 지향하며, 우수한 의료 인력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도록 함.
- 4년 동안 총 10개소를 건립하도록 함.

2) 민간병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방식

-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이 부재하나, 지역 총 병상 수가 과잉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의료기관 평가(보건복지부 시행) 등급의 일정 기준 이상, △의료급여·행려 환자 등 취약 계층 의료안전망 기능과 실적,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실적, 보건교육 실적, △만성질환 관리·재활보건·정신보건 사업 실적, △격리병동 설치, 유지 등 전염병 진료 대비의 수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의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역거점병원 지정 또는 설립.
-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우수의료 인력확충, 의료장비현대화, 환자편익시설 강화.

4. 우리 동네 도시보건지소 건립!

■ 현황 및 문제점

-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12.7%에 불과하고, 그 비중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치료위주의 진료 행태로 광범위한 미충족의료가 발생
- 도시지역 보건소의 경우 사·구에 하나씩 설치되어 접근성이 떨어짐. 보건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거동이 불편하여 또는 거리가 멀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기본 진료, 건강증진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치의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목표

- 인구 5만 명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설치

■ 방법

- 동마다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원칙 확대
- 예방 및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 등 사업 수행
- 도시보건지소 확대 추이는 아래와 같음

구 분	‘07년	‘08년	‘09년
설치 개소수	6개 소	14개 소	6개 소
설치 지자체	· 대구 북구 · 경남 진해시 · 전북 전주시 · 광주 북구 · 인천 계양구 · 경북 김천시	· 서울 노원구 · 부산 북구 · 부산 해운대구 · 인천 서구 · 인천 부평구 · 광주 서구 · 광주 광산구 · 충북 청주시 · 전남 목포시 · 전남 광양시 · 전북 정읍시 · 대전 중구 · 충남 천안시 · 제주 제주시	· 서울 송파구 · 서울 광진구 · 광주 남구 · 경기 안산시 · 경기 시흥시 · 경남 김해시

■ 소요재원

· 시설비 : 1.3백만 원/평 × 190평 = 247백만

· 임차료 : 4백만 원/평 × 190평 = 760백만

· 장비비 : 198백만 원

* 1개소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2억 5천만 원

5. 전 국민 주치의서비스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1차의료는 전체 의료이용량의 90%를 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
- 국민 1인당 1년간 외래진료 빈도가 네덜란드 5.6회, 영국 5.1회, 뉴질랜드 3.2회 등으로 주치의 제도가 실시되는 나라의 빈도는 6회 미만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1.8회로 이들 나라의 2~3 배.
- 1차의료의 공공화, 건강불평등의 해소(건강형평성 제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
-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 주치의제를 실시하였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 목표

- 서민을 위한 전 국민 주치의서비스의 단계적 도입

■ 방법

- 자발적인 참여 중시, 1차의료에 대한 배타적 적용(2, 3차 의료기관의 의사가 주치의가 되는 것을 금지), 제도의 단계적 시행, 시범사업을 통해 프로그램과 운영모형 개발, 자발적 참여를 통해 대상 확대, 안정화된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식
- 세부적 시행방안
 - ① 적용대상 : 전 국민.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은 당연적용
 - ② 주치의 자격
 - 방안 1 : 전문과목 관계없이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 부여
 - 방안 2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개원의만으로 제한
 - ③ 주치의 등록 및 전달체계
 - 주치의는 자율적 선택, 1년 단위로 교체 가능
 - 주치의 1인당 등록자 수에 상한선 설정(1인당 2,500명)
 - ④ 주치의 제공 서비스
 - 환자의 평생 가족주치의로서 지속적인 진료 제공

- 건강위험평가, 건강교육 및 질병관리교육, 건강상담, 방문진료, 예방접종서비스 등 실시
- 2, 3차 의료이용 상담 및 결정, 입원치료 결정

⑤ 재원 및 재정운영

- 등록관리료 : 정부부담 70%, 본인부담 30%
- 인두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주재원으로 활용

⑥ 지불보상제 : 행위별수가제 + 인두제

6.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1) 의료민영화 중단

-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이 취약하고 매우 시장 친화적임
- 예방, 치료, 재활 등 필요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시장성이 좋은 치료부분만 과잉 공급되어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음
- 10대 사인 중 7개가 만성질환 정도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비중이 커졌으나 그에 조응하는 서비스 공급체계가 형성되지 못함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인하여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됨

(2)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 2008년 기준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 33조원, 급격한 시장 팽창, 의료비의 급등 원인
- 가계 부담 증가, 의료이용의 불평등 증가, 의료비의 지속가능한 관리 불가능
- 무분별한 탈규제로 인하여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이 50%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비 보장 기능이 취약함. 재벌 기업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팽창과 지급률 축소를 주도함

■ 목표

-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허용 영리병원 설치 중단
-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 방법

<보충형민영의료보험법의 주요 내용>

- ‘보충형’ 보험임을 분명히 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관계를 정립
- 보건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의 관리 감독하도록 함
- 민영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구성 보험사업자의 등록 및 보험 상품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민영의료보험의 유형을 정립하고, 비교 공시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정액으로 약정된 보험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 정액형 의료보험으로 한정
- 민영의료보험 가입 및 급여에 차별 금지 및 소비자 보호 실현

7.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조사결과 환자의 간병료 지출은 월평균 81만원으로, 보호자의 87.2%가 ‘가계부담 된다’고 느끼며, 직업이 있는 보호자 중 64.5%가 휴가·휴직·퇴직을 경험한 바 있음. 간병서비스를 보험에 적용하여, 간병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함.
- 한편 병원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업무 과다,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어, 환자의 안전과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병원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안정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목표

- 2012년 준비시기를 거쳐, 2013년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충분한 간호 및 간병 인력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 방법

- 간병서비스를 간호사 및 간병인이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간호인력 1인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환자 수는 2.0명 미만, 종합병원 및 병원의 환자 수는 2.5명 미만으로 조정.
- 간병인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자격제도 도입 및 엄격한 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강화함.
- 합리적이고 분명한 협업 시스템을 확립하여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함.
-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시켜, 간병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함.
-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간병비 본인부담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도록 함.

8. 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이 6.7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37명에 불과해 3분의 1에 불과함.
- 반면 특수·고가 의료장비 보유 현황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함. 인구 1백만 명당 CT보유수는 OECD 평균이 22.97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35.66대이며, MRI 수도 OECD평균 11.13대에 두 배에 이르는 20.15대로 나타났음.
-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의 환자를 돌봄으로 인해, 의료인은 높은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며, 그만큼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짐.
- 한편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걸맞은 의료 인력을 수급할 필요성이 대두됨.

■ 목표

- 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보다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

■ 방법

- (가칭)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제정
 - 특별법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실행 계획을 담아내며, ‘(가칭) 보건의료인력확충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정부가 책임 있게 진행하도록 함.
-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간호사 협회가 주도하여 ‘The Ratos 법’을 제정함. 2004년 시행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환자 수 대비 간호 인력의 수를 비율로 정하였음.

9.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무상의료를!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환자나 국민의 참여 없이 결정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MB 정부 들어와서 그러한 경향이 강화됨
- 참여의 정도가 권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서 참여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크게 나타남.
- 공공병원, 보건소 등 기관 단위의 참여는 더욱 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주민 및 환자의 이해에 기초하여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반하는 경우가 존재함
- 정책의 의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는 정책이 정말 필요한 환자나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만, 실제 정책이 채택될 때에는 공급자의 이해가 주로 반영되는 결과가 발생함

■ 목표

- 정부 정책 과정, 위원회,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운영에 참여 구조 확보
- 국회 및 지방의회에 ‘건강불평등 해소,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 종합의료기관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원운영위원회’ 구성

■ 방법

- 지속가능한 무상의료를 위한 국민 협약 추진
- 정부와 국민, 환자가 중심이 되고 의료공급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국민 협약 추진
- 협약의 추진 주체로 ‘건강불평등 해소,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
- 정부조직법 개정, 직제 개편 등을 통한 참여 구조 확보

10. 건강 불평등 해소! ‘우리지역 건강마을 사업’ 시범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2000~2004년 사이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성·연령이 보정된 사망자 수는 자치구별 현격한 차이를 보임. 강남, 서초 지역과 강북 지역 사망자 수 차이는 최대 525명으로 나타났음.
-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도 유병률과 사망률이 다르게 나타남. 소득 하위 20%의 암발생률은 소득 상위 20%에 비해 1.49배~2.06배 높음.
- 다른 나라의 경우 예방과 치료를 넘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소득,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건강불평등 효과를 낳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목표

- 16개 광역시도 1개 이상 ‘건강불평등 없는 건강마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6년 이내 230여개 기초단체 당 1개 이상의 건강마을 사업 실시.

■ 방법

-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보건의료공급자, 시민대표, 공무원, 보건의료정책전문가로 구성하는 건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환경영향 평가, 성인지적 평가와 같이 정부 정책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사후에 평가.
- 건강영향평가위원회 평가에 기초하여 시군구 내 건강마을 지정 지역에 대한 통계자료에 건강형평성 지표를 개발하고 축적함. 불평등 해소 및 전반적 건강 향상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 안 마련, 실시.

<건강불평등 해소 계획 실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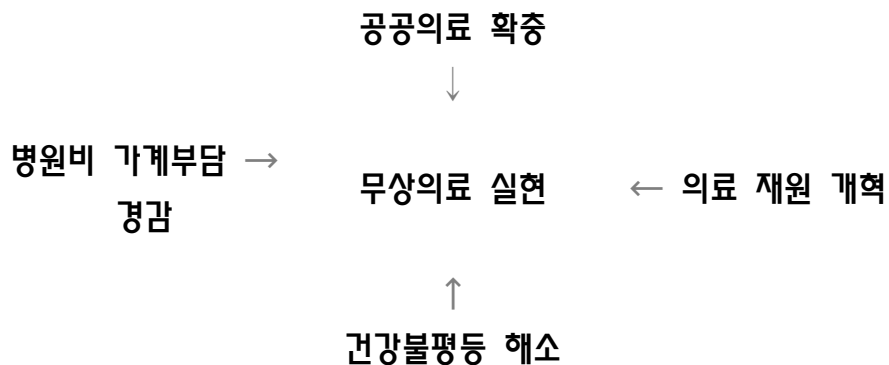
• 영국

- 에치슨 보고서를 통해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각종 정책의 불평등 감소 방안을 고려할 것 △가임기 및 임신 여성과 어린이들의 건강 향상을 우선 할 것을 권고함. 이에 따라 정국 정부는 영아사망률 및 기대 수명 격차를 1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초음파검사를 포함한 산전 스크리닝, △신생아 진료 의뢰 개선, △모유수유 장려, △예방접종, △흡연퇴치, △건강한 학교프로그램, △빈곤아동 지원 사업 등을 입안.

• 네덜란드

- 2020년까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기대수명의 차이를 12년에서 9년으로 낮춘다는 목표 설정. 낮은 사회계층 가구 어린이의 고등교육 진입을 1989년 12%에서 2020년 25%로 확대, 만성질환자 임금근로자 비율을 95년 48%에서 2020년 57%로 확대, 초등학교 학력 인구의 흡연율, 비만 등 비율을 각각 32%, 9% 이하로 축소, 교육수준 간 의료기관 이용의 차이를 98년 수준으로 유지 등 구체적 목표 제시.

■ 참고 : 무상의료 실현 4대 전략, 15대 과제



전략 1. 공공의료 확충

1.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도시형보건지소 확대
2. 병상 및 의료기기 허가제
3. 서민 주치의제도 도입
4. 국공립대 의대 무상교육 및 국가의료인 복무제도
5.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판매 금지

전략 2. 병원비 가계부담 경감

6. 치료 목적 모든 병원비에 건강보험 적용, 2016년 보장성 90% 달성
7. 본인부담상한 100만원 실현
8. 상대빈곤선 기준 이하 보험료 면제
9.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전략 3. 공공의료 자원 개혁

10. 국고지원 40% 확대 및 대기업 건강보험기금(매출 0.1%~1%) 조성
11. 현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총액약가 포함)로 전환
12. 건강보험 누진율 적용
13. 건강보험 상한선 폐지

전략 4. 건강불평등 해소

14. Health Action Zone (불평등 없는 건강마을) 시범 실시
15.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통합진보당 2012 총선

교육 공약.

1.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학벌체제 타파
2. 직업교육 Upgrade! 전문대,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3. 무상교육!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4. 대학입학자격고사제로 입시경쟁 해결
5.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
6.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7.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을!
8.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
9.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10.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1.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12. 학교회계직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

연구위원 손우정(roots96@hanmail.net)

연구위원 강원모(yuanmo@naver.com)

교육혁신! 꿈이 아닌 현실로!

핵심공약

1.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학벌체제 타파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서열화·사교육 없는 진짜 교육을/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특성화 계열 집중 육성

2. 직업교육 Upgrade! 전문대,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전문대학 국공립화,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개편/전문대학, 폴리텍대학 통폐합/4년제 대학,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 및 전공영역폐지, 폴리테크닉으로 이관/교육환경개선 위한 재정지원 강화

3. 무상교육!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대한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4. 대학입학자격고사제로 입시경쟁 해결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수능시험, 대학별본고사 폐지,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

5.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

2013년도부터 특목고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 일반고 전환/2012년부터 자사고 설립 중단, 2013년부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6.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교육활동의 다양화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건 확충

7.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

2015년까지 초등 20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감축/2020년까지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20

명으로 감축

8.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장/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교장선출
보직제 도입

9.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교원평가 폐지/교원성과급제 폐지, 학급 담임 수당 현실화/학교 조직체계 개편, 교육행정업무 전
담인력 배치

10.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사회적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소년법원과 교화
시설 확충

11.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대통령 직속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25명의 상임위원회와 100명의 국
민배심원단으로 구성

12. 학교회계직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

공공기관선진화정책 폐기/교육감에게 기능직공무원 임용권 부여/학교회계직원을 기능직공무
원으로 단계적 임용전환

1.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학벌체제 타파

■ 현황과 문제점

o 한국은 과도한 사립대 의존형 고등교육 구조: (재적 학생 수 기준 국공립대 22%, 사립대 78%)

일반대 전일제 학생 비율(%)

	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국공립	22	100	86	97	93	25	90	67	
정부지원사립			1	3					100
독립형사립	78		13		7	75	10	33	

* 출처: 2010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사실상 사립대학이 사기업이나 다름없는 성격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한 법제도 조건(사립학교법)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사립대는 부실·비리·부정·부패 경영과 이른바 ‘고액 등록금 장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고 재산을 축적
- 2009년 사립대학 학교회계 수입총액 중 등록금 비중 63.6%(일반대 62.9%, 산업대 74.4%, 전문대 65.0%)/대학 설립 주체인 국가와 학교법인 부담은 각 3%에 불과/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수익률 등 법적기준치 미달/ 등록금수입이 수입총액의 50% 미만인 대학은 소수에 불과(4년제대학 16.0%, 전문대 11.9%)
- 대학교육을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민간 재원 의존도가 OECD 평균의 2배, EU19 평균의 3배 이상.

■ 목표

- 대학서열화와 고질적인 학벌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상향평준화
- 수도권 인구과밀, 학생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전국 대학 균형발전(국토 균형발전과 연동)
- 공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는 국립대체제와 특성화된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체제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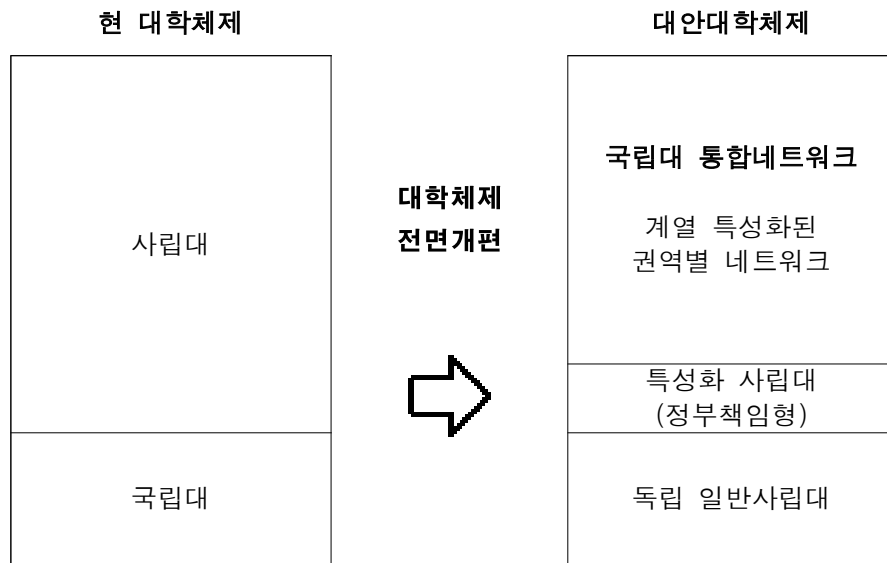
■ 방법

1.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서열화·사교육 없는 진짜 교육을!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이른바 ‘3통’ 방안)로 운영되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전면화
 - 엄격한 기준으로 부실사립대를 퇴출시키고 국립대로 적극 편입: 교수, 학생, 교직원 적극 승계
 - 국립대 네트워크 규모는 1단계 총 정원의 50%, 2단계 총 정원의 80%수준(정부책임형 특성화 사립대 포함)으로 확대시킴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의 효과로 불필요한 대학진학이 자제되고,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국립대 정원이 천천히 늘어도 총 정원의 점유율이 급속하게 늘게 됨
 - 국립대가 포괄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국가 지원

- 국립대 교과과정과 차별화되지 않는 사립대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국가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킴: 과도기 기간 동안 정부지원형 사립대 유지
- GDP대비 교육재정확대와 사립대 지원금의 국립대 전환을 통해 국립대 무상교육 지향

2.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특성화 계열 집중 육성!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시행 후에도 남아 있을 캠퍼스 별 서열체계를 제거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로 특정 계열을 집중 육성시킴
- 각 지역의 집중육성 계열로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연구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보장함
- 현재 인구나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현 서울대)은 비인기 순수기초학문 관련 단과계열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인기·응용학문 관련 단과계열을 집중육성 대상으로 선정함: 국토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



■ 재원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

※ 재원관련 세부 내용은 무상교육 분야 참조

2. 직업교육 Upgrade! 전문대,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 현황과 문제점

- 2010년도 국공립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4,784명(전체 입학정원의 2.1%). 나머지 98%가 사립 대학에 다님
- 사립전문대학의 연간등록금은 600만원
- 일반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개설하면서 직업 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 위상 하락, 서열화된 대학체제의 최하위에 배치
- 전문대학졸업자들의 월임금의 중위값은 150만원(서울소재 일반대학 졸업자 218만원, 비서울 권 소재 일반대학졸업자 180만원)

■ 목표

-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체제 수립
- 학벌, 임금차별 없는 전문 직업 인력 육성

■ 방법

- 전문대학 국공립화,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개편
-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통폐합 -> 폴리테크닉(2~4년) 체제로 전환
- 4년제 대학,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 및 전공영역 폐지, 폴리테크닉으로 이관
- 국가의 적극적 개입 통해 임금격차 축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재정

	2014	2015	2016
전문대학정원 25만 명	2조	2조	2조

*2011년 입학자 수는 249,693명임

*1인당 대학등록금지원액400만원(전문대학평균등록금600만원-고등학교수준 등록금200만원)×25만 명= 1조원

*2개 학년 지원 : 2조원

(보론) 국립대 체제개편 로드맵

■ 사전 준비기(2012~2014)

- 국립대 관리·운영을 위한 국민위원회 설치: 학생, 교직원,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와 시민배심제를 활용한 위원회 구성(국립대 교과과정, 발전방향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기구 설치)
- 준비기간 동안 국립대·사립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시(부실대학 제외)
- 학력학벌금지법 즉시 입법화, 문화적 조치와 병행하여 추진

■ 1차 대학 구조개편(2015년~2016년)

-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순차적 시행, 기존 재학생은 학위명 선택권 부여
- 국립대 입시: 자격 인증제(절대평가)를 기반으로 계열별 구술면접, 입학사정관제, 논술고사 등(상대평가) 결합: 자격 인증은 내신(절대평가)과 자격시험을 결합하고 점진적으로 상대평가 비율을 축소
- 거점별 집중 육성 계열 신입생 정원 점진적 확대. 해당 계열 실험·실습 기자재와 교수인력 등 순차적 결집. 특성화 계열부터 등록금 인하 추진
- 일정비율 이상의 야간강좌 개설로 직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대학이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스템 안착화
- 사립대에 대한 국가지원의 점진적 축소와 국립대에 대한 지원 점진적 확대, 부실 사학 퇴출과 국립대체제로의 흡수를 병행 추진: 총 정원의 50%이상

■ 2차 대학 구조개편(2017~2020)

- 일반 종합사립대 지원 대폭 축소, 자율권 부여
- 사립대와의 적극적 통폐합으로 국립대 정원 규모 급격히 확대: 정부책임형 특성화 사립대를 포함하여 총 대학 정원의 80% 수준
- 국립대 지원 증대로 완전 무상교육 실현
- 지역 계열별 국립대학체제 구축 완료

- o 탄력 정원제 실시: 자격고사, 적성상담 등을 통한 절대평가 전면 시행. 입학정원을 탄력화 함으로써 상대평가 동기 최소화

	준비기 (2012-2013)	1차 체제개편 (2014-2016)	2차 체제개편 (2017-2020)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립대 통합전형, 통합학 점, 통합학위 전면 시행 ·지역 거점 집중육성 계열 추진 ·국립대 정원 총 대학생·정 원의 50%수준으로 확대	·지역 거점별 특성화 대학 체제 구성 완료 ·통합전형에서 절대평가 전 면도입, 탄력정원제 운영 ·국립대 정원 총정원의 80%수준(정부책임형 사립 대 포함)으로 확대 ·무상등록금 실현
사립대	·정부 지원형 사립대로 반 값등록금 실현	·부실사립대 본격 퇴출	·특성화 사립대에 대한 정 부지원 유지 ·비특성화대학 정부지원 중 단, 자율성 보장
대국민	·국민위원회 설치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전면 시행	·평생교육시스템 등 필요에 의한 대학진학 안착화

3. 무상교육!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재원 및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2007년)

	초중등 및 중등후 비고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교육단계		
	정부재원	민간재원	계	정부재원	민간재원	계	정부재원	민간재원	계
OECD평균	3.3	0.3	3.6	1.0	0.5	1.5	4.8	0.9	5.7
OECD전체	3.3	0.3	3.6	0.9	1.2	2.1	4.6	1.6	6.2
EU19평균	3.3	0.1	3.5	1.1	0.2	1.3	4.9	0.4	5.4
한국	3.1	0.8	4.0	0.6	1.9	2.4	4.2	2.8	7.0
핀란드	3.6	0.0	3.6	1.6	0.1	1.6	5.5	0.1	5.6

* 2010 OECD 교육통계

** 정부재원: 국제 재원의 직접적인 교육기관 지출금액과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가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포함됨

*** 민간재원: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순비용임.

- 초중등 단계에서 민간 부담률은 GDP 0.8% 수준으로 약 8조원, 대부분 학부모의 손에서 직접 지출.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각종 학교 체험활동 비용 등으로 구성
- 대학의 민간 부담률은 GDP 1.9% 수준으로 약 19조원, 이중에서 12조 원가량이 대학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지출

■ 목표

- 고등학교까지 전면적 무상교육
- 사립대 반값등록금 당장 시행
- 국립대 재정회계법 저지! 반값등록금에서 무상교육으로!

■ 방법

- 초중고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교육

	내용	총액 (2008년 기준)	비고
초등학교 (사립제외)	학교급식비.	약 9천억원	2008년에는 절반 가까이가 급식비로 추산되나, 최근에는 무상급식이 확산되면서 학부모 부담이 축소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방과후 활동 등이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의 비용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약 9천억원	
	계	1조 8천~9천억	
중학교	학교운영비	약 3천억	2011년 현재 강원, 경기, 경남, 전북, 광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학교 운영비 징수(약 3천 억정도)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폐지 예정.
	학교급식비,	약 9천억원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약 3천억	
	계	1조 5천억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약 2조	
	학교운영비	약 5,500억	
	학교급식비	약9천억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약5,500억	
	계	약 4조	
총계		약 7조5천억	

- 중앙정부의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 정부도 일정한 교육비 지원을 담당
 - 일시에 전면적인 무상 교육 실시가 어려울 경우, 정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면적인 무상 교육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
 - 우선순위: 초등부터(낮은 급별 우선), 학교급식비나 등록금부터(필수교육비 우선), 농어촌 지역부터(어려운 지역 우선), 전문계고부터(어려운 계층 우선) 무상 교육을 확산

○ 국립대

- 현재 교과부에서는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합하여 합법화하려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을 준비중
- 통합진보당은 국립대재정회계법을 결사 저지할 것이며, 수업료의 경우 기존 국립대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의 50% 미만 이하로만 인상하도록 할 것
- 국립대 등록금은 즉각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이후 무상교육을 지향

○ 사립대

- 반값등록금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으로 충당

○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법을 강력 추진(5대 입법과제)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내국세의 10%로 고등교육 재원 마련.
- 학생 등록금 1/2 이상을 학교와 학생에 교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부 기준 등을 마련.
- 법인분담금 미납대학, 교원확보율,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준칙 등 교부금의 교부 제한 기준 설정.

2. 고등교육법 개정

- 교원확보율의 기준을 법제화 함. 단계적으로 교원확보율을 맞추게 함.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 법인전입금 강제. 미납시 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 가능.

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법인전입금 강제. 미납시 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 가능.

5. 사립학교법 개정안 <2008. 12. 상정>

-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을 규제하며, 그 사용내역과 사용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재원(고등교육 부문)

○ 사립대학을 정부재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가 관건.

○ 정부 재정 지원 확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 가능.

○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7%를 교부금으로 지원할 경우.

- 2012년에만 11조원 지원.

- 교부금 대상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 6.3% 적용 시 2016년에는 14조원 지원.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추계액>

(단위 : 조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내국세		158.9	168.9	179.5	190.9	202.9
교부금 추계액	5%확보	7.9	8.4	9.0	9.5	10.1
	6%확보	9.5	10.1	10.8	11.5	12.2
	7%확보	11.1	11.8	12.6	13.4	14.2
	8%확보	12.7	13.5	14.4	15.3	16.2
	9%확보	14.3	15.2	16.2	17.2	18.3
	10%확보	16.2	17.6	19.2	21.0	22.9

주1) 내국세액 : 전체 내국세 중 목적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의 합계액을 말함.

주2) 교부금 대상 조세의 '2007~2011년 연평균 증가율 6.3%'를 적용해 추계

o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 법정부담금 추계액>

(단위 : 억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법정부담금	3,877	4,207	4,564	4,952	5,373
부족액	2,326	2,524	2,738	2,971	3,224

주1) 법정부담금 : 2005~2009년 법정부담금 연평균 증가율 8.5% 적용 추계

주2) 부족액 : 법정부담금의 60% (2005~2009년 평균 법정부담금 부족률 57.7%)

- 최근 5년간 교·직원 법정부담금의 법정부담금 전입 부족률이 57.7%. 교·직원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학교회계에서 지출. ([별첨3] 참조)
- 법정부담금만 제대로 확충해도 5년간 1조 4천억 원 교육재정 확충.

o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정해진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법적인 기준만큼 학교에 내고 있지도 않음.
- 법에 규정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와 그에 따른 수익을 학교로 내도록해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에 공공적 책임성을 강조함.

o 교육재정 확충 현황

〈 고등교육 재정 확충 총액 1-내국세 7% 〉

(단위 : 억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내국세(7%)	111,228	118,235	125,684	133,602	142,019
법인전입금	2,326	2,524	2,738	2,971	3,224
합계	113,554	120,759	128,422	136,573	145,243

주1) 내국세 7%, 법정부담 전입금 부족액 전액 부담 적용 금액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및 법인전입금 확충으로 2012년에만 총 11조 4천억 원 재정 확충 가능.
- 국고 11조 1,228억 원
- 법인전입금 2,326억 원
- 5년간 64조원의 교육재정 확충 가능.

〈 고등교육 재정 확충 총액 2-내국세 10% 〉

(단위 : 조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내국세(10%)	16.2	17.6	19.2	21.0	22.9
법인전입금	0.2	0.3	0.3	0.3	0.3
합계	16.4	17.9	19.5	21.3	23.2

주2) 내국세 10%, 법정부담 전입금 부족액 전액 부담 적용 금액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및 법인전입금 확충으로 2012년에만 총 17.2조원 재정 확충 가능.
- 국고 16조 2천억여 원
- 법인전입금 2,326억 원
- 5년간 98.3조원의 교육재정 확충 가능.

4. 대학입학자격고사제로 입시경쟁 해결!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는 상위서열의 대학과 인기학과 진학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서, 초·중·고교육은 이러한 입시에 종속되어 영수국 등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파행적으로 운영
- 대학입시경쟁에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동반되고 있으며, 대학입시를 매개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이 고착화

연도별 총 사교육비 현황(단위 : 억 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총 사교육비	200,400	209,095	216,259	208,718
실질 총 사교육비	180,703	178,257	179,022	167,645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05년=100)	110.9	117.3	120.8	124.5

■ 목표

- 경쟁 입시를 자격고사로 대체
- 절대평가제로 인한 사교육 대폭 절감

■ 방법

-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수능시험, 대학별본고사 폐지, 대학입학자격고사(내신포함)로 전환(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자격 부여)

학교단위이수		졸업자격고사
▶ 절대평가방식 확립 ▶ 급별, 수준별 교육목표 수립 ▶ 다양한 교육과정 ▶ 다양한 평가 방법	+	▶ 서술식 평가 ▶ 후기중등교육목표 달성여부 ▶ 졸업자격과 국공립대 입학 자격의 2 단계 성취

o 학교단위 이수

- 국가수준의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평가의 통제를 탈피하고 급별 교과별 교육목표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평가 모형을 학교에 제시
-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
- 목표도달 평가(Pass/Fail) → 목표 미도달 학생에 대한 제도적 보충수업 완전학습 지향
- 교사들의 평가권을 보장하며 이에 따른 교육활동의 책무성을 강화

o 졸업자격고사

-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교육의 완성단계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졸업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 학생들의 상대적인 서열을 짓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목표지향적인 절대 평가
- 교과지식의 암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
- 신설된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졸업자격고사관리 위원회가 시행하는 평가
- 매학기별 단위이수평가를 통하여 정해진 단위를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한 이수단위를 확보했을 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가짐
- 지필고사의 과목은 언어, 논리, 교양으로 하며, 문항은 선다형을 지양한 서술식

o 대학전형

- 통합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통합, 계열 통합)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수한 생활기록과 입학자격 여부를 토대로 국공립대학에 입학토록 함
-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국립대학의 총정원 내(2차 구조개편 시에는 탄력정원제 도입)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
- 전형자료는 학교생활기록, 입학자격,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활용
- 사립대학은 학생생활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자체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 2차 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사립대에 대한 국가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일정정도 부여 함

5.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공약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설립(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자율형사립고 49개 서울지역에 27개교 설립)

<특목고 자사고 상황 (2011년)>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계
자사고	27	2	3	4	2	2	2		1	2		2	1		1		49
외고	6	8		1	1	2		1		1	2	2	1	1		1	27
국제고	1	1				1		1									4
과학고	3	2	1	1	1	2	1	1	1	2	1	1	1	1	1	1	22

- 특목고 특히 외고의 경우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목적과 상관없이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 상위서열 대학의 진학 통로 역할 수행
-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 3배의 등록금이 소요되는 상류층의 학교
- 외고와 자율형사립고는 등록금600~1,000만 원대의 일반학교와 구별되는 상류층학교로 사회적 위화감 조성
-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평준화지역에 비해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저하, 비선호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열패감 심화와 자존감 상실 등의 반교육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목표

- 상위서열대학 진학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외고와 자사고 중심의 ‘계층분리학교체제’를 고교평준화체제로 대체
-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고교평준화 확대를 통하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며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
- 학교를 선호-비선호학교로 구분하여 학교서열화를 낳는 학교선택제 폐지(통학거리에 따른 학교 진학)
- 지역별 학교 간 격차 해소, 고교의 균형발전 도모

■ 방법

- 2013년도부터 특목고(외고, 국제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일반고로 전환
- 2012년부터 자사고 설립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2013년부터 기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6.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 현황과 문제점

-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상대평가제 유지: 일제고사로 초등학생까지 점수경쟁
- 과도한 학습량과 난이도로 대별되는, 발달단계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교육과정 편성, 교과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조장하는 비민주적, 힘겨루기식 교육과정 개편 등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2009교육과정 중단해야 함
- 주5일제 전면시행의 책임을 가정과 학교에 전가: 경제적 여건과 지역 여건에 따라 주5일제에서도 양극화 현상 우려, 현행 입시체제로 인한 주말 사교육 확대 및 학교 보충, 자율학습 확대 등이 예상

■ 목표

- 일제고사 폐지, 국가수준 및 시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집 시행 금지
- 내신 석차 백분율을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로 전환, 교사별 평가제 도입
- 선진국 수준으로 학생의 주당 수업시수 감축 및 연간 수업일수 축소
- 2009개정교육과정 폐지하고 교육과정 전면 개정

■ 방법

- 교육과정 전면개정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 민주적 논의절차를 통해 교육과정 발전방향 수립. 과거의 교육과정과 입시에 의한 왜곡을 거울삼아 “누구나 함께 발달할 수 있는 협력교육과정, 수업시수 감축과 학습량 적정화, 수준별 반편성 금지, 교사의 교육과정편성권과 평가권 부여“를 기본 방향으로 함.
- 교육활동의 다양화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건 확충
 - 학급당 인원수 감축, 교사1인당 수업시수 감축,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운영구조 전환

7.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을!

■ 현황과 문제점

○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

〈표1〉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 (2009)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한국	28.6	35.1	35.9
OECD 평균	21.4	23.7	통계 없음

출처 : '2011 OECD Education at a Glance)

-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익명화되며,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사할 수 없음: 학생 개개인의 성장 속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 불가능
-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 출산율 감소로 초중등 학생들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현 정부는 오히려 학급수를 줄이려 시도

■ 목표

- 1단계 : 2015년까지 초등-20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감축
- 2단계 : 2020년까지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

■ 방법

2015년 증설학급수와 교원증원 예상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예상인구수(2015)	2711536	1523145	1878317
예상취학생수(2015)	2666815	1499994	1791097
예상학급수(초등 20명, 중고등25명 기준)	133340	59999	71643
증설학급수	9407	1626	13461

증원교원수(초등: 학급수x1.5/ 중학교 학급수x1.8/고등학교 학급수x2.0)	14111	2928	26923
연간 증원교사수(2013~15. 3년 평균)	4703	976	8974

- 2015년에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를 25명으로 하였을 경우 초중고 모두 약 25000여 학급을 증설해야 하며, 교사 정원은 약 4만 4천명도를 늘려야 함
- 학급수의 경우 현재 초중고 총 24만여 학급이기 때문에 약 10%의 학급이 늘어나는 것
-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교실공간 규모를 축소하여 학급교실 확보

〈표3〉 2020년 증설학급수와 교원증원 예상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상인구수(2020)		1321129	1418802
예상취학생수(2020)		1301048	1352920
예상학급수(20명 기준)		65052	67646
증설학급수		5052	-3997
증원교원수		9094.	-7995.

- 2020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학생 수 변화 거의 없음(2015년도 수준 유지)
- 중학교는 5000여개의 학급 수 증설과 10000여명의 교원증원이 필요
-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급속하게 감소하여 4000여개의 학급이 감소하고 교사정원도 8000여명 정도가 감소(불과 2000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재정은 거의 필요 없음)

8.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

■ 현황과 문제점

- 여전히 한국의 학교를 지배하는 것은 관료와 사학 자본. 교육의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는 교육정책의 결정에서부터 학교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대상화
-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에 교사-학부모-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독선적인 교장 권력을 견제하기에도 버거운 실정
- 자율성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자발성과 책임성이 존재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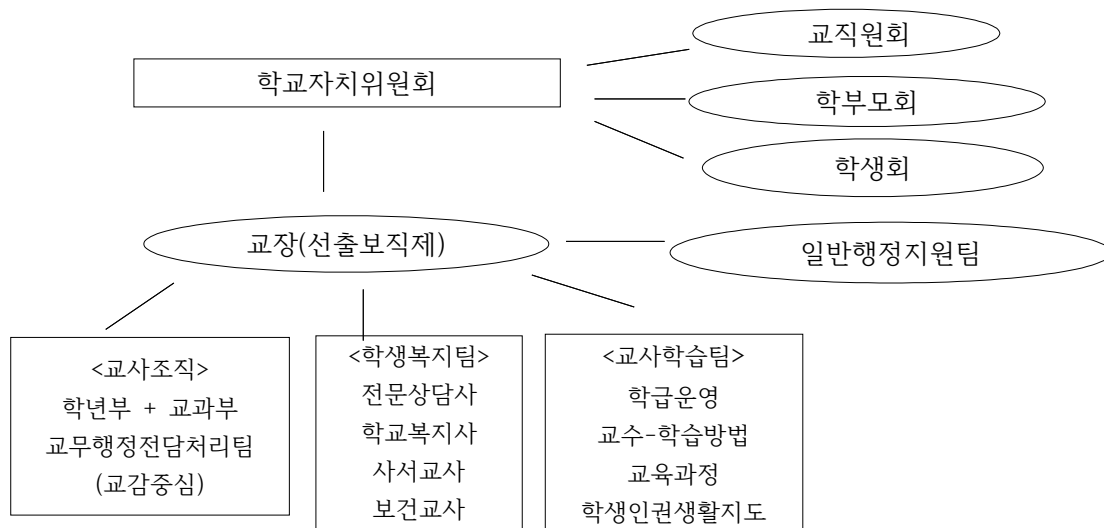
■ 목표

-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 통한 학생권리 보장
-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 방법

-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장
 - 집회, 결사, 출판, 표현의 자유 보장
 -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 보장
 - 학생관련 규정에 대한 의결권 부여
 - 학생회장 선출 직선제 전면화, 학생회비 예산편성권·집행권 보장
-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 교직원회: 학교 혁신, 교육과정, 인사, 예·결산, 학교장 선출, 교육활동 등의 분야에 대한 의결권 부여
 - 학부모회: 학교운영,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 평가, 견제 역할 부여
 - 학생회: 학교운영, 학칙제정, 학교복지에 대한 의결권 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무회의 참관
-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교장 자격 : 일정한 교직 경력을 지닌 현직 교사 (교장자격증제 폐지)
- 선출 방식 : 교직원회의에서 복수 추천(교황식) →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단에서 선출 →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교장 역할 : 교직원회의 주재, 학생회와 학부모회 지원, 학교내외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관리(학교의 행정 및 재정 관리), 교원의 공동학습연수 등 지원



9.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 현황과 문제점

- 현 정부 하에 학교평가와 교원평가가 강화되고 이를 근거로 차별적인 보상제도(교원성과급)가 확대됨
- 경쟁만능주의와 교사의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평가지표는 교육 주체 간의 불신만 초래하며 불필요한 잡무만 양상하고 있음: 9개월 동안 무려 6천여 건의 공문 생산. 행정능력이 중시되는 형국

〈표1〉 공문 처리 현황 (서울의 한 고등학교학교 사례, 2011. 1.1~9.31)

공문접수 건수	내부 공문생산 건수	외부 발송 건수	총계
5525	5871	685	12081

■ 목표

- 일방적 경쟁중심의 평가 폐지
- 교육-행정업무 분리

■ 방법

- 교원평가 폐지
- 교원성과급제를 폐지, 학급 담임 수당 현실화(30~50만원)
- 학교 조직 체계를 교육중심으로 재편, 교육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10.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현황과 문제점

- 초등 5, 6학년, 중등 1, 2학년은 학교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
- 학교폭력의 원인은 학생의 개인적 심성 때문이라기보다 사회적 양극화, 가족해체, 인터넷과 대중문화의 영향, 붕괴된 교육환경, 교실 내 권력관계 등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함
-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 역시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경찰과 외부 인력의 개입보다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 자체의 해결능력과 전문성을 지원하는 행정체제 마련이 필요함

■ 목표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 학교 자체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마련

■ 방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
 - 학교장의 분명한 책임 명시(즉시 처리 방안 마련/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계획수립)
 - 학교단위의 가해학생처리 남용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징계결정에 대한 심사)
 - 가해 학생 치유 등을 위한 절차와 시설 의무화
- 사회적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소년법원과 교화시설 확충
 -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제의 내실화
 - 위기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 회복 여건 제공
 - 통고제도 등의 홍보와 법원 내 대안교육시설 확대

II.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현황과 문제점

- 시도교육청(16개)과 시군구 교육청(180여개)은 비록 시군구 교육청이 최근에 명칭이 지원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위에 군림하는 행정기관
- 교육청의 중심 인력인 장학사들은 그 명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정처리 일꾼에 불과하며, 그 직책은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
- 반면, 교사(교수)-학생-학부모 등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육주체들은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
- 또한 교육과 이해관계가 깊은 각계각층의 사회 세력들도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
- 국가교육의 미래는 국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목표

- 전국 국립대 운영방향, 초·중등 교육과정 등을 논의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 방법

- 국가위원회의 위상
 -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
 - 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
- 구성
 - 교원 (교사+교수), 학생(대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정부 추천인(교육전문가)로 상임위원회 구성(25명 구성)
 - 비례충화표집 방법을 이용한 무작위 추출을 통한 국민 배심원단 형식의 위원 선발(100명 규모)
 - 일반위원(배심위원)은 1년에 1~2차례 소집되며, 상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최종 승인함
- 조직
 - 유초중등 위원회, 대학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 교육청을 장학위원회와 학교지원센터로 재편

12. 학교회계직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

■ 현황과 문제점

- 학교회계직은 학교장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고용되어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조에 노출되어 있음
- 전국 초·중등 교육기관에 10만 명 이상의 학교회계직(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급식, 행정, 전산, 방과후, 행정보조 등의 다양한 업무로 학교운영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총 교육기관 종사자의 20%에 달함
- 학교라는 가장 공공적인 기관부터 사회적 차별의 표상인 비정규직 제도를 통해 운영된다는 것은 교육과 정의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못한 것임
-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학교회계직을 교육현장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 목표

- 학교회계직에 대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정규직화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차별적 관행을 타파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차단함

■ 방법

-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즉각 폐기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가 ‘선진화’로 포장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는 모범을 보여야 함
- 교육감이 학교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직접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예 : 법원의 경우 법원공무원규칙에 각 급 법원장이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
- 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근무 실태와 고용조건을 조사하고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임용전환 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그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임용전환을 실시(목표율 70%) 하고 전환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부문도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통합진보당 2012총선

문화 공약

우리의 꿈 : 문화예술이 꽃피는 사회

1.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기본 권익
2. 지역·계층 간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
3.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과 권리 보호
4. 민족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다양성 실현

연구위원 추은희(yingi06@naver.com)

1.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기본 권익

공약

1. 공교육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 공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문화예술 교양 교육

2.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호회

⇒ 풍물, 민요, 연극 동호회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호회

⇒ 누구나 생활체육에 참여하여 즐기도록 공공 체육활동 지원

1. 공교육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특징은 공교육의 축소와 사교육의 지속적인 확대라는 모습으로 나타남.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공교육 축소, 사교육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000억 원(초등학교 9조 7,000억 원, 중학교 6조 300억 원, 고등학교 5조 1,000억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초등학생 24만 5,000, 중학생 25만 5,000원, 고등학생 26만 5,000원),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86.8% 중학교 72.2% 고등학교 61.1%.
- 예체능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예체능교과는 3조 8,925억 원이며 음악 1조 7,569억 원, 미술 6,577억 원, 체육 1조 2,005억 원이 소요됨. 학생 1인당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 4만 5,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교 7만원, 중학교 1만 6,000원, 고등학교 3만 1,000원),

사교육 참여율 33.3%(초등학교 58.2%, 중학교 14.3%, 고등학교 10.4%).

- 문화예능 교육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에 맡기는 것은 문화예술 교육 내용의 왜곡,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부름.
- 공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소양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함.

■ 목표

- 공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교양 교육
- 문화예술 교사 일자리 창출
- 사교육비 절감
- 문화예술을 통한 1인 1기로 공동체 문화를 배우고 문화감수성을 키우기

■ 방법

○ 문화예술 실기교사 채용

- 정규직 실기교사(음악, 미술,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 분야)로 채용하여 정규수업과 방과 후 활동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실기교사 3명씩 배치<2011년 한국교육진흥개발원 학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6,210개교, 중학교 3,186개교, 고등학교 2,282개교>

○ 교육 내용

- 민족 예술 교육과 다양한 예술 교육 : 농악, 민요, 탈춤, 판소리 등(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문화 뉴딜에서도 민족 예술 교육이 중심이었음.) 민족 예술과 다양한 예술 교육
- 프랑스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업(PAC)과 같이 지역 예능인,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 활동가 등이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

2.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호회

■ 현황 및 문제점

- 생활체육 동호회는 지역마다 잘 조직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삶에 역동적인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음.
- 이에 비해 문화예술 동호회는 아직까지는 잘 조직되어 있지 않음. 문화예술 분야가 전문가의 역량을 갖춘 특정인들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탓이 큼.
- 그러나 예술가의 특별한 재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참여해 자기가 예술 활동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함.
- 생활체육 동호회 못지않게 문화예술 동호회도 삶에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정신을 북돋우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 활동의 진정한 가치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있음. 그러나 현행의 갤러리, 공연장, 음악당, 아트센터 등 각종 건축물 중심의 문화예술 전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함.
- 문화예술 활동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커뮤니티 아트” 개념을 도입할 필요 있음. “커뮤니티 아트”란 대중의 예술 참여를 통해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개념임. 가장 손쉬운 문화예술 참여의 공간은 동호회라 할 수 있음.
-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동호회(문학, 연극, 풍물, 노래, 사진 등)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목표

- 남녀노소 누구든지 문화예술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술 영역에 참여
-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문화를 만나고 회원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음

■ 방법

- “문화 보편권” 차원에서 누구나 동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 문화예술 동호회에 대한 지원(재정 지원, 문화예술 인적 지원, 공간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은행 설립,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 프로그램 은행” 운영.
- . 공간 지원 : 공공 문화시설을 야간과 공휴일에 개방. 현재는 공공 문화시설이 야간에는 닫혀 있으며 무인 경비시스템을 두고 있음.
- . 문화예술 동호회의 공연 지원

3.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호회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각종 프로스포츠의 출범, 국제경기 유치 등을 계기로 더욱 엘리트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음.
- 국가가 키운 엘리트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국력의 성장이자 국민의 자부심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체육정책의 최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 때문에 국가의 자원도 일부 전문 선수들을 육성하거나 국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집중되고 있음.
- 생활체육 동호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은 생활체육을 제대로 누리지 못함. 주 5일제를 통해 늘어난 여가시간과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는 커가고 있지만 서민들은 그러한 욕구를 해소할 공간을 찾기 쉽지는 않음.
- 앞으로 체육 패러다임을 “보고 열광하는 체육”에서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 “몇몇 엘리트 중심의 체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로 바뀌어야 함.
-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확대해야 함.

[표] 연도별 체육시설 지원 현황

(단위 : 개)

	1989~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국민체육센터	55	16	12	6	7	13	29	20	158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227	104	116	100	141	108	200	140	1,136
축구센터/공원	-	-	26	-	-	-	-	-	26
마을단위체육시설	2,760	130	127	169	142	150	-	-	3,478
농어촌복합시설	-	-	-	7	7	7	7	5	21
농구장/족구장	-	-	33	15	20	20	-	-	88
학교기본체육시설	-	-	-	-	-	-	25	25	50
레저스포츠시설	-	-	-	-	-	-	11	8	19
합계	3,042	250	288	297	317	298	272	198	4,988

■ 목표

-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여 기초자치 단체에 종합생활체육시설 마련을 지원.

■ 방법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마을 단위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시설 확대.
- 시군구에 생활체육 지도사 파견
- 생활체육 지도사들과 주민들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프로그램 제안.

2. 지역·계층 간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

공약

1. 문화예술 향유 소외 해소(지역·계층)

⇒ 농촌지역, 저소득층, 노인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2. 지역마다 작은 문화예술 공간 만들기

⇒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 작은 예술 극장, 작은 미술관 만들기

3.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형, 무형) 찾기

⇒ 지역에 “역사문화의 집” 을 만들어 우리 지역 문화예술 돌보고 이해하기

1. 문화예술 향유 소외 해소(지역·계층)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예술 향유는 주민들의 보편적인 권리이고 따라서 그 권리는 지역, 계층에 따른 차별이나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됨.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 계층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음.
- 대체로 부유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더 적게 누림. 예를 들어 소득별로 문화예술 관람률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가구 소득별 예술행사 관람률을 보면 월평균 100만 원 미만 24.6%, 100~200만 원 46.6%, 200~300만 원 66.4%, 300~400만 원 75.3%, 400만 원 이상 84.7%를 나타냄.
- 문화예술 관람률은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임. 연령별 예술행사 관람실태를 보면 10대 93.5%, 20대 92.6%, 30대 78.5%, 40대 70.1%, 50대 51.3%, 60세 이상 28.6%를 나타냄.
- 관람률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는 바,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의 관람률은 각각 68.8%, 6

7.7%, 56.8%를 나타냄.

- 문화예술 시설이나, 문화예술인, 문화산업의 수도권 집중도 심각한 상황임. 정부가 문화바우처 제도를 시행해도 지역에서는 갈 곳이 없음.
- 같은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서울의 강남과 강북, 부산의 동과 서 지역은 문화예술기반 시설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문화예술 향유라는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 연령, 지역에 따른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함.

■ 목표

- 문화예술 보편권 차원에서 지역, 계층 간 문화예술 격차와 차별 해소
- 지역민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
- 문화예술 공교육을 통한 향수, 창작 능력 향상
- 지역문화예술체육 활성화

■ 방법

- “지역문화예술체육 활성화 특별법(가칭)” 제정
- 저소득층, 노인층의 무료 문화예술 관람
- 지자체 단위의 아마추어 예술단체 설립
- 문화 사랑방, 소출력 라디오, 팟캐스터 등 문화향유 채널 확대

2. 지역마다 작은 문화예술 공간 만들기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마다 지역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 예술 극장, 소규모 미술관 등 문화예술 공간 확대
-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 매우 열악한 편임. 대표적인 문화공공시설로 꼽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모두 640여 곳으로 도서관 한 곳의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7만 7,000명에 이름. 이는 독일 도서관 한 곳의 평균 이용자 수 8,000명의 열배에 가까운 수치임.
- 이에 따라 국민들의 평균 독서량도 아주 낮음. 성인의 한 달 평균 독서량도 한 권에 지나지 않음.

[표] 주요 OECD 국가의 공공도서관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도서관수	759	9,208	4,567	3,111	10,339
1관당 인구수(명)	6.7만명	3.2만명	1.3만명	4만명	0.9만명
1인당 장서수(권)	1.34권	2.7권	1.6권	3.1권	1.5권
기준 연도	2010	2008	2009	2010	2010

- 정부는 2013년까지 공공 도서관 수를 900개관, 작은 도서관 3,560여개를 조성하고 인구 6.7만 명당 1개(2010년)인 도서관을 인구 5만 명당 1개로 늘인다는 계획을 세움.
-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도심에 도서관 부지를 찾기가 힘들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도서관을 짓는 탓이 큼.
- 주민들의 독서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높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마을 속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어른, 청소년, 학생,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쉽게 찾아가서 책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임.

■ 목표

-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독서 공간 마련.
- 주거 지역 내에 작은 도서관 설립.
- 도서관 외에도 작은 예술극장, 작은 미술관, 소규모 박물관, 야외무대 등 마을 단위, 동 단위

의 작은 문화예술 시설 확대.

■ 방법

- 문화예술 공간은 주민들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사랑방 구실을 하게 함.
- 도서관은 시각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글을 읽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책 읽어 주는 날”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교실 등의 행사 프로그램들을 주기적으로 진행.
- 예술공간에는 유급운영인력을 배치.
-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

3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형, 무형) 찾기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에는 유형, 무형의 다양한 문화, 문화재, 역사자원이 존재함. 예를 들면 지역에는 다양한 유형 문화재들이 있고, 민요, 판소리, 춤, 무예, 기능, 축제 등 무형문화재가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 전설 등이 있음.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옷 등이 있고 자연환경도 있음. 지역의 마을 이름 유래와 같은 것들도 지역 문화자원이 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지역에 존재하는 고유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보존하고 각각의 문화적 가치로 되살리며, 나아가 서로 공통된 의미구조를 만들고 연계하여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지금까지는 관주도로 하드웨어 개발 중심의 문화 인프라 구축, 가시적 성과 중심의 축제 개최와 준비 부족의 행사 유치, 시설 중심의 문화 관광 사업 추진(관광단지 등) 등 지역문화자원을 성급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현상이 많았음.
- 그리하여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다양한 문화, 문화재, 역사자원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없이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축제나 행사 등을 이식해오기에 바빴음. 지역의 구체적 환경이나 지역주민 삶의 특성에 대한 고려도 없었음.
-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형, 무형의 다양한 문화, 문화재, 역사자원, 전통, 자연환경, 음식, 옷, 인물, 기능, 마을이나 거리 이름의 유래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 문화의 조사와 연구의 거점이 필요한데, 지역에 “역사문화의 집”을 세워 그 역할을 담당케 해야 함.
- 지역의 문화자원은 창조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지역문화의 창조적 재구성, 지역문화의 새로운 해석과 문화자원화, 새로운 지역문화자원 만들기, 지역공간과 결합된 문화자원 만들기, 고유한 생활문화의 관광자원화 등.

■ 목표

- 지역의 고유한 문화, 유형·무형의 문화재, 역사, 환경, 인물, 명칭 등의 자원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역사문화의 집”을 구축함.

- 각 지역에는 문화원<표>, 무형 문화재 전수관, 향토 역사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 중심, 전수 중심이 존재함. “역사문화의 집”은 이들 문화원이나 전수관보다 작은 규모로 설치함. 지역의 향토사학자, 무형문화재, 기능인, 예술인, 일반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역사 문화의 집”은 문화원이나 전수관 등 각각의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함.
- 수집된 자료는 지역 문화자원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창조적인 문화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임.
- 지역 어린이, 일반인, 학생 등은 언제든지 “역사 문화의 집”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유래, 지명, 지리, 인물, 환경 등 우리가 자라고 살고 있는 지역 문화를 바로 이해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음.

[표12-2] 지방문화원 현황 (2011. 07)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갯수	25	13	8	8	5	5	5	31	18	12	17	14	22	23	20	2	228

■ 방법

- 1단계 : 지역에 ‘역사 문화의 집’ 마련.
- 2단계 : 지역의 향토사학자, 무형문화재, 기능인, 예술인 등을 활용하여 자료 축적, 자료는 문화 자원으로 활용, 문화원, 문화재 전수관 등과 네트워크.

3.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권리 보호

공약

1.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실업급여제도 도입

⇒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제도의 실질화로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2. 전국에 예술가들의 스튜디오 만들기

⇒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사회가 보장

3. 연예인-기획사 구조 개선을 통한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정

1.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실업급여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예술인들은 창의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데에서 커다란 역할 수행. 그러나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불안정하고 수입의 절대적인 규모도 매우 낮은 편임.
- 문화예술인들의 월 소득이 대부분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음. 문화의 세기라는 21 세기에도 문화예술인은 여전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줌.
-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 됨. 정의에 따르면 예술인은 국가를 풍요롭게 만드는 자 이지만 사회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되면서 예술인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것이

문화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예술인을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에 포섭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마련 등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함.

■ 목표

- 문화예술인들이 별도의 직업을 구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여 창작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조건 구축을 위해 문화예산의 1%를 매년 문화예술인복지에 투입.
- 그 밖에도 문화예술 산별노조 구성, 문화예술인복지기금 설치
- 계약직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마련

■ 방법

- 예술인 복지법 개정

2. 전국에 예술가들의 스튜디오 만들기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국에 걸쳐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운영. 그러나 스튜디오별 특성화나 차별화 없이 폐교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숫자만 늘리고 있는 형편. 또한 미술 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연극, 전통예술, 음악, 문학 등의 분야는 거의 없는 실정.
- 남양주에 영화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촬영소가 있듯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이 집중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확대해 나감.
- 다양한 개성의 예술인들이 함께 어울려 다원적인 감수성의 작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함.

■ 목표

- 다양한 개성의 예술인들이 함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원

■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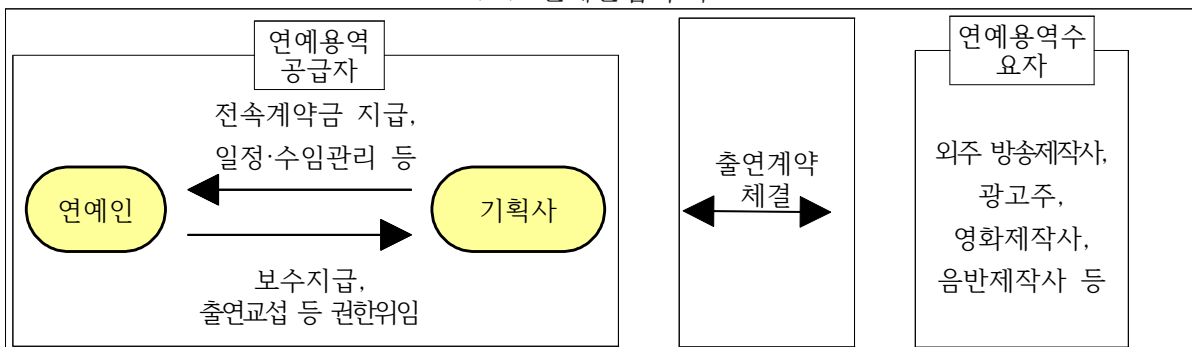
- 기존의 시설들을 재활용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스튜디오 마련.
- 전국의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수립.
- 다양한 장르별 혹은 혼합장르별 창작스튜디오 설립계획 수립.
-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 장르별 안배를 균형 있게 조율.
- 내외국인 예술가들이 함께 교류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교류와 공동창작을 위한 프로그램 조성

3. 연예인-기획사 구조 개선을 통한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내 연예산업은 양적인 차원에서 그 규모가 크게 증대하고 있음.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산업적 측면의 관심 증대, 모바일·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의 등장, 연예산업의 외국 진출(예, 한류(韓流))을 통한 사업 영역의 확장, 연예 기획사들의 증권시장 상장 등이 연예산업 확장의 중요한 배경임.
- 연예산업이 속해 있는 국내 문화산업의 총 매출액은 2003년 44조 1,958억 원에서 2006년 57조 3,840원으로 연평균 7.14%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외국 수출 규모를 보면, 1998년 이후 평균 27.8%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연예산업의 핵심인 “연예인”을 육성·관리하고 제작자와 연계시키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법·제도적 기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
- 대표적인 문제점은 영세하고 자질이 미비한 연예기획사의 난립(亂立)과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연예인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연예기획사가 연예매니지먼트업과 영화·드라마 등의 제작업 간의 수직통합을 통해 대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연예인에 대한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표〉 연예산업의 구조



-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예기획사의 등록, 등록 사업자의 표준 계약서 작성의무, 연예매니지먼트사의 보수 한도 등을 규정하여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함.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연예기획사는 스타급 연예인에게는 높은 전속금을 지급하고 신인 연예인에게는 과도한 위약금을 제시하며 또한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스타급연예인과 연예기획사는 8.5:1, 9:1, 의 구조로 스타급연예인에게 유리한 수익배분인 반면 신인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배분은 2:8, 3:7의 매우 불리한 수익배분 형태를 지님.

■ 목표

- 영세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연예기획사의 난립(亂立) 방지
-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 방법

- 연예 기획사의 등록, 등록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신고, 연예기획사의 보수 한도 등을 규정하는 연예 기획사 관련 법안 제정

4. 민족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다양성 실현

공약

1. 문화뉴딜로 민족문화예술 발전

⇒ 문화뉴딜을 통한 민족적인 예술 작품의 창작

2. 외국 소재 문화유산 환수

⇒ UNESCO 정신에 따라 약탈당한 외국 소재 문화유산의 무조건적인 환수

3. 남북 민족문화예술 교류의 확대·심화

⇒ 남북 민족문화예술 동질성 회복 차원의 안정적인 교류 실현

4. 다문화 인정을 통한 문화 다양성 실현

⇒ 시혜의 틀을 벗어난 진정한 다문화 실현

1. 문화뉴딜로 민족문화예술 발전

■ 현황 및 문제점

- 대공황기에 미국은 문화 뉴딜 정책으로 많은 일자리와 미국적인 예술작품을 만들어낸 바 있음. 진보적인 예술인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인민 전선 문화”라는 새로운 문예사조를 만들어내기도 함. 이런 면에서 볼 때 문화 뉴딜은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진보진영의 의제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문화뉴딜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함.

첫째, 일자리 창출과 예술가 지원을 통한 민족예술작품 창작. 이를 위해 문화 뉴딜에 초대형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당연히 정치적인 신념을 기준으로 예술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함.

둘째, 국민 누구나 문화의 수용뿐만 아니라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쪽의 정책을 포함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수용능력, 창작능력 등 교육 프로그램을 문화 뉴딜 사업에 포함시켜야 함.

셋째, 진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적, 공동체적 가치를 높이고 수용하는 정책이어야 함.

- 이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 뉴딜 정책을 추진하여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술작품을 창작하며, 마을회관과 복지회관 등을 활용하여 전 국민의 예술적인 소양과 창작능력을 키우는 정책을 펴.
- 현 정부도 2009년 업무보고에서 “예술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소규모 예산으로 문화뉴딜을 흉내 낸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거기에다 진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의 수용이라는 문화 뉴딜의 핵심 정신은 망각하고 있음.

■ 목표

- 문화예술 뉴딜을 통해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 함.
- 민족적인 내용을 담은 예술작품 생산
-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

■ 방법

- 초대형 예산을 배정하는 프로젝트 진행
- 창작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예술 작품 생산
- 역사학자, 작가,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료 수집 정리, 마을도서관에 보관, 활용
- 마을회관, 주민 센터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 지역수준의 아마추어 극단, 오케스트라 창단 지원

2. 외국 소재 문화유산 환수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는 민족문화의 한 요소이자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생생한 증거물임. 문화재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무한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문화적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로 간주됨.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은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많은 힘을 쏟는 것임.
-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통해 약소국에서 많은 문화재를 강탈해감. 프랑스, 영국, 일본 등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유명 박물관들은 이와 같이 강탈해간 문화재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19세기 말 프랑스 등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침입, 일본 제국주의 강점, 해방 후 미군정 등을 계기로 외국인들에 의한 체계적인 문화재 강탈이 이뤄짐. - 이렇게 강탈되거나 밀반출되어 현재 국외에 소장 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는 대략 10만 8천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외국의 민간인들도 우리의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임.
- 이와 같이 국외에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는 앞으로 반환받아야 함.
- 역사적인 정의, 주권 원상회복, 민족 정체성 확립, 문화재 출처국의 가치회복 측면에서도 문화재의 반환은 정당성을 가짐.

〈표〉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2009.12.31. 현재)

(단위: 점)

소 장 국			소장 수량	주요 소장 처
일		본	61,409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27,726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3,628	영국박물관 등
독		일	2,260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	시	아	2,69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	랑	스	2,093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3,981	요령성박물관 등
덴	마	크	1,278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	나	다	489	로알온타리오박물관 등
네	덜	란	42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	웨	덴	50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	스	트	741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	티	칸	298	바티칸민족박물관
스	위	스	17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벨	기	에	56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호		주	55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	태	리	17	국립동양도자박물관 등
카	자	흐	1,024	국립도서관 등
계 (18개국)			107,857	

*자료 : 문화재청.

■ 목표

- 약탈된 문화재의 원상회복
- “무조건 반환”을 원칙으로 삼은 문화재 환수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 문화재를 돌려보낸 국가와 다각적인 문화 교류

■ 방법

- 문화재 반환 전담 기구 설치
- 전담기구는 먼저 국외 문화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목록을 작성
- 우리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된 약탈 문화재임을 입증하는 출처 조사 실시
- 협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여러 주체들의 참여 보장

3.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확대·심화

■ 현황 및 문제점

- 남북의 문화예술 교류는 각종 돌발 변수에 따라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임. 문화예술교류 자체는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위치를 차지함.
- 단순한 화해무드 조성 차원이나 이질 문화에 대한 호기심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가 아니라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교류의 틀을 만들어야 함.
- 남북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존중과 이해 수준을 높임.
-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 정치·군사·외교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목표

- 안정적인 남북 문화예술 교류

■ 방법

- 남북 문화 교류 예산 확대
- 남북 문화재 공동 발굴 및 보존
- 남북 문화예술 및 문화재 DB 구축
- 외국 소재 문화재 환수 공동 추진

4. 다문화 인정을 통한 문화 다양성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예술은 정체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존재하며 발전해 나감. 따라서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 문화예술은 본질적으로 인위적이며 동시에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다양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음.
- 다양성이란 보통 민족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고유하고 오래된 전통이 있다고 믿는 집단 상호간의 존중과 존경, 관용의 정신을 내용으로 삼음.
- 우리나라는 이주결혼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를 계기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함. 따라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은 편임. 우리나라는 여전히 단일민족 증후군에 사로잡힌 채 폐쇄적인 틀에 갇혀 있음.
- 정부가 문화 다양성 정책을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정책을 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소수자를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관리해온 수준임.
- 우리의 민족문화를 풍부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 소수자들이 보유한 문화가 문화다양성을 우리에게 전파해주고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켜줄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시혜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다양성 원칙에 기반을 둔 외국인 소수자 정책을 펼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문화다양성을 실현 할 수 있음.

■ 목표

- 문화 다양성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를 통한 민족 문화의 발전

■ 방법

- 문화다양성 협약과 문화기본권에 초점을 맞춘 문화기본법 제정.
- 문화다양성 지표 마련
- 방송, 언론, 문화활동 등 이주외국인들 중심의 문화활동 지원

통합진보당 2012총선

언론·미디어·정보통신 공약

표현의 자유와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실현

1. 표현의 자유 실현
2. 언론미디어 공공성 강화
3. 언론 공공성 파괴 진상규명과 악법 개정
4. 정보통신의 공공성강화

연구위원 추은희(yingi06@naver.com)

1. 표현의 자유 실현

공약

1.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법제도의 철폐

⇒ 표현물을 위축시키는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폐지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2.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 확대

3.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인증과 불필요한 정보 수집 최소화

4. 방송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 방송심의를 사전 심의에서 사후 개입 중심으로 변경

1. 국제인권에 어긋나는 법제도의 철폐

■ 현황 및 문제점

- 표현의 자유는 그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이고 또한 다른 인권의 침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함. 인권침해는 항상 권력자들에 의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권력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인권이 보호됨.
- 표현의 자유가 여러 나라들의 헌법에 명기된 이유는 국가권력이 언제라도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인권침해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반작용 때문임.
- 표현의 자유는 미국 헌법(1776), 프랑스대혁명 인권선언(1789)에 이어 그 이후부터 국가에 의

한 절대악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모든 나라의 헌법에 포함됨.

- 허위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다른 특정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면 규제하지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 세계적으로 위헌판정을 받고 있음.
- 자신의 의견과 감정만을 밝혀도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준다면 법적 책임을 지우는 ‘모욕죄’ 역시 일본과 독일에만 존재함. 그러나 독일은 검찰의 개입 없이 사소제도로 처리하여 적용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일본은 구류, 벌금 등으로 경미하게 처리함.
- 우리나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따라 노동자들 몇 명만 파업을 해도 고용주의 의사 결정을 제압한다면서 범죄시 함.

■ 목표

-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실현

■ 방법

-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제도를 폐지

2.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이용률은 77.8%(2010년 기준),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81.6%로 인터넷은 국민들의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임.
- 이렇듯 주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음.
- 2011년 6월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튀'는 네티즌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기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자에 대한 구속기소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실태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함.
-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표현행위가 어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회가 인터넷 표현물의 유통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블로그 포스팅이나 카페를 통한 소통에서 단지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음.
-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밝힘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 국민들의 토론의 장을 위축시킴.

■ 목표

-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권고에 부합하는 법 제도 개선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최대 보장

■ 방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제도 폐지.
- 공적 지원을 받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

이 없도록 공정이용 영역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

-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를 이유로 한 형사 처벌 폐지.
-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
-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제공과 감청을 허가할 때 법원의 심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인터넷 패킷 감청을 사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함.

3.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50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됨. 지난 2008년에도 유출 사고 발생.
- 인터넷 실명제 등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이 조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는 심각함.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이핀(I-PIN)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아이핀 역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둔 시스템임.

■ 목표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함.
-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 방법

-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며 인터넷 실명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수하는 법 제도의 개선.

4. 방송심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 건전한 문화와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임.
-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행정기구로서 심의가 아닌 검열이 되고 있음.
- 무리한 심의로 인해 사회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
- 심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함.

■ 목표

- 방송의 질적 기준(standards)에 개입하는 활동인 ‘심의’를 최소화해야 함.
- ‘심의’는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 개입으로서 존재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목적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심의’가 규제가 아닌 자율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방법

-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방송심의 체계화
- 방송사의 자율심의 강화 : 방송사 자율규제의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적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 개정 필요 함.
- 보도프로그램과 ‘공정성’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의 심의 중에서 방송심의규정 상의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공정성의 잣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를 제외하면 상업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므로 ‘공정성’ 심의규정 폐지가 아닌 ‘공정성’ 규정의 적용을 보도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개정해야 함.
- 심의 규정의 입법화 : 방송법 시행령도 아닌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제정한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언론통제로 방통심의위 심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한 심의규제 내용은 방송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함.

2. 언론 미디어 공공성 강화

공약

1. 신문 산업 지원

⇒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 위축되고 있는 신문 산업 지원

2. 지역 미디어 활성화

⇒ 지역 방송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삼아 공영 방송 거버넌스 구축

4. 지상파 방송 제작 자율성 확대

⇒ 제작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강화

1. 신문산업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대 들어서 신문사들은 일부 족벌 언론을 빼고는 경영난에 빠짐.
 - . 구독률 급감(2001년 51.3%에서 2010년 29.5%로)
 - . 신문 신뢰도 급감(1998년 40.8%에서 2008년 16.0%로)
 - . 신문광고 시장의 매출액 점유율 감소(2004년 26.2%에서 2009년 20.7%로)
- 이명박 정부 들어 종편채널의 도입과 보도전문채널의 증가 등 신문 산업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미디어 환경 변수들이 새롭게 등장.
 - .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신문사 매출액 18.1% 감소

- 이는 참여정부(2002년 ~2007년) 매출액 감소 5.3%에 비해 훨씬 큰 폭의 감소
- 국내 신문사의 콘텐츠 생산인력(1만8000여명)은 거대 장치산업인 방송사 인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초과하고 있으나 공적인 지원은 9분1 수준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방송광고 규제완화 등으로 상업적기반이 급격히 잠식되고 있음.

〈표〉 신문과 방송의 발전기금 지출액

(단위 : 억 원)

구분	2008	2009	2010
신문발전기금	260	214	328
방송발전기금	2,480	2,785	2,922

- 신문사 위기를 방지할 경우 중소 신문사들의 생존 위협, 미디어 재벌 중심의 언론권력 집중 등이 예상됨.
- 신문 산업의 중요성
 - 신문 산업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주요 뉴스를 공급하는 1차 콘텐츠 생산기지
 - 보통 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 다양한 여론의 형성기지
 -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정치적 의사형성에는 여전히 신문이 가장 중요한 여론형성 매체의 역할
 - 인쇄문화(문자문화), 읽기 문화 진흥에서도 중요한 매체
-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신문 산업이 점점 위축되고 있지만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소 신문을 비롯해 풀뿌리 지역 언론, 인터넷 언론, 독립 디지털 매체(블로거) 등 대안매체에 대한 공적지원과 이를 통한 미디어의 균형발전이 필요 함.

■ 목표

- 간접지원, 직접지원을 통해 신문 산업 지원
 -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개입은 언론의 자유에 합치
- 신문시장이 자본에 의존하는 신문에 의해 구조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 산업 공동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
-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매체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풀뿌리 지역 언론 지원

■ 방법

- 대규모 미디어 균형발전기금(국고지원 + 방송광고의 일부를 미디어 균형발전기금으로 전환) 조성
- 공동배달제, 공동제작 도입, 신문읽기 진흥

2. 지역 미디어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미디어는 지역성, 공동의식, 규범의 요소를 지닌 지역사회와 그 문화를 반영하는 특성을 지님.
- 미디어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가치이자 목표로서 지역성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구현할 실질적 주체인 지역방송이 지역여론과 지역의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법 논의과정을 통해서 지역성이 거론은 되었지만 방송의 주요 목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공익성의 한 항목으로 주변화함.
- 우리나라 방송법에 명문화한 지역방송 관련 조항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성 구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함. 지역방송 고유의 정체성과 위상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그로 인한 자족형 지역 사회의 미비와 중앙 중심적 사고의 팽배라는 지극히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정책적 개입을 통해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를 이뤄내야 함.

■ 목표

- 지역방송의 지위를 무료의 보편적 로컬미디어로 정립
- 지역방송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족 기능과 지역민의 지역 중심 사고가 뒤따라야 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긴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우리나라 방송법상의 범위가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음. 지역방송 규정에서 '지역'을 서울의 반대 개념이자 변방에 해당하는 '지방'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단위로서 '지역'으로 정립해야 함.
- 지역방송은 이윤추구보다는 지역성을 우선하여야 함.

■ 방법

- 중앙 지상파사와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 지역민방의 소유와 경영, 제작과 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를 강화. 현행 방송법상에 규정된 소유와 경영, 제작과 편성 간의 분리, 편성규약의 체결과 시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함.

- 현재 지역방송에 관한 사실상의 정의는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 시행령에 나옴. 지역성에 대한 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방송에 관한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해야 함.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의 실질적 위상 회복을 통한 지역방송 지원 정책 제도화

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공영방송은 정부, 정치집단, 자본, 그리고 사회단체 등 사회의 제 세력들이 자기의 이해를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또는 합의의 산물. 따라서 거버넌스 문제는 항상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에서 주요 관심사임.
- 주요 나라들은 방송 권력의 분립과 분점을 거버넌스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음.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로서 '운영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이원적 거버넌스가 일반적임.
-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남. KBS, MBC, YTN 등에 낙하산 사장이 임명된 이후 공영방송의 편파적인 보도로 언론이 크게 위축 됨. 지난 1월말 프랑스 파리의 언론자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2010년의 42위 보다 두 자리 낮은 44위로 밀려 남. 현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의 39위보다 다섯 자리나 후퇴함.
- 방송 권력의 분립과 분점 대신에 특정 권력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면서 언론의 중핵인 공정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의 불투명한 선출 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 공영방송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한 관리, 감독 기능의 상실

■ 목표

-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 이사와 경영진 선출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개입 폭 확대(국회 검증절차 도입)
-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방법, 구성, 운영방법, 자격요건 개선
-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 과정의 투명화

■ 방법

- 경영진에 대한 국회 검증절차 도입
- 시민사회 단체와 방송현업대표 등 각계각층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함.

4. 지상파 방송 제작 자율성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 4년 간 지상파 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그램 위축 등 비민주적 행태가 수없이 드러남 .
- 검찰의 PD수첩 탄압과 추적 60분, PD수첩의 4대강편 불방과 천안함을 통한 남북 위기상황 조장, 4대강 홍보와 G20 관제홍보 등에 이어 소셜테이너라 일컬어지는 방송 MC들에 대한 축출까지 진행됨.
- 방송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언론인들과 정권 비판적 언론인들은 파면과 해고 등 징계로 통제하면서 언론사 조직운영은 명령과 지시로 제작 자율성은 크게 훼손 됨.
-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에서 취재와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명시된 ‘편성규약’ 이 있으나 무력해졌고, 단체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적 장치 또한 미흡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함.
- 언론사 조직운영의 근간인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자율성은 사라지고 명령과 지시 체제로 실제 KBS 새노조는 60.9%, MBC 노조는 93.2%가 제작 자율성 침해를 경험했다고 함.

■ 목표

-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
- 방송제작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방송법의 ‘편성규약’ 을 선언적 규약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분쟁 시 조정 장치와 이행 조치를 둠.

■ 방법

- 편성규약을 ‘방송제작 및 편성규약’ 으로 명칭을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과 ‘조정위원회’ 장치를 마련하고, 미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둠.
- ‘조정위원회’ 는 제작 책임자, 제작실무자, 시청자위원회 조정위원 등이 포함되어야함.

3. 언론 공공성 파괴 진상규명과 악법 개정

공약

1. 현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 현 정부 언론 장악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2. 중편사업권 재검토

⇒ 방송 산업 전체를 과당 경쟁으로 몰고 갈 중편의 전면적인 재검토

3. 미디어랩법 개정

⇒ 방송사와 미디어랩사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미디어랩법 개정

1. 현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언론을 장악하여 여론을 집권 세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함. 그 과정에서 불법, 탈법, 몰상식이 자행되고 언론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됨.
- 언론 장악의 중심에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이 자리 잡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간접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YTN, MBC, KBS 등 언론사 사장을 해임하고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움.
- 사장이 바뀐 각 방송사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조치와 프로그램 폐지, 내부 아이템 검열이 심화하기 시작함.
- . YTN의 경우 정치권을 비판하는 '돌발영상'의 기자와 PD들이 해직당하며 프로그램 폐지.

- 이후 우여곡절 끝에 방송이 재개됐지만 기존의 날카로운 권력 비판은 상실
- . KBS의 탐사보도팀이 인사 조치와 개편으로 해체
 - . MBC '뉴스후'와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폐지
 - . '추적60분'의 경우 '천안함' 편이 방통위의 징계를 받음.
 - . PD수첩의 내부 아이템 검열
- 각 방송사들에서 검열과 불공정성에 항의하는 언론인들은 해고, 정직, 감봉, 경고 등 보복징계를 당함. 2010년 하반기까지 180여명에 이르는 언론인들이 보복징계를 당했고, 60여명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 당함.
- 검찰은 PD수첩 고소, 정연주 사장 배임 의혹에 대한 고소, 언론노조의 파업에 대한 불법파업 기소 등에 대해 방통위가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
- . 그러나 정연주 사장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음.
 - . '광우병'편으로 기소됐던 PD수첩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짐
- 검찰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 중이던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쓰는 박대성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표〉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 장악 과정

	내용
2008.3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
2008.3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5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 설치
2008.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법 시행령 의결 (대기업 소유제한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 이하로 증액)
2008.7	구본홍을 YTN 사장임명(대선 캠프 언론 특보)
2008.7.	방통심의위, MBC PD 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사과 의결
2008.7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의 조종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
2008.8	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신임 KBS 사장으로 이병순 임명
2008.10	공정방송 주장한 YTN 기자 6명 해직
2009.7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조종동과 재벌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줌)
2009.11	KBS 사장으로 김인규 임명(대선 캠프 출신)
2010.2	엄기영 MBC 사장 퇴진 후임으로 김재철 임명

2010.11	방통심의위, KBS 추적60분 천안함 의혹편에 대한 경고
2010.12	종편 선정
2011.3	방통위원장 연임
2011.10	SNS와 앱 규제를 위한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2012.1	미디어랩 여당 단독 통과

■ 목표

- 현 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 책임자 처벌

■ 방법

- 19대 국회에서 언론장악 진상 규명 청문회 개최
-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 구현을 위한 법, 제도 장치 확보

2. 종편 사업권 재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통합방송법에 “유료방송(시청자와 계약으로 여러 개의 채널 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 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에 대한 정의가 처음 등장.
- 무료방송과 유료방송 시장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케이블의 종합편성채널 허용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과 허점이 지적되었으며, 이 틈을 비집고 종편 도입이 시도되었던 것임.
- 2007년 말 전경련의 '규제개혁종합연구보고서'에서 공영방송 민영화 구상이 제시됨.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신방 겸영 허용을 검토
- 2009년 7월 종편허용 법 통과. 2010년 말에는 4개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1개의 보도전문 채널사업자를 선정 발표함.
- 2010년 8월 방통위는 종편, 보도채널 선정 기본계획안에서 정책목표로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제시함.
-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종편은 많은 문제를 내포함.
 - . 우리나라 방송의 시청과 광고시장이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신규투자
 - . 시청시장과 광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임. 시청자 숫자와 시청시간은 감소세이고 방송광고도 포화상태에 있음.
 - . 과잉투자에 따른 공급과잉과 과당 경쟁은 자원낭비, 방송사의 경쟁력 상실, 중국 적으로 는 산업 전체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 . 과당경쟁은 프로그램 질 저하, 선정성, 스타에 대한 의존을 강화
 - . 외국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 가능성
 - .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는 행위 증가 가능성
 - . 보수 일색인 매체들이 저널리즘에 미칠 악영향. 여론 다양성의 훼손

■ 목표

- 과당 경쟁에 따른 자원의 낭비, 선정주의와 상업성의 우위, 여론 다양성의 훼손, 자본에 의한 여론의 예측성 증대를 부를 종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 방법

-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종편 재검토

3. 미디어렙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방송광고독점 판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미디어렙 개정 논의 시작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1월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방송 광고판매대행사에 대해서만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대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
- 이에 따라 코바코 체제의 변화 불가피한 상황이 됨

○ 헌법재판소 결정 틀 속의 미디어렙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 현재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은 인정. 이러한 원칙을 구현할 법체계 제정 필요.
- 광고판매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편성의 분리.
 - . 방송사나 광고주의 압력에서 미디어렙이 독립적인 동시에 방송사도 미디어렙사에서 독립
-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공공성 약화 방지
 - . 시청률과 방송광고 요금의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방송광고 요금 체계 필요
- 방송다양성 보장
 - . 방송사 내에서 방송프로그램 다양성 보장
 - . 다양한 방송사 존립 보장
 - . 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매체에 대한 광고 배분 : 민주주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토대

○ 제정된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2)의 주요내용

- 1공영다민영 체제
- 미디어렙 1인 소유지분 최대40%허용
- 동종매체 간 크로스미디어판매 허용
- 중소방송의 결합판매 의무화

■ 목표

- 조중동매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 금지
- 방송사의 미디어랩 소유 금지 또는 지분 축소, 의결권 제한
- 방송사와 미디어랩사의 엄격분리
- 미디어랩 수 최소화로 공영과 민영 미디어랩의 공정한 경쟁보장
 - . 시장 경쟁심화로 인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억제
 - . 미디어랩을 통한 방송공공성 보장
 - . 민영미디어랩도 공영미디어랩과 동일한 공적 의무
- 크로스미디어판매 금지 : 지상파 방송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유출을 막아 공적 프로그램 제작 재원 확보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권한 강화 : 방송광고요금체제와 판매방식 등에 대한 평가 권한을 통한 방송의 상업화 억제 등

■ 방법

-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4. 정보통신의 공공성 강화 !

공약

1. 정보통신의 독과점 완화 및 보편적 접근 강화

⇒ 공공재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무선인터넷 서비스제공에 나서야 함

2.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 천문학적인 통신사의 이익을 줄여 통신비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임

3.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 개인의 정보보호와 무차별적인 통신감청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4. 방통위 권력사유권 폐기

⇒ 권력유착과 통신업계를 대변하는 조직에서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위원회로 재편

1. 정보통신의 독과점 완화 및 보편적 접근 강화

■ 현황

- 초고속인터넷의 사용이 일상화된 지 오래이나 서비스 제공이 민간업체에 독과점 되어 있어 통신서비스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사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임
- 스마트폰의 확산과 이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생활화가 과거 인터넷 혁명만큼이나 빠르게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며 IT업계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을 제 2의 인터넷 혁명으로 보고 있는 바, 스마트폰 사용에는 무선인터넷의 자유로운 접근이 필수적인 조건
- 정보통신이 대중화 일상화됨에 따라서 통신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공재로서의 인터넷, 정보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통신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목표

- 지역 전체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망을 구성하고 접속장비를 보급하여 공공기관, 기업, 지역주민들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
-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수신기 무상 지급
- 경제적으로 초고속, 무선인터넷 통신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 통신비와 정보통신기기 지원
- 노령층, 장애 계층에 특화된 정보서비스 및 해당 계층의 정보 이용 보조를 위한 기기 및 기술 개발 지원
- 비인구 밀집 지역 등 통신망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통신망 설치비용 지원
- 기존의 정보화교육에 더불어 정보이용상담사 제도 시행

■ 방법

- 1단계 : 공공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선 인터넷 망 무상 설치.
- 2단계 : 인구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이동인구 집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체로 확대
- 3단계 :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특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재정 지원

[예]광대역 WIFI구축.kAIST SW정책연구센터'Free WiFi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자료 중

■ 공공재로서의 광대역WIFI

- KT의 무선전략의 보조재, 070 번호를 부여받는 인터넷 전화의 망 수단으로만 사용되어 지던WIFI가 아이폰, 옴니아등 스마트폰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주류 망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
- 무선 인터넷은 휴대폰 망을 사용하는 3G, WIMAX 모바일 형식의 WIBRO가 있으나 3G는 범용의인터넷의 지원하기에는 속도의 문제가 너무 크고 초고비용이며 WIBRO의 경우 별도의 단말기 및 모뎀이 필요하여 공공재로 전환하기에는 폐쇄적이고 3G와 마찬가지로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공공재로서의 WIFI가 유효하게 부각되고 있음
- 전체 시장의 절대 부분이 기업 (KT, SKT)의 구축지역으로 별도의 서비스 가입 및 비용을받고 있어 공공재의 역할에 제한되어 있음
- * 미국의 경우 구글과 메이저 인터넷 사업자가 무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있음
- 기 구축되어진 WIFI 장비가 가정용 장비로 구축되어져 있어 한 AP(무선랜장비)당 서비스 가능지역이 20m전후로 매우 짧고 품질의 보장도 불가능함.

■광대역 WIFI 효용성

1. 혁신적 수준의 통신료 절감 방안 가능

- 광대역 WIFI 지역의 음영지역을 찾아 소용량 장비로 보완하여 전체 커버리지가 90%를 넘을 경우 상당부분 휴대전화를 사용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생활범위 넓지 않은 층(초등학생등)은 휴대폰 자체를 대체할 수 있고, 주부, 상인등은 이동 시 FMC 서비스등으로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070등의 가입자간 무료 및 저렴한 통화가 가능하여 서비스 내 1인당 30% (약 1.44만원)의 통신료 절감 효과가 있음
- 보급형의 위치기반 서비스 단말기와 연계 시 아동, 노령의 치매 어르신등의 위치 파악이 실시간으로 가능

2. 정보소외 계층을 없애는 완벽한 시스템

- 공공재의 Wifi가 도입될 경우 저비용의 설치/운영비용으로 인해 정보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는 정책의 구현이 가능
- 통신과 서비스를 조절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의 유일한 대안
-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초중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율은 통신 과서비스의 대표적 현상
공공재 Wifi 적용 시 기본료 14,000원선의 휴대폰을 2,000원 수준의 IP폰으로 전략적 변경 가능.
- 이통사는 기본료에 대한 매출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트래픽이 공공재 WIFI로 분산처리 된다면 이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기지국 증설, 업그레이드 등 시설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공재 WIFI 보급으로 인한 사용자 증가는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져 이통사 반발의 근거가 없어짐.

3. 향후 무선모듈의 도입의 기반이 됨

- 가스, 수도, 전기 계량기의 무선모듈만을 도입함으로 무선검침 시스템이 구현됨
- 현재 많은 수의 국내 개발사가 관련제품 개발완료, 해외시장 타겟으로 운용중

4. 관광, 공공서비스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유통의 채널로의 역할 기대

- 키오스크, 관광안내, 다국어 안내, 건물 상세안내 및 위치정보등 다양한 공적 정보의 배포가 쉬워짐.
- 관광판넬에 무선모듈 하나로 기본정보의 이용 및 업데이트 해결

2.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 현 황

-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보급으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체감하는 요금수준이 높아져 기본료 인하,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등 통신요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
- 가계통신비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이용량 증가 등으로 꾸준히 상승,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가계통신비 비중은 수치상 약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방통위가 2011년 6월 발표한 통신비 인하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감소는 이루어지 않음

명목가계통신비 추이(전국 전체가구 기준)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2011(e)
소비지출(원)	2,015,909	2,114,217	2,149,184	2,286,874	2,395,583
통신비(원)	134,287	133,984	132,468	138,646	141,329
통신비 비중	6.66%	6.34%	6.16%	6.06%	5.90%

*출처: 통계청

- 거대 통신사가 시행하고 있는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문제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그간 통신사들은 통신망 유지 관리 비용으로 월 1인당 3,500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월 12,000~54,000원의 기본요금을 거둬들여 매년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누려옴

[각 통신사 무선부문영업실적] (2010년)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	기본료수입
SKT	12조4600	4조5,020억	16.2%	1조4,110억	4조5,020억
KT	6조9,325	2조533억	10%	1조1,719억	2조5,040억
U플러스	3조4,793	6,553억	7.7%	5,700억	1조7,068억

■ 목 표

- 문자메시지 이용료 폐지
- 기본요금 및 통신요금 대폭 인하

■ 방법

- 방통위의 민주적 개편으로 공공성에 대한 감독강화
- 연기금 및 공적지분 확대로 경영권 감시

3.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 현황

-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싸이월드, 하나로텔레콤, 넥슨 등 인터넷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정보통신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이 방대함에도 이렇게 수집·처리된 정보에 대한 관리가 개인들의 통제력을 떠나면서 이를 악용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증가
-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정보의 악용이나 유출과 같은 피해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사이버 상의 경제·사회 활동을 제약
- 방통위는 2011년 11~12월 상위 13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개인정보 취급·운영 면에서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힘
-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 통신감청,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는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

<불법감청사례>

1. 국정원 부산지부가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7년부터 3년 가까이 이메일, 휴대전화 및 전화감청, 대화녹음 등 무차별적으로 실시간 감청
2. 법민련 감청영장 2개월씩 무려 14차례 연장되어 총 28개월간 감청이 이루어짐

■ 목표 및 방법

-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
- 인터넷 실명제 등 주민번호의 수집을 조장하는 법률폐기
-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이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법 정비
-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이 담보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위치추적 자료 감청영장대상, 긴급감청제도 폐지
- 신용정보: 금융거래 외 공동활용 금지, 보유기간 축소 등

4. 방통위 권력사유한 폐기

■ 현황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구 정보통신부는 해체되고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통합하여 출범
- 구성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 또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 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 다시 말해 5인중 3인은 무조건 친여위원이 선임되는 구조
-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방통위가 결국 상명하복의 독임제 행정기구의 계서제(階序制) 형식을 취한 대통령 직속 공무원 조직체. 오직 대통령 등 기득권 정치세력만을 위해 국민의 입과 귀를 통제하고 친정부적 언론홍보기구로 권력전횡을 일삼은 대표적인 기구
- 결국 이 같은 권력편향식의 방통위가 보인 대표적인 행태가 SNS등에 대한 사전검열기구로 전략
- 특히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극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SNS 등 여론 검열을 위해 통신심의국 산하에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의 신설 시도
- 방송사유화: 방통위가 EBS 사장과 9명의 이사, 그리고 감사까지 임명할 권한 독점

SNS 관련 심의현황 (단위:건)						
연도	위반유형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계
2011년 (1.1 ~ 9.30)	음란·선정	8	1	1	35	45
	초상권침해·명예훼손	3	0	0	2	5
	폭력·잔혹·혐오	16	1	0	3	20
	도박개장·사행심조장	1	0	0	0	1
	국가보안법 위반	156	2	1	0	159
	각종증명서 위조	0	0	0	27	27
	마약·자살조장 등	0	0	0	5	5
	소계	184	4	2	72	262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기업유착: 방통위는 KT 2G가입자 15만명에 대해 사업 합리화, 망 고도화만 고려해 2G서비스를 종료하려는 시도에 협력하였고 법원에 이를 취소. KT가 민영화 이후 방통위 산하 기관처럼 운영

- 2009년 KT 부회장: 정통부 출신관료<-> 신임 방통위원장: 정통부차관,KT사장출신

■ 목표

-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현 방통위 체제 개편
-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및 방통위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청문회실시
- 방통위의 정책투명성 보장

■ 방법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방송통신분야의 일정정도의 경력과 정책전문인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처럼 독립기구로 위상 정립
-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 위원구성은 여당 3인, 야당 3, 방송통신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4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되 위원전체 나머지 9인중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고 부위원장 2인은 야당추천1인과 추천위원회 1인으로 구성
- 방통위가 방송사와 통신업계 이해에 휘말려 진행된 방송통신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적 내용을 수립
- 기존의 기술자문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자문위원회 등의 분야별 자문기구를 총괄할 수 있는 자문위를 설립, 강화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생태·환경 공약

- 토건에서 생명으로 -

1. 4대강사업은 사기, 국정조사·재자연화!
(4대강 치유)

2. 삼질 그만, 생태 보전!
(개발정책 폐기, 생명으로 전환)

3. 생명이 넘치는 자연!
(생물다양성 확립)

4. 깔끔하고 안전한 삶터!
(생활공간에서 유해·독성물질 관리 강화)

5. 물은 생명, 수공예 위탁관리 반대!
(상수도 위탁관리 반대. 빗물관리 강화)

6. 환경인지 예산제도 도입!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적 영향 우선 고려)

연구위원 김승(cinbiesori@hanmail.net)

1. 4대강사업은 사기! 국정조사·재자연화

공약

1. 4대강사업은 사기! 청문회·국정조사 실시, 재자연화

- (1)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2) 영주댐 건설 중단 및 백지화
- (3) 청문회·국정조사 실시
- (4) 보 해체
- (5) 4대강 방식 지천·지류 정비사업 중단
- (6) 강변 생태유기농업단지 유지지원
- (7) 추가 준설 중단
- (8) 수변구역 법적·물리적 복원 및 보존
- (9) [4대강 특별법] 제정
- (10) 경인운하 사업 국정조사책임자 처벌

4대강사업
폐기·
생태 복원
(재자연화)

⇒	중단	⇒	영주댐 건설 중단 4대강 방식 지천·지류 사업 중단 추가 준설 중단
	해체	⇒	보 해체
	실시	⇒	청문회·국정조사 실시(경인운하 포함)
	유지	⇒	강변 생태유기농지 보존 수변구역 법적 복원·물리적 보존
	폐지·제정	⇒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 4대강특별법 개정

1. 4대강사업은 사기! 청문회·국정조사 실시, 재자연화

■ 현황

- ⇒ ① 4대강 준설과 16개 보(댐), 자전거도로 등은 1차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정부 선언 (2011.10.22). 본류 사업에 이어 지천·지류 정비사업도 강행할 태세
- ② 완공된 보(댐)에서는 부실공사에 따른 누수 및 세굴, 준설된 하상에는 재퇴적, 하상저하에 따른 역행침식, 지하수층 상승에 따른 주변 농지 침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 ③ 보(댐) 하단부 및 아래쪽의 세굴현상은 심각한 상황, 보 붕괴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 ④ [국가재정법] 등을 어기는 등 위법과 편법으로 사업을 강행한 책임 추궁 필요
- ⑤ 4대강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혈세만 낭비할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여전. 훼손되고 파괴된 4대강의 본모습 되살리기는 시대적 소명이며, 우리사회가 짊어진 업보

■ 목표

- ⇒ 4대강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청문회와 시민 참여형 공동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책임 소재를 밝히고, 처벌. 4대강 본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계획 추진, 재자연화

■ 방법

- ⇒ (1)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친수구역 개발계획 폐기 및 대상지 지정 철회
- (2) 영주댐 건설 중단 및 백지화 : 영주댐 건설 중단, 내성천 생태경관보존지구 지정

○ 영주댐 건설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 사업 개요	○ 경북 영주시 평은면·이산면 일대 내성천에 건설 ○ 높이 55.5m, 길이 400m, 총저수량 181.1백만m³ ○ 2010~2020년(10년간), 예산 8700여억 원 투입
* 홍수조절효율 0.2%	
* 낙동강 중하류 수질 개선 효율 미미	
* 낙동강 유지용수 공급 위한 물 확보만을 위한 댐. 자연 생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	
* 복원 불가능할 만큼 무리한 계획 추진	
* 내성천은 낙동강 모래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지류. 자연 퇴적현상과 수질정화 활동이 활발하고 생태 경관이 수려	

- (3) 청문회·국정조사 실시(경인운하 사업 포함) : 부정부패 관련자 및 책임자 처벌

- (4) 보 해체 : 모니터링 결과와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

- ⇒ 국가기관이 추계한 연간 유지관리비 2년분이면 16개 댐(보) 해체 비용 상쇄

● 보 해체 비용 :

- ①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강기갑 의원 발의 2011.6.9) 발의 시 첨부된 예산 추계 : 398,835백만 원
- ② 정부 추계 : 1조 7천억(부수적인 항목 제외하면 약 1조원)
- ③ 비교 : 연간 4대강 유지관리비

국토연구원 추산(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보고서. 2010.2~2011.10)	6125억 원(매 년)
운하반대 교수모임 추산(유지관리비+수공 지급 사업비 8조 이자비용 4000억)(2011.3)	1조원(매년)

- (5) 기존의 4대강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천·지류 정비사업(‘고향의 강’ 사업),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 청계천 방식의 도심하천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 (6) 강변 생태유기농업단지 유지·지원 : 4대강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팔당유기농지 등 보존
- (7) 추가 준설 중단 : 하상 재퇴적과 준설의 악순환, 예산낭비 문제
- (8) 수변구역 법·제도·물리적 복원 및 보존 :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수변구역 개념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 제도로 환원·복원
- (9) [4대강 특별법] 제정 :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
한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발의 2011.6.9) 을 발의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내용 수정
하여 반영
- (10) 경인·운하 사업 국정조사책임자 처벌 : 술한 계획 변경과 필연적인 사업 차질 및 예산
낭비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책임 추궁

■ 재자연화 사례

⇒ ① 일본 :

- 2009년 9월 총선 이후 정권교체하여 출범한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은 공정률 70%인 군
마현 안바담 건설을 중단. 전국에 걸쳐 공사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다목적댐 143
개에 대해 전면 중단 결정
- 2010.12.15 간 나오토 총리, 일본판 ‘새만금 사업’으로 불리는 나가사키현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으로 건설한 독 수문 열겠다고 발표
- 큐슈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 사카모토촌에 위치한 아라세담(폭 210m, 높이 25m) 철거
결정. 2012년 4월부터 단계적 철거 시작, 2018년 철거 완료 계획

② 독일 : 이자(Isar)강 운하를 허물어 모래톱을 살리는 등 자연형 물길 복원

③ 스위스 : 라인강 지류인 투어(Ture)강 자연화 계획(직선형으로 변형된 물길을 사행천으로 바꾸어 모래톱 복원)

④ 미국 :

-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의 엘와 수력발전댐(높이 33m) 발전기 가동 중단, 본격적으로 해체 준비(2011.6.1 결정)

미국에는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대형댐이 7만5000개. 85%는 원래 수명인 50년을 훌쩍 넘긴 채 가동되고 있으며, 35000개의 댐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 상태. 경제성과 환경 보호,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체하기로 결정된 댐의 수가 증가 추세. 새로 건설되는 것보다 해체되는 댐이 훨씬 많음. 대략 한 해에 50~100개씩 크고 작은 댐이 해체되어 사라지고 있음

- 남부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습지 복원

2. 삽질 그만, 생태 보전!

공약

1. 자연해안 보호! 조력발전댐 건설 계획 폐기

⇒ 서해안 조력발전댐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공유수면매립 제도 개선

2. 자연보존지구엔 케이블카 윈 말! 식도 건설 기준 재개정·강화

⇒ 2010.10월 개정 이전 수준 이상으로 기준 강화.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철회

3. 골프장이 공익시설? 아니올시다! 토지강제수용 불허

⇒ 공익시설(체육시설) 대상에서 골프장 제외. 토지강제수용 불허

4. DMZ·민통선 일원 함부로 손대지 마! 자연유보 강화, 생태단지로 특화

⇒ 접경지역 난개발계획 중단. 유기생태농업단지로 특화

5. 새만금에 생명을 허하리! 갯벌 복원, 생태농지·재생에너지단지 조성

⇒ 바닷물 유통, 갯벌 생태계 복원, [새만금특별법] 전부개정

6. 2주일 위해 ‘천년의 숲’ 훼손이라니!! 평창올림픽, 친환경으로 성공 견인

⇒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 슬로프 계획 변경·대안 모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

개발 중단
생태 보전

⇒

조력발전댐 계획 폐기

⇔

공유수면매립 제도 강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폐기

⇔

설치 기준 강화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불허

⇔

공익시설에서 제외

DMZ·민통선일원 난개발 중단

⇔

자연유보 강화.
생태단지로 특화

새만금 개발사업 재검토

⇔

해수 유통, 새만금특별법 개정
생태농지·재생에너지 단지

친환경 평창겨울올림픽 개최

⇔

가리왕산 보전

1. 자연해안 보호! 조력발전댐 건설 계획 폐기

■ 현황

⇒ ① 서해안에는 대규모의 조력발전댐 건설 계획이 추진·진행 중(강화조력, 인천만조력, 가로림만조력, 아산만조력). 연안 생태계 파괴, 범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해양환경 교란, 주민 생계 위협, 전력생산자·소비자 간의 불평등과 부정의 심화 등의 문제 발생



(지도 : 오마이뉴스)

② 갯벌과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더 이상의 해안선 감소를 막고, 환경 친화적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간척)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

※ 1910년과 비교해 2010년 기준으로 한반도 해안선이 7569km에서 5620km로 1949km 줄어 약 4분의 1 감소. 서해안은 3분의 1 이상 줄어듦(국립환경과학원, 2010)

③ 항만공사 및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해안 정비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하도록 실행

■ 목표

⇒ 자연 연안과 갯벌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연안생태계와 주민의 생계터전을 보호

■ 방법

⇒

(1) 서해안에 추진 중인 조력발전댐 건설 계획 전면 철회·백지화

(2) 간척 및 연안 관련법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강화

○ 개정 방향

- 매립지 준공 전 사용 제한 완화 내용, ‘준공검사 받기 전에 영구적 시설물 설치 금지’ 내용으로 강화
-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법 개정 이전처럼 최소 20년으로 환원 또는 30년으로 강화

② [연안관리법] 개정

○ 개정 방향

- 갯벌 보호, 사용가치와 이용편익이 감소한 방조제 철거 등 자연형 연안 복원 내용 강화
-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에서 ‘개발’을 삭제하고 ‘복원’을 추가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보완 : 민간 피위촉 위원에 환경전문가 및 활동가를 6명 이상 위촉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
-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강화

(3) 자연해안 복원

① 환경피해가 크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인공시설물 제거

②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여부 등 면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합의 거쳐 각종 하굿둑·해안 제방의 수문 개방·바닷물 유통

③ 폐양식장·폐염전에 갯벌 복원. 활용도와 경제성이 떨어진 간척지 농지의 역간척

■ 유사 사례

⇒ ① 네덜란드(300ha 농지인 헤드위제 간척지 제방 허물고 해수 유입. 북쪽해안 아믈랜드 제방 헐고 염생습지 등 갯벌 복원)

② 장흥 사촌리 갯벌 복원: 제방 일부 철거, 바닷물 유통(2009)

2.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원 말! 삭도 건설 기준 재개정·강화

■ 현황

⇒ ①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항(삭도의 길이 기준) 개정(2010.10.1). 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

② 환경부, 제9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 대상지로 7곳을 지정(2011.12.21). 제9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내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 심의의결(2012.2.3). 최종사업대상지 2012년 6월 중 결정 예정

○ 시범사업 검토 대상지

○ 설악산(양양) ○ 지리산(구례·남원·산청·함양) ○ 월출산(영암) ○ 한려해상(사천)

③ 난개발에 의해 자연 환경은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 생물다양성 유지와 환경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

■ 목표

⇒ 최소한 2010.10월 개정 이전의 수준으로 케이블카 건설 기준 환원하여 강화. 국립공원 내 정상부와 케이블카 통과 예정 지점의 생태계 보호

■ 방법

⇒

(1) [자연환경법 시행령] 개정

① 2010.10.01 개정 이전의 기준인, 길이 2km, 상·하부 정거장의 건물 높이 9m로 개정·환원

(2)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철회

(3) 국립공원 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보호구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국립공원 관리정책 개선

3. 골프장이 공익시설? 아니올시다! 토지강제수용 불허

■ 현황

⇒ ① 2010년 3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건설 중 포함) 477개소. 골프장이 공익시설인 체육시설로 인정되어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한 현실. 강제수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나 여전히 현실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 헌법재판소 판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 소송 판결(2011.6.30)

○ [헌법재판소 2011.6.30. 2008헌바166]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8[위헌] : 1[합헌]의 의견으로,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

②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시행)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도 이미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예전처럼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함

③ 골프는 학교에서 체육특기자 종목으로 선정되어 있음

④ 생태계를 파괴하며 들어선 골프장은 ‘녹색사막’. 주민의 생계터전과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박탈하는 골프장 건설 제한. 기존 골프장 관리 강화 필요

■ 목표

⇒ 공익시설(체육시설) 범주에서 골프장 제외. 신규 골프장 건설 억제. 기존의 골프장 관리 강화

■ 방법

⇒

(1) 관련법규 개정 :

① 공익시설과 체육시설 범주에서 골프장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보완개정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시행) 경과규정 개정
→ 개정방향 : “입안서가 제안되었거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처럼 강제수

용 가능”하도록 한 경과규정 삭제

- (2) 골프장 물 사용계획 제출 의무화 : 대수층 지하수는 공공재. 일정 정도 이상의 사적 개발·이용 제한 → 물(지하수) 관리 차원(인근지역 거주민의 잠재적 물이용권 보장, 생태계 안정과 미래세대의 물 사용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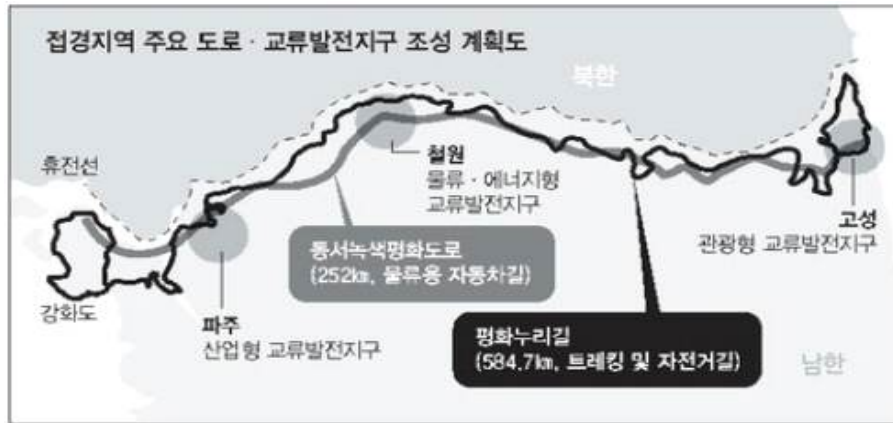
※ 골프장 하루 물 사용량 : 1000톤~2700톤. 1000톤은 50가구의 한 달 사용량

- (3)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강화

4. DMZ·민통선 일원 함부로 손대지 마! 자연유보 강화, 생태단지로 특화

■ 현황

⇒ ① 정부는 DMZ·민통선 일원 접경지역에 21조원에 이르는 개발계획 추진 중



[정부 계획안, 2010]

② 개발의 효율을 위해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2010.10.4)

개발 계획과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문제점

- * 평화체제 구축 없는 개발계획의 위험성
- * 생태계 고려 없는 난개발의 무모함
- * 예산낭비
- *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는 조급함
- * 복원 불가능할 만큼 무리한 계획 추진
- * 토간·개발세력의 이익만을 보전해주는 반민중성
- * 민간개발 위주인 만큼 추후 재정부담 가중 우려
- * 지뢰 등 안전의 문제

③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민통선 일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환경 보존의 원칙, 문화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주민 생계 대책과 아울러 미래를 위해 모든 개발을 유보해야 할 필요가 절실히 요청됨.

■ 목표

⇒ DMZ·민통선 일원의 난개발 저지. 생태계 및 역사성 보존. 지속가능한 유기생태단지 설계

■ 방법

- ⇒ ① 기존의 개발 계획 폐기. 예산 투입 중단.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폐기
- ② '자연유보지역' 관련 조항 강화 : 민통선 일원의 국토 이용 계획은 남북한 사이의 평화 체제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확립되기 전에는 매우 불안정한 현실. 더욱이 DMZ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관할권이 아직 한국 정부에 속하지 않고 있음. 통일 이후라 할지라도 남북한 전체 DMZ지역에 대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법에 규정된 2년의 유보지역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임. 최소 5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개정해야 할 것임

○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정의) 13호

- ③ 민통선 일대 안전(지뢰)지도 작성
- ④ 친환경생태농업, 밀원수 조림, 생태 탐방 등 지원
- ⑤ 산불감시 체계 점검 및 보완
- ⑥ 군부대 폐막사 및 임도, 작전도로 관리 등 산사태 대책 강구
- ⑦ 동·서간 생태회랑 계획 수립
- ⑧ 통일 이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유사 사례

- ⇒ ① 독일 : 동서독 국경선 지역의 그린벨트 조성(1393km) : 죽음의 벨트(Death Belt)→ 녹색벨트(Green Belt). 전체 국경지역의 약 28% 자연보호지구로 지정, 약 38% 특별보호지역 지정 추진 중
- ② 베트남 : 남북베트남의 국경선이던 벤하이(Ben Hai)강 유역의 에코트레킹

5. 새만금에 생명을 허하랴! 갯벌 복원, 생태농지·재생에너지단지 조성

■ 현황

- ⇒ ① 경제성과 환경성이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에서 계획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태생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음
- ② 최초 계획 당시 농지 확보 목적이었으나 이후 사업 목적과 방향이 수시로 변경. 정부는 사실상 도시개발과 위락지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제6차 새만금위원회. 2011.3.16.)



- ③ 생태적으로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새만금의 갯벌과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미래 가치를 지키는 것

■ 목표

- ⇒ 바닷물을 유통시켜 새만금 갯벌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부분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 방법

- ⇒ ① 방조제 수문을 열어 바닷물 유통
- ② 방조제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참여 공동위원회 구성
- ③ 현재의 새만금종합개발계획 반대제검토

- ④ 재생 에너지단지 조성. 바이오연료작물 재배 방식은 배제
- ⑤ 생태유기농업단지 조성. 기업형이 아닌 소농 중심으로 구성
- ⑥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 : 첨단복합용지개발목적 등 수정·변경

■ 유사 사례

⇒ ① 경기도 시화 방조제 : 담수호 계획 폐기. 바닷물 유통하여 수질 개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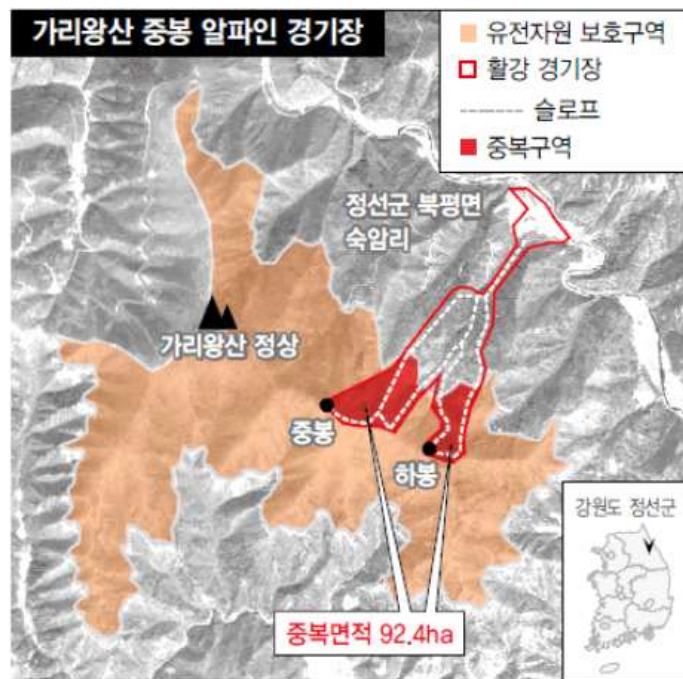
- * 시화 방조제 개통 이후 일부구간을 활용해 조력발전댐을 추가건설. 새만금 방조제에 조력댐 건설은 절대 반대

6. 2주일 위해 ‘천년의 숲’ 훼손이라니! 평창올림픽, 친환경으로 성공 견인

■ 현황

⇒ ① 평창이 2018년 제23회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결정(2011.7.6)된 이후, 알파인 스키 슬로프 건설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

② 강원도는 용역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선군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슬로프 건설을 계획. 만항재 일대 봉우리 폐탄광지역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강행 태세



(지도 : 한겨레)

③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행사를 준비해 치르는 것이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

■ 목표

⇒ 준비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대안을 찾아 가리왕산 보호림을 보전하고, 전 과정에서 성공적인 환경올림픽 가치가 실현되는 대회로 치러지도록 건의

■ 방법

⇒ ① 시민 참여하여 공동으로 스키장 대안 모색

② IOC와 슬로프 건설대상지 변경 적극 협의

③ 대회 이후 유지 관리 및 수익 구조에서 지속가능한 방안 모색

■ 해외 사례

⇒ ① 노르웨이 릴레함메르(1994), 철새보호구역 보전 위해 경기장 이전. 동굴에 아이스하키 경기장 설치

② 일본 나가노(1998), 국립공원지역 보호 위해 활강경기장 설계 변경·조정

③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2000), 멸종위기종 ‘그린 앤드 골든벨 개구리’ 보호 위해 경기장 터 이전

3. 생명이 넘치는 자연!

공약

1. 표범·장지뱀·단양쑥부쟁이에게도 권리를! ‘자연의 권리’ 법제화

⇒ 생태계 훼손·서식지 축소는 여전. 생태의 가치는 경시되는 현실. 자연을 구성하는 야생 생물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근거 마련

2. 생물다양성은 도덕 감수성의 척도! 생물다양성 확립 및 야생생물 보존

2-1.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죠! 해양포유동물 보호·보존

⇒ 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을 ‘수산자원’이 아닌 야생의 생명으로 인식하여 보존대책 수립

2-2. 백두대간은 국토의 척추입니다! 대간·정간 생태 복원

⇒ 파편화 된 육상생태계와 산림의 생태회랑 연결. 기능이 상실된 도로의 자연화

2-3. 도시에 자연의 숨결을! 도심 생태축 연결

⇒ 점점이 흩어져 고립된 생태공간 연결. 녹색띠 만들기

2-4. 쓸모없는 땅? 여기가 생태의 보고(寶庫)! 습지 보존

⇒ 갯벌·강·호소·고층습지 등 보존방안 강화

2-5. 우리씨앗은 다른 곳엔 없어요! 토종유전자원 보전

⇒ 토종유전자원 적극 발굴·보존·보급, 전통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GMO(LMO) 씨앗의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

2-6. 국립공원, 제대로 관리합시다! 국립공원관리청 신설

⇒ 국립공원지역을 자연보호구 개념으로 관리 방향 전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청으로 승격

2-7. 보신·사치 취향의 밀렵은 야만! 밀렵 근절

⇒ 민간 밀렵감시원에게 제한된 현장단속권 부여. 출입제한 준자연보호구 설정

2-8. 반려동물은 가족이에요!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세 면제

⇒ 동물병원의 동물 진료비용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생명 존중 다양성 보존 ⇒	'자연의 권리' 법제화	⇐	인간과 자연·생태의 공존·상생. 해외에서도 인정 추세
	해양포유동물 보호	⇐	고래 포획 금지
	백두대간 생태 복원	⇐	국토의 생태축 연결·보전
	도심 생태축 연결	⇐	푸른 도시 실현
	습지 보존	⇐	보존 방안 강화
	토종유전자원 보전	⇐	토종씨앗 보전, GMO 관리강화
	밀렵 근절	⇐	민간단체 밀렵감시원에게 제한된 현장 단속권 부여
	반려동물치료 부가세 면제	⇐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
	국립공원관리청 신설	⇐	책임과 권한 강화

1. 표범장지뱀·단양썩부쟁이에게도 권리를! ‘자연의 권리’ 법제화

■ 현황

- ⇒ ① 성장과 개발을 위해 인간 중심의 자연 착취와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 중.
자연은 항상 대상화되고, 야생 생물의 서식지는 훼손되고 생물다양성은 심각하게 위축
- ②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야생 생물에게, 고유성을 유지하며 생존번식할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법적 장치 마련

※ **자연의 권리** : 자연생태계가 파괴원인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자연 고유의 권리가 침해될 때 그를 대항할 보호단체나 개인이 권리를 위임받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출소권 포함

■ 목표

- ⇒ ‘자연의 권리’가 정치권과 사회 일반에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 자연·생태와 인간의 삶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공존·상생하며 지속. 법 제정 후 헌법 개정이 논의될 때 헌법 조항

에 관련내용 추가하여 반영

■ 방법

- ⇒ ① 가칭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② 기존의 관련 법률에 '자연의 권리' 내용 추가하여 개정

■ 사례

- ⇒ ① 에콰도르 : 개정 헌법에 '자연의 권리' 관련 조항 신설(2008.9.28)
② 볼리비아 : [어머니-지구 법] 제정, '자연의 권리' 내용 반영(2011.4.10)
③ 미국 :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에 부분적으로 근거 마련(1973)
④ 프랑스 : [자연보호법]에 '자연의 권리' 존립과 단체출소권 조항 신설(1976)
⑤ 일본 : 아마미 흑토끼(우는 토끼) 사건에서 원고 적격 인정·승소(1999)
⑥ 볼리비아 세계민중선언(2010.4.22) : '자연의 권리' 정신이 담긴 [기후변화와 어머니-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민중회의 민중합의문] 채택, 유엔에 전달

2. 생물다양성은 도덕 감수성의 척도! 생물다양성 확립 및 야생생물 보존

■ 현황 일반

- ⇒ ① 4대강 사업, 갯벌 매립, 도시 확장, 도로 건설, 숲 훼손, 환경오염, 기후변화, 밀렵 및 남획, 인식 부족, 정책의지 결여 등의 이유로 생물다양성은 점점 위협받고 있으며 감소 추세
- ② 지속가능한 사회, 인간과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환경 보존을 위해 관련 제도 보완강화가 절실히 요청됨

■ 공통 목표

- ⇒ 야생 생물 서식지 보존, 종 보존 및 자연증식의 지속가능성 확보, 생물다양성 유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적 장치 강화

2-1.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죠! 해양포유동물 보호·보존

■ 현황

- ⇒ ① 고래는 ‘수산자원’으로 분류되어 환경부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 ② 혼획 된 고래 개체수가 늘고 있고, 불법 포획 또한 느는 추세

* 1996년~2009년 사이 혼획·좌초된 고래 5,312마리. 그 중 참고래·밍크고래 등 1,259마리
* 국내에서 연구목적으로 포획 허가된 돌고래, 2009~2010년 2년간 220마리
* 1년 동안 밍크고래 120마리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 적발(2010.6 경북지방경찰청)
* 연간 혼획 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래고기가 시중에 유통 : 불법 포획의 증거
* 국제보호종 '큰 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동물원에 공연용으로 판매한 행위 발각(2011.7)

- ③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과학조사·공연 및 전사·교육 목적으로 고래잡이 허용하고 있음(2011.1.3 시행)
-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6년 상업 목적의 포경 전면 중단 결정
- ④ 고래를 ‘수산자원’이 아닌, 보호해야 할 야생의 생명으로 인식하여 보존 대책 수립 필요. 고래뿐 아니라 한반도 연안에 서식·회유하는 해양포유동물 보존이 절실함

■ 목표

⇒ 고래의 포획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해양포유동물이 자연에서 간섭 없이 회유·서식하며 인간과 공존하도록 함

■ 방법

⇒ 관련 법규 개정, 정책 방향 전환

①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관련 조항 보완·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 제2조(정의)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하며, **해양포유동물을 포함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2.7.29 시행 예정인 법안의 조항에도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음

②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고래 포획 허용 조항 삭제. 보존 강화 내용으로 개정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 ②항 7.호 내용 개정

● 개정 방향

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보존·이용계획’에서 ‘이용’ 삭제

④ 별도의 [해양포유동물 보호법률(안)] 제정 검토

2-2. 백두대간은 국토의 척추입니다! 대간·정간 생태 복원

■ 현황

⇒ 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주요 산줄기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되고 있음

② 백두대간뿐 아니라 대간에서 뻗어 내린 정간에까지 확대하여 보호할 필요 있음

③ 생태축 연결을 위해 적극적인 복원 계획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목표

⇒ 백두대간과 정간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축을 연결하여 국토 내 생물서식지의 유기적 관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의 바탕을 확보

■ 방법

- ⇒ 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보완개정
- ② 백두대간 및 정간의 훼손 지역 생태회랑 연결
- ③ 용도 폐기된 도로 재자연화
- ④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지구 관통도로 생태통로 보완·확충, 로드킬 대책 강화
- ⑤ 사전환경영향평가 예외 없이 엄격히 시행
- ⑥ 일정 크기와 규모 이상의 고사목 보존

2-3. 도시에 자연의 숨결을! 도심 생태축 연결

■ 현황

- ⇒ ① 도시의 팽창에 의해 생태적 공간은 고립되고 파편화 되어가는 경향
- ② 끊어지고 흩어진 소생태계의 연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
- ③ 생활공간에 가까운 곳에 다양한 규모의 생태적 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정서와 삶의 질 향상할 필요

■ 목표

- ⇒ 도시에서 자연생태를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유기적 생태축 형성

■ 방법

- ⇒ ① 점점이 흩어져 고립된 생태공간 연결. 녹색띠 만들기
- ② 다양한 비오톱(생물서식지) 조성
- ③ 옥상녹화
- ④ 도시텃밭 등 농업 공간과 연계
- ⑤ 도심 불투수층 제거

2-4. 쓸모없는 땅? 여기가 생태의 보고(寶庫)! 습지 보존

■ 현황

- ⇒ ① [습지보존법]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명목상일 뿐이고,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습지는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훼손되고 있음. 4대강 사업, 간척사업 등에 의한 무차별한 습지훼손이 대표적 사례
- ② 습지는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며, 생태 유지의 기본이 되는 곳
- ③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더 이상의 습지 훼손을 막아야 함

■ 목표

- ⇒ 습지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된 습지는 치유·복원하여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함

■ 방법

- ⇒ ① 인위적으로 훼손한 경우 습지 복원 명령 및 처벌 강화
- ② 단순 대체습지 조성은 실효성이 없으며, 대체습지 조성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물종과 개체수 확보 조건을 강화
- ③ 각종 오염원 제거 강화
- ④ 농토인 논(畓)을, 생태적 차원에서 습지에 준하여 관리. 농업의 특성과 농민의 입장을 감안하여 논에 대한 지위를 규정할 필요 있음(관련법률 보완)

2-5. 우리씨앗은 다른 곳엔 없어요! 토종유전자원 보전

■ 현황

- ⇒ ① 다국적기업의 GMO 유포와 확산은 토종자원의 생산 위축과 유전자 오염 등 직접적인 위해요소가 되고 있음
- ② ‘유전자원 접근 및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2010.10.30)에서 확인되듯 생물자원은 환경 차원뿐만 아니라 권리와 이익의 대상으로 지위가 확대. 종자산업의 경제적 가치 향상

③ GMO 확산을 차단하고 토종유전자원 보전이 절실

■ 목표

⇒ 국내의 토종유전자원 보전 조치를 강화해 종자다양성 및 종자주권을 확보하고, GMO(LMO, 유전자변형종자생물체)의 확산을 저지

■ 방법

⇒ ① GMO(LMO) 씨앗의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
② GMO의 비의도적인 유출에 대해서도 공급사에 유통 관리상 책임 엄격히 추궁
③ 토종유전자원 적극 발굴·수집·보존·보급 제도화
④ 토종종자산업 지원
⑤ 토종유전자원 국외 유출 철저 관리·감독. 위반 시 처벌 강화
⑥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강화·개정

■ GMO 국내외 유출 사례

⇒ ① 일본농업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곡물 수입항 주변 3개 지역 도로변에서 LMO 유채 생육과 유전자 전이 확인(2009)
② 유럽연합(EU)로 수출된 캐나다산 아마씨 중 LMO 소량 섞인 것 발견(2009)
③ 국립환경과학원 LMO분포 실태조사(2009) : 전국 26개 지역에서 LMO로 추정되는 옥수수유채면화 자라고 있는 것 확인. 운송·유통 과정 중 낙곡이 원인으로 추정

2-6. 국립공원, 제대로 관리합시다! 국립공원관리청 신설

■ 현황

⇒ ① 궁극적으로 국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닌 자연보호구 방향으로 개념이 전환·강화되어야 함
②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지만(한라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 더욱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

■ 목표

⇒ 기존의 국립공원 관리 방향을 자연보호구 관리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관리 공단의 지위를 청으로 상향하여 책임 있게 역할 수행

■ 방법

- ⇒ ① 국립공원지역을 자연보호구 개념으로 관리 방향 전환
②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청으로 승격
③ 국립공원관리위원회 구성에 생태환경 관련 전문가 및 시민 참여 확대
④ 전체적인 정부 부처 재구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 참고

- ①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법 : [자연공원법] 제6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제44조~69조

2-7. 보신사치 취향의 밀렵은 아만! 밀렵 근절

■ 현황

- ⇒ ① 밀렵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개정 법률에서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밀렵은 근절되지 않음
② 보신 식습관 및 박제 수집 등 사치 취향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적 제한이 필요
③ 난개발 때문에 축소된 야생생물 서식지가 밀렵 때문에 더욱 파괴되고 있음

■ 목표

- ⇒ ① 밀렵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함과 아울러, 생활 주변에서 주민 모두가 생태보호원이 될 만큼 인식 전환 유도
② 밀렵 완전 근절
③ 안전하고 안정된 생태계 유지

■ 방법

- ⇒ ① 법률에 규정된 ‘야생생물보호원’과 민간단체 밀렵감시원에게 제한된 현장 단속권 부여 :
총기 및 밀렵도구 압수, 의심차량 조사 권한을 주어 실효성 확보
- ② 서식지 주변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 추동
- ③ 식용으로 구입하여 취식하는 자, 불법 박제품 유통·구매하는 자 역시 처벌 강화
- ④ 철새도래지 등 보호서식지 확대
- ⑤ 생업과 탐사 목적 외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준자연보호지구 설정
- ⑥ 현장 점검 및 단속 강화(공익요원 활용 등)

2-8. 반려동물은 가족이에요!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세 면제

■ 현황

- ⇒ 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치료비에 10% 부가가치세 부과
- ②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인데 부가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는 여론
- ③ 반려동물을 키우는 400만 가구 중 72%가 월 소득 400만 원 이하의 서민, 이중 32%는 홀로생활 노인 등 소외계층
- ④ 치료비 부담 때문에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 증가 우려

■ 목표

- ⇒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소외현상이 심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동반자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함

■ 방법

- ⇒ ① 관련 [부가가치세법] 또는 [시행령] 개정
- ② 수의사 및 동물병원의 모든 동물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4. 깔끔하고 안전한 삶터!

공약

1. 생활공간 환경성 질환 불안 해소

1-1. 우리아이 뛰노는 곳, 유해물질 안 돼! 학교운동장 유해독성물질 완전 제거

⇒ 학교운동장, 교실의 유해독성물질 제거. 오염 차단

1-2. 우리아이 장난감·문구에 유해물질 퇴출! 첨가물 관리 강화

⇒ 생활용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 엄격히 관리

1-3. 고향집 부모님, 이젠 석면 걱정 마세요! 농촌 지붕슬레이트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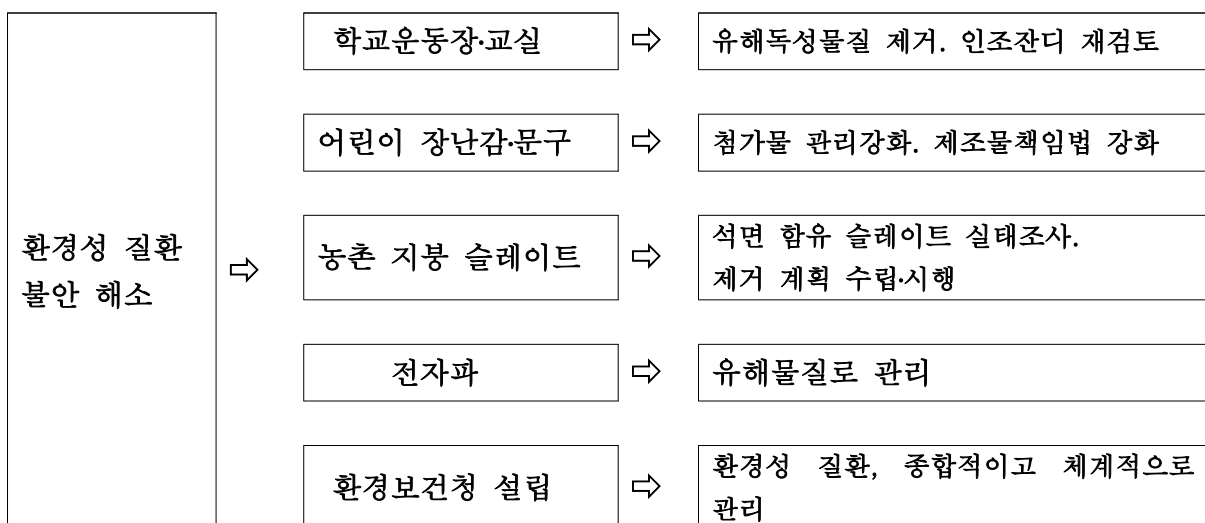
⇒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실태 파악, 제거 계획 수립·시행

1-4. 전자파, 불안해요! 유해물질로 관리

⇒ 국제 기준에 맞추어 전자파 관리 강화

1-5. 통합하여 관리해요! 환경보건청 설립

⇒ 잠재적인 환경성질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환경보건청' 설립



1. 생활공간 환경성 질환 불안 해소

■ 현황 일반

- ⇒ ① 유입 경로가 불분명한 유해 화학물질의 증가, 과거에 대량으로 이용된 석면의 부적절한 처리, 대기 중 오존의 증가, 디지털 시대의 부산물인 전자파 등의 영향으로 환경성 질환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 방사능에 대한 불안 증가
- ②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

■ 공통 목표

- ⇒ 유해화학물질, 전자파, 석면, 방사능에서 안전하게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 해소

1-1. 우리아이 뛰노는 곳, 유해물질 안 돼! 학교운동장 유해독성물질 완전 제거

■ 현황

- ⇒ ① 학교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이 인조잔디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 인조잔디는 시각적 효과 외에 반환경적이고 비위생적인 재질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 ②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이 천연잔디까지 포함하도록 일부 변경 되었으나 여전히 매우 미흡
- ③ 교실 천장 마감재에 석면이 쓰인 학교가 여전히 있음

■ 목표

- ⇒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 환경 개선

■ 방법

- ⇒ ① 학교운동장, 교실의 유해독성물질 제거. 오염 차단
- ② 학교운동장 환경 개선(인조잔디, 유해성분 함유 재질 제거 등) 및 어린이 놀이터 위생관리 강화
- ③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정책 전환

1-2. 우리아이 장난감·문구에 유해물질 퇴출! 첨가물 관리 강화

■ 현황

- ⇒ ① 어린이용 완구와 문구에 다양한 화학첨가물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는 어린이용 장신구만 재질표시 의무
- ② 취급제한 및 금지화학물질에 대한 목록이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비
- ③ 어린이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준 강화 및 소비자 권리 확대가 필요

■ 목표

- ⇒ 유해 화학물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고, 제조물책임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함

■ 방법

- ⇒ ① 생활용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 기준 강화
- ② 고위험 우려물질에 대한 표시 의무화
- ③ 취급제한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목록 확대
- ④ 제조물책임 원칙 강화 → [제조물책임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개정(제조자의 안전성 입증 책임)
- ⑤ 위해 정보 소통 방안(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 ⑥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정

1-3. 고향집 부모님, 이젠 석면 걱정 마세요! 농촌 지붕슬레이트 제거

■ 현황

- ⇒ ① 석면의 유해성에 무지하던 시기에 사용된 석면 함유 물질이 생활공간에 산재해 있음
- ② 특히 농촌지붕개량사업시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의 가옥이 농촌 지역에 주로 분포
- ③ 도시의 재개발지역 노후가옥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④ 해당 가옥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불특정 주변인들도 석면 피해 가능성

■ 목표

⇒ 궁극적으로 석면 함유 지붕슬레이트 완전 제거 및 석면 관련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

■ 방법

⇒ ① 석면 함유된 지붕 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제거 계획 수립·시행

② 석면 관리 강화 : 재개발 현장의 폐석면 제거 시 관리 강화. 석면 관리업체 감독 강화.

③ 석면 피해 판정 시기 단축 및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

④ 관련법 보완·강화 : [석면피해구제법],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2012.4.29.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1-4. 전자파, 불안해요! 유해물질로 관리

■ 현황

⇒ ① 디지털시대를 맞아 생활공간은 수시로 각종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음

② 국제보건기구(WHO)는 상용주파수(60Hz)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2001년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2011년 5월에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공식 발표

③ 유해 전자파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필요

■ 목표

⇒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관리 강화

■ 방법

⇒ ① 전자파를 법률상 환경오염·환경피해 항목에 추가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② 국제 기준에 맞추어 전자파 관리 강화

■ 참고(관련법)

⇒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 "생활환경" :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 "환경오염" :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②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정의)

- "환경피해" :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

③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조정법」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 :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

1-5. 통합하여 관리해요! 환경보건청 설립

■ 현황

- ⇒ ① 환경성질환 유발 물질은 매우 다양하며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문제
- ② 질환 예방조치, 피해자 구제, 사후 조치 등 단계별로 질환 대응 내용이 상이
- ③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성질환을 통합 관리할 필요

■ 목표

⇒ 윈스톱 형식으로 한 기관에서 환경성 질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 효율 향상

■ 방법

- ⇒ ① 잠재적인 환경성질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환경보건청' 설립
- ② 전체적인 정부 부처 재구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5. 물은 생명, 수공에 위탁관리 반대!

공약

1.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 정책 재검토·공공성 강화

⇒ 상수도의 공공성 강화.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 정책 철회

2. 현지에, 소규모, 분산형으로 물 관리-빗물저장시설 설치 의무 확대

⇒ 소규모 시설을 현지에 분산 설치해 빗물 관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빗물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3. 댐 건설은 이제 그만! 부산 상수도 문제, 낙동강 수질 개선이 우선

⇒ 남강댐 수위 높이기 계획 백지화 및 지리산댐 건설 계획 철회. 낙동강 수질 개선

4. 반구대 암각화는 물을 싫어해! 사연댐 수위 낮추기가 우선

⇒ 물 문제와 문화재 문제 분리 필요. 빗물·강변여과수 활용 가능

5. 대청호 유역 개발계획 철회

⇒ 친수공간 조성사업 계획 폐기

1.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 정책 재검토·공공성 강화

■ 현황

⇒ 정부는 물 산업 정책을 강행하며 상수도를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을 강력히 추진 중. 일부 지자체는 이미 위탁하여 관리 중. 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재로 관리되어야 하며, 수자원 공사를 포함해 민간위탁으로 가는 정책은 철회·폐기되어야 마땅함

■ 목표

⇒ 위탁 정책 철회. 기 위탁한 지자체의 경우 재공영화 추진

■ 방법

- ⇒ ① 물 산업 정책 전면 재검토 : 상수도 관리 위탁 정책 철회·백지화
- ②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상수도 관리 위탁 압력 철회
- ③ 지자체가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한 수도 관리 재공영화 추진 : 위탁(주요 수탁자: 한국수자원공사) 해지
- ④ 소규모·분산형 지방정수장 확충 : 기존 지방상수도 정수장 유지, 폐쇄 정수장 복구
- ⑤ [수도법] 개정 :
- 수도관리 업무의 위탁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제23조 등 개정
 - [시행령] 제36조 수탁기관(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정) 시행 기관 조항 삭제
- ⑥ 중앙정부 재정 지원 제도화 : 취약지역 지방상수도 사업에 중앙정부 재원 투입
- ⑦ 마을 간이상수도에 지원 확대
- ⑧ 지하수 관리 강화, 지하수 이용의 적절한 제한

■ 사례

⇒ 네덜란드·우루과이·홍콩·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볼리비아

■ 연계

⇒ 철도, 전기, 상수도, 가스, 공항 등 공공재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통일성 있게 함께 추진

2. 현지에, 소규모, 분산형으로 물 관리-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인무화

■ 현황

- ⇒ ① 육상의 생명체가 이용하는 물의 근원은 빗물. 최초의 원수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 관리와 이용의 핵심적인 사안
- ② 중앙집중식이 아닌 현지·소규모·분산형으로 전환하여 물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
- ③ 최상의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빗물저장시설 설치가 필수적
- ④ 법이 제정되었지만 신규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빗물 활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 미비

■ 목표

- ⇒ 물 관리 정책의 체계를 개편.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확대하여 수해 및 가뭄에 대비

■ 방법

- ⇒ ① 빗물 관리 정책 전환
-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6.8 제정, 2011.6.9 시행)] 개정
→ 기존 공공시설 및 신규 민간시설에까지 빗물 이용 및 저장시설 설치 의무 강화
- ③ 현지에·소규모·분산형 물 관리 시설 확충
- ④ [물 관리 기본법(안)] 제정 :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제정
- ⑤ 소규모 시골마을의 간이상수도 대책과 연계병행하여 추진

■ 사례

- ⇒ ① 일본(도쿄돔, 스미다 시청, 스모경기장 코쿠기칸)
- ② 독일(뮌헨 레오폴츠 거리, 베를린 소니센터, 하노버 엑스포 호수, 코블렌츠의 기술대학)
- ③ 미국(시카고 시 TARP 터널과 저류지 계획)

3. 댐 건설은 이제 그만! 부산 상수도 문제, 낙동강 수질 개선이 우선

■ 현황

- ⇒ ①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 수립(2008) : 진주 남강댐 만수위를 4m 높이고 남강에서 부산까지 100km 구간에 관로를 매설하여 부산에 물 공급. 진주사천·남해 주민들이 침수에 따른 생존권 이유로 반대무산
- ② 남강댐 물 공급 계획이 철회 되면서, 함양군 일대 엄천강에 지리산댐 건설 계획
- ③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물 확보와 수질 개선을 공언

■ 목표

- ⇒ ① 부산시민들의 상수도 공급 불만, 남강댐 수위 증고에 따른 경남주민들의 불안감, 지리산 지역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댐 건설 계획 등 문제점 해소
- ② 낙동강 수질의 획기적 향상

■ 방법

- ⇒ ① 남강댐 만수위 높이기 계획 완전 폐기
- ② 지리산댐 건설 계획 철회·백지화
- ③ 낙동강 수질 개선

낙동강 수질 개선 방안
*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 건설한 8개 보(댐) 해체
* 모래톱 강변 습지 복원하여 자연 여과 능력 향상
* 오염원 차단제거
* 총인 처리 설비 확충

- ④ 내성천에 건설 중인 영주댐은 부산시 물 공급에 적절하지 않으며, 낙동강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해 건설 자체가 중단되어야 함

4. 반구대 암각화는 물을 싫어해! 사연댐 수위 낮추기가 우선

■ 현황

- ⇒ 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울주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가 사연댐의 수위 상승에 따라 주기적으로 침수되면서 심각하게 훼손 위기에 처함
- ② 울산시는 암각화 주변에 차수벽·생태제방 건설, 유입하천인 대곡천의 터널형 유로변경 등을 대안으로 제시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2009.12월 고시)

* 2010년부터 2014년 2207억 원을 투입

* 청도 운문댐(7만㎥), 울주 대암댐(5만㎥)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1일 12만㎥ 물을 울산에 공급하려 한 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없음 결론(2011.7), 무산

○ 맑은물 공급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 암각화를 보존하겠다는 것이 울산시의 애초 계획

* 사업계획 무산으로, 유로변경 등의 대안 제시

* 제시한 대안은 모두 다 반환경적 방안이므로 부적절

- ③ 암각화 보존, 자연 환경 보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필요

■ 목표

- ⇒ ① 반구대 암각화와 주변 자연 환경의 원형 보존
- ② 새로운 방향의 물 공급 방안 모색·시행

■ 방법

- ⇒ ① 물 문제와 문화재 문제 분리 필요
- ② 우선적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 피해 방지가 시급
- ③ 빗물 활용 극대화
- ④ 누수 방지 및 중수 이용 등 적극적인 물 수요 관리
- ⑤ 주변 하천의 강변여과수 취수

5. 대청호 유역 개발계획 철회

■ 현황 및 문제점

⇒ ① 충청북도, 대청호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중

- 기존 83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운항이 중단된 도선길(교통선)을 청원문의문화 재단지-청남대-회남대교-장계유원지를 잇는 47km 3개 구간에 설치
- 상수원 보호구역에 하수유입을 막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
- 대청호 유역 친수공간 조성, 취수탑 이전 등

②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1권역, 수변구역의 규제를 받는 청정구역

- 충북도는 이를 정부요청에 의해 관련법 무력화를 통한 강제개발을 추진 중
- 관광지역화 된 친수지역의 관광객에 의한 오염이 보다 더 심각(쓰레기 투기, 물놀이 기타 불법취사 혹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호수 하층의 부영양화로 인한 오염 등)
- 사전연구용역조사 등 객관적 검증 전무, 인근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 없이 사업 강행

⇒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유사한 환경 파괴적 토목공사 개발 정책

■ 목표

- ① 대전·충청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물 이용 보장
- ② 부적절한 재원 투입 중단

■ 방법

- ① 수변구역을 무력화시키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② 상수원보호구역 강화

6. 환경인지 예산제도 도입!

공약

1. 환경인지 예산제도 도입!

⇒ 개발 등 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환경개선 기여 위해 도입

2. 친환경예산, GDP 대비 선진국 수준으로!

⇒ 선진국 수준인 1.5% 이상으로 확대

1. 환경인지 예산제도 도입!

■ 현황

- ⇒ ① 토건 위주의 개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환경 파괴의 주요인으로 작용
②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만으로는 사업의 환경훼손 저감에 한계
③ 환경적 영향은 감소시키고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운용·결산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

■ 목표

- ⇒ ① 사업 시행시 환경과의 영향을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예산 편성
② 예산의 효율성 및 정부재정의 투명성을 높임

■ 방법

- ⇒ ① 환경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 법률 제정
②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

2. 친환경예산, GDP 대비 선진국 수준으로!

■ 현황

⇒ ① 환경 관련 예산총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태보전과 기후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예산 편성은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

② 2011년 GDP 대비 2012년 친환경예산 비율은 0.7%

○ 2011년 GDP : 1,163,847백만 US\$ → 약 1,330조 원
○ 2012년 친환경예산 : 약 9조6,500억 원
○ 친환경예산 산정 기준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식경제부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합산

③ GDP 대비 선진국 친환경예산(2007년) : 덴마크 1.4%, 독일 1.3%, 네덜란드 1.1%

④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도 대폭 확대 절실

■ 목표

⇒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여 확대

■ 방법

⇒ ① 우선 단기적으로 GDP 대비 1% 이상 확보

② 1.5% 수준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③ 토건·개발 예산 삭감

④ 환경세제 개편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에너지·기후 공약

“생태사회로의 전환”

2012년을 탈핵원년으로! 기후정의 실현!

■ 대표 공약 ■

1. 2012년을 탈핵원년으로!

탈핵 기본법 마련 - 신규 발전소 건설/수명연장 계획철회,
적극적 수요 관리 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원자력문화재단 해체
정의로운 전환' 을 위한 예산 및 사업 마련

2. 기후정의 실현!

에너지 기본권 실현
산업용 전기요금 대기업 특혜 폐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3. 도시에서 에너지를!

하수슬러지를 CNG로 전환, 마을버스부터
폐식용유의 바이오 디젤 전환, 관용차부터.

연구위원 강은주(ej-samsun@daum.net)

1. 2012년을 탈핵원년으로!

공약

1. 탈핵 기본법 마련 -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과 수명 연장 포기, 단계적 폐쇄

⇒ 현재 수명연장이 결정된 고리1호기와 수명연장 논의 중인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계획 철회 및 삼척과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2. 적극적 수요 관리 안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핵발전을 확대하고, 이를 다시 심야전기나 전기 난방 등으로 돌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적극적 수요관리를 통한 총사용량 감축. 에너지원의 다양화로 에너지 믹스를 통한 탈핵 실현.

3. 원자력문화재단 해체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연간 100억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4. 정의로운 전환' 을 위한 예산 및 사업 마련

⇒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교육 예산을 마련하고,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

1.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과 수명 연장 포기

■ 현황 및 문제점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인 탈핵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신규 핵발전소(삼척, 영덕)의 건설계획과 노후 발전소의 수명연장계획, 핵발전소의 수출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원자력 르네상스는 더욱 박차
- 정부의 계획은 2024년까지 핵발전을 전체 발전량의 48.5%까지 확대할 계획(현재는 약 31.4%)
- 더불어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에 이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계획 중. 고리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30km 안에는 부산 인구 350만 명과 울산인구 110만 명이 포함.

■ 목표

- 신규 핵발전소 의 건설 중단으로 지역의 환경갈등 해소.
- 노후 발전소의 폐쇄로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 방법

- ‘탈핵 기본법(가칭)’ 제정,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계획 철회
- 신고리 핵발전소 등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 철회 및 영구폐쇄 준비
- 핵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거버넌스 마련
- 설계수명이 다하지 않아도 20년 가동 후 단계적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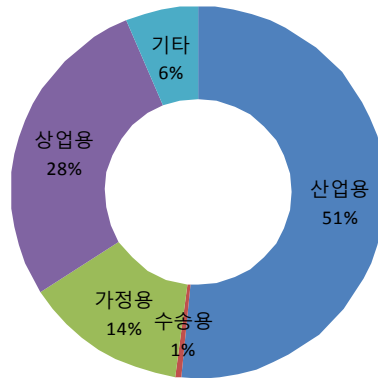
	2012년 (탈핵원년)	2020년	2030년	2040년
폐쇄 발전소 (누적)	2기	8기 (10기)	6기 (19기)	4기 (23기)
가동 발전소	21기	13기	4기	0

2. 적극적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우선적으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 정부는 과도한 수요에 측으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의 근거로 이용해왔음.
- 현행 수요관리정책은 관리목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나열식으로 운영하며 통합적인 수요관리 추진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함.

부문별 전력소비



2010년, 에너지통계연보

- 우선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여가면서 효율화와 대안적 에너지를 확대해야 함. 수도권 에너지 저감과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
- 한반도 전체 재생에너지 총량은 2조 4천억 TOE로 2008년 한국이 사용한 1차 에너지 소비량의 7.3배. 태양광산업협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물옥상, 고속도로변, 휴경지나 폐채석장 등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잠재량의 중간치는 25,185MW로 현재 핵발전용량인 17,716MW(2010, 에너지통계연보)보다 많음.
-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조명, 전동기 교체 등을 통해 핵발전소 발전량 대비 26%까지 에너지 절감 가능.

■ 목표

- 에너지원의 다양화(에너지 믹스)를 통해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실현

■ 방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전면 재개정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및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지원
- 조명, 인버터, 전동기 교체 등을 통해 효율 향상과 적극적 수요관리
- 2020년까지 산업·상업용 전기의 현재 전력소비량의 20% 감축



3.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곳이 바로 원자력 문화재단.
- 연간 총 1조원이 넘는 기금 중 2009년 93억 원 가량, 2010년 95억 원 가량이 원자력문화재단으로 투입. 전기요금에서 원자력 홍보비가 나가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홍보비는 전무.

■ 목표

- 핵발전에 대한 홍보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 홍보에 예산 배정

■ 방법

-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 재생가능에너지 재단 설립

4. 정의로운 전환' 을 위한 예산 및 사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되어야 할 것.
- 정의로운 전환은 ‘건강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제거하고 노동자 및 지역 사회의 이익과 노동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이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녹색일자리의 적극적 창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 목표

- 노동의 손실 없는 에너지 전환의 실현

■ 방법

-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 조성.
- 노동자들이 새로운 분야로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전환과 관련된 비전 제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노동자 교육을 주요하게 언급. 정책적 우선순위로는 ①특정 산업에서 발생할 고용 영향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기반이 된 기후변화 정책과 수단, ②구조조정의 고통을 국가와 국제 경제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과 지원 자금 형성을 제시.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으로 녹색 고용 창출.

2. ‘기후정의’ 의 실현

공약

1. 에너지 기본권 실현

⇒ ‘에너지 기본법’ 을 제정하고,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2.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 폐지, 산업용전기 요금 현실화

⇒ 경부하 요금제로 노동권 침해 방지 및 재벌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제도의 개편

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학적 취약계층에 대한 역학조사 및 농·어업 피해 연구/대책 마련

1. 에너지 기본권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 에너지 빈곤층은 2006년 120만 가구에서 2008년 130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 낮은 소득과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함께 낮은 주택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빈곤에 영향
-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단전을 경험한 가구는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84,708 가구이며, 2007년 전체 동안에는 155,401 가구.

■ 목표

(1) 에너지 복지 차원의 효과 기대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평균 에너지 저감 비용을 7%로 가정할 경우 가구당 월 7,849원의 에너지비용 저감 효과.

(2) 환경적 효과 기대

- 전체 가정분야 CO2 발생량의 1.4% 가량 감축 효과

(3) 녹색 고용 효과 기대

- 건축보수 분야 취업유발계수(17.8)을 이용하면, 201만 가구의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2조 4,120억원(10년간, 연간 2,412억 원)을 투자할 경우에 창출 가능한 취업자 수는 대략 연간 4,293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 방법

- 에너지 복지 관련법의 제·개정

< 유관 법률 제정 및 개정 >

법률	제정 및 개정안
에너지기본법(개정)	에너지 복지 구체화 방안('에너지 효율적 이용') 명문화
에너지복지법(제정)	에너지복지 전담기구 설치 명문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명문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개정)	에너지 복지 지원 근거 마련
저소득층주택에너지효율개선지원법(제정)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지원 근거 마련

2. 전기요금 체계 개편 -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에너지 가격 정책의 에너지 정책의 중심.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많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성 없는 지엽적 단편적 시책이나 프로그램들은 많은 경우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의 왜곡에서부터 연유
- 한전은 전기 요금에 대해 원가 회수율이 낮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생산비 상승으로 물가인상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한전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되어 매워지는 악순환을 고려하면, 실질적 요금 현실화가 필요.
- 현재의 전기 요금 체계는 일방적 요금 조정과 산업용에 대한 과도한 특혜, 산업용 경부하요금제로 인한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산업용/일반용 경부하요금제 폐지는 매우 시급. 그간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싼 가격에 그것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 산업용 경부하요금은 산업체에 주는 특혜. 이는 3교대 노동 등의 폐단을 가져옴
- 일반용 경부하 요금으로 인해 특히 대형마트의 심야 연장 영업은 전력낭비와 온실가스 발생 외에도 노동자의 휴식권과 주변 상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 목표

- 합리적 전기요금 제도의 개선으로 에너지 기본권 확립 및 재벌 특혜 폐지
-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도 폐지로 심야3교대 노동 및 24시간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 방법

- 심야전기·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도 폐지
- 산업용 전기 요금 원가 회수율 현행 89.4%의 현실화

〈 전기요금 체계 및 수준 현황 (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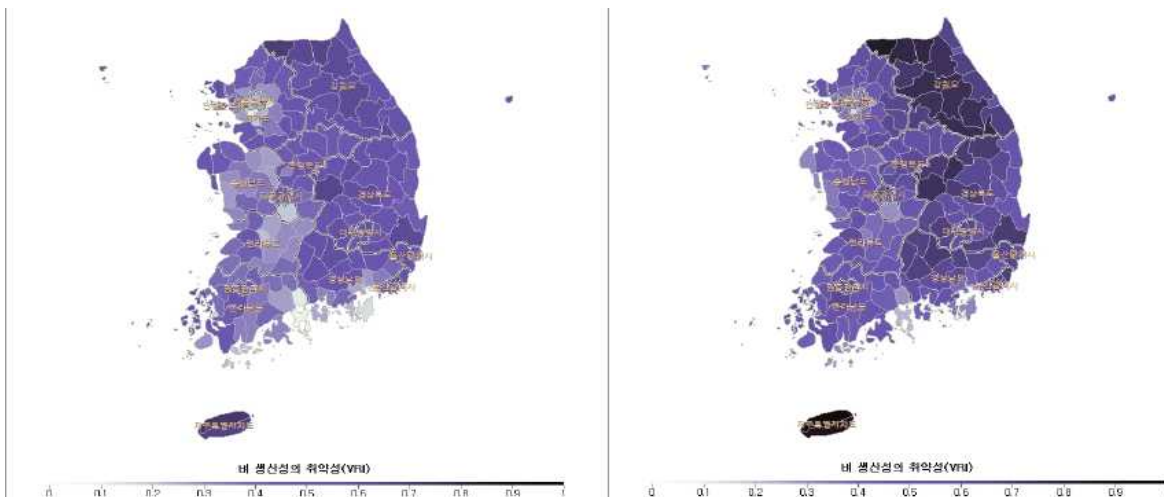
종류	적용대상	요금체계	판매량 비중	판매단가	원가 회수율
주택용	주거용	6단계 누진단계	14.6	119.85	94.2
일반용	공공용, 영업용	- 전압별 계약 전력 차등 - 지식서비스 산업 - 계·시별 차등 요금 (하절기, 심야 등)	22.4	98.85	96.3
교육용	학교, 박물관	- 계절별 차등	1.7	87.23	84.6
산업용	광업, 제조업	- 계·시별 차등 요금 (하절기) - 전압별 계약전력 차등	53.6	76.63	89.4
농업용	농업, 어업	단일요금(갑, 을, 병 차등)	2.5	42.54	36.7
가로등	가로등, 보안등	단일요금	0.7	81.13	78.1
심야전력	주거용 등	단일요금(갑, 을 차등)	4.5	50.49	66.9
평균			100	86.8	90.2

3.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산업에 대한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변화 취약성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보건, 농어업, 생태계, 재해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역별 취약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 관련 산업이나 생태계를 넘어 취약 계층에 대한 연구와 관련 대책까지도 요구되는 상황.
-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경제·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정의를 전제로 분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립과정에서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식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함.

〈그림. 기후변화로 인한 벼 생산성의 취약성(현재, 2020년대)〉



■ 목표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보호

■ 방법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법(가칭)’ 제정
: 주요 내용 -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경제·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정의를 전제로 분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립과정에서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식
- 피해 산업(농어업 등), 피해 계층, 생태계 등에 대한 지역별 계층별 연구 강화
: 질병 감시체계 구축, 국민건강을 위한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등

3. 도시에서 에너지를!

공약

1. 하수슬러지를 CNG로 전환, 마을버스부터

⇒ 2012년부터 발효되는 런던협약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 하수슬러지의 혐기소화로 CNG가스로 전환. 이를 마을버스의 연료로 사용

2. 폐식용유의 바이오 디젤 전환, 관용차부터.

⇒ 지역의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자자체가 매입하여, 이를 바이오 디젤로 전환. 관용차부터 바이오 디젤 사용 차량으로.

1. 하수슬러지를 CNG로 전환, 마을버스부터

■ 현황 및 문제점

-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하수 슬러지의 대부분이 매립, 소각 및 해양투기로 처리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가 퇴비화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음.
- 해양 투기는 런던 협약과 그린라운드 등의 국제환경관련 협약 등에 따라 2012년부터는 해양 투기 전면 금지.
- 하수 슬러지의 재이용과 관련해서는 연간 전체 발생량의 18.5%만을 재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매립장 복토재, 퇴비 등으로 사용.

■ 목표

- 처리가 곤란한 하수슬러지를 에너지로 전환하여 슬러지를 줄이고, 에너지 확보.

■ 방법

- 하수 슬러지/음식물쓰레기 의 혐기 소화를 통해 정제가스를 생산하여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로 활용하도록 투자하고 예산 및 정책적 지원
- 관련고시(농림부) 개정으로 도시지역 하수 슬러지의 퇴비화 추진하여 슬러지의 재활용을 활성화

2. 폐식용유의 바이오 디젤 전환, 관용차부터.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에서는 100여만 톤의 식용유가 소비되고 결과로 약 20만 톤의 폐식용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회수되어 재활용되는 양은 40%에 불과한 8~10만 톤.
-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연간 100,000톤 재활용하여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면 6백억 원의 수입 대체효과와 생산된 바이오 디젤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이 약 220,000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
- 폐식용유는 제대로 된 수거체계와 재활용 설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재활용 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상황. 일반 가정집에서는 주로 신문지나 휴지 등에 흡수시켜 쓰레기로 버리거나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음.

〈연간 폐식용유 발생량 추정〉

(단위 : 톤)

	최소	최대	평균
패스트푸드 업소	2,787	3,406	3,096
치킨전문체인점	70,508	86,176	78,342
일반음식점	74,829	91,458	83,144
식품제조업	45,500	51,188	48,344
가정	52,154	63,744	57,949
합계	245,777	295,971	270,874

■ 목표

-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바이오 디젤로 전환 재생가능 에너지의 수송 분담률 증가.

■ 방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바이오 디젤 판매 등의 합법화
- 권역별/구별 폐식용유의 수거체계 안정화 및 폐식용유의 바이오 디젤 전환 생산설비 구축
- 생산된 바이오 디젤을 공용차량에 의무적 사용

통합진보당 2012총선

여성분야 공약

1.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 사회
2.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3. 성 평등 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

연구위원 김애화(roads@hanmail.net)

1.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 사회

공약

1. 차별 없는 질 좋은 여성의 일자리 보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전면 실현,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

⇒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평균 62%로 확대, 보건 및 사회복지 고용비중을 OECD평균으로 확대하여 복지 확대

3. 1인 1연금제로 여성의 개별 수급권 확보

⇒ 현재의 연금 가입구조를 개편하여 1인1연금제를 지향, 일정한 연령계층의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

4. 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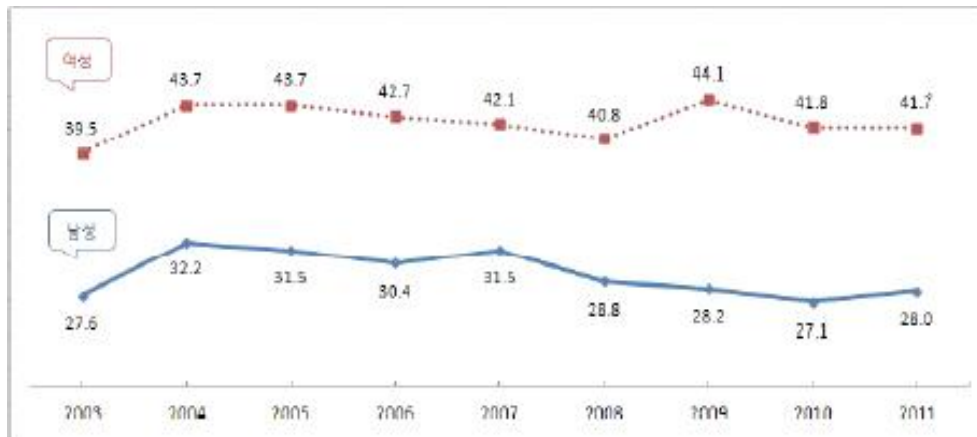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 가능한 여건 마련, 기업이 모성관련 법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1. 차별 없는 질 좋은 여성의 일자리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의 경우 2003년에 27.6%에서 2011년 28.0%로 큰 변화가 없으나, 여성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9.5%에서 41.7%로 변화되었고,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40% 이상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추이(2003-2011)



자료 : 통계청

- 97년 이후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의 평균 63%로서 2008년 국제비교를 하면 남녀성별임금 격차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음. 일본은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69%, 미국은 80%, 스웨덴은 85%, 뉴질랜드는 92%임(노동부자료).
- 2010년 6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8,236원으로, 정규직의 57.2%에 그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대다수 여성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중소기업이며, 고용상 차별을 겪고 있음
- 특히 가사, 보육, 간병 등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는 약 3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들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임. 그러나 이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 노동관계법은 물론 사회보장체계에도 ‘돌봄노동자’는 배제되어 있음.

■ 목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비정규직 폐지.
-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법제화.
- 성별 차별 해소.

■ 방법

- o 차별 없는 고용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
-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도 추가.
- 공공부문 성별임금격차(직급, 고용형태 모두 포함하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 성별임

금격차가 30%이상일 경우 기관장 징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 청년고용할당제(단, 한 성의 비율이 45% 이하가 되지 않도록).
- 성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차별개선위원회 구성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국가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규제역할을 강화할 필요.
- 성별, 나이, 학력 등을 표기하지 않은 평등이력서 법제화.

○ 비정규직 여성일자리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

-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민간부문으로 정규직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고용지원금 지급.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하기 위한 로드맵.

○ 비공식 부문의 돌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 근로기준법 적용 - 가사노동자의 노동자 인정.
- 4대 보험 보장 및 최소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 최저임금 기준을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법제화

-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40시간 기준 월 902,880원)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원하청 용역의 경우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과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최소한 사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보험법 지원법률을 제정하여 최저임금 130%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지원.
- 사업보험료 감면제도 확대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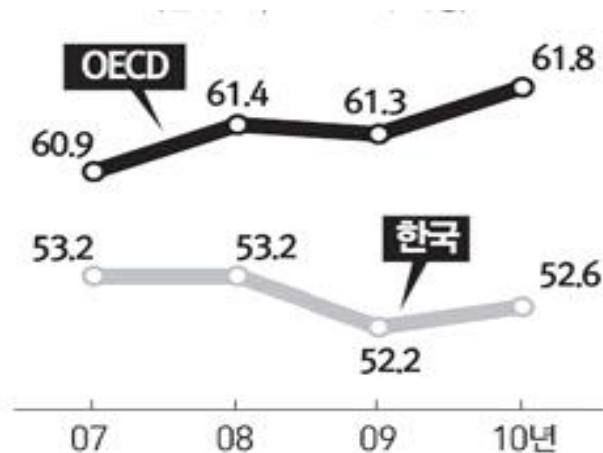
* 노동공약 참조

2.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4개국 중 30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8~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남(2012년 1월,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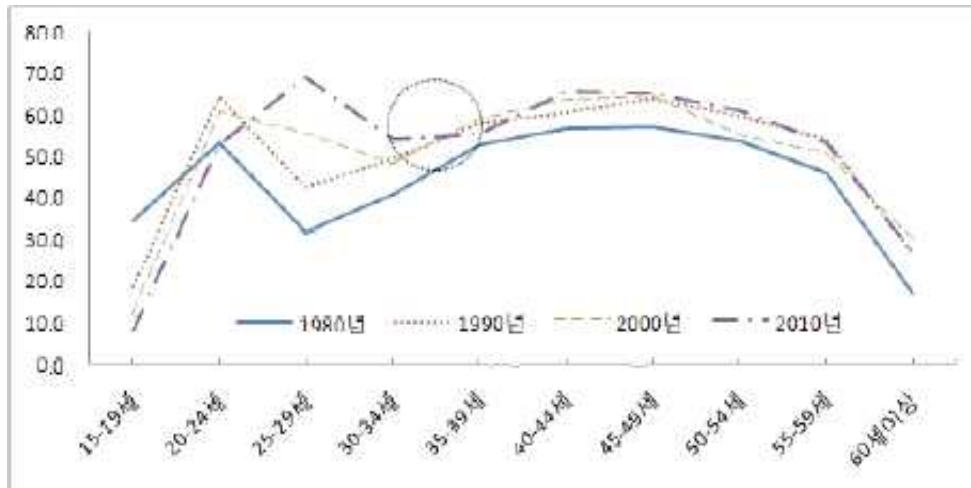
OECD와 한국 여성경제활동률 추이



자료 : OECD

* OECD지표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여성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수를 나타내는 지표. 한국 통계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모든 여성연령을 지표로 삼고 있음. 따라서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경제활동률은 2010년 49.2%. 반면 한국 남성경제활동률은 72.8%임.

- 여성의 고용의 특성으로 전반적인 고령화 추이. 2010년 여성 취업자 중 40세 이상의 중고령층의 비중이 57.7% 차지.
- 고학력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 보임. 평균 62.0%로 OECD 평균치보다 20% 낮음.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는 아직도 M자형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보임.



■ 목표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률을 10% 상승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
- 여성, 청년여성 고용할당제 제도화
- OECD 평균 수준(전체 고용 비중 중 9.8%)으로 보건 및 사회 복지 고용 비중 확대

■ 방법

o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

* 국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세계 1위. OECD 평균보다 연간 450시간, 매달 37시간 더 일함. 주간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42시간이 넘는 것으로 칠레,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임(기재부, 2011 국가경쟁력보고서).

- 근로기준법 상 휴일, 야간 근로 제한(노동자의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요건 신설).
-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 근로자의 최소화, 야간근로 장기화 제한.
- 초과근로시간 규제(산후 1년미만 여성 수준을 전체 노동자로 확대적용하여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초과근로시간 규제 제한) 및 초과근로 수당 산정 산입 임금방식의 개선.
- 최대노동시간 상한제로 실근로시간 단축.
- 마트 등 서비스업종의 영업시간 단축 및 제한법 제정(24시간 영업금지 등).
- 연차유급휴가의 전해년도 만근개념 삭제.

노동에 대한 보상 개념에서 건강한 노동권 개념으로 전환. 신입사원(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월차가 발생하나 다음해에 공제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부당함이 있고, 육아휴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사용자는 1년간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로 변경.

- 의무휴가제도 도입 : 각 노동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12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직장인의 90%이상이 1년 평균 15일의 휴가. 7일사용, 8일 미사용.

- 월 1회 건강휴가 도입.

o 공공부문과 공기업, 민간기업의 여성청년 고용할당제 단계적 실시

- 기업규모별 할당제 실시, 2012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 3% 할당제 실시 -> 2013년부터 200인 이상 사업체 3% 할당제 실시.

o 보건 및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용 확대

* 보건 및 사회 복지 고용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현재 4.2%로 OECD 평균 9.8%보다 42% p 낮음(기재부, 2011 국가경쟁력보고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증대는 복지를 증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

- 출산가정의 70%에게 공공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이용아동 4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실업자 및 재직자 고용서비스 확대.
- 장애인 10만 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최우선 확대.
- 노인 12%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전 국민 간병서비스 확대.

o M 자형 극복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보장 정책 강화

- 임신 보호를 제도적 장치 마련 : 임신으로 인한 해고, 경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임신 사유를 포함할 필요. 그리고 임신휴직 도입.

* 노르웨이의 경우 태아가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임신휴직을 가질 수 있음. 이는 산전후휴가와 별도. 그리고 소득 지원도 해주고 있음.

-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영유아기 자녀 양육지원정책의 질적 향상 필요. 특히 초등학교 이후 자녀들에 대한 돌봄기능을 지원하는 제도나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네트워크 구축.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비정규직 모성보호 제도 강화), 육아 휴직 급여나 대체 인력 활용 등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의 정책지원 규모는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수에 비하면 약 12.5% 수준.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각 지역별로 확산할 필요.

* 노동공약 참조

3. 1인 1연금제로 여성의 개별 수급권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약 35%이며 15세 이상 여성 중 약 30%에 해당되며,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62% 수준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비율은 약 31%로 50만 명 수준이며 급여 총액 대비 여성이 수령하는 급여의 비중은 약 22%임.
- 현재 우리의 연금가입구조는 ‘1가구 1연금제’임. 이는 소득활동을 하는 생계부양자 즉 주 소득원 위주의 가입구조를 의미하는 것임.
- 현행 제도는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에 의해 연금을 받는 파생적 수급권임. 이는 배우자와의 혼인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시 피부양자 몫으로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가급연금 수급 혹은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급하는 형태임. 이는 이혼, 독신 등의 경우 받을 수 없음.
- 여성의 경제활동 및 고용율을 증대시키고 개별적 수급권을 보장하여야함. 비혼, 이혼율의 증가로 가족단위보다 개별적 수급권이 연금 가입구조의 기본이 되어야 함.

■ 목표

- 여성의 개별 수급권 확보 : 소득자로서의 여성, 수급권자로서의 여성
- 여성 노후 소득보장을 높이기

■ 방법

-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1인 1연금제 가능한 여건 마련.
- 일정한 연령계층의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함.

* 복지공약 참조

4. 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 취업자 1000만 명 시대.
- 맞벌이 부부 증가 : 40·50대 가구의 절반가량이 맞벌이 부부.
- 경력단절 : 20대 후반까지는 70% 내외의 비교적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다가 30대 초반에 51.8%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하게 하락함.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30대 초반에 경력 단절.
- KBS 방송문화연구소를 통해 직장여성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70%가 임신으로 인한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했고 특히 30%는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었음(2011년).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1%, 2009년 1.41%, 2010년 1.96%에 이어 올해 2.37%임.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8%(2007년 기준) 임.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함.
-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시간은 OECD가 지난해 2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요리, 육아, 그리고 자원봉사: 세계의 무상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꼴찌.

하루 가사노동 등 평균 가정관리시간

성인		맞벌이가구		비맞벌이가구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행위자 비율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업주부	취업주부
30분	168분	24분	158분	19분	251분	97.5%	96.8%

자료 : 2009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 목표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혁 : 남성육아휴직 의무화(3개월),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유급휴가기간 확대, 가족돌봄제도 도입
- 노동시간 단축으로 육아 참여 기회 확대
- 일-가정 양립 위해 가족과 직장 내의 성 평등한 문화 구축

■ 방법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혁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부모가 일-가정 양립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의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3 개월은 아빠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 스웨덴 경우 : 부부가 총 1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그 중 2개월씩 반드시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나머지 12개월은 엄마 아빠든 어느 쪽이든 가능하며 이 기간에 소득의 80% 정도를 정부가 수당을 주고 세금도 감면해 줌.

-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대체인력급여 수준으로 : 육아휴직 급여를 대체인력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요구(1단계 : 2013년까지 육아휴직 50% 인상),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함.
- 가족 돌봄 휴가제도 도입: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제도 도입. 연간 일정 기간의 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 지급.

○ 일-가정 양립 위해 가족과 직장 내의 성 평등한 문화 구축 :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모성관련 법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사법처리 필요.

* 2011년 모성관련 법 위반 기업주 처벌은 단지 4건뿐.

2.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공약

1. 몸,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 모자보건법 개정(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지 조항 포함)

2.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 보장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지원서비스 공공화, 여성노동자가 마음 놓고 임신, 출산할 수 있는 노동환경 마련

3.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여성건강증진에 관한 법’ 제정

4.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 성 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가정폭력 예방, 초기 대응 강화 및 근절, 직장내 성희롱 근절

1. 몸,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모성 건강관련 이슈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임신·출산 등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여전히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강화 목표 속에서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
- 낙태한 여성의 60%가 피임을 하지 않았고, 피임 한 경우도 82%가 월경 조절술 등 실패율이 매우 높은 피임법에 의존하고 있음. 청소년, 여성들의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2011년 9월, 복지부 실태 조사).
-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지의 사유로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불법 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

■ 목표

- 여성의 생애, 몸의 특성에 따른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

■ 방법

o 피임과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적 권리의 보장

- 피임에 대한 접근성 확대: 피임약·피임기구 안전성 기준 강화, 청소년·저소득층 등에 대한 무료보급, 올바른 피임교육·성교육 확대.
- 인공임신중지 관련 법령 개정: 모자보건법 개정(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 중지 조항 포함).
- 임신중지에 관한 여성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체계 마련, 임신중지 이후 케어 및 피임 지원.

2.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서비스를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임신에서 출산까지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중 약 50~70%를 산모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 산전 진찰비용(70만원) 중 초음파 등의 검사 비용(평균 48만6천원)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 부담.

임신·출산 관련 1인당 평균비용 (2007년)

구분	총비용	보험급여비 구성		비용
산전 진찰	70만원	보험자 부담		14.0만원(7.6%)
		본인부담	급여	7.4만원(4.0%)
			비급여	48.6만원(26.3%)
분만	115만원	보험자 부담		69.0만원(37.3%)
		본인부담		46.0만원(24.8%)
합계	185만원	-		185.0만원(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 27개(2008년 9월 기준)로 임신부의 산전 진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산과 산후 조리도 어려워 원정 출산과 원정 산후조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
- 고운맘 카드로 임신, 출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태아가 아닌 산모 1인당 기준이라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多胎兒) 출생은 사회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고운맘 카드(전자 바우처 형태)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현재 40만원인 지원금을 2012년 4월부터 50만원으로 인상), 1일 한도는 6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분만 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 65%이하 출산가정(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98만 원 이하)에 2주 동안 산모 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음.

■ 목표

- o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서비스 공공화
- 안전하고 건강한 피임, 임신·출산을 위한 환경 조성.

- 모든 여성이 비용 걱정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 산후 조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임신, 출산 관련 공공의료시설을 확충.

■ 방법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지원 서비스 공공화

- 임신과 출산 및 산후조리출산이후의 지원까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 구축.
- 보건소 또는 지방의료원, 모자보건센터 등의 산부인과를 확대하고 질을 높여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 산후조리원을 마련.
- 이상의 시설과 연계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사업단’을 운영, 확대.
- 국가가 총비용 담당.
- 초음파검사 등 산모에게 보통 진행되는 산전검사비용을 전면 보험 급여적용.

○ 여성노동자가 마음 놓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노동환경 마련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유사산휴가·산전후휴가 사용 보장, 검진휴가 제공 : 여성 비정규직 임신·출산 시 해고·계약해지 제한 명문화, 계약 만료 시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 제공, 초기유산·인공유산 시에도 유사산휴가 사용 보장, 임신 중인 여성이 월 1회 사용할 수 있는 태아검진휴가 신설.
- 임신·출산 여성의 고용안정과 안전 보장: 임신부의 연장·야간·휴일노동과 유해업무에 대한 실질적 규제 강화, 임신·출산에 따른 불이익 처우 시 사용자 처벌 강화.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주에게 작업장 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 여성노동자에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질병예방 프로그램 제공.
- 여성노동자가 편한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현재 주소지 보건소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취업 여성노동자의 경우 불편을 경험하고 있음.

3.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건강'에서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 상태'라는 WHO의 정의를 넘어서, 여성건강은 한 사회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 여성의 지위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인식되어야 함. 따라서 여성건강은 특별한 접근이 필요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중이 높음. 이러한 사실은 여성이 안전보건관리나 산재보험적용에 있어 취약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임. 특히 비제조업 분야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보상의 접근권을 확보받기 어려웠음.
- 직장 내 건강 위험요인은 전통적인 요인에서 사회심리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함.
-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돌봄노동,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은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중요한 건강위험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몸매와 외모를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으로 삼도록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됨. 이에 따라 다이어트와 성형 열풍이 불고 관련 시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산업의 이윤 추구 전략은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목표

- o 성인지적 관점의 건강권, 건강정책 수립
 -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권,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적 체계 구축.
 -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변화하여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여성의 몸과 성의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사회적 관행 개선.

■ 방법

- o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공공의료체계 확립

- 여성건강 관련 법률, 정책 추진체계 정비: 가칭 ‘여성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여성건강실태에 관한 통계·지표 확립, 건강관련 법과 다양한 국가건강계획에 성 인지적 관점 반영.
- 여성건강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여성 전문병원 확대, 지역 보건소와 공공병원의 여성·아동건강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 여성의 건강과 생애를 고려한 현실적 허용범위 확대와 실질적 예방조치 마련.

○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 여성 집중 사업장의 남성 중심적인 작업 시설과 운영방식 개선.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재보상보험의 적용.

○ 인격적 노동문화 형성

- 과도한 친절교육 금지 제도화.
- 서비스업종에서의 복장규제에 대해 인권적 접근 필요.
- 과잉서비스 요구(무릎 꿇는 인사 등)에 대한 거부권 혹은 금지법 제정
- 성별적 유니폼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발생 시 작업장 이탈권 부여.
-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사업주 예방 및 노동자 보호 의무 법제화.

○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관행 개선

-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미용·성형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 외모를 중시하는 기업 채용 관행 개선.
-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와 방송 규제 강화: 심의규정 강화, 관련자 교육 의무화.
- 특히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과도한 광고 규제.

* 의료공약 참조

4.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왔으나 단순처벌이 대부분인 상황.
- 2010년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내에 부부폭력률은 53.8%,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나타남. 결혼 이후 평생 동안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23.5%, 정서적 폭력 50.7%, 경제적 폭력 13.9%, 성학대 13.5%로 나타남.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28.1%임.
- 직장인들에 대한 성희롱 경험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5%가 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음. 성별로는 여성이 72.6%로 남성(27.4%)보다 많음. 또한 응답자의 전체의 17.8%만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관 및 담당자가 있다고 함(취업포털 커리어는 2012년 1월 28일-30일까지 직장인 40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설문조사).

■ 목표

- 성 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 가정폭력 예방, 초기 대응 강화 및 근절 .
- 도시 내 범죄 제로 : 여성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 환경 개선 정책 추진.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 방법

- o 성 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 범죄 통제체계 강화.
- 국제사회 권고 수준의 ‘인신매매의 범죄’ 구성요건 법제화.
- 성 착취·인신매매 단속·처벌을 위한 전담반 강화 및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 유흥서비스, 성산업 축소와 관리 방안 마련.
- o 형법 상 성폭력 개념·범위 확대 등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 개정: 형법 상 성폭력특별법 처벌조항 포함,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성폭력 개념 규정, 아내강간죄와 비동의간음죄 포함, 동성간 성폭력 처벌,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 보호, 친고제 폐지.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아동유기·폭행 등 아동학대 전반의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시스템과 체계 마련, 관련 프로그램·시설 및 예산 확대.
- 성폭력 범죄자 처벌과 교육 강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 성폭력 범죄자 위험성 평가를 통한 분류심사제도 도입, 수감자 교정·교육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프로그램 실효성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응급대응 강화.
-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 적극적인 여성인권 보장 관점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 정책 수립

- 공교육 과정에 반성폭력 교육안의 구체화.
- 성차별, 성폭력, 성별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공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성교육 관련 교육법을 개정.
-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직장내 성희롱·폭언·폭행 예방 조치 강화

-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성희롱·폭언·폭행 피해를 제기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 사업주는 성희롱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규정, 피해 노동자를 위한 유급 휴가·휴직제도 도입.
- 직장 내 성희롱 정의의 포괄적 명시, 적용범위 확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 전반과 폭언·폭행 포함, 업무상 동일 사업장 외 제3자의 성희롱·폭언·폭행에 대한 사용자 예방책임 강화.

○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기초한 시설 기준 마련 : 여성을 위한 주차시설 정비, 가로등 조도 개선 등 도로환경 개선.
- 야간 보행·교통수단 이용 시 편의 증진 : 여성전용콜택시 운영, 야간 교통수단 이용 시 편의 증진.

3. 성 평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

공약

1. 여성의 대표성 강화

⇒ 모든 사회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 30% 실현

2. 다양한 가족형태 존중, 성 평등 가족 및 사회 문화

⇒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종합적인 가족지원정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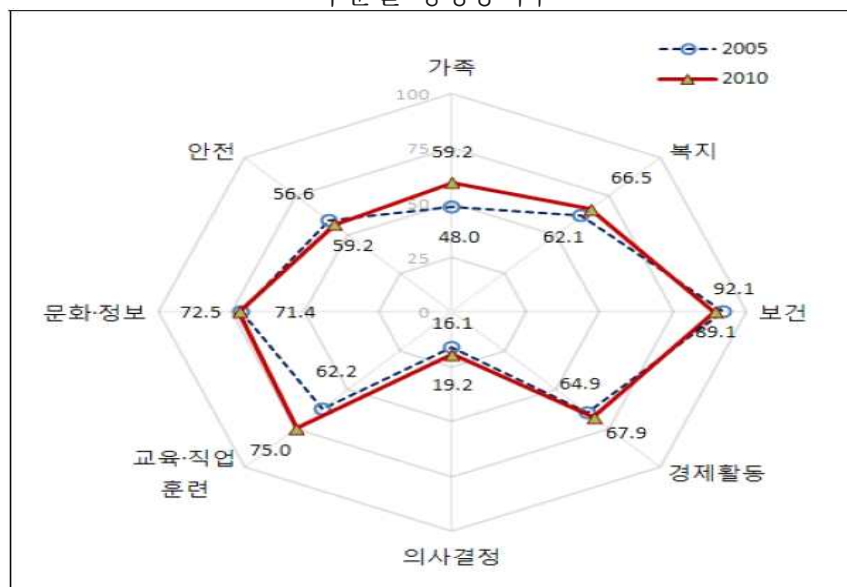
3. 다양한 여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 : 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 성소수자, 여성 농민

⇒ 이주여성의 체류권,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동반자등록법 제정, 여성농민을 경제적 주체로 보장

1. 여성의 대표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부문별 성평등지수



자료 : 여성가족부, 2011 성평등보고서

- 의사결정부문의 성 평등지수가 가장 낮음. 2005-2010년 사이의 지수가 변화가 없음. 따라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표성 강화가 긴급히 요구되고 있음. 2011년 한국의 성평등 전체 부문 평균은 100점 만점에 62.6점으로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여성가족부, 성평등보고서).
- 2011년 11월 발표된 세계경제포럼 (WEF)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를 보면 우리나라는 135개국 중 107위를 차지하며 하위권 (‘성격차지수’ 란 남녀격차를 표시하는 지수임). 2011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과 소득 분야에서 우리나라 남녀 간 차이가 38%로 회원국 중 최대, 즉 성평등 부문에서 꼴찌라고 발표함.

■ 목표

- 명실상부한 성평등 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 방향과 원칙을 제도화와 사회적 의식 확산
- 여성의 정치, 경제 부문에서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 실현
- 성인지 예산제, 성별 영향평가 내실화 :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성평등 사회 실현을 내실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정착

■ 방법

o 성평등 헌법으로 개정

- 여성의 정치, 경제 부문에서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원칙으로서 헌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독일 기본법이나 프랑스 헌법처럼 성인지적 헌법으로 개정 필요 ; 여성의 참여, 할당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 필요.

2.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회의원의 여성비율과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음. 현재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2011년)은 15.1%,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2010년)은 21.7%. 정부부처와 공기업 고위직의 여성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음.

■ 목표

-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정치관계법과 제도 개혁
- 성인지 예산제, 성별 영향평가 내실화

■ 방법

○ 남녀 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출직 여성공천 할당제 의무화 실현 : 현재 권고 30%에서 의무 30%로 개정, 여성의무공천을 어길 경우 등록무효,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 필요 .
-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비례대표 의석비율 단계적 확대 ; 현 18%에서 일본(40%), 독일(50%) 수준으로 확대.
-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여성의원 추천 보조금 제도 개선.
: 여성후보자 수, 비율에 비례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로 개선 필요.
- 단계별 할당제 확대프로그램 : 2016년 총선에서 여성 공천할당제 30% 실현 ->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50% 실현

○ 성인지 예산제, 성별 영향평가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필요.
- 내실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 성인지 예산서 준비가 제외되는 일부 사업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인지 예산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함.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서가 단순 첨부자료에 그치지 않고 국회 심의 대상으로 격상돼야 함.

2.2. 여성의 경제적 대표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여성의 공공부문에서의 지위는 민간부문보다 더욱 열악. 중앙정부 41개 기관 중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22개.
- 또한 2011년 8월 기준 여성 임원 비율은 공기업 1.6%, 준정부기관 12.7%에 그침. 공기업의 여성임원은 최근 3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임. 한편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여성 고용 평균비율과 여성 관리자 평균비율을 보면 민간기업 부문이 공공부문보다 각각 4.37%p, 6.6%p 더 높음.
- 그러나 대기업일수록 여성임원 비율 낮음. 2009년 12월 기준으로 100대 국내 기업 중 근로자 500명 이상인 95개 기업의 고용현황을 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 여성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76만3,751명 중 22.9%(17만4830명)를 차지하지만 전체 관리자 비율에서는 7.1%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여성임원은 전체 6,189명 중 69명으로 1.1% 수준 (유럽내 기업들의 여성임원 비율은 2010년 평균 11.7%).

■ 목표

- 모든 공공부문, 공기업의 여성임원 30% 보장을 의무화
- 기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 방법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성격을 변화할 필요.
- 그리고 기본법 안에 모든 부문에서 여성임원 30% 보장을 의무화.
- ‘성평등 지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여성발전기본법에 포함할 필요. 평등 지위위원회는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을 총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로서 이를 통하여 공공부문과 기업의 성평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

○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확대 필요
- 공기업/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 각 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 30% 의무화.
예) 장관직을 포함한 행정직 30% 할당제 의무화,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원 고위직에 여성이 30% 이상 할당제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1기관 1인 여성 국·과장제’를 추진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성 부단체장 적극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선거에서 뽑는 단체장과 달리 임명직 자리. 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여성을 부단체장으로 임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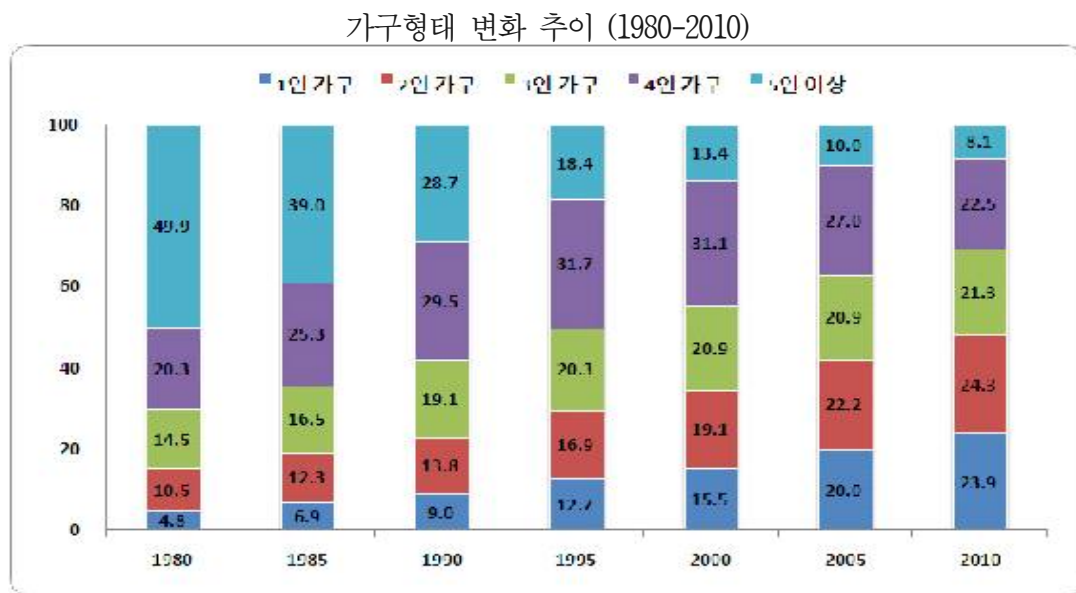
o 기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 노르웨이는 ‘기업의 여성 임원 할당제’ 법제화를 추진(2003). 여성 임원 비율을 40%로 하고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10년 현재 여성임원 비율 40.3%.

2. 다양한 가족형태 존중, 성 평등 가족 및 사회 문화 정착

■ 현황 및 문제점

- 가구 규모의 소규모 추이는 9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2010년, 1인, 2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48.2% 차지. 4인 가구가 2010년 22.5%로 떨어져 더 이상 핵가족이 전형적 가족 형태가 아님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 통계청

-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한부모 가족. 특히 여성 한부모의 경우에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 이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양육·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미흡으로 빈곤의 고통,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목표

-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
- 결혼과 자녀 출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족제도를 넘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 다양한 가족들이 공동생활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정책 확대.
- 한부모 여성가장, 비혼모의 법적·사회적 지위 보장.

■ 방법

○ 결혼 외의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사회적 지위 보장

- 민법을 개정하여 가족에 대한 정의 수정.
-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여 가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 자녀 4인 핵가족 중심의 사회정책을 개선하여 가구 단위 사회보장 제도로의 개선(건강보험 등)
- 법률혼·혈연관계 외에 스스로 선택한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지위 인정 : 사실혼, 동성애커플, 비혈연 공동체 등의 사회보장·조세·재산 관련 권리 보장.

* 건강가족기본법 (문제가 지적되는 조항)

제3조 정의 :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 시 결혼·이혼·재혼이나 자녀유무 등 가족사항, 부모와 형제 등 가족관계에 따른 사회적 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강화.
- 근로기준법에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포함.
- 채용, 입학 시 가족관련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 및 가족정보 보호 조치 강화.

○ 입양의 권리를 보장하고 입양가족, 아동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 공개입양 활성화와 입양지원 확대: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일반가정 위탁 활성화 및 위탁가정 지원 확대.

○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가 반영한 주거정책 확립

- 다양한 주택정책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여성의 주거 접근권과 주거안정권 확보.
- 사회적 소수자, 다양한 가족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주공간 조성으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 확보.
- 비혼 여성공동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부여 : 3년 이상 독립세대로 거주기간 3년 이상, 그리고 3인 이상이 공동가구를 이룰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부여.

○ 한부모 자립/빈곤 탈출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한부모가족의 여성가장이 구직,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최저생계비 수준의 지원 보장
- 공공부조 지급 시, 소득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 여부를 참조하도록 법 개정.
- 아동양육비, 보육지원(보육시설 비용 및 접근성 지원), 현금지원(소득보조, 소득기반 구직수당), 재정지원, 고용복지.
- 지역사회에 유기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시스템 구축.
- 여성 한부모들의 노동 진입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
- 대중매체를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개선.
- 한부모가족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의무화, 자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사업.

3. 다양한 여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 : 이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 여성농민 등

■ 현황 및 문제점

- 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농민, 성소수자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특수한 처지로 인한 다중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의 소외계층으로서 살아가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실태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목표

- 이들의 처지와 요구에 맞는 인권보호와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하여 온전하게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

3.1. 이주여성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말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여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업연수나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는 14만명, 결혼알선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결혼이주여성은 20만 명, 연예인비자(E-6)를 통해 입국하여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1만 명임.
- 2008년 현재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은 11.9%. 그러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 2007년에는 40%에 이름(통계청, 2009 발표).
- 결혼이주자들은 국제결혼 과정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중개업체를 통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서 오는 피해, 언어와 의사소통의 장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고립, 자녀양육의 어려움, 빈곤과 사회보장의 배제,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과 차별 경험 등의 전반적 문제들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지위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결혼이주여성 100명중 8명 불법체류 신세임.
- 결혼이주여성 외에 취업이주여성 또한 극심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음. 한국의 경우는 제조업을 위주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음. 그러나 2002년 말부터 취업관리제로 외국국적동포들이 가사노동자이나 간병인, 기타 서비스업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주여성의 비율은 더 늘어날 전망이나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법이 허점이 많음.

■ 목표

- 다인종사회,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포용적 자세를 고양
- 가족정책의 일환으로만이 아니라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접근
- 가사노동자 등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취약한 업종 종사 이주여성의 지위 보장
- 이주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방법

o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 자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가 목적이어서 이주여성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에는 취약함.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자를 포괄하는 범주로 넓혀야 하며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가족 중심 지원이 아닌 이주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를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의 신원보증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함. 즉 체류 연장시, 국적 취득 신청시 필요한 신원보증제도 철폐 필요.
-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고 결혼중개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고 한국에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이주여성노동자 고용사업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의 정서적 심리적 치유 등을 위해 안정적인 체류와 지원책을 강구.

○ 사회안전망 구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이 법의 효력이 이주여성에게까지 미치고 있지 못함.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여성에게도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외국인여성’ 항목을 표기해야 함.
- 자녀 없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대책이 필요함.
- 이주여성 전용상담소 설치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함.

○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

- 미등록 이주아동, 무국적자 아동의 교육권, 사회권 보장해야 함.

○ 취업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강화

- 이주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교육 강화.
-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 적응교육을 넘어선 권리주체로서 인권교육 실시와 그에 대한 보장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해야 함.

○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차별금지법 제정 :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 포함

3.2. 장애여성

■ 선정이유

- 장애여성인 고용률은 2009년 26.1%이고 남성장애인 고용률은 51.4%.
-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인 장애여성은 67.3%로 장애남성의 37.0%와 비교하면 약 2배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장애여성은 25.48%로 장애남성의 52.48%와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장애여성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2008년 한국보건연구원 실태조사).
- 18세 이상-만 48세 이하 성인장애인 평균 결혼률은 52.8%이고, 이 중 유자녀 비율은 90.1%. 이들은 결혼, 임신, 출산 과정 중 정보 부족과 지원의 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음.

■ 목표

- 여성의 생활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유형별 지원 강화
- 이런 맥락에서 장애여성들이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온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방법

- 관련부처 내 여성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국회의원 및 고위결정직에 여성장애인 할당제 실시
 - 여성부,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여성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 국회의원·시, 도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 중 여성장애인 할당.
 - 모든 공직에 여성장애인 할당제 실시.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등에 여성장애인 참여 강화.
 - 관련 정책의 결정·집행자를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의무화.
- 인권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연금법, 이동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구체적으로 명시.
 - 가정폭력방지법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신설.

- UN과 북경세계여성대회 등 국제기구에서 언급한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을 법과 제도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관리체계의 확립 및 의료기관 확충.
- 산전, 산후, 양육 및 학습 도우미 제도 마련.
- 피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보육시설 등에 여성장애인 자녀 우선 입소 제도화.

○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통합상담소의 증설 및 운영비 상향 조정.
-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쉼터) 신설.
- 여성장애인 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담·의료·법률적 지원 체계 마련.

○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성별통계 구축.
- 장애여아 조기교육 의무화.
- 성인지력 향상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과 과정에 의무화.
-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 개발.
- 여성장애인 지도자를 위한 의식화 교육과 리더십 훈련 지원.

○ 현실성 있는 여성장애인 생계대책 마련과 평등한 노동권 보장

- 장애인 취업관련 성별통계 구축.
-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50%를 여성장애인으로 할당 명문화.
- 직업훈련 대상자 발굴작업의 체계화와 여성 장애인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적합 직종 분야에는 여성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융자금 중 여성장애인 할당 명문화.

o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여성장애인의 몸의 조건에 맞게 주택 개조.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정신지체 · 지체 장애 등 각 장애영역 여성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서비스 정보에 관한 콘텐츠 개발과 정보 인프라 구축.
- 여성장애인 동료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중증여성장애인에게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모형 개발.
-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애인 공약 참조

3.3. 성소수자 여성

■ 선정이유

- 현재 그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 그러나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것은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때문.
- 공개적, 간접적 차별보다 비공개적인, 간접적 차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집단.

■ 목표

- 성소수자 여성이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는 환경 조성
- 차별 없는 노동과 가족 구성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방법

- 차별금지법 제정.
- 동반자등록법 제정으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
- 공무원, 일정 규모의 민간기업의 경우 성평등 교육 이수 및 성소수자 교육 이수 의무화 .

* 성소수자 공약 참조

3.4. 여성농민

■ 선정이유

- 여성농민은 농가인구중 51.6%, 농업주종자사 인구 중 53.3%로 농업생산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여성농민의 10.6%만이 자신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1.1%의 여성농민이 농산물 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고 있음. 10명 가운데 1명만이 농업주체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
- 농업노동은 물론 가사와 육아,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다양한 돌봄노동을 전담하며 지역공동체유지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농지와 농기계 등 생산수단은 물론 교육과 기술,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어있을 뿐 아니라 농가중심(남성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인해 생산자로서 여성농민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할에 대한 정당한 법적,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못함.

■ 목표

-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 그에 맞는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 방법

- 모든 농업·농촌·농민정책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실시.
-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농민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보장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에 여성농민 참여율 30% 이상 의무 보장.
- 특히 정책자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젊고 유능한 여성농민들이 농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남성가구주와 동일한 금융 및 상거래에 관한 정책적 지원.
- 고령여성농민의 전통지식을 자원화(예- 전통 농가공 사업, 토종농사관련 지식 등).
- 여성농민전문인력화 방안 마련 : 전문교육기구 설치, 여성농민 농기계 개발 보급 지원.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관 배치 의무화.
- 여성농민육성발전기금 조성.
- 이주 여성농민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과 농업후계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마련.
- 농민의 노동임금 평가시, 남성과 동일임금 적용.

* 농업공약 참조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장애인 공약.

1.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
2.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3.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
4. 실질적 소득 보장
5. 건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강화

연구위원 김애화(roads@hanmail.net)

1.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공약

1. 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탈 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5개년 계획

⇒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편입되기 위한 자립생활보장법과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2.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주거편의의 제공을 통한 주거권 보장

⇒ 장애인 가구 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가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지원

3. 이동권 보장 및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강화

⇒ 전국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장애인 콜택시 증차,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4.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별로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전동보장구의 무상임대제도 실시, 자
세유지보조기구 보험적용

5.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 장애인 동료상담가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상호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에 기여

1. 자립생활보장법의 제정과 탈 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주거서비스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이를 떠넘기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30년 전 탈시설화를 끝내고,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고 있음.
- 2008년 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서 ‘앞으로 어떤 주거유형에서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96.7%가 일반주택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생활시설 1.6%, 공동생활가정 1.0%, 기타 0.7%의 순이었음.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욕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시설 장애인의 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위함.

■ 목표

-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지향
-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 탈 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 방법

○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 장애인의 자립생활권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찾을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률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방안이 없고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수단의 미비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근거 법률(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그 이전 단계에서는 자립생활권의 개념 정립, 현행 법률에서 해당 법규정을 체계적, 유기적으로 해석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계획 수립

- 신규시설 설립금지,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 탈시설 전환국 설치.
-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 1000만원으로 증액.

2.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주거편의의 제공을 통한 주거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사회나 국가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사항 중 15.4%가 주거보장을 뽑았으며, 이는 2005년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급증하였음. 다시 말해 주거문제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한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갖출 수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설사 구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는 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3.0%가 비주거용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 움막 · 판잣집 · 임시막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34.7%가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19.0%가 주택구조가 불편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11.9%는 집의 구조를 장애와 관련하여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고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가장 높음. 특히 단독주택 거주 장애인은 편의시설 설치 시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함.
- 여성, 중증, 고령의 장애인일 경우 불편하다는 의견이 더 높음.

■ 목표

- 장애인가구 주택 우선공급으로 장애인 주거문제 해소
- 자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으로 지원

■ 방법

- o 장애인가구 주택 우선 공급으로 장애인 주거문제 해소
 - 시도 내 ‘장애인 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특별공급분양 10% 범위 내에서 장애인가구 우선 지원.
 - 매입형 및 전세형 임대주택 30만호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

o 자가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으로 지원

-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
-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주거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

*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현재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 ④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임.

3. 이동권 보장 및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64.9%가 버스나 택시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여전히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저상버스 3899대, 장애인콜택시 1318대.
- 보도육교나 지하보도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동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보도 연석 낮추기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각도와 넓이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높이도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전철역 등 여객시설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많고, 무인 발매기의 높이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
-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3만 명에 그침. 이는 등록 장애인 213만 명의 1.5%에 불과한 수치.
-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1급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장애등급이 1급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0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8만원까지 인상시켜,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는 상황임.

■ 목표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과 지원서비스 확대

■ 방법

- o 단기적 목표로 2016년까지 전국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종류의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 장기적으로 전국 버스의 100%를 저상버스로 도입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법정 기준을 1·2급 중증장애인 100명 당 1대로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탑승장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

○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와 보도 정비 및 교통 및 여객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

- 보도연석 턱 낮추기, 음향신호기 설치높이 및 위치 기준 마련.
- 공사구간에 이동편의시설과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 버스터미널에 교통약자 전용매표창구와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
- 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가판에 이동편의시설 엘리베이터의 위치안내 표지 설치.
- 역사 승강장에 휠체어 객차위치 안내 표지 설치.

○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과 지원서비스 확대

- 활동보조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2012년 11월부터 시급 단가가 8,000원에서 8,300원(심야 및 휴일 단가는 9,300원)으로 인상. 그러나 기관 수수료 25%를 공제하고 급여는 75%인 6,225원(심야 및 휴일은 약 7천원)이 됨. 장애인활동보조인인 장애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나, 부수적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

- 활동지원법 개정

- 활동보조 지원 대상 확대 : 단기적인 목표로 2016년까지 2-3급 까지 대상 확대와 활동보조 시간 최대 80시간 제공 필요. 장기적인 목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장애인의 필요에 의한 지원 제공.

* 기본활동보조 시간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월 180-40 시간 제공되고 있음.

- 활동보조 지원에 대한 개인부담금 폐지.

4.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자부담의 금액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 자기 몸에 맞는 전동보장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맞추어 저가형을 구입하여 사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 전동보장구의 사용연한은 6년인데 반해 AS는 1년이나 1년6개월로 배터리 등의 소모품 교환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장애의 변화나 사용용도가 변화해도 계속 사용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함.
- 보장구 종합지원센터가 5곳 있으나 서울 4곳 경기 1곳으로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음. 잦은 보장구의 고장으로 지역마다의 종합지원센터 필요 절실.
- 2011년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조사한 뇌병변장애인욕구조사에서 응답자의 20%정도가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의사소통보조기구에 대한 인지 설문에 1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의사소통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목표

- 전동보장구의 무상임대제도 실시
- 지자체별로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지원체계 구축
- 직업 활동을 위한 보장구를 제공

■ 방법

- 지자체별로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필요.
- 장애인보장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광역 지자체별 장애인보장구종합지원센터 설치.
- 자세유지보조기구의 기술표준을 확립.
- 자세유자보조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실시.
- 의사소통 지원 센터 설립과 지원체계를 확립.

5. 장애인 동료상담가 육성

■ 선정 이유

-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이나 동료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음.

■ 목표

- 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인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애인 고용 창출.
- 동료장애인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경험과 용기, 기술을 배우는 데에 크게 이바지.

■ 방법

-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꼭 필요한 동료상담가 양성을 위하여 16개 광역 시·도에 동료상담가 양성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 등을 통해 평가 기준과 교육 과정 등을 만들어야 하며 동료상담가 양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공약

1.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조정, 중증 장애인 및 장애여성 할증제 도입

2. 최저임금 보장

⇒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 장애인고용에 대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

3.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을 확대를 통해 안정적 기업 활동 보장, 장애인 기업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적극적 홍보와 지역별 균등한 육성기관 설치

1.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은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도록 장애인공무원을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률은 민간부문 2.28%, 정부부문 2.5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현재 2.68%로 여전히 의무고용률(2.3~3%)에 미달.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1.83%로 저조한 실정(2011년 6월 기준). 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3%는 한국 장애인 출현율 5%, 유엔 인구 기준 10%에도 미치지 못함.
-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중 여성 비율은 12.93%로 매우 낮은 상황임.

-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중 중증장애인 비중은 매우 낮음. 2007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7.9%에 불과.
- 2012년 실시되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그 양적인 규모에서 전국적인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욕구를 포괄하지 못함.

■ 목표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준수
- 중증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 방법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준수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지자체 공공기관이 일반 민간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조정.
- 기업 책임 강화.
- 작업장 편의시설 지원 등 장애 인지적 작업환경 구축.
-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내 장애인전담팀 신설 등 고용전달체계 개편.

○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

- 중증 장애인 및 장애여성 할증제 도입 : 장애인 의무고용 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을 고용했을 때 더블 카운트제도를 도입해, 경증장애남성을 1명으로 했을 때 중증장애남성 및 장애여성은 1.25명, 중증장애여성은 1.5명을 도입한 것으로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 장애유형별 등급별 고용촉진 의무화.
- 장애유형과 성별의 고려, 공공사업 입찰 자격 인센티브 부여 등의 각종 유인책 마련.
-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을 명기하여 위반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세칙으로 만들어 넣어야 함.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강화

-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인력과 시간을 대폭 확대.
-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장애인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 즉각 철폐.

2. 최저임금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취업 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일, 1일 평균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적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취업 장애인의 임금은 월 평균 115만 6천원으로, 전체근로자 255만1천원(비농 전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45%에 불과한 상황.
-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상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목표

-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 장애인고용에 최저임금제를 적용.

■ 방법

- 장애인고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최저생활은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수주하는 위탁사업 입찰시 심사 기준에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과 최저임금 이상의 공정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3.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 선정 이유

- 현행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국가나 민간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제도이지만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기에는 미흡.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임금 보장에 어려움 존재.
- 장애인기업 중 절반 이상이 지원정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기업 창업연수, 그룹 컨설팅 등 소규모 단위사업을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 목표

-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 및 고용에 기여, 그리고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인 활동을 육성

■ 방법

-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을 확대를 통해 안정적 기업 활동 보장
- 장애인 기업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적극적 홍보와 지역별 균등한 육성기관 설치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조례를 제정.
-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민간투자 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을 과반수이상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함.

3.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

공약

1.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자격제한 폐지,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2.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3. 장애여성 기본법 제정

⇒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4. 정신장애인 지원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을 해소하고, 치료와 인권보장 방안 마련

5. 대통령선거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

6. 장애인지 예산 도입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유보조항 및 선택 인정서 비준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 및 UN의 장애인권리협약 전면 비준

7. 정치 참여 확대

⇒ 장애인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해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10% 공천

1.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장애등록제는 장애를 등급화, 서열화함으로써 장애인을 분리하고 배제하여 사회적 통

합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화, 차별화하고 있음.

- 새로운 장애등급심사제도 시행이 그 취지가 비록 장애심사의 의료적 기준 보완과 허위 장애 등록 방지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 혹은 불필요한 서비스 전달을 막는데 있더라도 장애등급심사를 엄격한 의학적 기준에 의해 장애의 여부와 정도만으로 판정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직면한 사회적 한계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장애등급이 같으면 동일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획일적인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음.

■ 목표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자격제한 폐지

■ 방법

-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여, 단기적으로 장애등급심사 사전 의무화 폐지. 1급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 없이 즉시 서비스신청 보장. 장애등급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하향조정 되더라도 서비스 필요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서비스 계속 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 장애등급 재심사 중단하고, 서비스 중단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 중장기적으로 1급 장애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활동보조 대상제한을 폐지.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필요도가 인정된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2.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시설 장애인 중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아동 포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교육, 직업재활, 주거문제 등 사회적 지원체계 정립과 권리 보장의 법률제정이 시급함.

■ 목표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방법

○ 그룹홈 물량 확대 및 지원체계 확보

- 매년 그룹홈 물량을 일정량 이상 확보, 형태는 영구거주형으로 운영 (교육·훈련의 기능은 체험홈을 중심으로 제공).
- 그룹홈 거주 장애인도 필요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룹홈 거주를 원하는 장애인의 서비스욕구를 파악, 그룹홈에 대한 인력 및 운영지원.

○ 체험홈·자립홈과 같은 자립형 주거 공간 확대

- 매년 체험홈 물량을 일정량 이상 확보, 체험홈에 운영인력 (코디네이터)배치.
- 체험홈의 자립생활촉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주체를 지역사회에 기반 해 자립생활프로 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선정.

○ 주간보호센터 확대

- 각 시군구별 주간보호센터 확대.
- 주간보호센터가 보호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사업비지원을 확대.

○ 재활치료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게 무상의 공적인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바우처를 제공하고, 자부담을 폐지.
- 재활치료서비스 관리를 위한 기구를 설립.
- 중소도시 이하 규모의 지역에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신규로 시설을 건립하여 질 높은 재활치료 시설 설치·운영.
- 치료사 자격을 국가면허제도로 일원화하고, 전국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담당 치료사의 자격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사설치료실의 설치·운영 기준을 법제화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

3. 장애여성 기본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과 장애, 빈곤으로 인한 다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따라서 다중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이 필요.

■ 목표

-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 방법

-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교육기회 확대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비용, 가사도우미, 자녀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임신·출산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전문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여성의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장애여성단체 지원 △장애여성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책임.

* 여성공약 참조

4. 정신장애인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의 정신보건법은 복지가 누락된 의료중심의 정책으로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으로서 제한을 받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강제입원, 장기입원으로 인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복지적 차별이 있음.
- 정신질환은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마저도 공개되지 못하고 있음.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의 입원보다는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 장기입원, 복용약물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 목표

- 복지적 차별 해소
-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통합시스템 구축
- 주거지원 및 지역 사회 지원체계 마련
- 인권보장

■ 방법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별 해소

- 장애인복지법 15조 삭제.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인프라 확대.

○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통합시스템 구축

-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정신질환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약물교육.
- 가족 및 당사자들의 자조활동 및 봉사를 위한 활동육성 .
-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가이드제공.
- 지역사회연계.

- 경증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
- 주거지원 및 그룹홈 수 확대.
- 자립 및 취업지원.

○ 인권보장

- 가족동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입원제도를 폐지.
- 정신과약물복용에 대하여 기본정보의 제공 의무화.
- 정신요양원은 30인 이하의 생활시설로 축소.
- 국가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 및 대중매체의 전달방식 개선 및 홍보.

5.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 선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지난 10년간 위원회 회의의 진행결과를 볼 때, 1년에 단 한차례조차 개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하거나 관계부처 간에 있을 수 있는 견해차를 조정 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님을 알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대상의 모호.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된 심의·조정과 정책수립, 의견조정, 감독평가 간의 관계 모호. 법에 규정된 장애인종합정책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며, 또 종합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지조차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장애인의 정책조정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 부처 간 조정 등의 임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비상설 기구 회의체로 운영되고 있음

■ 목표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

■ 방법

-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과 전문부서를 설치해 장애인정책의 개발과 조정, 모니터링, 감시, 정책권고 등의 기능과 역할 수행.
-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화된 장애인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 개정(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기본법 제정, 국가장애인위원회법 제정 등을 통해 근거 마련).

6. 장애인지 예산 도입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 비준

■ 현황 및 문제점

- 성인지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지예산은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였으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e) 조항의 비준을 유보하였음.

제 25조 (e) 건강보험 규정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국내법에 의해서 허용된 생명보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 또한 동 협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해 개인에게는 진정권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는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

■ 목표

- 장애인지예산을 도입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

■ 방법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지 예산 포함.
-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막는 독소조항인 「상법」 제732조를 즉각 개정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e) 조항을 비준할 것.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인이행을 보장할 것.

7. 정치 참여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사회에서 대표적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인구가 국민의 10%인 500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299명 중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8명으로 2.6%, 광역의원은 1.7%, 기초의원은 1.2%에 불과한 현실.

■ 목표

- 장애인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해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10% 공천

■ 방법

-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10% 장애인으로 추천(공직선거법 제47조 개정).
-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중 일부(5%)는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정치자금법 제28조 개정).
- 공직선거 장애인후보자에 대해 본 선거기간(13일간)에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서비스 제공.

4. 실질적 소득 보장

공약

1. 부양자 의무 기준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

⇒ 국민기초생활법을 개정하여 부양의무 기준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

2. 장애인 연금과 수당 현실화

⇒ 장애인연금의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개선해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을 최저임금의 3분 1 수준까지 인상

1. 부양자 의무 기준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관련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며, 전체 서비스 수급자 중 상당수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자산만을 근거로 서비스 보장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 상황.
- 단지 집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장애인 LPG 차량을 부모형제와 장애인 당사자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각종 장애인 관련 서비스에 제외되는 사각시대가 발생하고 있음.
- 최저생계비 계측은 절대적 빈곤 관점에서 전물량 방식(마켓바스켓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지출액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비율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절대적 빈곤선은 비현실적.

■ 목표

- 장애인관련 서비스 자격기준 적용 시 부양의무 기준제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
- 부가급여액을 추가지출액 수준으로 인상

■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복지 공약 참조

2. 장애인 연금과 수당 현실화로 실질적 소득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연금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급여액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음.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약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가 87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35만 4천원, 신장장애 33만 4천원, 안면장애 31만원, 청각장애 24만 3천원의 순이었음.
- 2010년부터 시행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과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불과. 오히려 장애수당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여 종전보다 소득 감소효과가 있음.
-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0%를 장애인세대가 차지하고 있음.

■ 목표

-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와 연금 기준 변화
- 장애수당 인상

■ 방법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의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개선해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을 최저임금의 3분 1 수준까지 인상.

* 2011년 장애인 연금액 : 9만1,000원부터 15만1,200원까지 차등 지급.

2012년 장애인 연금액 : 2011년보다 2만 원가량 증액되어 17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됨.

-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결정을 장애등급이 아닌 소득획득 능력이나 노동능력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정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장애수당을 인상을 할 필요.
- 부가 급여액을 실질적 추가지출액 수준으로 인상.
- 기존 차상위로 한정되어있는 장애수당을 차차상위까지 확대 지급.

5. 건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보장

공약

1.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건강권 보장

⇒ 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와 검진항목, 진료도구를 개발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장애유형별 진료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2.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

⇒ 모든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시스템으로 모성권 보장

3. 교육권 보장

⇒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

4. 정보접근권 보장

⇒ 시각·청각/시청각중복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환경 마련,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법 제정

5. 문화권 보장

⇒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 소극장 등 문화공간 장애인 접근권 확대

1.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건강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만성질환 유병률이 75.9%로 비장애인보다 1.8배 높음.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은 비장애인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음.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비장애인과 같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대상자가 선정됨. 장애인에 있어서 건강의료보험 혜택은 경제여건에 따라 선택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관점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목표

- 장애유형별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와 예방지원책 강구
-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접근권 강화

■ 방법

- 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와 검진항목, 진료도구를 개발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장애유형별 진료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개정.
- 장애인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 진료체계를 개선.
- 원격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대면서비스 중심 공공의료 체계 확충.
- 장애인 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 비급여 부문 해소 및 장애특성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 장애유형별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와 예방지원책 강구

- 만성질환(비만, 당뇨, 치과, 우울증 등) 관리를 위한 사전검진 및 예방활동 강화.
-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진료장비의 개발 및 보급.
- 원격의료(주치의 제도)의 확대 적용.
- 재활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시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매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 희귀난치성 질환, 중복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 재활병원의 연차적인 확대.
- 장애인 치과병원의 연차적인 확대.

○ 생활체육참여 기회 마련

-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장애인의 장애 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며, 재활수단으로서 기능회복과 건강보호 유지에 기여하고 신체기능 퇴화 예방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됨.
- 장애인 생활체육클럽 활성화를 통해 지도자 수당, 시설사용, 운동기구 구입 지원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
-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운영 지원

2.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중 장애인의 결혼상태에서 유배우가 51.2%이며, 장애인의 결혼 시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10.8%로 나타나 부부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보면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23.7%,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12.8%) 등의 경제적 문제, 그리고 ‘본인의 건강악화’ (10.5%)와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7.8%),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7.5%)의 순으로 나타나,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중증장애여성이 동네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와 간호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진료거부 및 언어적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진료시나 출산 시 장애유형의 특징을 모르는 의사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진료를 하여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근육경련 등으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목표

- 모든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시스템으로 모성권 보장

■ 방법

- 모든 장애여성에게 임신 3개월부터 출산 시까지 활동보조 월 60시간 지원.
- 모든 장애여성에게 출산 후 산모도우미 3개월 지원.
- 1~2급 중증장애여성 월180시간 아이돌보미서비스 시행.
- 장애여성 서비스 지원체계 일원화.
- 각 시,구별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지원체계를 일원화.
- 장애임산부의 경우에는 장애 경중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 산모도우미, 육아도우미의 경우 여성장애인에게 맞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
-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지원의 자기부담 폐지.
- 산부인과 및 병원, 공공기관 등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장애여성의 권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위탁.

* 여성공약 참조

3. 교육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성인이 최소 45.5%(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최대 60.5%(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06)으로 드러나고 있음.
- 장애성인의 교육지원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야학이 대부분이며, 최근 장애인야학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없는 소규모 야학은 지원의 근거가 없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 2008년 기준 시각장애인은 220,061명. 그러나 점자해독이 가능한 장애인은 2.4%임(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 목표

-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

■ 방법

- o 장애학생이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특수교사 확충하고, 법정 정원 준수를 위한 5천 여 명의 특수교사 충원대책 마련.
 - 학급 신증설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규정 준수.
 -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 학급증설·교사확충·교육환경조성 등으로 인한 지역교육청의 행·재정적 부담 해소 위한 중앙정부 지원 필요.
 - 장애학생에 대한 방학 중 ‘방학학교’ 지원.
- o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장애아동보육시설도 유치원에 상응하는 교육여건 마련
 -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장애아동 2명당 1명의 장애아동 보육교사 및 장애아동 4명당 1명의 유

아특수교사 배치.

- 장애아동 보육교사 및 유아특수교사의 처우 현실화 보장.
- 장애아동 보육시설 내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예산지원.
-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진행.
- 정당한 편의의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꾸준히 예산 지원.

○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 관련 야학지원.
- 야학,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에서 정기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성인장애인에게 교육비 지원.

4. 정보접근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시각장애의 발생 시기를 보면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대부분이며 40대 이상의 시각 장애 발생율이 높아 점자를 배우기 어려운 연령대가 존재함.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방식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확대가 필요함.
- 의약품 및 생활필수품의 경우 점자가 없어 약을 오용하거나 물건을 사는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음성변화 출력기 관련 회사 문의 결과 누적 판매대수는 약 5,000개 (전체 시각장애인의 2.27% 보급률)
- 정보통신에 있어 장애인들의 차별은 여전함.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기기와 소프트웨어 장애인들의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들 수 있음.
-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201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1.6%로 전체국민 15.6%에 비해 14.0%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전체 국민 스마트폰 이용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전체국민의 10.3%에 불과한 것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2015년도까지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하지만 소공연장의 경우는 이동의 문제, 접근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용할 수 없음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심각함.

■ 목표

- 신제품 등 접근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 시각·청각/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환경 마련
-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 방법

- o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출력기 무상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방송 등에서 수화, 자막 제공.
- o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환경 마련
 -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정보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마련.
- o 정보통신제품 등 접근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 정보통신 제품 등에 장애인 접근 환경을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 고시된 지침을 법령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이러한 작업의 하나로 정보 접근권을 차별에 입각하여 다루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우선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도 개정.
- o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 상충법령 개정.
 - 특수교사 수화통역자격증 취득 확대 등 농교육환경 개선.
 - 일반학교 교과과정에 수화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

5. 문화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2015년도까지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하지만 소공연장의 경우는 이동의 문제, 접근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용할 수 없음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심각함.
-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 영화관의 장애인 좌석은 대부분 법정 기준인 1%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용 좌석은 스크린 관람하는데 불편한 맨 앞줄에 설치되었거나 영화관측의 미설치로 장애인들이 영화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 장애인용 좌석이 제대로 설치된 영화관의 경우에도 탈부착 방식 의자가 아닌 고정식이어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거나, 아예 의자가 없는 빈 공간이어서 동반한 비장애인의 관람이 어려운 실정임.

■ 목표

-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
- 소극장 등 문화공간 장애인 접근권 확대

■ 방법

- o 시각·청각/시청각중복 장애인의 문화 향유 환경 마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영화사업자에 대한 임의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영화사업자의 정당한편의 제공 시기(2015년)와 제공범위(300석 이상)를 개정하여 2013년부터 모든 극장에 적용.
-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영화사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정당한 편의의 근거를 명시.
-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을 위한 점자안내,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

○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소극장 등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

- 휠체어 사용자가 편히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좌석을 스크린 기준 제일 뒤쪽이나 중간에 설치.
- 휠체어 사용자와 동반자를 위하여 장애인용 좌석을 마련하고, 보행 장애인을 위하여 조정 가능한 의자 팔걸이를 마련.
- 매표소, 상영장, 매점 등에 휠체어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구조를 변경.
- 장애인이 소극장 등 문화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적용받도록 함.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소극장 등 문화공간 접근, 시설 내 이동, 좌석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2.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
3.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연구위원 김애화(roads@hanmail.net)

성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공약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22개 차별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2.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

⇒ 법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이 가능하게 하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을 최소화, 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

⇒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한 예방정책 마련,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교육홍보강화, 국가의 치료의약품 공급의무 규정 신설 등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

4.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 군형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차별 폐지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필요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 200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를 꼽고 있음.
- UN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한국정부에 요구해 왔음. 2009년 11월 20일, UN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심의 없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차별금지사유 중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

- 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함. 2011년 7월 19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한국국적취득 요건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성정체성 관련 차별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서둘러 제정하도록 요청하였음.
- 2007년 법무부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보수계의 반대로 좌초된 이후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왔음.

■ 목표

-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
- 차별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 냄.

■ 방법

- 22개 차별사유(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겪은 차별을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차별의 대상으로 보고 금지 함.
 - 차별적인 광고 하거나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금지, 복합차별로서 각각의 차별사유 인정.
 -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 정부 및 지자체는 차별금지와 예방,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 차별의 구제방안으로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차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한편,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예) 국가인권위원회 - 직권조사 가능하도록 함. 법률구조요청, 소송지원 등
법원 - 중지, 배상 등 적극적 조치 가능하도록 함.

2.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성전환자는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별로 성전환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주민등록상의 성별표기가 달라 모든 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6년 6월 대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했고 같은 해 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예규)’이 제정되었음. 2009년 8월에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폐지되면서 병역미필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음. 이전보다 완화된 지침 규정이지만 여전히 혼인사실여부를 묻거나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함. 성별변경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지침에 의해 트랜스젠더들의 성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지만 회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함.
-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의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2006)에 의하면 성별변경에 대한 법안마련과 성전환 수술의 의료보험 적용, 취업상담 서비스가 성전환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정책가운데 하나임.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계와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트랜스젠더들은 주민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비정규 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 2011년 9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전환 수술 건수 및 부작용 건수가 한 건도 집계되지 않은 점이 지적된 바 있음(한나라당 최경희 의원).

■ 목표

- 법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이 가능하게 하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을 최소화.
- 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 취업과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성전환자들에게 취업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취업의 기회를 더 다양하게 제공.

■ 방법

- 성별변경 조건을 완화한 ‘성전환자 성별변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 호르몬치료, 성전환 수술 및 사후관리 의료종목 국민건강보험에 적용. 전문의료기관 국가지정 운영.
- 성전환자들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산하에 성전환자들의 취업상담과 취업교육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 복지부에 성전환수술, 호르몬 치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료지원센터 마련.

3.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을 HIV/AIDS감염인 인권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

■ 선정 이유

- 2011년 3월 기준으로 국내 AIDS 감염인의 수는 7835명에 달함. 국내 에이즈 감염인의 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해 773명 신규 감염인이 발견됨.
- 1987년에 제정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인권에 기초한 법이 아니라 HIV/AIDS감염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안임. 실명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실명으로 보고해야만 함.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음.
- 입출국통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와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는 ‘감염병환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출국을 통제하고 있어 HIV/AIDS감염인도 입국금지,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삼아왔음. 법무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HIV감염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폐지한다고 밝혔으나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없이 법무부 내부지침만을 변경했을 뿐이어서 효과는 없는 상태임.
- 채소자에게 에이즈강제검사, 격리수용 : 법무부의 수용자의료관리지침은 신입 채소자에게 매독 및 에이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고지되지 않은 채로 검진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까지 채소자가 구금시설에 입소할 때 에이즈강제검진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미 구금시설에서는 HIV/AIDS 감염이 확인되면 감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격리 수용을 하고 있으며 구금시설 내에서 질병이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함.
- 강제검사 : 징병검사와 입영검사에 HIV강제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HIV양성으로 확인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 복무를 하지 못하거나 관련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됨.
-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은 제19조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임.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 나 ‘헌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감염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막아야 하는 행위이지 금지의무조항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되지 못함. 오히려 이미 위축되어 있는 감염인들을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편견을 조장하는 조항임.
- 17대 국회에서 현애자 전 의원에 의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면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지만 일부만 개정됨.

- 2004년 아시아 태평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은 인권권고안을 통해 건강과 인권의 상호의존성,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아래 감염인과 에이즈 감염에 취약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의 시각에서 법률적 준비를 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

■ 목표

-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에이즈 예방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대원칙 아래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지금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함.

● 방법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법 명칭부터 변경해야 함. (17대 국회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었음)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문제점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7조에서 비밀누설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의 의료실태 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감염인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는 방문한 모든 구금시설에서 지켜지지 않았음. 성매매여성에게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한 예방정책 마련,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교육홍보강화, 국가의 치료의약품 공급의무 규정 신설 등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어야 하며 강제검진, 전파매개금지 조항과 같은 인권침해 조항 등은 폐지되어야 함.
- 법 개정 뿐만 아니라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간병, 재가복지, 상담서비스 등 총체적인 복지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함.

4. 성소수자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군 관련 법 제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군형법 92조 “계간 기타 추행한자는 징역 1년에 처한다”에 포함되어있는 ‘계간’이라는 단어는 닭 계(鷄)에 간음할 간(姦)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특정 성행위를 동물에 빗대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위 조항은 합의에 의한 행위마저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성애 그 자체가 성폭력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게 함
- 우리나라 군대에서 동성애자 병사가 커밍아웃을 할 경우 거의 대부분 정신과 진료를 받고 비전캠프(자살예방캠프)에 입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음.

■ 목표

-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법제도 폐기
- 군대 및 군 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개선

■ 방법

- 군형법 92조 5항 ‘계간(鷄姦·동성애)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 폐지.
- 병역법의 국방부령 제728호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별표2]의 ‘정신과’ 항목 중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에 ‘성주체성장애, 성적선호 장애’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이는 동성애를 성적선호 장애로, 트랜스젠더를 성적주체성장애로 분류할 소지가 있음.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개정.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퇴역, 제적 또는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음.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등급표의 ‘정신과’ 항목 중 ‘85. 성인 행태장애’에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를 포함하고 있음.

19대 국회의원 선거

분야별 공약 해설집

3권. 정치분야·청년세대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정치 공약

새로운 변화!
보라! 희망의 정치혁명!

1. 정당정치 혁신
2. 선거제도 대개혁
3. 참여 민주주의 확대
4. 책임정치 실현

연구실장 박철한(gaeal23@naver.com)

1. 정당정치 혁신

공약

1. 금권부패정치 타파

⇒ 정당 금권선거 처벌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 진성당원제 제도화,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2. 정당 기초조직 활성화

⇒ 풀뿌리 정당정치 강화, 투명한 정당회계 운영, 상향식 민주적 운영이 전제된 정당 지역조직 허용

3.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활성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지속

⇒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국민의 정치참여를 반감시키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지속

4.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모든 정치자금 거래 내역 공개, 투명성 확보, 국민신뢰 회복

1. 금권부패정치 타파

■ 현황 및 문제점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거대양당의 돈봉투 살포리는 금권부패정치 관행은 오랜 과거부터 당내 선거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 거대양당의 음성적 금권부패정치 관행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봉투 사건의 재발방지 방안으로 정당의 전당대회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제시.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에 대한 선거관리는

일정한 금권선거 방지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중앙선관위에서 전당대회를 위탁관리하더라도 당원의 대의원 선출 권한이 없는 중이조각에 머물러 있는 이상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지명권한을 가진 당협위원장에 대한 매수, 매표 행위는 언제든 재발 가능. 물론 지금까지의 돈봉투 살포 관행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음성적으로 진행될 것임.
- 거대양당의 돈봉투 살포 금권정치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종이당원이 아니라 진성당원제에 기반하여 정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당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함. 또한 돈봉투 정치는 당직선출 과정에서 대의원 지명권이 있는 당협위원장에게 집중되었음. 대의원을 당협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당원 직선제로 대표를 선출해야 할 것임.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 정당 경선 참여는 진성당원제와 혼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 정당을 정당답게! 당내금권선거 처벌강화(공직선거법 261조 6항 준용)
- 진성당원제 제도화
- 정당 당직공직후보선출 개방형 국민경선제 활성화(당원직선제와 혼용)
- 중앙선관위에서 정당 선거 위탁관리

■ 방법

-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

2. 정당 기초조직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과거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돈 먹는 하마로 기능하며 각종 탈법과 부정을 자행,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2004년 폐지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정당들은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을 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됨.
-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정당의 지역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풀뿌리 여론, 민심이 제대로 중앙에 반영되기 어려워졌음. 또한 원외정당의 경우 원내정당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으며 일상적 정당활동과 선거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 지구당이 불법정치자금의 유통처로 동원된 것은 이것이 가능했던 법제도적 허점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음. 정치권은 비난여론을 의식해 지구당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을 필요로 하며 헌법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헌법 제8조제2항).
- 통합진보당은 이런 이유로 정당의 민주적 활동과 정치적 의사형성 기구로서 정당조직의 필요성을 주장. 즉 통합진보당이 실천하고 있는 진성당원 확대, 당비에 기반한 당 운영, 당원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구조, 당원의 공직후보자 선출권 보장, 투명한 회계운영 및 공개, 지구당 권한강화 등을 즉각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음.
- 이렇게 민주적 지역조직 운영방안이 구비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진성당원이 중심이 되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국민지지 속에 정당정치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목표

- 과거 형태의 지구당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당정치 혁신으로 진성당원제 강화, 민주적 운영, 투명회계 등을 전제로 정당의 지역 기초조직 설치 허용
- 정당이 자율적으로 지역 기초조직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지역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원수, 활동개황, 회계보고 전면 공개 의무화
- 새로운 정당의 지역 기초조직 모델

과거의 지구당	새로운 모델
- 폐쇄형 - 지구당 위원장 중심의 독단적 운영 - 피라미드식 지역 동원조직 - 중앙당-광역시도당-지구당 하향식 구조 - 특정인에게 집중된 재정 운영 - 유력 정치인의 선거 사조직 - 지방의원 미지원 및 책임 방기 - 참신한 정치신인 출현 억제	- 개방형 - 진성당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 - 수평적 네트워킹 조직 - 중앙당 및 시도당과 수평적 구조 - 당원의 재정부담과 국고지원에 의한 운영 - 지역 여론수렴 및 정당정치 활동 조직 - 지방의원 정책지원 및 당적 관리 - 정치신인 육성 및 훈련, 교육

■ 방법

○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3.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활성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지속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4년에는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해 고비용 정치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정치자금법 개정.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및 기탁을 금지하고 기부한도를 제한하는 한편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소액후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정당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 중 300만원 초과 고액기부액이 2.2배나 증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원인도 정체되는 상황.
-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인원	228,155명	305,912명	298,456명
금액	211억 8,100만원	279억 9,100만원	250억 4,700만원

- 최근의 정당에 대한 고액-소액 기부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 이에 따르면 고액기부가 줄고 소액기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2008년 고액기부 요건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결국 소액기부비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
- 정당별 고액기부자 현황

2006년			2008년		
정당	고액기부비율	소액기부비율	정당	고액기부비율	소액기부비율
계	24.3	75.7	계	19.6	80.4
열린우리당	24.4	75.6	한나라당	21.8	78.2
한나라당	25.6	74.4	민주당	16.7	83.3
대통합민주당	36.9	53.1	자유선진당	11.4	88.6
민주노동당	0.5	99.5	친박연대	15.0	85.0
국민중심당	17.0	83.0	민주노동당	0	100
무소속	17.7	82.3	창조한국당	14.7	85.3
			무소속	25.7	74.3

-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를 지속하면, 정치자금 모금에서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재벌 등 특정 이해집단의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정치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음.

■ 목표

- 국회의원 후원금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를 2배까지 확대해 허용하는 만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금액 또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로 확대
-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지속
- 공무원, 교원의 후원회 기부 허용
- 현행 300만원에서 120만원 초과로 고액기부금 공개 기준 강화

■ 방법

- 정치자금법 개정

4.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치자금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용. 동시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 정치인에 대한 기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이 됨.
-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유지 비용’, ‘정치의 젖줄’ 이라고 표현되기도 함.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불법정치자금’ 을 연상시킬 만큼 과거 온갖 비리와 추문, 부정부패와 결합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를 퇴행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 특히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차떼기’ 사건은 국민들의 정치 분노와 비판을 촉발시켜 2004년 정치자금법 전면 개정을 가능하게 하였음.
- 2004년 제14차 정치자금법 개정 사항

항목	내용
예비후보자 후원회 모금 허용	-대통령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자금 모금 방법 다양화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모금 허용 -집회 개최 모금 금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신용카드 등 실명 확인 방법 사용 의무화 -신고된 회계책임자 통해서만 정치자금 수입, 지출 허용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 지출 허용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공개	-국회의원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연간 120만원 이상 -중앙당, 대통령선거경선평의후보자는 연간 500만원 이상
법인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및 기탁 금지
기부한도 제한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개인 후원회 모금한도 제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불법행위 처벌 강화	-정치자금 위반 형량 강화 및 결석재판 도입 -정치자금법 위반 후원회 또는 법인에 벌금형 부과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은 10년간 공무담임권 박탈

- 2004년 개정안을 뼈대로 하여 운용돼 온 현행 정치자금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먼저 기부내역 공개가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직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직위

와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전체 공개대상 가운데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 기업, 법인 등의 불법적인 기부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인적사항 공개를 꺼린다는 이유로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악이 이뤄지기도 함.
- 무엇보다 정치자금 내역이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활용되어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어도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이 투명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정치자금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고 불법 정치자금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목표

-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공개요건을 120만원 초과로 강화
- 정치자금 내역,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 폐지
- 선관위 홈페이지 통한 정치자금 내역 상시공개

■ 방법

- 정치자금법 개정

2. 선거제도 대개혁

공약

1.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 도입

⇒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사회 대표성과 유권자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 개혁

2.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소수 대통령’에서 ‘다수 대통령’으로

3. 국민의 참정권 강화

⇒ 투표를 자유롭게! 전자투표제 도입, 선거일 유급휴무일 지정, 이동투표제·사전투표제 도입

4. 투표를 항상 기반 확대

⇒ 투표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 시험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제 도입.

1.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적으로 올바른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지지를 의식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기준. 따라서 소수의 지지로 다수를 점하거나, 다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수로 전략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선거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유권자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되어 있음. 그러나 단순다수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여 사회적 대표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 표는 모두 사표(死票)로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국회의원 다수대표제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의석률 비례성 비교

선거 구분	정당명	득표율	의석률	보너스율
2000년 제16대	한나라당	39.0	49.3	10.4
	새천년민주당	35.9	42.3	6.4
	자유민주연합	9.8	5.3	-4.5
2004년 제17대	열린우리당	42.0	53.1	11.1
	한나라당	37.9	41.2	3.3
	민주노동당	4.3	0.8	-3.5
2008년 제18대	한나라당	43.4	53.5	10.1
	통합민주당	28.9	26.9	-2.0
	자유선진당	5.7	5.7	0.0

-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득표율과 실제 의석률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음. 소선거구제에서의 표의 등가성 왜곡은 비례대표제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당연한 상황.
- 한편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우리나라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주의 문제도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고려해야 함. 영호남 지역당 체제가 고착되어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지역주의 정치 해소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거대정당은 지역정치 구도 타파를 최우선으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들 제도는 지역주의 해소에 큰 기여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구나 석패율제와 같은 제도는 선거제도 개선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개악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정치는 그동안 두 개의 보수적 거대정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한계를 가졌음. 이로 부터 이념과 가치가 정치에 협소하게 반영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서민의 삶이 대의되지 못했음. 또한 사회가 다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양당체제로 인해 다양한 가치를 대의해야 할 국회가 보수정치의 온실역할만 하였음. 진보정치가 살아숨쉬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당제로 우리나라 정치가 변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선거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핵심 사안임. 유권자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득

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유일한 대안.

■ 목표

-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
- 정책과 이념으로 경쟁하는 정당정치, 책임정치를 실현함.

■ 방법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하고 의석 전체를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함
- 지역구에서 1인 이상 당선되거나 전국유효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에게 의석 배분 자격 부여
- 정당명부 제출은 전국 단위로 하고 후보 공천은 당내 경선을 비롯한 민주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 공직선거법 개정

2.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선거 결과는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만으로 대통령에 당선. 즉 당선된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 대비 지지율이 30%대 수준에 불과.
- 17대 대선에서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수의 차이가 컸지만, 전체 유권자 대비 대통령 당선자의 지지율은 30.52%에 그침.
-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선거 당선자 득표율

연도	당선인	유효득표율(%)	선거인수 대비 투표비율(%)
1967(6대)	박정희	51.44	40.82
1971(7대)	박정희	53.20	40.89
1987(13대)	노태우	36.64	32.96
1992(14대)	김영삼	41.96	28.04
1997(15대)	김대중	40.27	31.98
2002(16대)	노무현	48.90	34.33
2007(17대)	이명박	48.67	30.52

- 헌법 제68조 제3항은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최소한의 당선 기준으로 득표자 총수의 1/3이상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은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
- 이렇게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소수’ 대통령은 통치력을 뒷받침하는 지지 기반의 약화로 국정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탄생하여 대표성과 정통성을 확보.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
- 결선투표제는 2차례에 걸쳐 투표하게 되므로 유권자는 1차 투표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투표하고 2차 투표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투표하게 됨으로써 유권자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음.
-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며 정치적 타협을 용이하게 하여 정당정치를 안정화시키며 나아가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 현재 결선투표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프랑스, 불가리아, 오스트리

아, 핀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이란, 나이지리아 등)

■ 목표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방법

- 결선투표제는 상위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과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있음.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자의 방식, 즉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아무도 없는 경우 상위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2차 투표는 1차 선거일 2주 후 실시하도록 함.
- 헌법 제67조제5항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공직선거법 개정

3. 국민의 참정권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가 다변화 되고 국민의 욕구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권자의 참정권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투표제는 지정투표구와 거소투표, 부재자 투표로 획일화 되어 있음.
-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제도적 문제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이후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음.
- 특히 노동현장은 휴무일 지정에도 법정선거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규모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휴무일 정도만 지정되어 운영됨으로서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민의 정치 참여의 핵심적인 제도인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 보완이 요구됨.

■ 목표

-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유급 휴무일 지정
- 전자투표제 도입
- 이동·사전투표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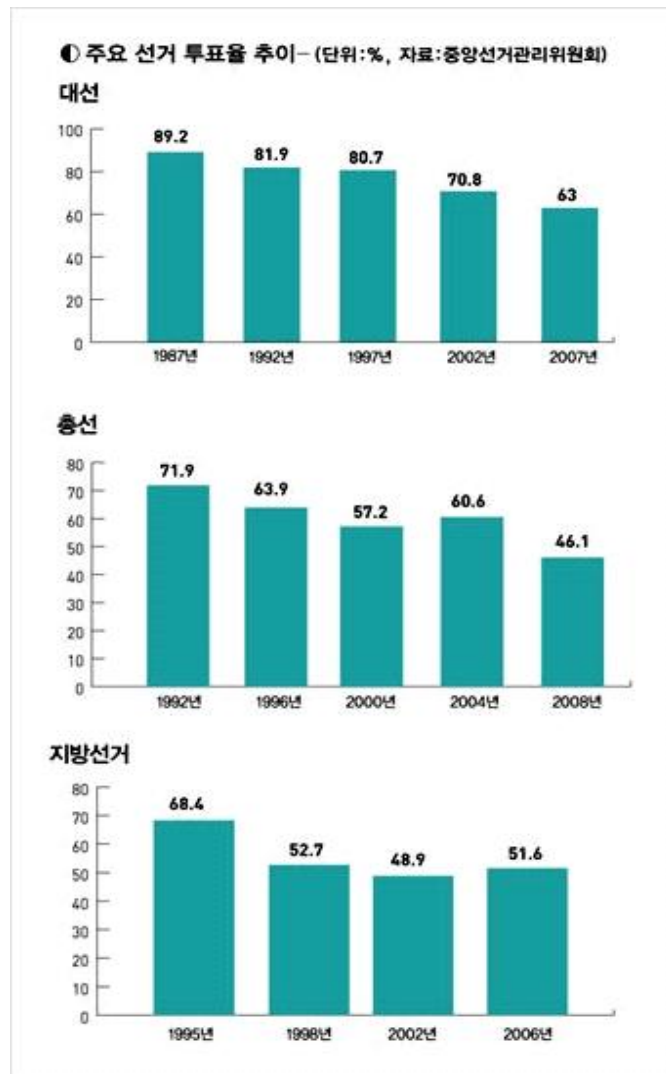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4. 투표율 향상 기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평등에 기초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음. 국민주권의 원리와 자유와 평등은 정치참여의 평등을 통하여서만이 구현.
- 87년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투표율은 지속적인 하락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민주화 이후 87년 대선과 88년 총선으로부터 20년 뒤 2007년 대선과 2008년 대선에 이르는 동안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세계 민주주의 선거역사상 유례없이 30%대로 급락했음.
- 한마디로 참여의 위기이자, 정치 대표성의 위기라 할 수 있음. 국민의 정치불신과 투표 양극화, 사회·정치·제도 소외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

- 투표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정치 불평등 해소하여 평등한 정치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물론 지난 18대 총선에서 ‘투표확인증’을 통한 문화시설 할인혜택을 부여했지만,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낮은 차원의 유인이었음.
-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임. 더불어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에게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늘려주는 제도도 도입. 장기적으로 의무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목표

- 투표율 향상
-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표 인센티브 부여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3. 참여 민주주의 확대

공약

1.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 교원과 공무원에게 정당가입, 후원 허용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기본권 보장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 주어진 의무만큼 당당히 누리는 권리, 세계적 추세인 18세 선거권 실현

3. 여성 정치 활성화

⇒ 세상의 절반인 여성, 여성 30% 지역구 출마 할당

4.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정치활동 확대

⇒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5. 국민에게 국민투표 부인권 부여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6.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폐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상설화

⇒ 거대정당의 담합의 장이 된 정개특위 폐지, 국민과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정개혁 구성, 정치개혁 추진

1.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약이 있다고 해도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현재 OECD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 여타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 뿐만 아니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특히 영·미·일 국가들이 두고 있는 법적 제한규정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성·불편부당성·공정성을 의미할 뿐 정당가입이나 당비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법적 제한이 없음.
- 교원의 경우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에서는 특정후보자의 지지나 정당가입, 정치자금 조성 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
- 국가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국가	허용여부	허용되는 정치활동
일본	국가교육공무원-불허 / 지방공무원-제한적 허용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서명운동
미국	연방·주·교육공무원-허용	정당활동, 단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공직후보 출마 및 선거운동은 제한적 허용(연방, 주별)
독일	일반공무원-제한적 허용 / 교육공무원-허용	정당활동과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제한, 공직후보 출마 허용
영국	일반공무원-원칙적 허용 / 교육공무원-허용	일반공무원 기준 국회의원후보 출마 외 모든 정치활동 허용
캐나다	일반교육공무원-원칙적 허용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호주	일반교육공무원-원칙적 허용	출마시 공직 사퇴. 선거운동 참여시 상급자와 협의
뉴질랜드	일반교육공무원-원칙적 허용	출마 의사 상급자에게 미리 통보
프랑스	일반공무원-원칙적 허용 / 교육공무원-허용	정당활동, 정치자금 기부, 공직후보 출마, 선거운동. 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제한

○ 국가별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여부

	국가명	정당가입 여부	정당후원 여부	비고
1	미국	허용	허용	1939년 해치법
2	영국	허용	허용	단, 16% 고위직은 정당의 주요간부 될 수 없음
3	독일	허용	허용	공직보유한 채로 출마가능, 낙선시 복직 가능
4	프랑스	허용	허용	국회의원 당선시 신분유지, 공무원 복직시 경력환산
5	일본	허용	허용	타인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하거나 임원직 금지
6	캐나다	허용	허용	교원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선거기간 중 휴직보장
7	오스트리아	허용	허용	교사들이 다양한 정당을 대표하여 의원으로 당선
8	덴마크 등 북유럽	허용	허용	상동
9	스위스	허용	허용	상동
10	호주	허용	허용	

-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 극심한 탄압 진행.
-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자금 기부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 대부분 처벌조항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 반면 공무원노조, 전교조 소속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5천원~1만원의 소액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2010년에는 교원 183명과 공무원 90명을, 2011년에는 교원 1,352명과 공무원 295명 등 무려 1,900여명을 무더기 기소.
- 또한 우리나라의 고위직공무원은 정치활동에 제약이 없지만, 하위직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국립대 교직원도 정당가입이 허용되지만, 교육공무원은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등 공무원 내에서조차 형평성 문제가 존재.
-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은 민주시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 목표

-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전면 보장
-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활동 허용
- 교원의 경우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 출마 허용

■ 방법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 관계 법령 개정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진 바 있으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은 25세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은 18세가 되면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의무가 부과되고 공무담임권이 인정되며 청소년보호법 대상에서도 제외되나 참정권만은 제외.
- 현행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병역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
- 독일은 18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며 일부 주에서는 16세도 인정. 2002년에는 안나 튀어만이 19세 나이로 녹색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례.
- 2005년 미국에서는 미시건주의 인구 8천200명의 작은 마을인 힐스데일 카운티에서 고등학교 졸업반인 마이클 세션즈가 18세의 나이로 시장선거에 당선된 사례가 있음. 마이클은 당선 후 학생신분으로 학교생활과 시장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함.
- 현재 20세로 규정된 일본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며, 영국은 현행 18세를 15세로 낮추자는 운동을 전개.
- 주요국의 선거권 연령

	국가수	비율	주요 국가
16세 이상	8	3.3%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 맨섬, 이란, 저지, 리카라과
17세 이상	5	2.1%	인도네시아, 북한, 세이셸, 수단, 동티모르
18세 이상	201	84.8%	아르헨티나,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칠레, 중국, 체코, 독일, 덴마크, 이집트,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라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페루, 파키스탄,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웨덴, 태국, 터키, 미국 등
19세 이상	1	0.4%	한국
20세 이상	5	2.1%	바레인, 카메룬, 일본, 나우루 공화국, 대만
21세 이상	11	4.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지, 가봉,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통가, 사모아
기타	6	2.4%	

-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어 국민의 의무와 권리 행사의 균형을 맞추고 정치참여의 폭과 기회를 더욱 확대해 국민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 목표

-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3. 여성 정치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세상의 절반은 여성. 산술적으로 보면,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상식.
- 여성들의 과소대표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이 공적영역에 진출해야 한다는 입장은 예전부터 많은 사회적 호응을 얻고 있음.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공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정치영역에서 여성대표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세력의 측면에서 보면, 정당과 의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소수. 정당과 의회의 성별 구성을 보면, 압도적 다수는 남성들로 구성.
- 제도적 측면에서 정당들은 여성할당제를 운영하여 비례대표에 여성들의 진출이 용이하지만,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진출은 여전히 소수. 법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함.

■ 목표

- 여성의 지역대표 30% 할당 실현
- 여성추천보조금제 개편하여 정당의 전체 지역 선거구 출마자 비율과 당내 여성후보 출마자 비율을 함께 적용해 지급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4.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정치활동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관련법의 정비 등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 환경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표소를 엘리베이터가 없고 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2층에 설치하거나 점자 홍보물의 면수를 제한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정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국회진출이 활발하지만, 여전히 소수에 그치고 있음. 국가기관에 등록된 장애인이 250만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이해관계가 국회에 반영되기에는 여전히 국회 문턱이 높은 상황.
- 선거과정에서도 장애인은 선거 정보 취득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상황.

■ 목표

- 비례대표 10% 장애인 할당
- 지역구 출마자 10% 장애인 할당
- 투표소 설치 등에 장애인 의견수렴 의무화
-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선거방송 수화자막
- 투표보조용구 등 제공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5. 국민에게 국민투표 부인권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FTA, 4대강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론분열, 정치세력간 극단적 갈등을 야기하는 각종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 국민투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요구됨.
- 최근의 상황처럼 정당과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거나 갈등 사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국민의 뜻을 직접 확인해 국가적 사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과정이 필요.
-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72조는 오직 대통령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헌법이 규정한 국민투표는 이처럼 그 실시 여부는 물론 내용 까지도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라는 자의성까지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속성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대통령-국회 또는 국론분열의 국면에서 대통령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실증하는, 즉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
- 이에 국민투표제를 보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일방의 전횡과 독단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며 국민의 뜻이 정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역대 국민투표 시행 사례

시행일	투표율	찬성률	사유
1962년 12월 17일(월)	85.3%	78.8%	헌법 개정
1969년 10월 17일(금)	77.1%	65.1%	헌법 개정
1972년 11월 21일(화)	91.9%	91.5%	헌법 개정
1975년 2월 12일(수)	79.8%	73.1%	헌법 개정 및 정부 신임
1980년 10월 22일(수)	96.9%	91.6%	헌법 개정
1987년 10월 27일(화)	78.2%	93.1%	법 개정

■ 목표

- 주요 조약의 체결, 파병, 기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해 국민투표 의무화

- 국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
-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의 대상, 요건, 발의주체 등 개선

■ 방법

- 국회 과반이 찬성하거나 국민 10%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헌법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와 국민의 청구에 의해 부의될 수 있도록 하되 부의권은 대통령이 행사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 국민투표 실시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한계는 있으나 정치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국민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투표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6.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폐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상설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당정치의 위기가 확산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치개혁은 특정 세력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범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함.
- 정치권에서는 지난 1992년 제14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 제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기구를 설치, 운영해 왔음.
- 그러나 국회 차원에 설치된 정치개혁 기구,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적 태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나눠먹기식 타협과 담합이 일상화 되어 국민적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음.
- 국회의 역대 정치개혁 관련 위원회

차수	연도	명칭
제14대 국회	1992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제15대 국회	1998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1999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제16대 국회	20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7대 국회	200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7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제18대 국회	2009~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한편 제16대 국회에서는 2003년 11월 13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그리고 제17대 국회에서는 2005년 1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운영된 바 있음.
- 이들 기구는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들을 성원으로 하여 과거와 비교할 때 진일보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라는 위상의 한계와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갖기 때문에 해당 정치개혁안은 대부분 원안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사문화 되거나 기득권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되거나 왜곡되어 수용됨.
- 기득권 집단 스스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목표

- 선거제도, 정당운영, 공천, 정치자금, 선거운동 등 정치 전반의 범국민적 개혁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설치하고 상설화
- 국회의원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차단하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입법안이 수정이나 변형 없이 입법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정치개혁안의 추진 현황, 제도도입 효과, 각계 평가와 개선점 등을 정기적으로 정리,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이 추진되도록 하고 필요시 정당에 대해 개혁과제 이행을 권고, 시정토록 하도록 함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되도록 규정

■ 방법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국회법에 규정.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의결사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국회법 개정

4. 책임정치 실현

공약

1. 선거사범 처벌 강화

⇒ 선거방해는 민주주의 변란행위! 선거사범 공소시효 연장 및 처벌 강화

2. 재보궐선거 원인 정당 책임 부과

⇒ 세금낭비 초래, 유권자에 대한 책임 외면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철폐

3. 권력남용 금지, 대통령 사면권 제한

⇒ 제왕적 대통령의 원칙 없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

1. 선거사범 처벌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11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실 비서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에 의해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 공격, 일명 디도스 공격이 자행되었음.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
-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이유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시장 후보 지지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이러한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 변란행위로 볼 수 있음.
- 또한 선거시기가 되면, 후보자와 후보선거사무소 관계자, 후보 친인척 등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선거가 각종 부정, 불법, 탈법이 동원되고 있음.

■ 목표

-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처벌 강화
- 특히 국민의 핵심적인 권리인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내란음모로 규정하여 강력히 처벌.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2. 재보궐선거 원인 정당 책임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임기 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사퇴하여 선거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음. 자신을 지지한 주민에 대한 정치적 무책임 등이 문제되고 있음.
-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당시 맹형규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였다가 경선에서 떨어지자 다시 자신이 사퇴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 공직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유발하여 국민세금을 낭비. 선출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
- 2010~2011 재보궐선거 비용

연도	선거일	선거 구분	비용
2010	07. 28	국회의원선거 8곳	77억5303만원
	10. 27	기초단체장 2곳 / 광역의원 1곳 / 기초의원 3곳	24억6065만원
2011	04. 27	국회의원선거 3곳 / 광역단체장 1곳(강원) 기초단체장 6곳 / 광역의원 5곳 / 기초의원 23곳	225억7199만원
	10. 26	광역단체장 1곳(서울) / 기초단체장 11곳 광역의원 11곳 / 기초의원 19곳	451억8000만원

- 이렇게 일반 국민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대해 선거관리 비용을 당사자 또는 소속정당이 부담토록 해야 함. 또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이전 선출공직 재출마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부정선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재보궐선거에도 해당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당의 후보를 다시 공천하여 부정선거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정당과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와 정당이 당선된 후의 정치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를 통해 재보궐선거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선거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공천할 때, 후보의 자질, 도덕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전검증을 강화할 수 있고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목표

- 선출된 공직자가 비리 등의 혐의로 현직을 상실한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타선거에 출마를 금지시킴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경우, 재보궐선거에 후보추천을 금지하여 선거비용 발생을 줄이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환수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3. 대통령 사면권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면권은 사법권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후의 기본권보호의 수단으로써 사법제도의 경직성을 교정하고 형의 집행에 있어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 제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면권은 이러한 방향과 달리 국경일이나 대통령 취임일 등에 맞춰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들은 국민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측근이나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자까지도 시혜적으로 사면함으로써 법치질서를 무력화 시켜왔음.
- 역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통령	횟수	대상자
김영삼(1993.3~1998.2)	9	704만명
김대중(1998.3~2003.2)	7	1,038만명
노무현(2003.3~2008.2)	8	437만명
이명박(2008.3~)	5	468만명

-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4개월이 채 안된 2008년 6월 4일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282만명에 대해 민생사면을 실시.
- 당시 정부는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을 배제하고 최초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을 집행하였으며 살인, 성폭행, 부패사범 등을 배제해 법질서 확립과 조화를 도모하였다고 자평함.
-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복권을 포함한 대폭적인 사면을 실시. 나아가 2009년 12월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단독사면을 단행.
-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였던 월튼(J. C. Walton)은 법 적용의 형평성, 사법부의 권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사면을 정치적 목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남용하여 결국 탄핵으로 물러난 바 있음.

- 독일은 지난 60년간 단 4차례의 사면권 행사가 있었을 뿐이고 프랑스는 대통령 사면권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 덴마크는 행정부 각료 및 정치범들에 대한 사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일본 역시 수상의 사면권 신청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
-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적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 법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목표

- 현행 10년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결과 공개를 즉시 공개 전환
- 민간인 5인 이상으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죄, 알선수재죄, 조세포탈죄 등을 사면불가 범죄 규정

■ 방법

- 사면법 개정

통합진보당 2012 총선

국회 공약

1. 일하는 국회
2. 상생의 국회
3. 깨끗한 국회
4. 소통의 국회

연구위원 김장민(ohhangang@gmail.com)

일하는 국회

공약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활성화

⇒ 상임위 중심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실효적인 사후조치 마련

2 예산제도 정비

⇒ 예산안법률주의, 사전예산제, 예결산위원회 상설화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활성화

■ 현황

- 현행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전 정부기관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안 검토시기와 중복됨.
-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야합의의 실패로 국정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으며, 그 활동시한이 짧아 쟁점사항의 경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자료제출 지연과 거부, 증인출석 거부의 경우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없음.
- 관례적으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을 채택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증인채택이 불가능함.

■ 목표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기능을 강화함.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강화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함.

■ 방법

-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30일 이내에서 감사계획을 제출하여 횟수와 시기에 있어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정기국회 전에 종료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
-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조사하기 어려운 사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회 출석, 시정, 징계, 변상, 예산감액 등을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기관장에 대한 출석과 소명 요구 및 해임건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함.
- 자료제출의 거부와 해태 및 기피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수단을 마련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특정 사항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 또는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석비율에 따라 여야별로 증인을 각각 선정하도록 함.
-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국회모욕죄에 벌금형을 신설하고,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의 사유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차별적으로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2. 예산제도 정비

■ 현황

-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정부와 공공기관은 연차보고서를 해마다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회가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과 정책기조, 재정운영방침, 사업우선순위 등 국가의 예산과 결산 및 재정을 예산안심의 전에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제도가 없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기 1년의 상설특위'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상임위원회는 거의 완성된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반적으로 항목조정에 머물고 선심성 예산 책정으로 증액을 남발하고 있음
- 지금까지 결산은 세제잉여금의 적정여부, 불용액의 과다 여부, 재산과 물품의 재고 확인 등에 머물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음.

■ 목표

-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상세한 정책적 예산을 검토하고 예결위는 국가재정 전반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 예를 들면 예결위는 장과 관 및 항의 예산과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의 세항과 세세항 및 목은 상임위원회에서만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사전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중장기 경제전망과 중장기 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먼저 논의한 후, 행정부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안의 골격을 논의함.

■ 방법

- 예산안편성권을 국회에게 귀속시키고, 정부는 제안자로서 역할을 하는 예산안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예산안의결 이후 집행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함.
- 경제와 재정전망, 재정정책의 목표와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예산의 경제에 대한 영향, 경기변동이 재정변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늠할 수 있도록 사전예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검토를 보장함.
- 예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결산위원회 내에 예산안, 결산안, 기금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보장함.
- 현재 결산불승인의 의결은 법적 효과가 없는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므로, 향후 결산은 사업의 평가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도록 함.
- 국회의 시정과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함.

상생의 국회

공약

1. 국회 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 모든 원내정당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일정을 논의

2.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득표율과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배분

1. 국회 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 현황

- 교섭단체가 국회의장과 협의한다는 형식을 빌려 국회운영을 독점, 결정하고 있어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으로 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상황임.
- 이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국회운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국회는 거대정당이 중심이 되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국회운영이 교섭단체 협의로 이뤄지면서 결정 과정이 비밀에 부쳐지고 공식 회의록 등의 기록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투명한 국회운영의 원칙과도 상충되고 있음.
- 의사일정에 관해 독일 연방하원은 집단협의체인 원로평의회(Council of Elders), 프랑스 하원은 의사협의회(Conference des Presidents), 일본은 의원운영위원회에서 주로 결정됨.

■ 목표

- 교섭단체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특혜와 비민주적 운영행태를 시정함.
- 민주적인 타협과 소통의 국회운영 시스템을 마련함.

○ 국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권한을 강화함.

■ 방법

- 교섭단체가 행사하던 국회운영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로 이관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국회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모든 원내정당은 국회운영위원회에 1명의 위원을 배치하도록 함.

2.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현황

- 국고보조금은 ‘선거보조금’, ‘경상보조금’,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등이며,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을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함.
-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이 원내 교섭단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며, 의석수가 득표율에 비례하지 않는 현실에서 추가적으로 의석수를 고려하고 있음.
- 독일은 당비와 후원금 등 연간수입총액을 상한으로, 일본은 전년도 수입액의 2/3금액을 상한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도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연동하고 있음.

■ 목표

- 국고보조금을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당비와 후원금에 연동함.
- 이러한 방식으로 당비와 후원금의 증대를 통한 정당의 재정독립성과 진성당원제도의 강화를 유도함.

■ 방법

- 국고보조금의 50%를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도록 각 정당이 직전 전국 선거에서 얻은 정당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전체 수입 중 소액당비와 소액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급하는 매칭펀드제도를 도입함.
- 관련하여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복원하여 소액후원금 제도를 활성화시킴.
- 정책연구소는 정당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서 정책개발과 연구,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연구소 기능이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정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함.
- 여성추천보조금의 50%는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수 총수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 수의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당별 추천 후보자 수에 대한 여성후보자 수의 비율로 지급함.

깨끗한 국회

공약

1. 국민소환제 실시

⇒ 우선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을 실시하고 소환의 대상을 점차 확대

2. 국회의원 겸직 금지 강화

⇒ 국무위원의 겸직을 금하고, 이해관계사안에 대한 제척과 회피 제도 마련

3. 국회의원 재산공개 강화

⇒ 재산등록기관을 표준화하고, 변동사항을 연중에도 인터넷 등에서 공개

1. 국민소환제 실시

■ 현황

- 일부 헌법학자는 헌법이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민주주의는 명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의원 선출권만을 부여하고 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해임권은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헌법 개정 없이 관련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국민소환이 가능함.
-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2007헌마843 등)에서 주민소환제도 자체의 합헌성을 전제로 하여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기간을 제한한 것, 서명요청 활동, 발의요건,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확정요건 등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함.

■ 목표

- 국민소환의 대상자는 국회의원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선출직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친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국무총리 등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고위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함.
- 대통령제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은 지방자치 차원에서만 국민소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만과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운용함.
-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은 설사 헌정불안의 우려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 국민주권론에 따라 가능함.

■ 방법

- 국민소환의 사유를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국민소환의 효과는 해임에 그치고 탄핵과 달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므로 국민소환의 발의 과정에서 그 사유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소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부당, 직권남용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열어 놓을 필요가 있음.
- 국민소환은 그 효력이 해임에 그쳐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과 달리 사법절차가 아니므로 국민소환의 결과 제한되는 공직담임권의 범위를 해당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소환은 주권자의 결정이므로, 대의기관에 불과한 대통령의 사면을 허용해서는 안 됨.
- 발의요건, 서명기간, 소환절차의 개시와 권한정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소환을 고려하여 국민투표법으로 정함.

2. 국회의원 겸직 금지 강화

■ 현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0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의원은 무려 17개의 겸직을 하고 있었고 9곳, 8곳 등의 겸직을 하는 사례도 여럿 나타남.
- 우리나라는 원래 의원이 원내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겸직을 금지해 왔으나, 1981년부터 각 분야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을 제외하고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

〈겸직 금지 강화 유형〉

겸직 유형	사 례
이해관계 분야 겸직	- 법사위 소속 위원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다수 차지 - 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임위 관련 기업 주식 보유 또는 거래 - 변호사 의원이 기업 관련 겸직 활동으로 고문료 수수
불평등 겸직	- 사립학교 소유자나 언론사 사주는 의원직 겸직 가능하나 교원이나 언론노동자는 정치참여 자체를 금지
3권 분립 위배 겸직	- 국회의원이 장관, 국무총리 등에 취임

- 미국은 상하원 모두 임기 중 다른 공직의 겸직을 금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장관 겸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 브라질과 코스타리카도 장관직 겸직을 금지함.
- 의장이 겸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하더라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국회법 개정(1988.6.15) 전에는 징계사유가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다만 윤리심사의 대상이 될 뿐임.
- 이해관계인의 특정 상임위원회 선임 제한 사유인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가 모호하여 수정해야 함.

■ 목표

- 이해관계 분야 겸직, 불평등 겸직, 3권분립 원칙 위배 겸직 등의 문제를 해결함.
- 사적 이익의 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방법

- 의원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행정부 직의 겸직을 금지함.
- 겸직금지 대상에 ‘사적이해 추구’ 외에도 ‘의정활동 불성실 초래’를 추가하고 겸직이 아니더라도 제척사유 발생 시 상임위 참여를 제한함.(이해회피 규정)
- 교원, 언론노동자 등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겸직금지조항을 폐지함.
- 겸직신고를 의무화하고 그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규정함.

3. 국회의원 재산 공개 강화

■ 현황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1년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2명의 의원 가운데 219명(75%)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목록과 그 가액만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의 신고도 “변동된 내역만”을 1년에 한 번 신고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는 3년간 유예도 가능해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계존비속은 당사자와 혈연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재산증식과 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큼.
- 재산 등록기관이 제각각 흩어져 있고 공개방식도 관보나 공보에 그치고 있음.

■ 목표

- 공직자 재산공개,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함.
-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통합 관리하고 이에 대한 공개의 효율성을 강화함.
-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재산공개의 내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방법

-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 대법원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기관을 표준화함.
- 재산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선관위에 불성실한 재산공개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여 심각한 재산은닉의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처벌 규정을 둠.
- 비공개에 대한 요건과 조사를 강화하고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함.
-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함.

소통의 국회

공약

1. 직권상정 폐지

⇒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거친 경우 전체 의결로 본회에 상정

2.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 법률안 조정제도 중에 발언의 횟수, 시간을 제한하지 않되 3/4 의결로 조정을 종료

1. 직권상정 폐지

■ 현황

-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심사기간 내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음.
- 다수당 소속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통해 예산과 법안에 대한 날치기 통과에 협조하고 있어 해마다 여야 충돌의 빌미가 되고 있음.
- 다수당 의원들까지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론화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인정하지 않음.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장 스스로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의장의 중립적인 국회운영과 권위의 측면에서도 부적절함.

■ 목표

-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날치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함.
- 직권상정폐지와 의장의 중립성 강화, 위원회심사 배제요청, 쟁점법안조정협의, 필리버스터 도입, 전원위원회 활성화 등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그 일부를 추진함.
- 직권상정 제도를 폐지하며 국가비상사태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상임위의 심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방법

- 미국의 경우 전체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심사배제요청제도(discharge petition)를 운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회부 받은 뒤 최소한의 심의를 거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의원 발의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함.

2.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 현황

-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안전과 법안의 의결 등을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 유회(流會), 산회(散會)의 동의, 다수의 수정안 제출, 불신임안 제출, 투표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합법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임.
- 우보전술(牛步戰術)이라고 불리며, 주로 다수당의 독주를 막으려는 소수당에 의해 사용됨.
- 폭력 국회를 막기 위해서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서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다양한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현재 국회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고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함.
- 반면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은 동일 주제에 대해 2회와 15분으로 제한됨.
- 발언시간 제한이 없었던 제6대 국회에서 당시 김대중 의원이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한 이후 연설 횟수와 시간이 제한됨.

■ 목표

- 쟁점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고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도록 함.
- 쟁점법안의 날치기를 최대한 늦추되 소수당의 극단적인 회의방해도 예방함.

■ 방법

-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제시된 법률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각 재석의원 10분의 1 이상이 법률안의 내용조정을 위한 협상(이하 ‘법률안 조정’이라 함)을 요구한 경우에는 표결 이전에 반드시 ‘법률안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 법률안조정에 충분한 협상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고 이때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발언횟수와 발언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
- 법률안 조정의 절차는 위원회와 본회에서 정당 1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한 조정절차의 합의에 의해 조정안이 채택되거나, 각 재석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절차의 종료로 의결한 때에는 종료되도록 하되, 각 정당에서 최소한 1회의 발언을 완료하기 전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없도록 함.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사법·인권 공약

1. 법원/변호사개혁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법관의 독립성 강화/노동법원의 도입/로스쿨 정원 자율화 및 변호사보수 상한선 설정/형사 및 가사사건 성공보수 약정금지/변호사의 공직영역 확대

2. 검찰개혁

중수부 폐지 및 고비처 신설/법무부 탈검찰화/시민배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개선

3. 사정·공안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검찰의 공안부 폐지/국가정보원 개혁/감사원 개혁과 독립성 확보

4. 집회시위/통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보장/불법감청 근절, 감청에 대한 통제강화/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전자주민증 도입계획 철회

5. 반인륜·반인권의 과거사 청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과거사재단 설립/국가차원의 배상조치 법제화/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연구위원 조성복(cho_sungbok@naver.com)

1. 검찰개혁

공약

1.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인 대검 중수부 폐지와 그 대안으로 고비처 신설

2. 법무부 탈검찰화

⇒ 법무부의 주요직책을 검찰이 독점하는 관행을 폐지

3. 시민배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개선

⇒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완화하고 검찰 불기소처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1.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현황/문제점

- 스폰서 검사사건, 그랜저 검사사건 등 검찰의 내부비리에 대해 자정시스템 부재
-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명하는 사건을 수사하므로 초기단계부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
-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해야 할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에 장악되어 있고, 정부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
- 우리 검찰처럼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독점한 경우는 없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차원에서 점에서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기능의 폐지는 의미가 있음.
- 부정부패의 추방을 위해 정경유착이 받을 붙이지 못하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 같은 전문적 수사기관이 필요
- 특수수사를 검찰과 고비처가 경쟁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상호견제를 유도하고 권력층에

대한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

■ 목표

-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여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하고 이를 대처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
-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을 감시
- 고비처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상/조직상의 독립을 보장(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예산 및 규칙제정권 등 독립성 보장)

■ 방법

- 일부 고비처 대신 상설특검제 또는 특임검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를 봉쇄하고 반드시 고비처 신설을 관철
- 대검 중수부가 대통령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 폐지여부는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정부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일차적으로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가능함.

2. 법무부 탈검찰화

■ 현황/문제점

-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민주주의의 후퇴는 왜곡된 법치주의의 활용과 남용이 그 배경이 되고 있으며, 검찰권은 남용되고 사법부와 현재는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음.
- 교정본부는 그 숫자가 검찰청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청으로 분리되지 않은 반면,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분리된 외청 형태이며, 동시에 법무부 내에 검찰국이 있어 이를 통해 검찰조직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
- 전통적으로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출신으로 채워지고 법무부 내 각 실국의 수장들까지 검사장으로 채워짐으로써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부’화 해왔음.
- * YS이후 2009년 6월까지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조실장을 거친 사람은 총 102명이며, 이 중 검찰출신이 99명(참여연대 통계)
- 법무부의 주요직책을 검찰이 독점함에 따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견제 및 통제기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 목표

- 법무행정과 검찰사무의 분리를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실현
-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법집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적으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함.

■ 방법

- 검찰과 기능이 중복되는 법무부 검찰국의 폐지 내지 그 규모와 역할을 대폭 축소(검찰국장의 업무내용은 대검 기조부, 중수부 등의 분담사무와 중복)하는 반면, 교정, 인권 등의 영역은 기능과 역할을 양적, 질적으로 보완
- 법무부의 실, 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과 검사로 임명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내부 임용 또는 외부 개방을 통해 전문가를 영입하는 제도 도입

3. 시민배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개선

■ 현황/문제점

-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에게 공소제기에 대한 재량(기소 및 불기소)까지 부여하는 것은 검사의 독선 또는 자의를 허용하는 결과
- 기소재량권에 따른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기소 못지않은 큰 권한으로 인식
-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대상을 고발사건인 경우 형법 123, 125, 126조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됨에도 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처분된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

■ 목표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배심제를 도입
-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
- 검찰항고제도의 폐지 또는 임의적 절차로 변경
-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

■ 방법

- 시민배심제에 의해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에 대해서는 기소배심을 통해 기소가 가능하도록, 검사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기소배심을 통해 기소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함.
-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현행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함.
- 현행법은 재정신청 전 검찰항고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상명하복의 검찰조직 특성상 검찰 스스로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고발)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고소(고발)인이 즉시 사법절차를 이용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검찰항고제도를 폐지하거나 임의적 절차로 변경해야 함.

* 검찰항고제도는 고소인에게 재정신청전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검사에게 자체시정의 기회를 갖게 하여 재정신청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신청납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나 실효성이 작은 상황임.

-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거나 구형을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등 그 폐해가 극심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함.

2. 법원/변호사 개혁

공약

1.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개선하고 활동을 공개화

2. 법관의 독립성 강화

⇒ 사법행정의 분권화 및 사법행정에 대한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3. 노동법원의 도입

⇒ 노동문제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민법상 계약문제로 보는 경향에 제동을 걸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

4. 변호사보수 상한선 설정

⇒ 수임료 제한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5. 형사사건 및 가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

⇒ 형사사건의 불공정한 계약 조장을 예방, 가사분쟁의 지속 및 가정의 해체 등 예방

6. 변호사의 공적 영역 확대

⇒ 법률서비스 소외 국민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

1.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 현황/문제점

- 종래의 기수·서열·남성·고위법관 중심의 인선기준에서 벗어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절실한 상황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후보 추천 등이 모두 폐쇄적으로 운영
- 추천위 추천위원에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 내 인사 3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대법관 추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목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개선하고 활동을 공개화

■ 방법

- 추천위 구성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제한
- 시민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의 비율을 확대
- 대법관 후보 추천의 비공개 규정 폐지

2. 법관의 독립성 강화

■ 현황/문제점

- 현 정부 들어 정부 여당의 이해가 걸려 있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법원 판결들을 놓고 사법부와 해당 판사들에 대해 정부 여당이 중심이 되어 위협을 가하는 상황
- 2009년 2월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위협한 신영철 대법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재판간섭으로 전국판사회의가 연일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음에도 신 대법관은 사퇴는 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음.
- 판사들의 연구모임들에까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어 해체를 촉구하거나, 대법원과 국회 차원에서 연구모임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원심과기율의 인사고과 반영 논의 등 법관의 독립성 훼손
- 최근 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사법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사건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차원의 징계 논란과 SNS 규제 논란으로 법관의 표현의 자유 논란이 발생

■ 목표

- 법관 승진제도 폐지
- 법관의 신분보장 강화 및 퇴직법관 활동 규제강화
- 사법행정의 분권화 및 사법행정에 대한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 방법

-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전국 법관에 대한 임명권과 보직권 등 사법행정권을 고등법원장 등에게 분산하여 사법행정의 분권화 실시
- 향후 법조일원주의로 변호사나 검사로 경력을 지닌 법조인들이 법관이 되는 만큼 이들의 신분보장을 더 강화
- 퇴직법관들이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해충돌 규제와 같은 보다 세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독점적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원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의 참여폭 확대
- 재판공개 확대

3. 노동법원의 도입

■ 현황/문제점

- 노동문제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민법상 계약문제로 쉽게 판단하는 경향에 제동
-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때문에 노동분쟁처리절차의 이원화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
-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판결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전문성을 갖는 비직업법관의 참여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참여형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필요

■ 목표

-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 도입
- 노동법원 도입 관련 제1심뿐만 아니라 제2심(상소심)까지 도입하는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

■ 방법

- 노동위원회제도의 폐지 또는 임의화를 전제로 검토
- 비용과 대비 및 소송절차상의 특례를 인정
- 재판절차에서 경제적으로 대등한 당사자들이 아니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받을 자력이 부족하며, 분쟁이 근로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칙을 마련

* 노사단체 실무자의 소송대리 허용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제도

조정요의 필요적 회부

구술제소의 허용

노동민사사건의 인지대 감액(1/5)

답변서 제출기한의 단축

직권증거조사의 강화

행정소송에서 사업장, 노사단체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인정,

노동행정사건 중 당사자소송에서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가집행 인정 등

- 노동자측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원의 경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동법원의 설치, 관리 및 업무감독에 대하여 노사단체의 관여를 보장

4. 로스쿨 정원 자율화 및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 설정

■ 현황/문제점

- 정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법조 기득권 보호수단으로 법조인력이 되기 위한 기회를 박탈하는 과도한 진입장벽임.
- 전관출신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는 전관예우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이고, 법률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건 수임질서를 문란하게 함.
- 수임료 제한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음으로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의 정도와 수단이 적절하며, 변호사의 영업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며, 또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도 반하지 않음.

■ 목표

- 로스쿨 정원 자율화
-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 설정
- 대형 로펌의 고위공직자 영입 제한
- 변호사 단체 복수화

■ 방법

- 로스쿨 정원의 자율성 보장(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국민1인당 변호사 수가 최저임. 미국의 1/50이며 독일·프랑스의 1/10 수준)
- 대한변협, 민변 등 관련단체들과 협의하여 적정 수임료 설정
- 대형 로펌의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신설
- 변호사의 대한변협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여, 변호사 단체 다양화 유도

5. 형사사건 및 가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

■ 현황/문제점

- ‘실체적 진실발견 및 사법적 정의’가 더 중요한 보호가치인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인정할 경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위해 사법적 정의를 해치는 형사사건의 해결(예: 뇌물공여, 청탁, 밀실 담합 등을 통한 사건해결)을 꾀할 우려가 존재
- 미국 등 외국에서도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전관예우의 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긴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과도한 성공보수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을 조장할 우려도 있음.
- 가사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사건과 달리 ‘가정의 유지, 평화’가 더 중요한 보호가치이고, 가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인정할 경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가사분쟁의 지속과 가정의 해체 등을 꾀할 우려가 있음.

■ 목표

- 형사/가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

■ 방법

- 입법을 통한 성공보수 약정 금지

6. 변호사의 공적 영역 확대

■ 현황/문제점

- 로스쿨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서비스 소외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변호사의 공적영역 확대 필요

■ 목표

- 무변촌에 대한 지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 정부기관, 국회 및 지자체의 법무담당관제 도입확대
- 준법지원인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방법

- 로스쿨·지자체·변호사회 등에서 공동으로 공익사무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 공익사무소를 통해 법률임상교육(리걸클리닉 legal clinic)을 실시
- 수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변호청’을 설치·운영
-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적용대상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도록 기준 마련(최근 정부가 상장법인 중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도록 적용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 * 준법지원인 제도: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여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기존 ‘준법감시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업무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의 문제 등을 다소 보완하였고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 실시하기로 함. (2011.5.11상법개정안 통과로 2012.4.15부터 시행 예정)
-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임원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3. 사정 · 공안기구의 민주적 통제

공약

1.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

⇒ 경찰장비의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경찰위원회제도를 재설계, 자치경찰 제의 도입 검토

2. 검찰의 공안부 폐지

⇒ 검찰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안의 개념을 축소하여 공안부가 사회의 자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역할 방지

3. 국가정보원 개혁

⇒ 국가정보원 수사권의 폐지, 국내정보 수집권한 제한, 기획조정권한 폐지, 예산 및 정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4. 감사원 개혁과 독립성 확보

⇒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및 임명방식 개선, 감사원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1.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

■ 현황/문제점

- 불심검문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제시요구나 차량검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수사에 전력해야 하는데, 집회 또는 노동쟁의 현장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에 수시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어 왔음.
- 촛불집회에서의 경찰력 남용, 용산철거민의 투쟁진압과정의 공권력에 의한 살인과 폭력, 평택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에서의 경찰폭력, 한미 FTA집회에서 한겨울에 물대포 살

수행위 등 공권력 남용 지속

- 특히 쌍용차 파업기간 동안 경찰이 자행한 단전단수, 음식물/의약품 반입 차단, 소화전 차단, 최루액 투하, 테이저건 발사, 다목적발사기 사용 등 비인도적이고 위험한 조치들이 집행
- ‘조폭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식의 조현오 경찰청장의 반인권적 발언, 도주자에 발포가 가능하도록 총기사용매뉴얼을 만들려는 시도 등 경찰력 운용과정에서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
- 2010년 6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행위에 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의 인권의식은 후퇴하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무시하고 특정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적 수사기법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

■ 목표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703호)의 입법 필요
- 인권보호준칙의 법정화, 벌칙규정의 세분화 및 강화 필요
- 자치경찰제 검토 후 도입
- 경찰위원회 제도의 재설계
- 경찰관 선발/교육/직무집행에서 인권 감수성 강화

■ 방법

- 불심검문시 소지품조사의 요건을 강화하고, 그 동안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던 신분증 제시 요구나 차량검문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거부권 조항을 같이 두도록 함.
- 사진촬영, 접견, 서신, 전화통화, 종교, 운동, 의료 등 유치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전반을 규정하는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형집행법에서 그 내용을 담더라도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항목으로 규정해야 하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경찰장비(특히 위해성 장비)의 종류, 재원, 사용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정화하고, 위해성

장비 등 경찰장비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 공청회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하며, 사용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찰장비의 범위를 확대함.

- 우선적으로 치안과 교통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 도입하여 지방자치의 실효성 확보하고 경찰권한의 이원화를 통해 민주적 경찰행정을 구현

- 경찰권한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 제도를 재설계

*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설치되었으나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의 권한은 경찰청장에게 집중되어 있음.

- 경찰관 채용과정에서 역사, 헌법(기본권)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평가해 선발하고, 교육과정에서도 무조건 상부지시에만 순응하는 상명하복의 경찰관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경찰관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인권존중 조항을 신설해야 함.

2. 검찰의 공안부 폐지

■ 현황/문제점

- 공안의 교과서적인 정의는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의 안전,’ 형법상 공안을 해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구성죄, 소요죄, 다중 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이나, 우리나라 검찰은 반정부 활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을 포함
-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이면서 준사법적 기관이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검찰 공안부는 인권 옹호기관이나 준사법적 기관이라기보다는 정권유지기관으로서 기능

* 검찰의 공안부서

- 대검공안부는 공안 1과(대공, 선거, 남북교류협력사건), 2과(노동, 학원), 3과(사회, 종교, 정치 단체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사건), 공안기획관(공안업무의 기획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공안부장을 보좌)으로 구성

* 특기할 점은 참여정부는 공안 3과를 폐지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공안 3과를 부활하고 업무영역을 분할

- 대검차장 보좌를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산하에 범죄정보 제1, 2 담당관 배치, 범죄정보 제2 담당관의 업무 -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선거, 노동관련 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학원, 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 공안 1, 2부를 두고 역시 공안, 선거, 노동관계 사건을 담당하게 함

- 각 지검 2차장 산하에 공안부를 두어 공안사건 담당

*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에서 공안사건의 전반적인 사항 관할

- 공안사건이라는 개념이 계속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들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 법원칙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식을 조장하고 있고, 반인권적 처사에 대해서도 공안이라는 이름 때문에 비판적 접근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목표

- 기존 검찰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안의 개념을 축소하여 공안부로 하여금 사회의 자

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함.

- 공안사건에서 학원, 노동, 사회단체, 종교단체, 선거관련 사건 제외
- 검찰조직과 관련 중립성과 수사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안부 폐지

■ 방법

- 공안부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범죄를 기준으로 전담부서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또 현실적으로 폐지가 힘들다면 원칙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안 추진
- 집단행동 발발의 경우에 대비하여 공안부를 존속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므로 항구적 조직으로서 공안부를 둘 필요는 없고 한시적인 대응조직을 설치

3. 국가정보원 개혁

■ 현황/문제점

- 국정원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만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고,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경에 지원함.
- 1994년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 중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삭제하였으나, 1996년 다시 국가보안법에 관한 수사권은 종전대로 돌아갔음.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는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음.
- 국내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직접적 근거가 되어왔으며 불법도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음.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바탕으로 일반 행정부의 상급감독기관처럼 군림하고 있음.

■ 목표

- 국가정보원 수사권의 폐지
- 국내정보 수집권한 제한, 기획조정권한 폐지
- 예산 및 정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민간단체의 암호에 대한 국정원 인증제도 폐지

■ 방법

-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할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의 수사

권을 폐지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변화시켜야 함.

- 국정원을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대북정보 등과 관련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하도록 조치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폐지, 다른 국가기관에 이양하도록 조치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에 대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총액으로 계상하게 하여 국정원 예산의 국회심의를 배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을 폐지하고, 일반 부처와 같은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도록 함.
-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좌기구를 신설해야 함.
-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자체적인 회계검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또는 감사원이 국정원 예산에 대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토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하고, 정보감독위원회와 같이 민간 참여에 의한 국정원 통제도 병행함.

4. 감사원 개혁과 독립성 확보

■ 현황/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는데도 압력을 가해 사퇴시킴.
-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적감사 시비, 감사원장의 청와대 수시 보고 논란, 권력형 비리로 주목받았던 코디마 감사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4대강사업 등 국민감사청구의 기각 및 발표지연 등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 코디마사건: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통신사 3곳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 기금출연을 중용한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호지부지 된 사건

-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감사위원 재직당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감사방해 및 퇴출저지 로비를 벌이다 구속
- 감사원장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위원의 정치적 독립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
-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형식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으로부터는 기능상 독립된 형태이나,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목표

-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보장 및 임명방식 개선
- 감사원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감사원 고위 퇴직자의 이해관계기관 취업제한

■ 방법

-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보장 · 측근배제 등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위원 임명시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등 독립성 확보방안 도입
- 현재 감사원이 담당하고 있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중 직무감찰 기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기능과 통합해 분리하고, 회계검사 기능은 장기적으로 국회 소속의 독립기구화 유도
-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 일반적인 퇴직 후 취업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사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감사원법에 감사원 고위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명시하고, 감사원 퇴직 공직자가 피감대상 기관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

4. 집회시위/통신의 자유

공약

1.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 집회 사전신고제 폐지 또는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폐지

2. 불법감청 근절, 감청에 대한 통제강화

⇒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패킷감청 금지

3.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 방송통신심의위 통신심의권 폐지,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 최소화

4.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 명예훼손죄/모욕죄가 정치인 또는 공무원, 기업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전에 봉쇄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폐지

5. 전자주민증 도입계획 철회

⇒ 전자주민증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우려 높은 행정편의적 방안으로 그 폐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도입 저지

1.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 현황/문제점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사전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에 따른 금지통고가 가능하고,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과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
- 동일장소에 대하여 다수의 집회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후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통고를 하고 있어 적법한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집회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신고한 집회의 위험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경찰이 부담해야 하나, 사전신고제는 이를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지우고 있으며, 신고된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절차적 제도가 없음.
- 사전신고제가 부과하고 있는 신고의무는 협력의무에 불과함에도 이의 불이행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침해임.
- 집회에 대한 금지나 해산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에도 단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무조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고 불응시 해산명령불응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임.
- 절대적 집회금지규정(제5조)의 불명확성, 중복집회시 나중에 신고된 집회는 무조건 금지통고, 과도한 신고사항, 과도한 재량권, 과도한 집회시위 금지장소 규정 등의 문제가 존재

■ 목표

- 집시법의 전면 개정

■ 방법

- 집회 사전신고제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과 유사한 것으로 헌법 제21조에서 금지되는 허가제에 해당하므로 폐지
- 집회의 보호범위를 적법한 집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로 확대하여 폭력집회가 아닌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보장
- 신고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상의 협조의무에 그쳐야 하며, 다양한 사유를 근거로 한 금지통고, 미신고집회의 해산명령, 단순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폐지

2. 불법감청 근절, 감청에 대한 통제강화

■ 현황/문제점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의 감청(통신제한조치)허용 대상범죄는 280여 개에 달하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국정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음.
- OECD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하게 감청이 허용되는 예는 거의 없음.
 - * 미국·독일은 감청허용을 10~20개의 범죄로 제한,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 허용, 일본은 총기/약물/밀입국/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에 대해서만 감청 허용,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
-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을 허용하고 있고, 감청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허가서 한 장으로 2개월+2개월(연장)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감청이 가능
- 현재 36시간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감청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임.
-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하는데, 현행 통비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6~12개월 통신사실자료를 보관해야 함. 이는 수사기관 등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오남용 소지가 높으며,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년 1백만 건에 육박하고 있음.
- 통비법 제15조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관련기관에게는 감청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패킷감청은 감청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를 감청하는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감청이 진행되고 있음.
- 패킷 감청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상자와 대상 통신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통비법이 허용하는 감청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감청임.
- 현재의 기술로는 꼭 범죄와 관련한 대상자만 패킷감청을 하기가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해

마다 국정원 등에서 패킷감청, 특히 최근에는 지메일 감청이 광범위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 증거로 가치를 갖기 어려운데도 회선감청을 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체포와 증거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실제로 회선감청의 대부분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이뤄지고 있음)

■ 목표

-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국회 통제방안 마련
- 패킷감청의 금지

■ 방법

- 통신제한조치(감청)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감청허용 대상범죄를 축소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감청제도 폐지
- 현행 2개월로 지나치게 긴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단축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메일 등)의 압수·수색·검증을 감청에 준하여 규제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관련 직원의 입회, 녹음, 녹음된 기록의 봉인, 이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권 등을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도 통비법의 규율대상으로 포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상세히 제출 의무화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통비법 제15조를 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요구권과 관련기관에 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통해 무분별하게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지나친 패킷감청은 원천적으로 금지(패킷감청은 회선을 오가는 모든 신호를 감청하는 것으로 감청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갖기 어려움)

3.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현황/문제점

-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 기준으로 77.8%,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도 2,000만 명 초과
- 우리나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각종 규제와 행정 심의 등에 의해 제한받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크게 후퇴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통을 규제하거나 게시자를 형사 처벌하는 문제가 심각하며,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으로 기소되는 네티즌들이 크게 증가
-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다른 견해의 인터넷 게시물을 행정 심의를 통해 삭제, 접속차단, 계정해지 등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유통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음.
- 2008. 5.16. 설립이후 2010.12.31.까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건수는 총 99,693건으로 매월 약 3,115건이고 이 중 방통심의위에 의해 시정요구가 의결된 건수는 매월 약 2,304건임.
- 최근 방통심의위는 SNS, 모바일앱 등 뉴미디어심의전담팀까지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SNS상 유통되는 정보까지 심의하기 시작하여 이용자들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상황
- 국가에 의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정보통신망법 제44조5), 법원의 통제 없이 게시물을 올린 이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공권력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
-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 최장 30일간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2) 역시 게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며, 재 게시절차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조치가 부당했더라도 게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가 어려움.

■ 목표

-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권 폐지
-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 방법

- 행정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권 폐지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명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규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공적사안에 대한 표현물의 경우 처벌금지
- 국가에 의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폐지 및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4 폐지
- 임시조치제도 개선

4.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 현황/문제점

- 현행 형법상 허위의 사실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음.
- 명예훼손죄가 정치인 또는 공무원, 기업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들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상 게시물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사례들이 다수 등장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상의 후보자 비방죄 등 명예훼손과 관련한 규제가 다수 존재
- 명예훼손죄는 진실하고 공익성이 입증되면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하지만, 모욕죄는 모욕감이라는 것이 주관적 감정이라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여부를 판단하기가 난처한 측면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받게 되는 고통은 더욱 크게 됨.
- 또한 모욕죄와 관련 자신의 의사나 사상적 표현이 아니라 단순히 해학을 동반하는 감정적 표현으로 인해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기검열 강화 효과가 더욱 큼.

■ 목표

-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 폐지
- 국가/공직자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 제한

■ 방법

-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최소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즉시 폐지
-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더욱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폐지
- 명예훼손 소송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부정책을 수행한 공직자의 경우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제한이 필요,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 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도록 함.
- 또한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함.(이때 공직자 등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것임)
-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표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일정한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아닌 한 공무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

5. 전자주민증 도입계획 철회

■ 현황/문제점

-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근원적 보호”를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전자주민증 도입은 도리어 개인정보유출우려를 높일 수 있는 행정편의적 방안임.
- 현행법상 가장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수록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가 전자적으로 변경될 경우, 각 행정기관은 전자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유하고, 신원확인 기타 민원 절차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될 것임.
-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무한 공유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누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 명백함.

* 2017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

-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에 추가 수록할 사항으로 4개 항목(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것이면 얼마든지 추가 수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주민등록증에 추가 수록할 개인 정보의 항목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헌법 제75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수집(기본권 제한)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임.

■ 목표

- 전자주민증 도입계획 철회

■ 방법

- 행정편의상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전자주민증에 대하여 그 폐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도입을 막아야 함.

5. 반인륜 · 반인권의 과거사 청산

공약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의 재조사를 위한 근거마련

2. 과거사재단 설립

⇒ 추모, 위령사업과 피해자 치료사업 수행

3. 국가차원의 배상조치 법제화

⇒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사건,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집행

4.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고귀속사업 복원, 강제동원 피해자 복지재단 설립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 현황/문제점

△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청기간(2005년 12월~2006년 11월)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사건이 대다수(민간인희생사건 피해자 50~100만 가운데 불과 약 8천 건 신청)

- 민간인희생사건의 경우 '연좌제 피해'와 '집단희생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여전한 것이 현실
-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는 시·군 단위로 볼 경우, 고양시와 강화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1건~5건을 넘지 못하며, 대량 피해가 확인됨에도 신청사건이 1건도 없는 곳(예: 안성, 이천 등)도 있음.
- 진실규명된 사건의 경우도 같은 지역 내에서 신청 시기를 놓친 유족이 많음. 충북 괴산군 불정면의 경우 희생자가 70명이 넘지만 신청한 주민은 10명으로 60여 명의 유족이 추가조사를 기다리고 있음.(유족 윤관로 증언) 전남 보성, 함평, 해남의 경우도 신청하지 못한 많은 유족이 있음.

-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반공법/국방경비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2만 건이 넘으나, 진실위원회에 접수된 768건 중 238건이 진실규명결정, 41건이 불능, 373건이 각하 처리 되었으며, 확정판결 사건 중 재심권고를 받은 사건은 73건에 불과함.(진실화해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참조)

진실규명범위	계	처리건수					
		진실규명	진실규명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중지
총계 (%)	11,175 (100.0)	8,450 (75.6)	528 (4.7)	1,729 (15.5)	351 (3.1)	97 (0.9)	20 (0.2)
항일독립운동	274	20	23	221	10		
해외동포사	16	5		8	1		2
적대세력관련	1,774	1,445	10	292	22	1	4
민간인집단희생	8,206	6,742	454	764	242	4	
인권 침해	768	238	41	373	73	29	14
기타	137			71	3	63	

※진실화해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2005-2010)

△ 민간인희생사건의 경우, 미군폭격사건, ‘비상조치령’ 등 위헌적 법률에 의한 재난을 통한 희생사건 등 각하, 미군폭격사건 자료 및 조사미비로 인해 각하 또는 불능 결정된 사건이 많음.

-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8,206건 중 불능 454건, 각하 764건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이하 기본법)에 따르면 조사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고 줄속으로 처리함.

- 2009년~2010년 6월 처리된 사건이 7,148건으로 전체 11,175건의 64%임.

■ 목표

- 국가차원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과거청산 대책 수립
-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 국가기관의 성찰과 반성을 통한 신뢰 회복

■ 방법

- 국가차원의 확고한 과거청산 의지 천명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과거청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실행 방안 마련
- 완전한 과거청산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국가 조사기구를 재설립하고 이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

2. 과거사재단 설립

■ 현황/문제점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당시 전국 168개소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하여 39개소를 우선 발굴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 중 13개 매장추정지를 발굴한 결과 1,617구의 유해와 5,600여점의 유품을 발굴

- 유해발굴은 일부 유골만 수습된 채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고, 발굴된 유해는 충북대학교 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되어 있는 실정(2016년 7월까지 안치 계약)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안치되어 있던 유해는 경기도 고양시 청아공원으로 안치
- 진실화해위원회의 용역 조사 결과 전국 66개소에서 유해 발굴이 가능
- 진실규명된 사건들도 위령탑이나 추모역사관 건립이 미뤄져있고, 유해 안치시설이나 추모공원 건립도 요원한 상태이다. 유족 스스로 발굴한 경기도 고양의 경우, 유골을 영구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충돌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임시로 청아공원에 보관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진실화해위원회, 2009.10.7.)

△ 위령제 또는 추모제에 대한 지원은 각 지자체의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실정

- 국가 차원의 사과도 없고,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 무시
- 청원 옥녀봉 국민보도연맹사건처럼,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사건은 지자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위령사업 추진 불가능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이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연구·조사 사업이 없음

-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불이행

△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진실화해위원회, 2009.8.21)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은 화해와 기록·기념사업, 조사연구 사업, 발굴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사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출(2011.6.24. 장세환 의원 등 11명 발의)

- 연구, 유해 발굴, 위령사업 수행, 진실규명 불능결정사건 추가 조사 업무
- 재단 조사결과의 신뢰도 문제는 제고

△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가혹행위로 인한 고문피해자 등 정신적, 육체적 치료 필요

■ 목표

- 국가책임 인정과 후속조치 마련
-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및 위령사업
- 연구·조사·교육·출판 등 사업을 통해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구조 규명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대책수립

■ 방법

-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제한 없는 피해신고와 조사, 법적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 병행
-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시효 배제
- 불법구금, 가혹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재심 확대
- 국가의 사과와 반성, 인권의식 제고와 공권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 제도화
-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민간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
- 입수, 생산된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기타 기념 및 추모사업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 등에 대한 계획수립
- 발굴된 유해의 영구적 안치와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평화공원 조성
-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치료센터 설립
- 인권교육과 교과서 수록, 권고처리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

3. 국가차원의 배상조치 법제화

■ 현황/문제점

- △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원상회복 조치
 -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6.30) 이후 소송 증가 추세
 - 소송비용이 없는 유족의 경우, 국가배상 민사소송 제기의 어려움
 - 보·배상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유족은 소송 외 다른 수단과 방법 전무
-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특별법’ 제정을 대통령과 국회에 건의(2009.8.21. 진실화해위원회)
-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2011.11.17. 이낙연 의원 등 16명 발의)
 - 국무총리 산하와 각 시도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출(2010.12.14. 이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2011.7.4. 조정태 의원 등 20인 발의)
 - 두 법안 모두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보상 지원
- △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출(2010.2.26. 허원제 의원 등 22인 발의)
 - 1980년 신군부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 배상조치

■ 목표

-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보상 및 배상
- 전쟁전후 민간인학살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 각종 위법한 인권침해, 범죄조작 의혹사건 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 방법

-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배상
- 남북어부, 재일동포, 긴급조치, 부마항쟁, 언론인해직 등 시기와 성격 등이 같은 사건들의 경우, 특별법을 통한 일괄 보상 및 배상 조치

4. 친일, 강제동원 등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 현황/문제점

- 과거사청산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 방법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사업의 복원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2005.12.29)에 근거한 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조사하지 못한 사안이 남아 있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국고 귀속문제는 실태파악이 시급
- 법무부 차원에서 계속 조사하여 국고귀속을 할 수 있는 상설반을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물론 일본인 명의의 재산도 국고로 귀속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지원법의 개정

- 현재 6개월 단위로 조사기간 연장하여 진상규명의 연속성이 없고, 진상규명 신청 마감도 2012년 6월에 마감되어 활동 종료단계
- 그동안 피해 실태의 1/10도 진상규명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가 필요

△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복지재단 설립

- 한일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중 일부는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재산
- 무상 3억달러 대부분이 중공업 육성과 포항제철(포스코) 건설에 투자.
- 포스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실태
- 노무현 정부 당시 개별 보상은 끝났으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의료와 요양 등이 제공되는 집단적 보상의 방안으로 시설(재단) 설립

△ 재외사할린동포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 사할린동포 관련 법안 처리 및 민족적·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법의 제정 필요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지방자치 공약

1.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2.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3. 기초자치단체의 비리 근절
4. 지방선거제도 혁신

연구위원 김장민(ohhangang@gmail.com)

1.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공약

1. 지방자치 강화

=> 광역유지, 도와 광역시의 통합, 협의회 권한강화 등 중앙정부와 권력을 분담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로의 이양

=>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고유사무를 늘려 분권과 자치 확대

3. 일관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격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없는 이행

1. 지방자치 강화

■ 현황

- 기존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지방자치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계층의 개편 논의로 전환해야 함.
-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및 주민편의성이며, 효율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
- 따라서 광역자치는 중앙과의 관계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고, 기초자치는 가까운 정부로서 주민자치와 주민편의성에 중심을 두어야 함.
- 세계적인 추세도 광역단체는 초광역단체로 발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주민자치와 주민편의성을 강화하고 있음.

■ 목표

- 진보정당은 장기적으로 통일국가의 국가형태와 자치계층을 고려하여 자치계층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함.
- 그 방향은 중앙집중과 수도권집중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광역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시군구의 자율적인 조정을 인정하되, 읍면동을 준 자치기관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편의성과 가까운 정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임.

■ 방법

- 광역단체의 영역을 확대하여 광역행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지향함.
- 국가가 광역단체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광역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하여 자치사무를 확대함.
- 광역단체로 이양되는 국가사무와 관련된 재원을 함께 이양함.
-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전제에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와 지방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로 전환함.
- 기존의 국가의 재정교부금은 그 비율을 높이되 사용한도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권을 주고 추가적으로 광역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여 광역단체 간 재정균형을 추구함.
- 광역단체장협의회와 광역의회의장협의회를 광역단체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여기에 국회에 대한 법률안발의 요구권이나 입법의견 제출권을 부여함.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로의 이양

■ 현황

- 스위스에는 국세청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세의 경우 코뮌정부가 모두 징세하여 자신의 몫을 남기고, 나머지를 칸톤정부에 넘기면, 칸톤정부 역시 자신의 몫을 남기고 나머지를 연방정부에 넘김.
-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公安행정기관, 兪업행정기관, 세무행정기관 , 노동행정기관, 기타 행정기관 등이 존재함.

■ 목표

-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일부 기능을 광역단체로 이양하고 광역단체는 지방행정청의 기능, 인력, 재정을 이양 받아 지역발전을 자기책임으로 추진하도록 함.
- 지방자치를 통제하는 중앙부처를 폐지하고 시군구 자치사무를 확대하고 광역시도의 시군구 지도감독 기능을 폐지함.

■ 방법

- 소방, 경찰, 해양경찰, 지방해양수산, 산림, 중소기업, 의료원 등의 분야에서 중앙기관은 폐지하고 그 사무를 광역단체에 이양함.
- 노동, 식품의약품안전, 통계, 보훈, 환경, 국토관리 등의 분야에서 현장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중앙차원의 본부는 입법과 전국적인 기준설정, 기획, 비상체제만을 담당함.
- 광역단체는 이양 받는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권을 부여받음.

3. 일관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 현황

- 이명박 정부의 집행 해태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마련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집행이 지연.
 - 이명박 정권 집권 전반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 건(원안 파기 논란)을 둘러싼 갈등 지속, 정책집행 시간 허비.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연
- 이명박 정부의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정책
 - 지방대학 육성 등 지역혁신 정책의 실종
 - 산업단지 내 공장신설 허용, 공장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 철폐
 - 경인운하 사업 등 오세훈 시정과 연계해서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사업 지속

■ 목표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복원
 - 수도권 생태환경 개선 : 과밀 해소, 대기질 개선 등 추진
 - 지방 혁신 역량 구축

■ 방법

- 세종시 건설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및 향후 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격상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조속 집행
-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2.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확대

공약

3.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주의제도의 강화

=>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발안, 주민투표 제도를 정비하여 활성화 함.

4. 주민자치위원회 선출과 주민총회의 도입

=> 통장 직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장협의회로 전환, 통장 중에 읍면동장을 선출

5. 행정위원회의 전문가와 주민참여 확대

=> 참여예산에, 시군구 법원 배심제, 시민배심제 등 관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

3.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주의제도의 강화

■ 현황

-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사항에서 예산, 회계, 계약, 재산관리,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안건 중 조례사항이 아닌 것은 주민발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방의회에서 이를 다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현재 조례에 대한 주민투표는 허용되지 않음.

■ 목표

-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고유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모두 주민투표를 허용함.

-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회계책임자,公安위원, 판사, 경찰 책임자 등 선출직 지방공무원을 확대하고 이들 모두를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인정함.

■ 방법

- 모든 주민투표 사항에 대해 주민의 발의를 인정하고, 단체장, 지방의회, 중앙행정기관의 주민투표 청구와 발의는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함.
- 지방채의 발행, 지방세의 항목설정, 세율의 인상, 지방의회 의원의 세비와 같이 중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의무적 재정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함.
- 주민발의로 지방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의 입법이 지체될 경우 주민투표로써 조례안을 확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주민소환의 대상을 비례대표 지방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으로 확대함.
- 임기 시작과 만료를 기준으로 1년간 주민소환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함.
-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의 요건과 절차 및 효력을 정하는 일반법으로 정비함
- 주민투표법에서 주민발의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의 규모와 소요기간, 투표찬반운동의 보장, 공공기관의 중립성, 최저투표율, 찬성율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함.

4. 주민자치위원회 선출과 주민총회의 도입

■ 현황

- 주권자는 스스로 민회를 구성하여 지방권력을 창출할 수 있고,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풀뿌리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최소단위는 우리의 읍면동 규모가 적절하므로 읍면동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독일, 스위스는 지방자치법에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주민총회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스위스의 코뮌 2842개 중 약 5분의 4는 지방의회를 두지 않고 매년 4-5회 정도 주민총회를 열어 공직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음.
- 면은 과거 천여 년 동안, 읍은 대한제국 이후, 동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모두 자치단체로서 존재해왔으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읍면동장의 주민직선제가 폐지되고, 읍면의회가 해산됨.

■ 목표

-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는 행정인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바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읍면동의 자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이 통장이나 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여 통장협의회나 이장협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함.

■ 방법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읍면동이 자치기구로 전환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고, 자치기관의 종류와 구성원 및 보수 등 기본원칙을 정함.
- 각 읍면동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기구의 구성시기, 선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읍면동 주민이 주민투표로서 자치기구의 승인을 시군구 의회에 요청하면 의회 의결로 읍면동의 자치기구를 설치함.
- 작은 규모의 읍면동은 자치기구 대신 주민총회만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비율의 유권자

가 모이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정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이때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 모바일투표를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통장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고 통장 중에 읍면동장을 투표나 주민총회로 선출하며, 필요한 건물과 보좌기관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행정인력을 활용함.
- 지방자치법상 읍면동의 권한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5. 행정위원회의 전문가와 주민참여 확대

■ 현황

- 정부조직법과 개별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조례에 의해 중앙과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관민위원회는 그 설치가 의무적인 것과 임의적인 것, 구속력이 있는 것과 단순한 자문에 그치는 것,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것과 행정관청의 내부결정에 반영하는 자문에 그치는 것 등이 있음.
-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으며,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어 결정의 구속력이 없음.
-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지역 현안을 결정하는 시민배심원제도는 공공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이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공무원이 각종 관민위원의 과반수가 되는 것을 차단하여 다수의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감시를 제도화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이나 자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차원의 숙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킴.
- 관민위원회에 가능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높임.
-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각종 민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법률과 조례로 정함.

■ 방법

- 내부 공무원의 선임과 행정기관의 민간인 위촉을 배제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함.
- 선출, 추천 등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외부인사, 주민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되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보완함.
- 정보제공, 의견수렴, 의사결정 등 관민위원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자문, 심의, 의결기능을 부여함.
- 중요사항의 사전 열람, 의견 제출과 청문 및 공청회, 의결내용과 회의록의 사후 공개를 의무

화합.

- 참여예산의 구속력이 복지사회분야의 가용예산 10% 내에 미치도록 함.
- 시민배심원제도의 법적 근거와 배심원의 선정과 소집, 배심절차 합의, 배경지식과 쟁점의 공유, 자문의견의 청취, 이해관계인의 진술, 증언과 감정, 숙의를 통한 결정 등의 표준절차를 마련함.
- 재개발과 재건축의 당사자인 주민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의무적으로 참여시킴.

3. 기초자치단체의 비리 근절

공약

6.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 근절

=> 인허가 업무의 프로세스화, 계약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권한 강화

7.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

=>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인사청문회 도입함.

6.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 근절

■ 현황

- 대형건축, 영업, 도시계획, 농림지의 전용, 채취와 매립 등 인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특혜의 성격이 강해 기초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인허가가 좌우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의 청탁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비리가 빈발하고 있음.
- 인사 청탁 뇌물은 그 금액이 적지만 관행적이며 음성적이라 쉽게 적발되지 않으며, 적발돼도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 죄의식이 적으며, 승진대상 공무원이 승진 뇌물을 만들기 위해 다른 직무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됨.

■ 목표

- 지방정치의 부패를 막는 근본적인 방안은 풀뿌리 일당독재를 청산하여 단체장과 의회의 권력분립, 지방정치에서 지방토호의 도태,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 등이나 행정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민원성 행정실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대한 권한을 축소해야 함.
- 법령이나 조례에 허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인허가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

든 인허가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함.

■ 방법

- 인허가 기준을 계량화하여 신청, 서류심사, 공무원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현장 확인, 관련 부서의 각 영역별 평점심사, 담당부서의 평점종합, 민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전 과정을 복합민원 프로세스 방식으로 전환함.
- 복합민원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전자정부를 통해 공개하고 주요 민원은 온라인으로 처리함.
- 중장기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일단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행정기관이 이를 회피하고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허용하지 않아 개발수요를 최소화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인과 주민참여, 전자입찰의 공개사항 확대, 수의계약 제한, 입찰최저가격 제한, 이해관계인 확대, 계약심의 제외대상 축소, 업종별 심사배점 표준기준 마련, 하도급의 제한, 지방의 회에 입찰의 사후보고 등을 추가하고, ‘계약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입찰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함.
-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 특히 특별임용은 인사부패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원을 축소하고, 대통령령과 조례 등에서 그 채용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함.
- 대통령령과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단체장의 인사보좌에서 인사통제로 전환하여 심의·의결기능을 강화함.
- 인사위원회에 주민, 전문가, 공무원노조, 사회단체 인사를 참가시키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임.
- 상급자는 표준화된 인사평점의 근거만을 제공하고, 그 심사와 평점 계산은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함.
- ‘지방자치단체장 행동강령’ 운동을 전개하여 조례로 제정함.

7.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

■ 현황

-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시정 모니터의 역할에 국한되고 있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 감사책임자의 자격은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낙하산 논란’이 있음.
- 지방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높으나 대법원은 법률근거가 없이 의무적이며 구속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함.
- 지역토호가 장악하고 있는 관변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특혜를 받으면서 선거와 이권에 개입하고 있음.

■ 목표

-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상급단체 감사, 행정감사규정 및 감사규칙에 의한 감사,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내부감사 등 방만하고 형식적인 지방감사를 정비함.
- 지방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의 합리성과 투명성,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를 강화함.
- 자발적인 풀뿌리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지역의 연고주의와 정실주의 및 온정주의를 청산함.

■ 방법

- 주민대표, 공무원노조의 대표, 사회단체인사가 참여하는 주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함.
- 주민감사위원회는 신고나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결정을 하고, 자문이나 제도개선 의견 개진 등 형식적 역할을 탈피함.
- 감사청구 제외대상에서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건 등을 제외함.
- 2년의 감사청구 제척기간을 늘리고 주민들이 사무 처리의 종료일을 알 수 없으므로 관련 사무종료의 공표를 기산점으로 함.
-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부지사와 지방공기업 사장 등 주요 지방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

- 정보의 수직적, 수평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중요정보와 민원정보의 의무적 공표, 정보공개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 비공개 사유의 축소와 비공개 사유의 공개 및 비공개사항의 일정 기간 이후의 공개 등 정보공개 관련 법안을 정비함.
- 청구된 감사가 지체되거나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주민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주민소송의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폐지함.
- 주민이 단체장에게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배상청구를 할 것’을 독촉하고, 나아가 단체장을 대위하여 직접 공무원에게 배상을 청구하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의 보전과 일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허용함.
- 내부고발자의 보상과 보호제도를 강화함.
- 행정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재정지원제도의 자의적 집행을 차단함

4. 지방선거제도의 혁신

공약

8. 광역의회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 2014년 지방의회 선거부터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킴.

9. 재보궐선거에서 전자투표와 인터넷투표 및 모바일 투표 도입

=> 2013년부터 실시하여 투표율을 높이고, 점차 다른 선거로 확대함.

8. 광역의회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 현황

-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의석의 특정 정당 편중 현상은 국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켜 민의 왜곡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와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지방선거에서 전면적인 비례대표선거가 가능하고, 지역구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친숙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차원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선거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야권 정책연대 차원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도를 입법화하고 우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함.
- 10% 이상 정당명부 득표율을 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음.

■ 방법

- 광역의회 의석은 최소한 19석이고, 기초의회 의석은 최소한 7석이므로 지역구와 함께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정당명부 의석을 50%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함

9. 재보궐선거에서 전자투표와 인터넷투표 및 모바일 투표 도입

■ 현황

- 현재 전자투표제도가 공직선거에 적용되지 않으나, 일본,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에서 보듯이 전자투표와 인터넷 투표 및 모바일투표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와 전자선거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제외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정당 및 단체의 선거, 위탁받은 민간투표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
- 2011년 5월 일부 국회의원들은 모든 정당이 같은 날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치루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 전자투표는 투표과정과 개표과정이 물리적으로 현시되지 않으므로 기술적 신뢰와 함께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높은 정치선진국에서 가능함.

■ 목표

- 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전자투표와 인터넷투표 및 모바일투표를 실시
- 투표율을 높여 정치참여와 선거참여를 활성화하고, 특히 진보정당에 우호적인 청년과 노동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하도록 함.
- 쌍방향 의사소통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을 활용하면 정보공개와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자투표와 인터넷투표 및 모바일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 발전의 장소적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

■ 방법

- 인터넷투표, 휴대폰 등 모바일 전자투표, 디지털TV투표를 실시하고, 특히 공공밀집지역에 간단한 전자사무가 가능한 무인전자단말기를 설치한 멀티미디어스테이션을 간이 전자투표소로 사용함.
- 투표자의 신분확인에는 비밀번호, 디지털 서명, 지문인식, 홍채 인식, 스마트카드 등의 공인인증제도를 활용함.

통합진보당 2012 총선

평화 분야 공약.

1.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2. 평화체제 형성과 연동한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소!

연구위원 김수현(with3@dreamwiz.com)

1.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공약

1. 평화통일부총리를 두어 통일·국방·외교 정책 총괄, 평화정책의 안정적 추진

- 1-1. 평화통일부총리가 통일·국방·외교 정책 총괄, NSC 부활
- 1-2. 대결적 남북관계 책임자 청문회 추진

2.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조기 달성을 위한 새 일괄타결 추진

3.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완화 실현

- 3-1. 남북 군사회담·핫라인의 조속한 복원, 확전 방지 위해 전략·규칙 개정
- 3-2.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 즉각 실현
- 3-3.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PSI 참여 중단과 폐기 지향

4. 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 4-1. 정권 말 무분별한 무기도입 중단
- 4-2. 국방비 즉각 동결과 축소
- 4-3.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 감축
- 4-4. 제주 해군기지 사업 중단 및 평화의 섬 원상회복

5.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민주적 군대로

- 5-1.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 제정
- 5-2. 사병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5-3. 민간 국방장관 임명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제도화

6. 대외파병제한법 제정 및 위헌적 PKO법 폐기

1. 평화통일부총리를 두어 통일·국방·외교 정책 총괄, 평화정책의 안정적 추진

1-1. 평화통일부총리가 통일·국방·외교 정책 총괄, NSC 부활

■ 현황과 선정 이유

-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및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현저히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초래한 대결 상황을 대북 강경책과 한미동맹에의 의존 강화·역할 확대로 해결하고자 함. 그 결과, 한반도에는 냉전 시대 못지않은 안보 위기 상황이 도래했고, 미·중 관계와 역내 질서까지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함.
-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결과가 빚어진 데는 제도와 기구 역할에도 크게 기인함. 국가안보보장회의(NSC)와 같은 관련 정책 조정기구를 폐기하고, 통일부를 대북 압박정책을 집행하고 흡수통일을 모색하는 부서로 전락시킨 것 등이 그 예.
- 보다 길게 보자면,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에도 햇볕정책 혹은 화해·협력의 대북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방 부문에 있어서는 군비증강의 지속과 이라크 파병 등이 전개되었으며, 외교·안보 부문에 있어서는 북한·중국 등과 갈등을 유발하는 한미동맹 변환 등이 관철됨.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이고 일관된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그 상당 부분이 비록 당시의 주·객관적인 요인이나 정부 철학의 한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를 재연하지 않아야 함. 평화정착, 통일기반 형성이라는 확고한 전략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관련 정부기관들의 관료적 장벽을 뛰어넘어 유기적·통일적 정책 전개가 필요함.

■ 목표

- 통일·국방·외교 정책의 분립 현상 극복. 평화정착, 통일기반 형성의 목표를 관철할 유기적·통일적 전략의 수립과 정책 집행을 일관성 유지

■ 방법

1. 통일부를 평화통일부로 전환하고 그 수장이 평화통일부총리가 되어 통일·국방·외교 정

책을 총괄하도록 함.

- 평화통일부는 단지 교류협력 정책을 주관하는 데서 나아가 국방부 중심의 군비증강과 군사적 접근 일변도의 정책, 외교부 중심의 대미 편중 외교 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착 및 지역 차원 평화·공영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일변하도록 총괄.
- 이를 통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 및 안보정책에서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정부의 역할이 통일적·입체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법·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상설화시킴.

- 청와대, 평화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 정보기관 사이의 소통과 함께 NSC 상임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인 평화통일부총리를 보좌해 안보정책 조정 기능을 맡도록 함.

1-2. 대결적 남북관계 책임자 청문회 추진

■ 현황과 선정 이유

-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크게 퇴화함. 첫째, 군사적 긴장 및 무력 충돌의 위험 증가 둘째, 당국 간 대화의 단절과 상호비방·불신의 증가 셋째, 경제협력의 (개성공단의) 정체·(전반적) 위축·토대 약화 넷째, 인도주의적 지원·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 협력의 축소·단절 다섯째, 금강산·개성 관광의 중단 등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단절 현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태 직후에는 1953년 정전 이후 최악의 대결·위협 상황이 조성됨. 최근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남한 당국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음.
- 이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서의 이런 퇴화 현상은 대통령과 그 주변 핵심 참모들, 관련 주무부처 장관의 이념주의적·대결적 인식과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큼. 그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시 북한에 급변사태가 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둔 정책을 전개함. 그로 인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서 남북관계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의 역진, 북한에 대한 남한 영향력의 위축과 대비되는 중국 영향력의 급상승 현상을 낳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현 정부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함께 남북관계를 꼽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관된 원칙하에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했다고 강변함. 최근 들어 류우익 통일장관 등이 유연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문 정국에서의 정권과 주민 분리와 조문 방북 제한 조치 등을 취해 북한 당국의 반발을 샀.
- 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기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복원,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

■ 목표

- 급변사태론에 입각한 대북 강경책의 허구성, 문제점 추궁과 재발 방지
- 평화와 통일 지향 정책의 역진성 방지

■ 방법

- 전·현직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및 대외관계비서관기획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 개최

2.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새 일괄타결 추진

■ 현황과 선정 이유

-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의 회담이후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조기 재개되어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쟁점을 해소하고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대북 지원 등의 일괄타결을 이뤄내야 함.
- 2005년 9.19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타결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 실험, 우라늄 농축 공식화, 검증 문제 등을 둘러싼 6자회담의 장기공전 상황은 2·13합의 등, 기존의 비핵화를 우선에 두고 단계적·점진적 해결을 추구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
- 북한과 미국은 2011년 2차례 고위급회담을 진행함. 여기서 북한은 핵심적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구조화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함.
- 냉전체제의 산물인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은 3차례의 서해상 교전 및 연평도 포격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남. 남북관계 회복은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함께 별도의 한반도평화포럼 등을 통해 병행·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는 관련 당사국 행정부가 직접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19대 국회는 정부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제하고,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목표

- 정전체제 종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역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정상화, 조기 달성

■ 방법

1. 먼저, 6자회담 재개 및 합의 이행을 위한 여건 조성

- 9·19 공동성명 도출 때와 마찬가지로 6자회담 재개에서도 결국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남북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2. 비핵화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의 병행 진행

- 평화협정 체결은 전쟁 당사국들의 전쟁 종식과 불가침, 국제적 평화 보장 방안, 주한미군 철수, 동맹 해소, 유엔사 해체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병행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국내적 노력 전개.

3.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를 일괄타결할 시점과 조건을 분명히

- **최종 해결의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 출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주고 받기는 중간 단계에서 검증 등의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중단되거나 역진될 가능성 있음. 현재와 같은 대화 부재, 비핵화의 지체 및 위기 상황은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변수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최종 단계에서 행하기로 한,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이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에서 행해질지에 대해 모호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됨. 즉 입구뿐만 아니라, 최종 해결의 출구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2015년까지 러시아로 핵물질과 무기를 이전 완료하고, 그때까지 평화협정 체결 및 비준, 북미수교 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임.

4. 북미관계 정상화 적극 지원

- 북미관계가 지금의 대결에서 벗어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 전개. 미국 조야에 대한 설득뿐만 아니라 남북국회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개선에 일조함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환경 조성.

5. 북한에 경수로 대신 재생 에너지 체계 등 공급 설득

- 북이 ‘평화적 핵 이용론’에 입각해 경수로를 만들거나 제공받는 것을 당연시하지 말고, 지속가능성과 첨단성을 겸비한 재생 에너지 체계 등의 대안을 모색할 것을 설득. 물론, 당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수로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한국 국회가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채택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

- 핵의 평화적 이용? : 9·19 공동성명에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북한도 핵의 평화적 이용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재앙이 보여주듯이 경수로 등 핵 발전은 결코 침단의 대안 에너지라고 할 수 없으며 참혹한 핵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

(더불어, 신규 핵 발전소 설치 금지 등을 통한 핵 발전의 단계적 철폐를 주장하는 공약과의 모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대안 : 대규모 송전 시설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태양열, 풍력 등을 이용한 소규모의 재생 가능 에너지 체계를 북한의 여러 지역에 건설할 수 있을 것임. 재생 에너지 체계가 북한이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200만 kw 정도의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음. 그 상당 부분은 CO₂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임. 러시아 천연가스의 도입은 한국의 에너지 확보 필요성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그 일부를 이용하면 될 것임.

3.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완화 실현

3-1. 남북 군사회담과 핫라인의 조속한 복원, 확전 방지 위해 전략과 규칙 개정

■ 현황과 선정 이유

- 남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협력 사업들에 대한 군사적 보장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군사 부문에서도 국방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모두 중단된 상황.
- 남북은 2004년 6월 15일을 기해 휴전선 일대의 비방·선전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방송장비와 선전판을 모두 철거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방송 장비를 다시 복원하였고, 군과 민간인들이 북한을 비난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적으로 행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하는 상황임.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 이후 한국군은 ‘적극적 억제 전략’을 채택하면서 일선 지휘관들에게 즉각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조치 후보고’를 구조화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종합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버림.
- 핫라인이 끊어지고 기합의된 군사적 합의와 보장 조치들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됨으로써 우발적 충돌에 대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져 버림.
- 국지적 승리만을 위해 개악된 교전지침 등을 확전 방지를 위해 재개정하고, 상호비방 금지 등 군사적 합의의 실천과 핫라인 등 위기관리 구조를 조속 복원해야 함.

■ 목표

-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구조 복원
- 우발적·국지적 충돌의 확산 방지로 전쟁 위험 최소화

■ 방법

1. 남북군사회담 조기 재개와 합의의 재확인, 정례화

- 2011년 4월 군사 실무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결렬된 이후 군사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군사회담을 즉각 재개하여 상호비방 금지 및 경협 등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위한 각종 합의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실천. 회담의 정례화.

2. 남북핫라인 조기 복원

- 핫라인의 조기 복원 등으로 남북 간의 충돌 방지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복원해야 함.

3. 확전의 방지 위해 적극적 억제전략 폐기, 교전규칙 재개정과 NSC의 통제

- 상호 군사적 승기를 잡기 위해 간략화 됨으로써 충돌의 확산 방지가 어려워진 현재의 적극적 억제전략과 그에 기초한 교전규칙을 남북 합의로 재개정. 국지적 충돌이 확산되지 않도록 부활 NSC를 통한 신속한 통제.

3-2.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 즉각 실현

■ 현황과 선정 이유

- 2010년 서해는 준 전쟁 상황이었음. 연평도 사태와 이에 맞대응한 한국군의 포사격 훈련 강행 등으로 전쟁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음.
- 서해의 분쟁은 첫째, 정전체제의 위험한 군사적 대립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며, 둘째, 남북의 서해 해상 경계선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데 직접적 원인이 있음.
- 서해 해상 경계선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은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영해로 취급하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NLL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로 서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해 두고 있음.

[그림]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 현재 서해상에는 국제법상 인정될만한 경계선이 없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음. 2009년 북한은 기본합의서 관련 조항 무효화 선언. 1999년 이후 벌써 4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빚어짐.
-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자고 합의했으나 후속 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이견.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거의 무산된 상황.
-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강하구 모래의 채취 등 지나치게 개발주의적인 접근을 취했던 점은 수정할 필요. 공동어로수역과 그 주변 지역은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함. 공동 어로와 해양 생태공원 등이 결합된 ‘서해평화생태수역’과 함께,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은 자제하는 생태 친화적

‘서해평화생태구역’으로 발전시킬 필요.

[그림]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계획



*좌의 ★표시 사업에 대한 생태적 관점에서의 수정 필요

■ 목표

-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 실현으로 남북 군사적 충돌 방지
- 서해상 분쟁 해소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

■ 방법

1. ‘10.4선언’ 이행 및 남북 기존합의 이행

- 남북이 기존에 합의한 10·4선언 등을 존중하고 이행하면 분쟁 발생 소지가 없을 것이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 가능.

2. 남의 서해5도사령부 및 북의 강화된 전방배치 전력과 기지 해체

-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새로 창설된 남의 서해5도사령부와 강화된 전력, 북의 전방배치 전력과 기지를 해체하고 후방 배치.

3-3. 공격적 한미군사연합연습과 PSI 참여 중단, 폐기 지향

■ 현황과 선정 이유

o 공격적 한미군사연합연습의 폐해

- 북한이 한미동맹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의 전개 때문임. 1976년부터 시작되어 1994년 중단될 때까지 매년 계속된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해 북한은 대북 핵전쟁 연습으로 판단함.
-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신했으며 다시 그 명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연습으로 바뀜. 현재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매년 키 리졸브/독수리(KR/FE) 한미연합연습(KR 2월말 3월초 2주간/FE는 4월말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연습(8월)이 진행되고 있음. 훈련이 아닌 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을 한미가 합동으로 연습한다는 의미.
- KR/FE 연습과 UFG 연습은 전면전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기반으로 실시됨.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 임.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에 대한 방어와 격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점령과 최고위층 생포 훈련까지 실시함.
- 2010년 KR/FE 연습부터 북한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계5029를 적용한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통치, 국지전 때 북의 공격원점 타격,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목표로 20만 명이 넘는 한미연합군이 스트라이커 여단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와 같은 공격 전력을 중심으로 60여일에 걸쳐 도하훈련, 평양을 상정한 시가지 훈련, 대규모 상륙훈련 등을 벌이는 전형적인 공격적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함.
- 2011년 실시된 키리졸브(KR) 연습에는 일본 자위대의 자위관도 참관함. 2012년 3월 독수리 훈련은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병행될 예정.
- 한미연합연습에 미 핵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음. 이럴 경우 북한 뿐 아니라 중국도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여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음.
- 1991년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루었던 경험을 되새길 필요.

o PSI 참여의 폐해

-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한국이 2009년 4월부터 공식 참가. 2003년 미국이 PSI를 제안했을 때, 한국 정부는 북한, 중국과의 관계 등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고려하여 PSI에 참여하지 않았고, 2005년 12월 이후 읍저 버로만 참여했던 것과 비교됨.
-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협력 네트워크로서 UN의 결의나 국제협정에 의한 것이 아님. PSI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의 불법적 수송을 차단하거나, 혐의선박(또는 항공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나포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물질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북한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음.
- PSI는 남북해운합의서에 위배됨은 물론이요, 유엔 해양법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공해상에서 항행의 자유와 타국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근거 없이 제약하는 일방적 군사행동임. 또한 차단 대상국가와 대상 물품의 선정에서도 미국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문제로 제기됨. 예를 들어 미국 동맹국들의 미사일 수출은 허용되는 반면, 북한이나 이란의 미사일 수출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 간주되는 등의 이중기준 문제를 갖고 있음.

■ 목표

-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으로 대화 복원에 기여
- 궁극적으로는 공격적 연합군사훈련의 폐기로 군사적 대결 중단,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아시아 평화 실현에 기여

■ 방법

1. 6자회담 재개와 안정적 진행 위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에 대한 국회 결의와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 유도.
2. PSI 참여의 즉각 중단을 위한 국회 결의와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 유도.
3. 공격적·위협적 연합연습이 토대로 삼고 있는 작계 5027, 작계 5029 등의 폐기와 평화 전략으로의 수정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와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 유도.

4. 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 현황과 선정 이유

- 지난 10여 년간 국방비는 2배 이상 증가함.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태나 북한의 핵개발에서 보듯 안보가 확보되기는커녕 오히려 위태로워짐.
- 국가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국방비는 구 소련, 미국 등에서 보듯 재정 파탄을 낳고, 결국에는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복지를 오히려 해하게 되는 역설의 현실.
- 국방예산이 증대하는 핵심적 이유는 첫째, 북한에 대한 공격적 전략 둘째, 주변국 위협론 때문임. 궁극적으로는 ‘절대 안보’를 추구하고 힘으로 위협을 억제하거나 상대를 제압하려는 사고와 전략 때문으로, 이는 미국과 같은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실현 불가능함. 9·11 테러는 그 상징적 사건.
- 안보 혹은 평화를 오로지 힘으로 달성하려는 접근은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사회적 갈등, 무기 도입 등 조달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 만연, 팽배한 ‘안보’ 논리의 횡행으로 인한 시민적 자유와 정치의 위축, 강대국에의 의존 등 각종 부작용을 낳게 됨. 무엇보다 과도한 군비 추구가 북한 및 주변국가의 경계심을 자극해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안보딜레마의 상황을 낳고 있음.
-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총 GNI에 육박하는 수준.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GDP 대비 비중도 높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주요 분쟁·대치국에 비해서도 높음.

[표] 남북 국방비 비교

구분	한국(2010년)	북한(2010년)	한국/북한
국제사회 추정 국방비 (북한 GNI 30% 추정치 기준)	약 256억\$***	78억\$ (총 GNI 260억\$)	3.3배
북한 공식 발표 국방비 (국가총예산 15.8% 기준)*	약 256억\$	8.216억\$ (국가 총예산 52억\$)**	31.2배

출처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Database,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자료집,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등.

* 북한은 2008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당해 연도 국방비가 예산지출총액의 15.8%로 책정되었다고 발표.

** 북한 2010년 국가총예산 52억 달러는 통계청, 『2011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p.129.

*** 2010년 평균 환율인 1 달러=1156원 기준.

[표]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2009년)

국가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프랑스	영국	터키	한국	미국
%	1	1.5	1.4	1.9	2.5	2.7	2.7	2.9	4.7

출처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Database.

* 미국은 전시예산(GWOT)이 제외된 금액. 한국은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국방·군사시설 이전 등 특별 회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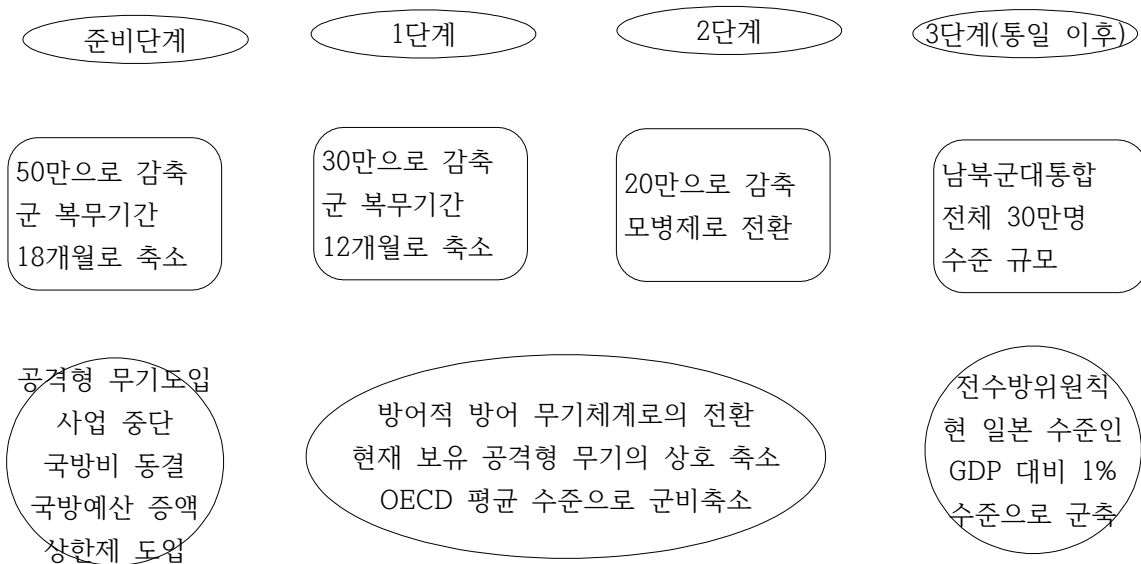
[표] 주요 분쟁·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2009년)

국가	중국	독일	대만	인도	세르비아	터키	한국	파키스탄	이스라엘
%	2.2	1.4	2.4	2.5	2.3	2.7	2.9	2.8	6.3

출처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Database.

- 이런 과도한 국방비를 선제적으로 동결하고 군 병력 감축 등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 상호군축으로 나아가야 함.

※ 3단계의 평화군축 실현을 위한 선도적 준비



4-1. 정권 말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 중단

■ 현황과 선정 이유

- 이명박 정부는 2012년에 3차 F-X사업,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14조원 가량의 대규모 무기 구매계약을 하기로 함. 이 비용은 26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운영유지비용까지 추산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 그 대부분은 미국산으로 결정 예상됨.
- 14조원 많게는 26조여 원에 달하는 무기구매 계약을 하고도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인 2012년에 지출해야 하는 구매 예산은 4,100여억 원에 불과. 구매 비용 및 운용 등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차기 정부가 부담해야 함.

[표] 2012년 도입 예정 미국산 무기의 종류별 예산 및 실 가격 추정

사업명	국방 예산	실 가격 추정	운용비 및 성능개량 추정
3차 F-X (F-35)	8조2905억원 (엔진포함기체 대당 예산 9,438만달러)	16조원 이상 추정 (캐나다 도입가격 14,850만달러)	60대×30,150만달러* ¹⁾ =180억9천만달러 약20조원(30년운용)
대형공격헬기 (AH-64D)	1조8384억원 (대당 510억 산정)	3조3048억원 (대만판매가 918억)	3조원(30년 운용)
KF-16 성능개량	1조8052억원	?	?
해상작전헬기	5,538억원	?	?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5,002억원 (1대 예산)	9422억원(*)x4대 =3조7688억원 개발비용4000억원 별도 요구	?
장거리공대지 유도탄(JASSM)	4,093억원	?	?
저격용 소총	625억원	?	?
계	13조4599억원	26조2831억원 이상	23조원 이상

출처 : 2012년도 예산안 부서별 분석 II, 경향신문(2011. 12. 6), 디펜스21(2011. 4. 29), *Flight Global*(Canada F-35 cost estimate soars 66%, 2011. 3. 10)

* F-35 : 실가격, 운용비 및 성능개량추정 (캐나다의회 예산사무국 보고서 기준)

기체 1대 30년간 운용 총비용 45,000만 달러, 1년 1대 운용유지비 840만 달러 / 10년 후 성능개량 대당 3,040만 달러

* AH-64D : 1개 대대 36대 기준, 운용비(경향닷컴 2011. 3. 28)

* 글로벌호크 : 미국 측 최근 제시 판매가격, 도입 순연시 매년 20% 가격상승

미국은 글로벌호크 개발비 3억5천만 달러 전액 요구. 1차기지 한국 2차기지 괌에 둔다는 내용 계약서 명시 요구.

* 장거리공대지유도탄 : 2011년 9월 현재 미국의 대외판매 승인이 나지 않고 있음.

-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무리하게 대규모 무기도입을 결정하려는 데는 무기도입에 따른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더불어, 미국의 경제위기 및 재정위기로 인한 연방정부 예산 대폭 감축과 연동되어 있음. 1월 26일 발표된 2013 회계연도 미국방예산은 6,13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9% 축소된 것. 미국은 국방예산이 줄어들음에 따라 방산업체들의 미 국방부 수주계약 감소에 따른 타격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무기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산 무기는 과도한 비용 외에도 자주국방에 오히려 저해되고, 한국 전구 특성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
- 2006 ~ 2010년 한국의 무기수입은 세계 2위. 미국제 무기 수입으로 치면 세계 1위임. 북한은 한국의 첨단 무기 대량 수입에 대해 북침 준비용이라고 강력 비난.

■ 목표

- 무리한 무기 도입으로 인한 과도한 국방비 지출 제한
- 미국 무기에의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자주국방의 저해 차단
- 정권 말 비합리적·졸속적인 결정의 폐해 차단

■ 방법

1. 3차 F-X, 고고도무인정찰기, JASSM 도입 사업 등의 진행 중단과 원점 재검토
2. 대형공격헬기 사업 등의 원점 재검토
 - 아파치 헬기의 도입뿐만 아니라, 국산 기동헬기사업을 이용한 중대형공격헬기 등 공격헬기 사업 전반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3.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민간인 포함 전문가위원회 가동

4-2. 국방비 즉각 동결과 축소

■ 현황과 선정 이유

- 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올린 국방예산은 32조9,576억 원에 달함. 지난 10년간 국방비는 두 배 이상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타국에 비해 현격히 높음.
- 민주화와 남북 상호교류 진전의 시대에도 남북 간의 군비경쟁은 멈추지 않음. 남한은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국방비 2배 증액, 이지스함·F-15K 등 첨단무기 도입 지속. 북한은 핵무기 등 이른바 비대칭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함.

[표] 국방예산추이

단위: 억원

		2002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 예산	총액	1,096,298	1,795,537	2,035,497	2,012,835	2,105,333	2,281,000
	국방비 비중, %	14.9	14.8	14.2	14.7	14.9	14.4
국방비	총액	163,640	266,490	289,803	295,627	314,031	329,576
	전력운영비*	108,884	189,677	202,663	204,597	217,096	230,637
	구성비, %	66.5	71.2	69.9	69.2	69.1	70.0
	방위력개선비	54,756	76,813	87,140	91,030	96,935	98,938
	구성비, %	33.5	28.8	30.1	30.8	30.9	30.0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등.

*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유지비 등 1.7조원은 전력운영비로 분류

- 세계적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무기도입과 비대한 인력유지에 따른 국방비의 급격한 증가에 제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필요. 미국의 재정위기와 그 해결을 위한 재정감축계획에 따른 국방예산 상한선 도입의 사례는 타산지석.
- 1990년 동서냉전 해체 이후 1990년 중반까지의 전 세계적인 군비감축, 특히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독일의 군비가 급격하게 감소한 사례가 있음. 물론 미국처럼 다시 군비증강으로 선회한 경우도 있음. 국제정세뿐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국가 철학과 전략의 문제가 중요함을 보여줌.

[표] 주요국 국방비 변동 폭, 1990-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2009년 환율 기준)

	1990년	2010년	변동 폭	
미국	502,749	687,105	36.6%	급격히 증가
영국	57,864	57,424	-0.7%	비슷
프랑스	67,930	59,322	-12.7%	감소
독일	69,337	45,152	-34.8%	급격히 감소
러시아	57,716	58,668	1.7%	비슷
일본	46,688	54,527	16.8%	증가
한국	12,210	27,591	126%	매우 급격한 증가

출처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Database (2011. 12. 12 검색)

* 러시아의 경우 소련 붕괴 이후 1992년 통계 적용

- 냉전기 초강대국간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중심으로 전개된 상호군비통제와 축소는 남북간의 통상전력(혹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 통제와 군축의 가능성을 보여줌.
-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군비감축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통상전력에서는 우위에 있는 남한의 선제적 군비축소로 남북 상호군축을 선도하는 능동적 전략이 필요함.

■ 목표

- 과도한 국방비 증액 제한, 복지 예산 등 확충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군비 팽창이 아닌 군비 동결과 군축 추진
- 방어와 평화 유지에 걸맞은 군비, 그에 부합하는 국방비 소요로 전환
- 남북 간 군사대결을 종식시키고 전쟁위험 제거.

■ 방법

1. 국방비 증액 제한 입법 추진

- 국가재정 규모 15%에 달하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여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
- 미국의 국방예산 상한선 도입 과정 참조.

2. 과도하고 부적절한 무기도입 사업 중단, 효율화 등에 의한 국방비 절감

- 1) 불요불급한 정권말 무기 도입 사업 중단: 4-1 참조 바람.
- 2) 확산탄 등 비인도적 무기의 도입 및 개발의 철회
- 3) 기술적 타당성이 의심되는 국내개발무기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와 일시 중단
- 4) 결원 장교 인건비 감축

3. 국방비 증액의 즉각 동결과 단계적 감축

- 단기적으로는 매년 5%이상 증액되는 국방비를 2013년에는 즉각 동결. 2012년 국방비를 동결했다면 당장 1조 5545억 원을 절감 가능했음.
- 중장기적으로 평화체제 형성의 과정에서 GDP 대비 3.2%(NATO식 계산에 입각)에 달하는 국방비를 OECD 평균인 GDP 대비 1.7%에 근접하게 단계적 감축.

4. 국방개혁 관련 법 재정비로 국방비 제한 추진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등을 전면 수정하여 선제적 군비 동결 및 상호군비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5. 국방(안보)전략 변화

- 남북 군사적 신뢰관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안보·평화 형성 전략으로 전환하여 우발적 충돌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 평화적 관리의 제도화 추진.
- 6자회담을 다자안보체계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 외교 역할 증대.

4-3.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 감축

■ 현황과 선정 이유

- 원래 ‘국방개혁2020’에 의해 총원 50만 명에 맞춰 사병 복무기간이 18개월 목표로 단축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1개월로 조정됨.
- 국방개혁2020 등에서는 우리나라 적정 병력수를 50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대적 군대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수준. 전문가들은 평화체제가 당장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30만 명 정도면 방어에 충분하고 현대적 군대로 적절한 수치로 보고 있음.
- 2020년까지 군 총원 30만 명(사병 총 인원 20만 명 내외) 수준으로의 감축에 맞춰 사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 현대 군이 필요한 전문성은 부사관 등의 충원으로 충분히 가능. 대만은 중국과 대치중인 현재도 12개월 수준.
- 한국군은 사병 당 장군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영관급도 진급적체인원이 수 십%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고위급 장교를 보유하고 있음. 그 감축으로 과도한 군인 인건비를 줄이는 등 효율화 필요.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오는 2020년까지 장성 수를 10% 수준인 40여명을 줄이겠다고 함. 현재의 총병력 65만 5천명을 2020년 51만 7천명 수준으로 20%이상 감축할 계획인 것에 비추어보면 총병력 혹은 사병 대비 장군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육해공의 중령·대령 중 진급적기 경과자가 20% 대 후반에서 50여 %에 달하며, 10년 이상의 장기 적체자는 17.1%~23.7%에 달함(김학송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자료집).

■ 목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그 준비.
- 과도한 군비와 복무기간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평화 혜택의 실감과 평화 정책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

■ 방법

1. 사병 복무기간 단축: 18개월 단축 환원 → 2020년까지 12개월로 단축

- 2012년부터 매년 1개월씩 순차적으로 복무기간 단축하면 2020년에는 12개월로 단축 가능.

2. 2010년 현재 17만 6천 명 정도의 장교, 부사관을 2020년까지 10만 정도로 감축

- 2020년 사병의 복무기간이 12개월로 단축시키고 사병 총원은 20만명 수준으로, 과도한 사병의 관리 명목 등으로 비대한 장교, 부사관 수를 10만명 수준으로 감축.

3. 장군 등 과도한 고위급 장교 인원 축소

- 미군의 사병 10,000명 당 6명의 장군 비율을 적용한다면 현 450명 규모에서 270명 수준으로 축소 가능. 물론 사병 수를 20만 명 정도로 감축하면 훨씬 더 축소 가능. 이들에게 사회 진출을 위한 직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역시킴으로써 과다 인력 보유를 통한 비효율성을 덜고,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

4-4.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및 평화의 섬 원상회복

■ 현황과 선정이유

○ 제주 해군기지는 민·군복합항을 천명하나 군항으로 전용하려는 대국민 사기극.

- 2011년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제주도가 자체 조직한 민항시설 검증T/F 팀은 ‘제2차 보고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당초부터 민·군복합항이 아닌 군항으로 설계됐다고 발표(제주도민일보, 2011.10.20.).
-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기지(민·군복합항)에 적용한 15노트(7.7m/s) 기준으로 선박의 입출항을 제한할 경우, 군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동 신문이 입수한 ‘해군기지 실시설계보고서’에 대한 보도(2011.10.20)에 따르면 15만t급 크루즈가 접안할 경우 군함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민·군복합항으로 이용 불가.
-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이 2011년 9월 27일 제기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만t급 크루즈선은 국내에 단 한 번도 입항한적은 없는데,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민군 복합항의 계획은 비현실적이다.”고 함.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에 15만t급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시기는 2025년이며, 2044년이 돼도 1년에 단 두 척만 입항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

○ 제주 해군기지, 미국 핵 항공모함전단 기항지로 활용될 가능성.

- 2011년 9월 23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크루즈항 선회장이 520m로 설계된 것은 국방군사시설기준상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짐. 국방군사시설기준상 선회장 적용기준은 ‘지형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인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모함 520m’로 규정돼있음. “민항의 경우 항만법 항만설계기준에 따라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려면 선박전체길이의 2배에 해당하는 690m 선회장을 갖춰야 한다”며 “해군이 크루즈선박이 접안 가능한 민항을 계획했다면 처음부터 선회장 설계를 690m로 했어야 옳다”고 밝혔다.
- 이 같은 설계의 문제점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 검증위원회’가 2월 17일 공개한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됨.

○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현실화 시킬 가능성.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등에서 자신들에 대한 공격기지가 될 수도 있는 해군기지가 건설 중인 제주에 자국민의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 이어도 등에 대한 출동의 신속성을 주장하나, 영토와 자원 분쟁이 벌어지는 곳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자해행위가 될 가능성. 해경 경비함을 파견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 참고로, 일본은 독도, 센카쿠열도(조어도) 등에 해상보안청의 경비함을 파견.

- ‘연미화중’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익을 오히려 저해하는 행위.

○ 강정마을 공동체, 구렁비 바위 등 생태계의 파괴 중단과 치유·복원 필요

- 90%가 넘는 마을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을 이용해 기지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파괴한 행위. 주민의 총의와 자결권을 보장하고, 그간의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정신적 치료 등을 세심하게 진행해야 함.
- 이미 파괴가 진행 중인 구렁비 바위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멘트 구조물이 들어섬으로써 산호초를 포함한 각종 해양 동식물군 등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 최선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복원하는 것.

■ 목표

- 해군기지 건설 폐기로 제주를 ‘평화의 섬’에 걸맞은 곳으로 되돌리기
- 동맹의 강화,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의 현실화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부터의 탈피
-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구렁비 바위 등 생태환경의 치유·복원

■ 방법

1. 국회에서 관련 예산의 96%를 삭감한 취지에 걸맞게, 미집행 사업 예산의 계속 추진 사업에의 전용 금지. 미집행 예산은 강정마을 공동체 및 생태계 복원, 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전용.
2. 국회 차원 제주 민·군 복합형 항구의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철회 결의

5.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민주적 군대로

5-1.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 제정

■ 현황과 선정이유

- 종교적 이유 혹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즉, 집총 훈련을 거부하다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2011년 현재 13,000명이 넘었음. OECD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속, 수감시키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항임. 대체복무제 도입은 노무현 정권 후반기 추진되어 구체적 계획까지 마련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이 된 상황임. ‘국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인격과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숙한 민주시민국가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
- 군대 내 폭행과 이로 인한 인명 손실과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음. 민주화 시대 전반적인 인권의식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인권, 특히 사병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아직 권위주의 시절의 그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군에 대한 기피와 각종 비리 현상도 지속됨.
- 군대 내 사상 검열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군법재판이 전시 혹은 군 작전 외의 사병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그나마 사법적 독립성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등 등 군대가 인권과 사법정의의 사각지대가 되어왔음.
- 이명박 정부 들어 군이 불온서적을 선정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앱/사이트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례 등은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무시하고, 보수적인 군 지휘부의 정체성을 부하들에게 강요하는 행태로 인권 침해,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현상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군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구성원인 시민의 안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임.

■ 목표

- 병역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임무가 개인의 양심과 충돌하지 않는 유연성 확보
- 군대를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하고, 가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변화
-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군의 위상 확립, 군 문화 정착

■ 방법

1.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국회 결의와 입법화 추진

- 대체복무제는 국제인권기구의 표준에 맞게, 다양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징벌적 성격이 없으면서도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1.5배의 기간을 복무하도록 추진함.

2. 군 인권법 제정,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 군대 내 사상검열 폐지

- 독서·정보 검색·청취 및 시청의 자유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유권 보장, 전시 작전 지휘 외의 부당한 명령이나 가혹 행위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 인권법을 제정.
- 군대내 폭력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 안보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감시와 역할 강화, 시민 인권기구의 감시와 조언 보장, 인권기관에 의한 군 인권 교육 강제.
- 군인복무규율에 헌법에 대한 복종, 시민의 안전 최우선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군대 내 사상검열 등 구시대적 행태 폐기 명문화.

5-2. 사병 임금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현황과 선정이유

- 현재 사병의 평균 임금은 9만원 수준임. 징병제라고는 하나, 과도하게 낮은 임금으로 군에서 생활하기 위해 집의 도움을 받는 실정. 국가를 위해 복무중인 군인이 집에 부담을 끼치는 상황은 언어도단.
- 군 지휘관들의 사병에 대한 인권 무시, 비합리적·비효율적 지시와 운영 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데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들을 유지하는 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데서도 기인함.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휘하지는 못할 것.
- 징병제에다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대만의 경우 현재 40만 원 정도임. 현재 대학 등록금이 1년에 약 천만 원 정도임. 40만원을 전액 저축한됐자, 18개월 복무하면 1년 등록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 2020년경 12개월로 단축하면 한 학기 등록금도 되지 않음. 반값 등록금의 실현은 별도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1년 등록금 정도의 돈을 군 생활 동안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

■ 목표

- 사병 인권 개선
- 평화체제 전환 시 모색할 모병제의 토대 구축.

■ 방법과 자원

- 앞 4-3의 복무기간 단축 및 그와 연동된 사병 관리 차원의 장교와 부사관 감축만으로도 사병 인건비 인상을 위한 재정 충당은 충분히 가능함.

예. 월 100만원 인상 시, 연 1,200만원 X 20만 명=2조 4천억 원 소요.

2010년 군인인건비 중 장교·부사관 인건비는 93.1%로 약 7조원에 달함. 17만 5천여 명의 장교·부사관을 1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2010년 기준 약 3조원 감축 가능.

[표]. 2010년 군인인건비와 인원 및 비율

	군인인건비(억 원)		인원수(명)	
장교	3조 4,319.29	45.7%	71,440	11.4%
부사관	3조 5,615.76	47.4%	104,524	16.6%
병	5,162.42	6.9%	452,923	72.0%
계	7조 5,097.47 *	100%	628,887	100%

5-3.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제도화

■ 현황과 선정이유

- 군·외교·안보 분야 역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함. 이 분야의 경우,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난 성역으로 남아 있으며, 심지어 대의기구인 국회나 타 행정부처로부터의 감시와 견제로부터도 벗어나 있음.
- 이명박 정부 들어서의 예. 국방부는 단독으로 북한 붕괴 대비 작전계획 5029를 미군과 합의하에 발전시키고, ‘NLL 대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외교통상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한EU FTA,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한 독주, CNK 사건 등 자원 외교와 관련한 비리에서 보듯 권력 핵심부와 연계되어 타 부서의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나 폭주를 거듭함.
- 특히 군의 경우, 그 동안 직업 군인 특히 육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거의 독점하면서 국방부는 육방부라는 비아냥을 받아 옴. 이 때문에 군비증강의 절대 안보와 적대적 대북 정책의 추구의 성향을 보여 옴. 그것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위협에 대한 해석, 그에 맞서는 전략 설정의 독점과 성역화를 지속시킴으로써 민주 국가에 걸맞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 시민적 감시와 통제로부터 이탈하는 것이었음. 그 폐해는 이른바 민주 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군비증강과 군사부문에서의 대결적 상황으로 나타남.
- 또한 특정 군의 이해를 실현하는 데 오히려 앞장섬으로써 군의 단결과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할을 해 옴. 3군의 균형 발전이라는 개혁 과제에 역행하는 이런 특정 군 독점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오히려 심해짐. 절대안보의 추구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전범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미군이 끊임없이 전략적 목표를 재규정하고, 그에 합당한 군 개혁을 지속하는 데 반해 한국군이 고답적인 상황을 면치 못하는 것은 미국과 달리 직업 군인 출신이 국방부장관을 계속 맡아 온 것에도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됨.

■ 목표

- 군과 안보영역의 민주화를 통한 군 개혁
- 평화의 수호, 평화체제 달성이라는 국가 목표에 충실한 국방정책의 수립

■ 방법

1.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 결의와 법제화 추진

- 공군, 해군 출신 등 타군 출신의 직업 군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경제부처 출신

직업 관료를 차관에 임명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개혁에 한계가 있음. 군과 전략 문제에 일가견이 있으며 국방 개혁의 비전이 확실한 민간인이나 문민 관료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도록 국회 차원 결의와 법제화 추진.

2. 국방개혁안 및 국방계획에 대한 국회와 정부 내 타 부처의 통제 강화

- ‘국방소요검증위원회’를 민간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확대된 기관으로 개편하고, 검토의견을 국회에 보고, 승인받도록 함. 국군조직법을 개정, 군인 정원에 대해서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군이 주도하는 ‘국방개혁안’ 수립을 평화통일부총리 주재 하에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수립하도록 하고, ‘중기국방계획’ 역시 여기서 수립된 계획안에 입각해 예산 당국이 통제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3. 안보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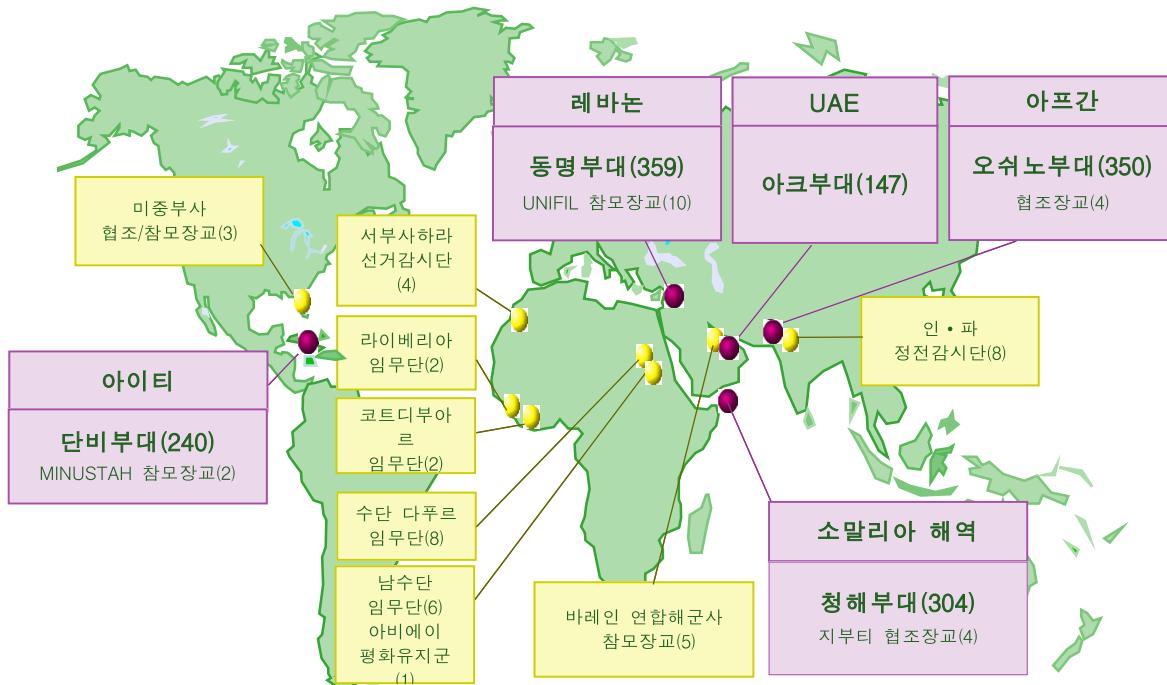
- 시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의 대폭 확대. 비밀 관리에 대한 국회의 통제, 최소한의 비밀 지정과 최대한의 비밀 해제를 원칙으로 한 국가비밀관리법 제정. 앞의 원칙에 입각해 군사기밀의 자의적 지정 방지와 그 통제를 국회가 하기 위해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6. 대외파병제한법 제정 및 위헌적 PKO법 폐기

■ 현황과 선정 이유

-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이나 분쟁지역에의 파병을 지속하고 있음.
- 현재 파병은 다국적군 파병과 PKO파병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헌법 제60조는 국군의 외국 파전에 대하여 국회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12월 30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날치기 통과시킨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소위 PKO상시파병법)은 1천명 이하일 경우, UN과 사전에 파병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국회 사전 동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이 법률에 근거하여 파병을 목적으로 하는 ‘PKO 상비부대’가 편성되어 있고, 한국은 사실상 상시파병국가가 되어버림.
-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아랍 에미리트(UAE) 핵 발전소 수주에 부수해 특전사 파병까지 진행하는 등 무분별한 파병을 자행.
- ‘한미동맹 미래비전’에서 천명하는 ‘글로벌 동맹’의 추진으로 한국군은 미국의 정책과 군사개입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분쟁지역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짐.

[그림] 한국군 대외파병 현황(14개국 1,453명)



출처 : 국방부 2011년 8월 31일 현재

■ 목표

- 파병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평화국가로서 국가위상 확립
-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그들의 장기적 자생력을 계발할 수 있는 분야로
- 군과 국민의 안전 도모

■ 방법

1. 대외파병제한법 제정

- 국제분쟁 개입에 관한 원칙과 조건을 담은 대외파병제한법 제정. 국제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대외파병을 금지하는 등 파병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갈등 예방적 외교와 비군사적 수단에 집중하도록 함.

2. 위헌적 PKO법 폐기

-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PKO법과 파병전담부대를 폐지하고 무기판매나 시장개척용 파병 금지.

3. 아프간 파병부대와 지역재건팀(PRT) 즉각 철수

2. 평화체제 형성과 연동한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소

공약

1.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이전에도 이들 사안은 충분히 추진 가능

1-1.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개정

1-2.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목표로 주둔 경비 재논의

2. 평화체제 진전과 연동된 한미동맹체제 해소 착수

2-1. ‘한미동맹 미래비전’ 폐기를 위한 국회 결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분쟁 개입 동맹으로 변질되고 있는 한미동맹 변환 저지

2-2. 평화협정 인준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추진

⇒ 한반도평화체제 및 동아시아평화공동체 진전과 연동해 한미동맹을 해소하는 목표를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병립 불가함을 분명히 함.

1.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1-1.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개정

■ 현황과 선정 이유

-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연이은 성폭행 사건, 미군기지내 고엽제 매립 범죄 사실 은폐 조작 사건 등 발생.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가깝게는 한미SOFA에 있기에 그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SOFA개정 의지가 없으며, 2011년

11월 23일 개최된 [189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회담의 주체인 한국 외교부는 단 한 차례도 분명하게 한미 SOFA의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오히려 미군의 입장을 대변 하듯 개선안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만 내는 대미굴종 외교의 행태를 보임.

- 불평등한 한미SOFA로 인해 미군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 전면 개정을 통해 주권을 바로 세우고, 국민적 고통의 해소와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임.

[표] 한미SOFA의 문제점

구분		내용
적용 대상 문제	한미 SOFA	·주한미군 본인 및 미군속 ·그들의 가족 그리고 기타 친척까지 포함
	NATO SOFA	·배우자와 부양받고 있는 자녀로 국한
	미일 SOFA	·기타 친척 제외
수사권 문제	한미 SOFA	·미군기지내 한국의 수사권 제한 ·미군에 대한 ‘구속’ 수사의 제한 - 현행법 체포시 구속 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으로 제한, 기소시 구속할 수 있는 범지 12개로 제한
	NATO SOFA	·기소와 동시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신병인도 요청 가능
	미일 SOFA	
형사재판권 행사 제한	한미 SOFA	·재판권의 포기 -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 포기해야 함. ·모호한 ‘공무수행 중’ 규정 - 미군이 공무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재판권 행사 못함
	다른 나라	·독일을 제외하고는 주요나라의 SOFA에는 재판권 포기 규정 없음
미군피의자에 지나친 특혜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한 조건’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미군측은 이유 없이 재판 거부할 수 있음 ·한국 검찰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없음 ·2심, 3심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1심 형량 보다 늘어날 수 없음
공무 중 사건은 100% 미군 잘못도 한국정부 배상 의무		·공무 중 발생한 손해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우선 배상금 전액 한국정부 지급, 한국정부 책임이 없어도 배상결정금액 25%한국 지급. 한미공동책임 또는 불분명할 경우 50% 균등분담.
환경오염 치유 비용 한국측 전가의 빌미		·협정문 4조 - 미국이 한국 내에서 사용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지 경비 책임 조항 유명무실-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통해 한국에 전가		·협정문 5조는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91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로 조항 존재 자체가 의미 없게 되었음
한미합동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비공개 진행		·이해관계자들의 접근과 참석마저 차단하고 있음

■ 목표

-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전면개정으로 한미관계 정상화
- 주한미군 범죄 국내법 처벌 및 사건사고 발생 줄여 국민 피해 줄임
- 주한미군에 대한 특혜 논란 해결 및 한국정부의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

■ 방법

1.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을 위한 한미간 협상 착수

- 협정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당하고 불평등한 모든 규정 (적용대상, 형사재판권, 피의자 특혜, 환경오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개정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미합동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 필요시 관련 피해자 및 이해당사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명문화

2. 평등한 한미관계 정착을 위한 국민적 여론 조성을 위한 국회 활동 전개

-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한미SOFA 개정에 의지가 없음. 국민은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위한 국민적 여론 조성

1-2.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지를 목표로 주둔과 이전 경비 재논의

■ 현황과 선정 이유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도 위배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 한미SOFA 5조는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시설과 구역에 대한 지원)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
- 한미 양국이 한국 방어의 한국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서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대키로 합의한 것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의 책임과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역시 삭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되고 있음.

[표] 1999~2009년도 각 연도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내 역	'99년	'00년	'01년	'02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계
직 접 지 원	방위비 분담금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2,317	2,257	2,507	2,395	3,241	2,874	2,879	2,954	3,158	3,221	
		군사건설비	1,040	1,018	1,040	1,461	2,352	2,494	2,646	2,976	2,642	2,922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520	509	520	568	867	430	394	-	-	-	
		군수지원비	651	713	814	770	1,009	1,006	935	1,325	1,615	1,457	
		소 계	4,650	4,537	4,882	5,194	7,469	6,804	6,804	7,255	7,415	7,600	62,610
	KATUSA·경찰 지원	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유지비	-	105	68	118	184	134	129	130	126	105	
	부동산 지원	사유지 임대료, 보상·매입비 등	46	23	109	126	175	83	225	39	37	54	
	기 타	기지 주변 정비, 공무피해배상, 한국군 훈련장 사용 지원 등	17	326	159	116	236	404	327	179	647	606	
	계		4,713	4,990	5,218	5,554	8,064	7,425	7,485	7,603	8,225	8,365	67,642
	간접 지원												
간 접 지 원	토지 임대료 평가	무상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4,980	6,664	4,583	5,042	5,852	5,579	5,167	5,160	5,123	5,755	
	KATUSA 지원 평가	KATUSA 지원 기회비용 평가	1,181	1,134	1,228	1,131	957	-	-	557	564	569	
	제세 감면	관세·내국세·지방세 등 면제	1,508	1,250	1,021	1,114	1,543	1,672	1,683	1,913	1,844	1,393	
	공공요금 감면	상수도·전기료·통신요금 할인	195	198	188	200	76	76	76	62	49	82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고속도·광역시 유료도로·공항시설 사용료 등	18	30	24	27	20	25	38	35	49	60	
	기 타	철도 수송지원	4	-	미파악	미파악	4	2	1	2	2	2	
	계		7,888	9,276	7,044	7,514	8,453	7,354	6,965	7,729	7,631	7,861	77,715
	총 계		12,600	14,266	12,266	13,067	16,516	14,780	14,450	15,332	15,856	16,226	145,359

출처-이정희 국회의원실. 2003년 지원 현황은 일부 자료 미접수로 종합·분석 미 실시됨.

-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직·간접 지원 비용이 지난 10년간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09년의 경우 1조6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짐.
-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에는 최대 1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한국 측 부담액은 빠져 있음. 위키리크스 폭로 자료에 따르면 한미 안보 당국 간에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을 통해 주한미군 이전 비용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으며, 한국 측 부담 비중은 약 93%에 달한다고 함.

- 주한미군의 요청에 따라 미2사단이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하므로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지 않고 축적해둠. 그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1조3000억 원으로 국민·하나·신한·HSBC에 분산예치하고 있음. 3.5% 내외의 최근 CD금리를 단순 적용해도 현재 기준으로 연 500억 원 가까운 이자 발생.
- 그러나 그것은 국회나 국민에 보고되고 승인된 것도 아닌, 당초 협정 위반 사항임이 분명.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미국이 불법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퍼주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함.

■ 목표

- 소파협정 및 기지이전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성 해소
- 간접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도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당연시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폐기

■ 방법

1. 미국이 불법적으로 한국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1조 3천억원과 이자 환수 조치
 - 한미 안보당국 간 자의적인 합의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 비용 전용을 위한 축적에 대한 국회 차원 청문회 실시.
 - 미국이 불법적으로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축적하고 있는 1조 3천억 원의 방위비분담금과 그 이자를 2013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체.
2.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목표로 주둔과 이전 경비에 대한 재논의
 - 전략적 유연성등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한미 SOFA 5조에 근거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촉구.
 -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폐기 노력.

2. 평화체제 진전과 연동된 한미동맹체제 해소 착수

■ 현황과 기본적 문제의식

-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반세기가 넘게 연속적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2015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는 변화가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은 2009년 6월 17일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여 한미동맹을 ‘다원적 전략동맹’, ‘글로벌 전쟁동맹’으로 변질시켜버림. 그리고 양 국가가 통과시킨 ‘한미 FTA’는 한미 관계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연속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이러한 지나친 미국 편향의 외교·안보정책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 등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 중시의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으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미국의 요구를 배경으로 한일 정부 간에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시도되기도 함. 냉전 때도 현실화되지 않았던 한미일 동맹이 형성되고, 일본 군대(현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길을 열게 될 가능성.
- 중국에 대한 포위 동맹, 지역과 전 세계의 분쟁 개입 동맹으로 변질하고 있는 한미군사동맹을 해소해 나가는 것은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위기를 감소시키고 평화를 구조화하는 주요 축임.
- 그러나 한반도에 정전체제가 여전하고, 지역 차원에서도 안보 면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상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맹의 해소가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현실화되는 것은 만만치 않음.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동아시아 차원의 안보협력을 증진하고 구조화하는 노력과 동맹의 변환강화 방지, 해소가 병행될 필요.

2-1. ‘한미동맹 미래비전’ 폐기를 위한 국회 결의와 ‘한미동맹 평가와 대안 위원회’ 설치

■ 현황과 선정 이유

-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2009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함.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기존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 전반으로 동맹을 확대하는 이른바 ‘21세기 포괄적 동맹’으로 한국사회 전반이 미국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한미 FTA는 대표적 예.
-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기존의 미국 핵우산 제공에 MD 참여를 내포한 ‘확장된 억지력’을 명문화함. ‘동맹 재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미국이 진행하는 세계 전략에 따라 분쟁지역에 한국군의 파병 등이 더욱 확대되는 연루의 딜레마에 빠질 우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둔 미군이 개입함으로써 중국 등 관련 당사국의 반발을 낳는 것에 대한 제어장치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참전 지역에 한국군 동반 참전의 길을 열어둔 위험한 내용임.
- 문제는 미래비전 등 한미동맹 변환강화의 저지, 나아가 군사동맹의 해소를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낼 것인가 임. 그렇지 않으면 역풍이 불게 될 가능성도 다분. 노무현 정권이 동맹 변환의 위험성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만 사례는 단지 그들의 인식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치부할 수 없음. 분단 반세기 이상 절대화되어 왔던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거의 신화의 수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거슬러 동맹체제의 해소를 전면에 내걸고 관철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임. 일반 국민들은 한미동맹이 없으면 곧 남침을 당하거나, 동맹을 군사적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긴밀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음. 그리고 동맹의 변환·강화에 따른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위험을 잘 모르는 가운데, 외교·국방 관리들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고 있음.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지역적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에 대해 사회 전반적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방안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도출할 필요.

■ 목표

- 호혜 협력적인 지역 질서 구축
- 잠재적 안보위협이 현재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방지

■ 방법

1. 국회 차원의 ‘한미동맹 미래비전’ 폐기 결의

- 대통령이 바뀌기 전일지라도 국회 차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이 분명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폐기를 결의.

2. 국회 차원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와 대안 위원회’ 설치, 국민적 지혜 모으기

2-2. 평화협정 인준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추진

■ 현황과 선정 이유

- 한미동맹의 예측성은 작전통제권의 미군 보유로 상징됨. 1950년 7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지휘권 양도 휴전이 성립한 이후에도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계속 갖게 됨으로써 예측적인 한미연합군사체계가 공고화됨.
- 노무현 정권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2일 환수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과 군 원로 및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27일 오바마 대통령과 전시작권통제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함.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공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계속 보유함.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은 미군에 의해 작성되는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의 국방전략이 결정되고, 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장비를 한국군이 비합리적 조건에도 도입하고, 해·공군은 미국에게 크게 의존하고 육군이 비대한 기형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며, 군비증강을 구조화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음.
-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법적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주장.
- 즉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에서 나아가 군사동맹이 없는 평화체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함. 평화협정 인준 단계에서 한미동맹 해소의 상징적 행위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목표

-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군사동맹의 해소
-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등과 별개로 동맹체제를 유지할 명분으로 내세워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철폐를 내세움으로써, 평화체제와 동맹체제는 병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방법

1. 평화협정 인준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추진

-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 및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평등한 한미관계를 형성하고 평화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동맹체제와 조약의 폐기이외에는 대안이 없음.

2. 한미관계 정상화 방안 추진

- 평화체제와 연동한 한미동맹 해소를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상 개시를 촉구하고, 그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고 검토 받도록 함.
- 정부 차원에서 ‘한미관계 정상화 전략대화’ 추진으로 양국 관계의 평등과 한반도 평화의 구조화를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합의를 추구하도록 촉구, 제도화 추진.
-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역할과 국민적 일치감 형성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국회는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여론 수렴과 새로운 한미관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나감.

통합진보당 2012 총선

통일 분야 공약.

1. 남북관계의 정상화·제도화·활성화로 통일기반 조성!

2. 국가보안법 폐기!

연구위원 김수현(with3@dreamwiz.com)

1. 남북관계의 정상화·제도화·활성화로 통일기반 조성

공약

1.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즉각 해제, 인도적 문제 해결

⇒ 남북 교류·협력의 재개와 전면 확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 마련

2.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률 정비

2.1.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

2.2 중단 없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정비

⇒ 정치적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안정화와 확대 도모

3. 남북철도, 남북터 가스관 연결로 남북물류 협력의 비약을 위한 토대구축

⇒ 남북공동경제발전을 통한 안정적인 평화통일 기반 조성

4. 남북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남북경제협력공사 구성 추진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5. 남북 국회회담 성사와 정기 개최로 남북관계 발전의 정치적 뒷받침

⇒ 국회 차원의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복원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환경 조성

1.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즉각 해제, 인도적 문제 해결

■ 현황과 선정 이유

-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는 소위 ‘5.24조치’를 내세워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해버림.
다음의 표를 보면, 남북관계 단절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북한보다 남한의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한 각각의 경제적 손실 추정〉

[표] 남한의 경제적 손실효과

(단위: 만 달러, 명)

구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 유발
관광 사업	금강산 관광	75,350	147,878	54,322	20,326
	개성 관광	2,200	3,432	1,146	339
개성공단 사업		232,141	482,819	157,873	40,404
남북 교역		146,734	304,179	95,817	26,155
항공기 우회 운항		2,310	-	-	-
합 계		458,735	938,308	309,158	87,224

[표] 북한의 경제적 손실

(단위:만 달러/기간:2008년~2010년)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	남북교역	우회운항	합계
2008	2,508	-	1,020	6,512	-	10,040
2009	5,015	1,300	1,928	22,471	-	30,714
2010	5,015	1,300	2,784	37,871	659	47,629
합계	12,538	2,600	5,732	66,854	659	88,383

- 출처: 홍순직,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1. 8.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이명박 정부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현격히 줄어듦. 굶주리는 동포에 대한 식량지원도 막더니, 영유아나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겠

다고 했다가 연평도 사태 이후에는 그마저 중지됨. 정부는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으나, ‘5.24조치’의 해제 없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전망.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41>,
2012.02.20 검색.

- 대북 강경책, 특히 ‘5.24조치’는 남북 경험과 관련 종사자, 북한의 주민과 이산가족 등에 게만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를 낳고 있음.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피해는 냉전적 대결체제에 기생하는 일부 수구 세력을 제외한 민족 공동체 모두의 것이 되고 있음. 19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의 재개를 비롯해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복원·확대해 나가야 함. 특히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이고 우선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목표

- 안정적인 남북교류 전면 확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 마련

■ 방법

1. ‘5.24조치’ 즉각 해제 결의, 금강산 관광 사업 등 재개로 남북 간 신뢰 구축

-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의 상징인 ‘5·24조치’를 19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즉각 해제 결의. 대북 교류·협력 정책의 상징이기도 한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재개 함으로써 남북 간의 신뢰를 재구축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복원해 경험 등 교류·협력 사업

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2. 인도적 지원의 즉각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 북한에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면피용, 국내정치용의 대북 제안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이나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우선적·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과 조치 통해 성과를 이루어낼 필요.
- 인권법 제정 등 북한 망신주기용, 대북 대결정책 합리화와 대결 세력 지원용 정책의 철회와 자유권, 경제·사회적 권리 등 총체적 차원에서의 인권 제고를 위한 남북 공동협력 추구.

3. ‘5.24조치’와 같은 초법적인 남북관계 단절 조치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초법적인 ‘5.24조치’를 즉각 폐기.
- ‘5.24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자는 경제협력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경협사업자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던 남북경협사업이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에 중단,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

2.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률 정비

2-1.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현황과 선정 이유

- 지난 정부에서 남북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합의함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역사적 선언을 채택함.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행될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었으나 그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짐.
-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소위 ‘상생과 공영’의 정책은 북한의 선차적 행동으로서 ‘비핵’요구와 북한붕괴론의 속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20년이 되어가는 북핵협상의 역사와 우리의 대북정책의 상대인 북한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그 현실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음.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 이후에는 사실상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정책 전개.
-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탈냉전 이래 임기 내 남북 고위급 회담 한 번 못한 유일한 정부가 되고 말았으며,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게 됨.

[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구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명칭	화해협력정책	평화변영정책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정책환경	장기 남북 대립, 정권교체, 한미관계 돈독	남북관계 개선, 민주정권 2기, 한미관계 불안	남북관계 악화, 정권교체, 한미관계 강화
정책목표	남북관계 개선	냉전구조 해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
접근구도	남북관계→동북아 안보(단계적)	남북관계↔동북아 안보(병행)	동북아 안보→남북관계(구도변경)
정책효과	높음	불안정	매우 불안정
정책유형	포용정책(정책연속성)		대북적대정책(정책단절)
정책평가	남북 화해 협력 관계 유지 및 발전 한미동맹 유지, 남북대화와 교류 지속		남북화해협력 관계 파탄 한미동맹 절대적 강화, 남북대화 교류 파탄, 군사적 긴장 고조, 동북아 안보위기 조성

출처: 박순성, 서보혁, 김경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변화,” (2010. 10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중 발췌 및 첨부.

-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는 정부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남북간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큰 원인으로 작용. 남북간의 각종 합의에 대해서 정부의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이행을 해나갈 때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4년간 국민들은 몸으로 체험하게 됨.
- 따라서 남북 평화통일의 방향을 제시한 ‘6.15공동선언’ 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선언’ 전면 이행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목표

- ‘6.15공동선언’ , ‘10.4선언’ 이행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통일 기반 조성

■ 방법

1. ‘6.15공동선언’ , ‘10.4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준비위원회 구성

-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 ‘10.4선언’ 을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야가 참가하는 국회내 특별법 제정 준비위원회 구성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 ‘6.15공동선언’ , ‘10.4선언’ 의 이행에 있어 해당시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간다.
- 남북경제공동체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를 즉각 운영하고,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간다.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와 관련 합의를 즉각 실천해, 서해상 충돌 방지와 개성공단 활성화, 경협외 확대를 꾀한다.
- 남북 총리급 회담을 수시로(적어도 연 1회) 개최하여 두 선언 이행에 따른 현안 문제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 해결해 나간다.
- 6.15기념일을 제정한다.
- 정부와 국회는 ‘6.15공동선언’ , ‘10.4선언’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한다.
- ‘6.15공동선언’ , ‘10.4선언’ 이행에 따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2-2. 중단 없는 남북교류를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정비

■ 현황과 선정 이유

- 남북은 1971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 단결’의 원칙에 합의함. 이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등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합의가 있었음.
- 남북은 4대 경제합의서(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비롯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지구 출입, 남북열차운행, 남북해운합의,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23개의 합의서가 국회 비준 및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법적 효력이 발생함.
- 남북교류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의 절차 및 ‘보장’과 ‘지원’에 관한 것임.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간의 기본적인 관계,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남북회담대표 임명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분명치 않아 정부가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발전법은 강제성의 결여와 법적용의 무원칙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정부에 따라 남북이 기존에 맺은 합의가 부정되고 관계가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이들 대표적인 두 법률의 정비가 필요.

■ 목표

- 안정적 남북교류 확대로 남북 관계 발전 도모

■ 방법

1. 남북 기존 합의의 법제화와 중단 없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률 정비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이 법률에 따라 남북간 합의문 들이 국회비준, 국무회의 의결등 절차가 진행되어 왔으나 일관성 없는 법적용으로 많은 합의문들이 유명무

실화 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기존 합의와 새로운 합의에 대한 법제화 실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강경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원 축소, 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개악되어 왔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적인 판단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 법 제4조 제3호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사협정, 조약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한 법상 발효절차를 밝고 있으나 제23조에서 남북합의서의 효력규정을 두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
- 법률상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 및 공포에 관한 절차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반적인 체결, 비준 근거인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 된다는 절차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
- 경과조치의 문제에서 법 시행이전 합의서에 대해서 비준, 공포 등의 절차를 통해 법제화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
- 국무회의 상정과 심의의 자의성 규제.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도 없는 문제 해결.
- 제2장의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에서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예를 들어 제13조에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 정부는 무시하고 있음.

3.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방향

- 남북교류협력법상 ‘교역’을 ‘교역사업’이라는 용어 신설로 과도한 규제, 교역사업 등록제를 실시하여 통일부 장관이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사실상 통일부가 교역사업과 교역업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위한 구실이 되므로 개정.
- 북한의 단일창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체계구축을 이유로 설립한 남북교류협력진흥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
-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자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을 축소시키는 문제 해결.
- 남북한 주민접촉, 방문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모호한 조항에 따라 임의적으로 불허를 남발하는 문제가 없도록 개정.

3. 남북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로 남북물류 협력의 비약을 위한 토대구축

■ 현황과 선정 이유

- 남한은 사실상 섬의 상태. 지리적으로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나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배나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로 갈 수 없기 때문.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경제활동이 활발하지만 교류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
- 한국에서 비행기로 3시간 반 반경 이내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61개나 입지하고 있는 등 유럽에 버금가는 경제활동의 집중을 보여주고 있음.
- 세계 물동량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점유율은 2006년에 30.1%에 이르렀으며, 동북아지역은 2020년에는 2억7700만 TEU로 세계 전체의 36%를 차지할 전망.¹²⁾
- 특히 한반도가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양 날개로 구성되는 인구 6억4천만 명, 연 7조 달러의 동북아시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강점은 지역 내 교통과 물류의 가교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

[그림] 한반도 입지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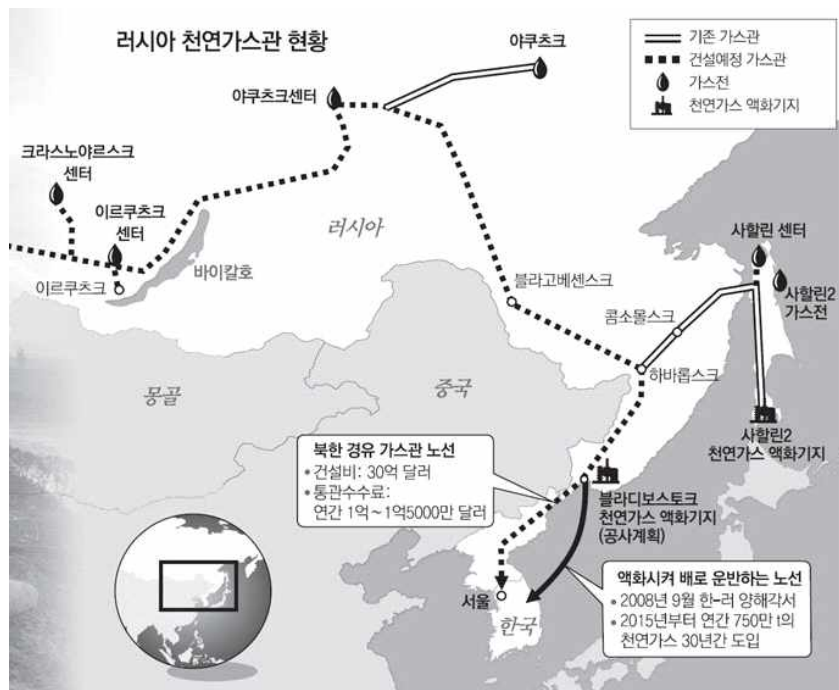
출처: 박양호, 이상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시장 차원에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비전과 발전구상”, 국토정책Brief 제159호, (2007, 국토연구원).

12) 이상준, 「남북물류포럼 동북아시아 교통 물류 혁신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과제」, (2009.5, 국토연구원), pp. 13-14.

o 남·북·러 가스관 연결

-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북한-러시아, 한국-러시아간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연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연결이 현실화 될 경우 해상 수송보다 비용이 3분의 1 이상 싸고, 북한 또한 통과료를 받는 등 남북 모두에 득이 될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것.
- 남·북·러 가스관이 건설될 때 한국은 연간 약 10억달러의 이득을, 북한은 국경통관 수수료로 연각 1억~1억5천만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으로 조사됨.¹³⁾

[그림] 남·북·러 가스연결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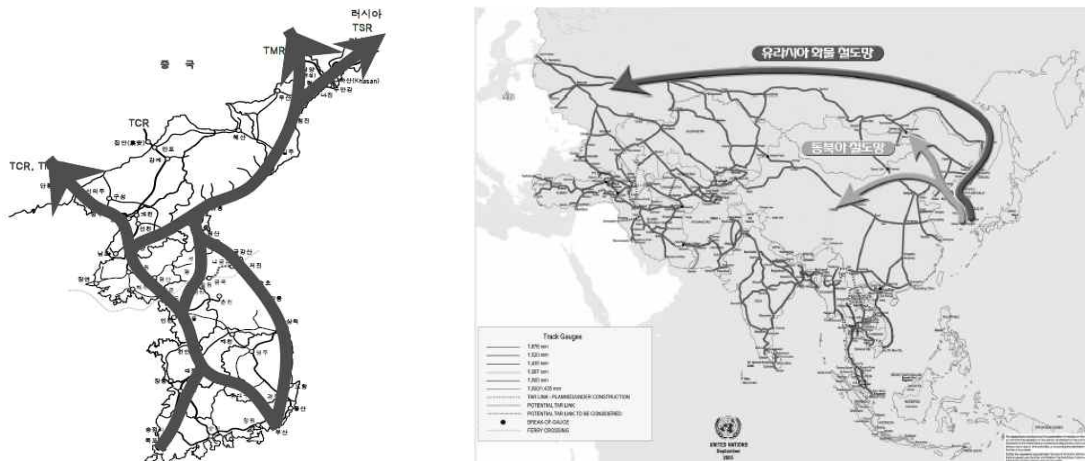
출처: 동아일보, 2011.09.03일자.

o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

- 부산에서 중국 대련까지만 보더라도 항구를 이용하는 것 보다 철도를 이용하면 물류비용을 1/3 수준으로 절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남북, 대륙의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물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

13) 이윤식,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2011, 통일연구원), p.36, 40.

[그림] 남북철도 연결 및 동북아-유라시아 철도망 구상



출처: 나희승, “남북경제협활성화를 위한 북한지역 철도 개선: 방안과 전략” (제12차 남북물류 학술회의 2008.6)

■ 목표

- 남북공동경제발전을 통한 안정적인 평화통일 기반 조성

■ 방법

1.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정상화로 남북경제 협력 사업의 확대

- ‘10.4선언’과 후속 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정상화시켜 경제협력사업의 실천과 확대.

2. 민족공동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및 남북철도 연계 추진

- 남북러 가스관 연결 및 남북철도 연결의 성사를 위해 국회차원 초당적 협력의 결의 추진.
- 남북 국회회담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의 정부와 의회 지도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 전개.

3. 실현 방법

- 남북관계 전면 개선을 위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의 의지 표명
- 정부, 국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 철도, 가스관 연결 등에 따른 재정 마련을 위해 남북 공동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추진,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충, 민간 대북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4. 남북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남북경제협력공사 구성 추진

■ 현황과 선정 이유

- 남북은 ‘10.4선언’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바 있음. 남북은 2007년 12월 부총리 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성공단, 조선·해운, 농수산, 보건의료·환경보호 등 4개분과위 개최와 동해상 입어와 어로 등 수산협력 및 ‘자원개발협력’, ‘경협제도’ 분과위를 설치하여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려고 하였으나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축소, 중단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전환과 함께, 민간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제교류가 정부당국간에 공식적으로 협의된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남북경협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합의된 사항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세부 추진 방안으로 남북경협을 총괄하는 관련 기구를 정비할 필요.
-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 협력사업 중 민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대표적 사업으로 북한 내 자원개발, 제2개성공단·서해평화협력지대·철도 연결 등 인프라 건설 사업, 제철산업 등이 있음.
- 남북의 지하자원 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력한 경제협력 사업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남북은 시범적으로 유무상통(有無相通) 방식으로 남한의 경공업 원료와 북한의 지하자원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이명박 정부 들어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북한 광물자원의 개발과 수출이 중국으로 선회한 상황. 광물자원 개발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수익성과 자금회수에 관해 일 정부부분을 보장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 그렇게 하려면 정부차원에서 담보하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

[표]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

광종	품위(%)	단위	매장량(가채광량)		남한의 수입의존율(%)
			남한	북한	
금	금속기준(Au100)	톤	30	1,000-2,000	98.49
은	금속기준(Ag100)	톤	1,175	3,000-5,000	87.54
동	금속기준(Cu100)	천톤	41	2,155	100

연	금속기준(Pb100)	천톤	305	6,000	99.96
아연	금속기준(Zn100)	톤	44	1,000-2,000	100
철	Fe 50	억톤	0.202	20-40	99.49
중석	WO3 65	천톤	99	200-300	100
몰리브덴	MoS2	천톤	10	수만톤	100
망간	Mn40	천톤	123	100-300	100
니켈	Ni3	천톤	-	10-20	100
흑연	각급	천톤	1,837	6,000	99.36
석회석	각급	억톤	44.65	1,000	0.65
고령토	각급	천톤	69,281	2,000	10.07
활석	각급	천톤	5,540	600	54.73
석면	각급	천톤	511	13	-
형석	각급	천톤	344	500	100
중정석	각급	천톤	711	2,100	99.84
마그네사이트	MgO45	억톤	-	30-40	100
무연탄	각급	억톤	3.5	117	57.09
유연탄	각급	억톤	-	30	100
인회석	-	-	-	수억톤	100

출처 : 대한광업진흥공사 남북자원협력팀, 『북한광물자원개발 현황』(2005.9), p.7.

■ 목표

- 담당 상설 기구 구성 등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안정적 발전 뒷받침

■ 방법

1. 남북경제협력공사 구성

-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남북경협사업을 당국이 보장함으로써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가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구성.

2. 남북경제협력공사의 사업 방식

- 유무상통(有無相通) 방식으로 남한의 경공업 원료와 북한의 지하자원을 교환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 즉 섬유, 신발, 비누 등의 경공업 원료를 미리 남북경제협력공사와 협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 조달받아 북한에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하자원 등 반대급부가 도착하면 남북경제협력공사가 이를 현금화하여 해당 업체에게 경공업 원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차관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 타당성 검토에 근거하여 현물 등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

3. 남북경제협력공사의 사업 내용

- 북한 내 자원개발, 제2개성공단,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 제철산업, 조선산업, IT산업, 관광 협력사업 등 ‘10.4선언’ 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에서 합의한 사업과 향후 개발 되는 사업들을 총괄 운영해 나가는 통로.
- 공사는 남북경협정보제공, 신규 경협사업 기획, 민간기업간 사업 조정, 경협자금 지원 등의 역할 수행.

4. 남북경제협력공사 구성을 위한 여건 조성

- 남북경협기업, 관계자, 시민, 전문가, 정부기관 등의 여론 수렴 및 공감대 형성.
- 정부와 국회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법률적 검토.
- 통일부, 재경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토지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된 기관을 포함 민관 준비단을 구성.

■ 재원

-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면 되므로 별도의 정부 지출 등은 필요치 않음.

5. 남북 국회회담의 성사와 정기 개최로 남북관계 발전의 정치적 뒷받침

■ 현황과 선정 이유

-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전면 파탄 상태이며, 복원을 위한 시도 또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국민적 요구이기도 함.
- 남북관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 혹은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권교체 이전부터도 국회 등 정치권 차원에서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될 필요
- 남북 국회차원의 회담을 위한 접촉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고, ‘10.4선언’에서도 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바, 19대 국회는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회담을 성사시켜야 함.
-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은 유일하게 북한의 정당(조선사회민주당)과 교류를 한 경험이 있으며, 남북 국회회담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구)민주노동당 대표단은 방북을 하여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직접 핵실험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한 바 있음. 그리고 2008년에는 개성공단 차단의 위기 상황에서 방북을 하여 그 유지가 필요함을 김영대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대표 겸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민감한 남북 간 정치현안 문제를 협의한 바 있음.

※ 남북 국회회담 추진 과정

- 1985년 두 차례의 예비접촉, 1988~1989년 아홉 차례의 준비 접촉 진행.
- 2005년 8월 17일. 북측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원기 국회의장 초청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방문/ 남북 국회회담 개최 문제 논의.
-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서 남북 국회회담 합의.
- 2008년 7월 17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제헌절 경축사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안.
- 2010년 2월 14일(서한도착).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한국 국회에 남북 국회회담 제의.

■ 목표

- 남북 국회회담의 성사 및 수시 개최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환경 조성

■ 방법

1.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위해 여야 포괄 초당적 준비모임 구성

2.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의 이행 보장과 제도화

-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 재개정과 정치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남북 국회가 공동으로 진행.

3. 국회회담의 정기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적 환경 조성

-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희구하는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국회회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평화통일이라는 원칙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환경 조성.

2. 국가보안법 폐기

공약

1. 국가보안법 폐기

⇒ 국가보안법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 학문, 출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음.
동 법의 폐기는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
기 위한 법 정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함.

1. 국가보안법 폐기

■ 현황과 선정 이유

- 남북은 ‘10.4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함. 남북이 정비하기로 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란 바로 국가보안법 등임.
- 남북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단체제의 법과 제도를 뛰어 넘었던 경험
이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부정과 남북 대결정책 추진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
-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 학문, 출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음. 이명박 정
부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러 진보·개혁적인 사람과 세력을 억누르고 수구 세력을 규
합하며 그들의 생존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그리고 이 법의 자의적 적용
으로 국제 사회의 비웃음을 사, 그들이 좋아하는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음.
- 국가보안법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수단이며, 분단
을 존속시키는 반인권, 반통일 악법임. 일부 개정이나 법 적용의 자제를 통한 사실상 사문
화 등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됨.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시대의 악
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의 폐기는 수구를 자임하지 않는 세력이라면 반드시 약속해야 할 것임.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 사례〉

- 1월 12일 풍자사진가 박정근씨에 대한 구속. 북한을 고무, 찬양한 것도 아니고 단지 풍자를 위해 북한 글을 SNS에서 리트윗했을 뿐인데도 구속함으로써 ‘뉴욕 타임스’ 등에서도 국가안보가 아니라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려하는 것이라고 비판당함.
- 1월 19일 전교조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4인에 대해 2003년부터 정부의 승인 하에 진행한 전교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
- 1월 27일 소위 ‘왕재산’ 사건 관련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형, 15년, 12년형 각각구형.
- 2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단체와 개인에 대해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다는 이유와 북한에 조문을 보낸 것(정부의 승인 하 실시), 소위 ‘왕재산’ 사건과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
- 2월 9일 인터넷 언론사 ‘자주민보’ 대표에 대해 찬양고무회합통신 혐의로 압수수색.
- 2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에 대해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 목표

- 국가보안법 폐기를 통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발전

■ 방법

1. 국가보안법은 폐기 이외의 대안이 없음.

- 19대 국회는 사상, 양심, 집회, 표현, 학문의 자유 보장,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함. 민주주의 및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천명하면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기 외의 대안을 천명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2.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더라도 형법으로 간첩, 내란죄 처벌은 가능.

- 형법 87조(내란), 88조(내란목적의 살인), 89조(미수범), 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91조(국헌문란의 정의), 98조(간첩)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폐지로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 군사상 기밀누출 또는 내란 등에 대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함.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외교 분야 공약.

1. 자주적 다자균형외교로 평화와 상생번영을 위한 새로운 동북아평화
공동체를 구현
2. 평화외교, 녹색외교, 공영외교를 통해 미국 등 강대국 중심 세계질
서를 극복하고 진보적 국제연대를 실천

연구위원 김승조(rusmir@naver.com)

I. 자주적 다자균형외교로 평화와 상생번영을 위한 새로운 동북아평화공동체 구현

공약

자주적 다자균형외교로 평화와 상생번영을 위한 새로운 동북아평화공동체를 구현

1. 한반도 안정 및 동북아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2.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발전 이룩
3. 한반도 및 동북아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신북방정책을 전개해 단절된 동북아 공간을 복원: TKR-TSR(한반도종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연계를 위한 남-북-러 3자 철도협력 추진 및 안정적 가스관사업을 위한 한러관계 개선
4. 화해 및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5. 재외동포에 대해 역사성을 갖고 전향적인 정책마련

1. 한반도 안정 및 동북아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한반도 안보에는 불변하는 실존적 명제가 있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갈등심화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며, 이를 완충시키면서 그 두 세력과 다같이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지혜가 우리의 생존번영 전략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임.
- 작금의 동북아정세는 한편으로는 대륙세력으로서의 중국의 급부상과 해양세력으로서의 미국 패권의 퇴조현상 속에서 양대 세력 간의 탈냉전적인 새로운 대칭적 체제현상을 맞으면서 협력과 갈등의 병존현상이 있는 반면에, 북미 간에는 냉전적 비대칭적 대결양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중층적 양극체제적인 정세라 할 수 있음.

- 21세기에 세계질서를 뒤집는 대규모 전쟁이 발생한다면 동북아 지역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러한 발발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자적 안보협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임. 특히 중국과 미국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이 화약고가 될 수 있음. 또한 분쟁강도는 차치하고라도 동북아지역에서는 도서(島嶼)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동북아 4강 군사력 비교		자료: 국방백서(2010) 등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병력(명)		145만8887	228만5000	102만7000	22만8536
국방비(달러)		6903억	780억	411억	456억
전차		5850	6550	2만3000	880
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500	81	430	0
지대공미사일		1281	290	2465	640
전투기		3550	1390	984	359
조기경보기		17	13	20	17
잠수함		71	65	66	16
항공모함		11	1	1	0
구축함		56	28	14	44

-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적 균형자세를 갖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주변정세를 만들어내기 어려움. 자주적 균형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국의 자주적 균형자적 역할의 더 발전된 토대가 되어줄 것임.
- 한반도의 정체성 확립과 항구적 평화구축과 ‘한류’를 위해서도 해양적 요소와 함께 대륙적, 유라시아적 요소들을 돌아보고 살려내야 할 시점임. 이에 화해와 협력과정을 통해 통일을 향해 가면서 주변 4강들과의 협력적 공생은 물론, 그 연결고리들을 한민족이 주도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임.

■ 목표

- 강대국 간 패권경합의 오랜 역사를 지닌 동북아를 상생과 번영의 질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임.
- 한반도 및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다자간협력제도 구축
- 동북아 3+3의 비핵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 방법

1) 동북아 3+3 비핵지대화 조성

-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협력적 질서 위에서 가동될 수 있기도 한 것이기에, 그런 점에서 동북아의 변화를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이미 형성된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세인식하에 현존하는 6자회담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동북아비핵지대 실현.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님.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도 북핵 폐기 및 평화협정 체결과 연동해 폐기되어야 함.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 또한 MD와 연동해 주변국에게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역시 중국, 러시아의 핵 불사용 약속, 평화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폐기되는 것이 타당함.
- 3+3의 동북아비핵지대화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과 함께 동북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남한과 북한, 일본은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 이동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임.

2)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 동북아비핵지대화가 6자회담과 NPT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적극 전개.
- 이를 통해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신뢰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협력의 다자적 제도화 법제 구축.
- 6자회담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 다자적 제도화의 실현에 있었기에 궁극적으로 동북아 차원의 냉전을 종결 짓는 평화조약의 성격을 내포하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기본 정신과 여러 원칙을 담은 규범력을 가진 최종의정서와 같은 합의문건을 합의 하에 작성.
- 새로운 동북아시대의 자주적 다자균형외교 수행을 통해 독자적 조정자로서의 역할 모색
- 그리하여 복잡한 동북아 체제구조 측면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이러한 동북아체제의 균형이 깨지고 냉전시기의 양극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임.
- 경성 및 연성을 포함한 한국 국력의 증대를 기초로 능동적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을 한국의 이익에 유리하게 주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즉 독자적 조정자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라는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임.

2.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발전 이력

■ 현황 및 문제점

- 중국이 미국과 함께 21세기 국제질서를 주도할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더욱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일로에 있으며, 그러한 변화 구도 속에서 우리는 중국의 대외전략과 정책방향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즉 21세기 우리의 대외전략에 있어서 중국요인은 미국요인과 함께 이미 최대변수로 자리 잡았으며, 따라서 대중국외교의 성패여하에 따라 국익의 득실과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
- 동북아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관계임. 또한 동북아에서 이러한 미중관계의 추이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핵심적 변인일 것임.
- 중국은 언제나 완충지대로서 한반도의 안정을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중국은 그 주체가 누구든 한반도 전체의 안정이 훼손되는 상황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행태를 보여왔음. 그 주체가 경쟁관계인 여타 강대국이라면 중국은 한반도의 정치세력을 지원해 세력권 보호를 시도하였음.
- 그리하여 천안함 사건은 미중 갈등의 한반도 전이라는 문제와 함께 미중 간 갈등이 한반도에서부터 촉발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교훈을 주었음. 그러므로 현재 미중관계의 변동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한국의 당면과제임.
-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음. 미국은 현재 중국을 ‘이익상관자’로 규정하면서 국제적 이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한반도 비핵화 및 그를 통한 안정은 이러한 미중 협조체제의 핵심 의제 중 하나임.
- 동시에 21세기형 한미동맹은 미국과 한국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가치동맹화’돼 있기에 폐기만이 유일한 대안임. 이는 미 패권주의, 소위 ‘아시아 회귀’의 방법론으로서 군사적 일방주의, 선제공격 전략에 동조하는 전쟁일체화 현상을 타파해 나가야 하는 일환이 될 것임. 또한 동맹 폐기 이후에도 우호적 관계 유지 가능함.
-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에서 미중관계와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실리적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는 전략적 목표와 이익에 대한 합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 한편 중국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2072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전년대비 32.6%나 늘어난 것임. 여기서 한국은 700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음. 한국은 이미 중국의 4번째로 큰 수입 지역이자 2번째로 큰 무역흑자지역임.
-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대중국수출액은 한국수출총액의 25%를 차지함. 이는

미국과 일본 양국에 대한 수출 총액보다 많은 것임.

- 2010년 중국이 유치한 외국의 직접투자에서 한국이 6번째로 약 27억 달러를 차지했음. 중국은 이미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가장 큰 대상국이 됐음. 이는 중국이 고속성장하면서 생기는 ‘배당금’을 한국이 나누어 가지는 동시에 그에 상응한 위험부담을 진다는 것도 의미함. 그 위험에는 미국이 중국 억제전략을 취할 때 중국경제가 침체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도 포함돼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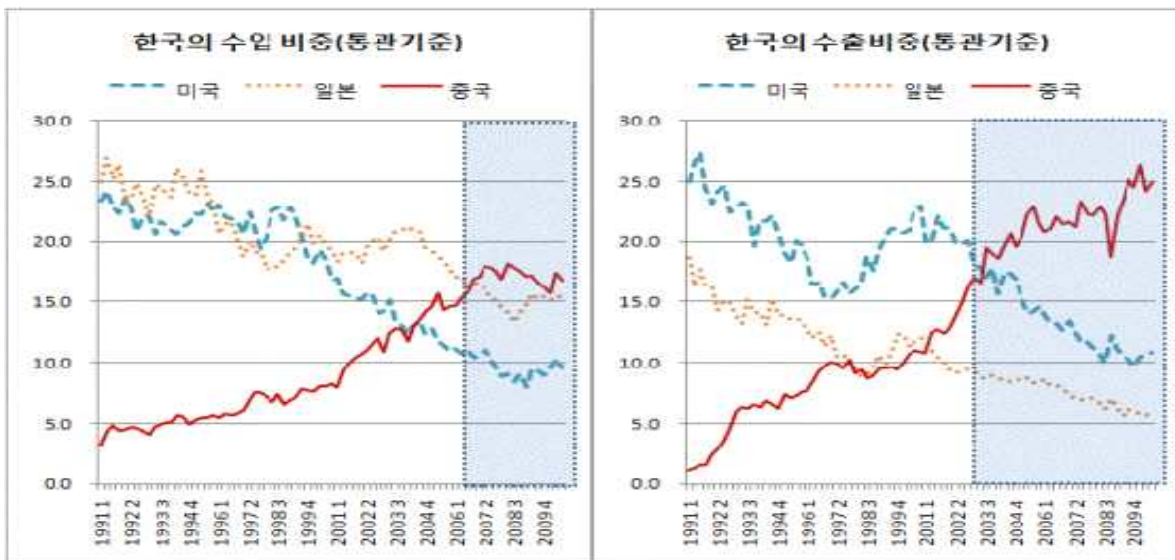
<중국과의 경제관계 심화>

-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EU(11.5%), 미국(10.7%), 일본(6.1%)을 모두 합한 것에 육박

<표-. 한국의 대 중국 무역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1992년	2001년	2006년	2009년	2010년	* 비중
대중국 무역규모	64	315	1,181	1,409	1,884	21.1%
대중국 수출	27	182	695	867	1,168(혹은 1,384)	25%
대중국 수입	37	133	486	542	716(혹은 688)	16.8%



<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

	'05	'06	'07	'08	'09	'10
중 국	232.7	209.0	189.6	144.6	324.6	452.6
미 국	107.6	95.3	85.5	80.1	86.1	94.1
일 본	△243.8	△253.9	△298.8	△327.0	△276.6	△361.2
중 동	△351.5	△430.7	△478.2	△750.0	△375.7	△427.3
E U	168.3	190.7	191.6	183.9	143.8	127.6
홍 콩	134.9	168.8	165.1	175.5	181.7	233.5
중남미	79.7	106.6	142.5	191.7	150.8	195.4
ASEAN	13.7	23.2	56.4	83.7	69.3	70.3
아프리카	32.6	33.6	39.4	53.3	52.8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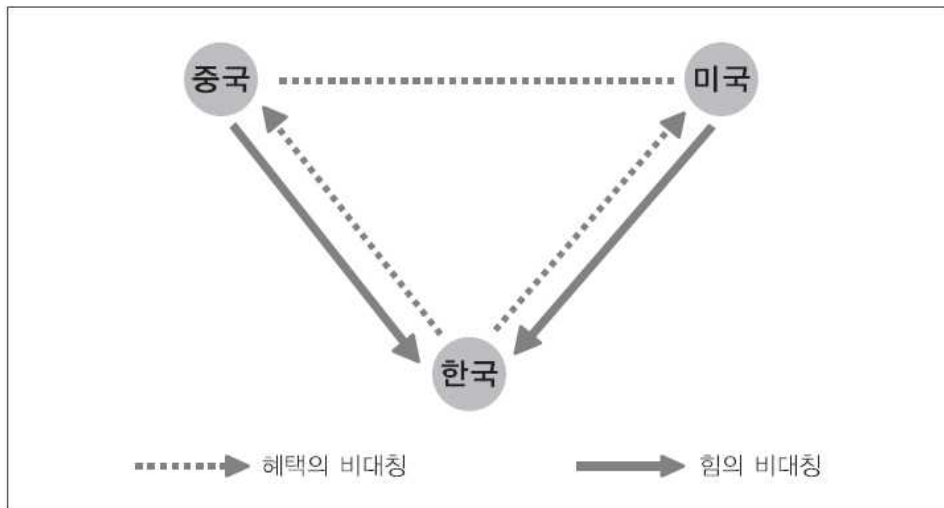
*출처: 지식경제부, “2010년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수출입 전망,” (2011.1.1.); 2010년은 한국무역협회의 관련 통계 자료 이용 작성.(2010년 괄호부분은 내일신문 2011.5.18.자)

■ 목표

- 동북아에서 대립과 협력의 불안정한 이중구조를 지속할 미중관계 속에서 고립과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MB식의 대미편중 외교정책 청산
-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주변 4강의 존재 등 외교의 지정학적 한계에 대한 인식과 동맹외교의 낡은 인식 틀을 벗어난 균형감각 있는 외교정책 수립
- 한미동맹 폐기 및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동시에 중국과는 균형 잡힌 다양한 협력기제를 마련
- 북미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로서 한중관계 개선

■ 방법

-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꾸고자 실천하고자 함.
- ‘한반도 평화 한미선언’ 채택
- 주한미군 철수와 기지 반환 협상 전개
- 미중관계가 우호적일 때 한국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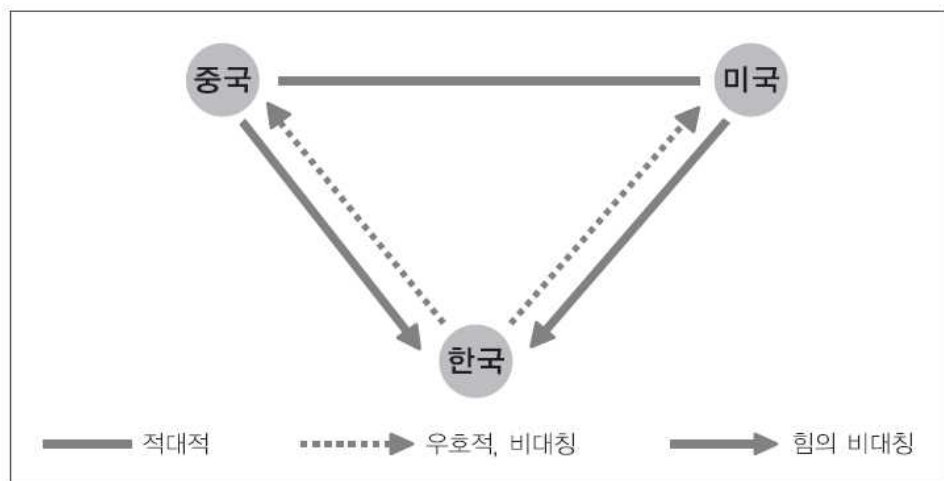


*한·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미중관계가 우호적일 경우의 삼자공존

(자료 : 백창제, 『미중관계의 장래와 한국외교』, 2011)

- 이러한 삼각관계는 한·미·중 3국 모두에게 유익함. 상호간에 호혜적인 이익의 거래가 이루어 지지만, 적대적 관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한이기 때문임. 그러나 힘과 혜택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삼자공존의 관계에서 하위 행위자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우선 혜택이 비대칭적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상위행위자는 지속적으로 하위 행위자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있음. 예컨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요구가 점점 커지거나, 중국이 한중 무역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압력을 높일 수 있음.

- 미중관계가 적대적일 때 한국의 대응



* 한·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미중관계가 적대적일 경우

(자료 : 백창제, 『미중관계의 장래와 한국외교』, 2011)

- 미중 간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한국이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인데, 이는 한국 으로서는 가장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임. 그러나 한미 동맹관계 및 양자결 합 하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움. 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경우일 것임.
- 삼자공존의 전략적 삼각관계가 가장 위험이 작은 구조일 수 있으며, 현명한 판단과 효과적 인 외교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임. 문제는 삼자공존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는 미중관계의 성격에 달려 있다는 점으로서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여 미중관 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삼자공존의 구조에 편입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임.
- 그러나 이런 식의 논리가 전형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논리여서, 오직 국가의 경성권 력만을 고려한다는 점일 것임. 경제적 상호의존이나 국제제도와 같은 연성권력 자원들을 포 함하여 논의하면 우리는 한·미·중 간 힘과 혜택의 비대칭성에서 다른 측면을 찾아볼 수 있으 며, 따라서 한·미·중 간의 삼각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그리하여 미중 간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담보하는 경제·정치·안보관계의 발 전을 위해 경제적 호혜, 정치적 선린, 안보적 협력의 3차원의 관계가 융합된 균형 잡힌 대미 정책 과 대중정책 실현.

3. 한반도 및 동북아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신북방정책을 전개해 단절된 동북아 공간을 복원: TKR-TSR(한반도중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연계를 위한 남북러 3자 철도협력 추진 및 안정적 가스관사업을 위한 한러관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분단된 한반도의 연계뿐만 아니라 단절된 동북아 공간 복원이라는 의미가 있음. 남북·대륙 철도연결 사업은 동북아를 통합하는 국제 승객철도망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국제화물 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임. 이 사업으로 한국은 남·북·러 3자 협력으로 남북협력의 선 순환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동북아의 경제·안보협력에 기여하고 동북아협력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통일과 동북아 통합으로 이어지는 상호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음.
- 3자가 공히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라시아 물류수송망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남·북·러가 중단되었던 TKR-TSR 물류협력을 시작해야 함. 이는 유럽철도망이 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유럽의 경제·사회·문화를 통합하여 EU결성을 앞당겼듯이, 남·북·러간의 TKR-TSR 협력이 유라시아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협력 인프라가 될 것이고, 1000km의 가스관 중 700km는 북한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가스관 사업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갈 것이라 전망됨.
- 지난해 말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스관설치에 관한 협력과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공동선언문 채택결렬과 천안함 사건 이후 러시아가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고 냉랭하고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주며 한국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태도와 함께 에너지사업이 갖고 있는 안보전략적 요소를 활용하며 에너지민족주의 경향을 나타내는 러시아를 상대함에 있어서 MB정권의 대미편중적인 외교정책이 중국과 갈등을 빚었던 전례를 미루어 피상적인 가스관사업체결과 이에 따른 에너지의존은 2006년과 2009년 유럽으로의 가스관 차단사태 등을 볼 때 그 위험성으로 보아 보다 심층적이며 다면적인 대러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임.

남·북 종단 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 철도



자료: 한국경제 2007.9.5기사 그림 재인용

* 한반도(부산)-유럽(베를린)간 철도와 해운과의 비교

	운송수단	운송거리 (km)	운송시간	운송요금 (US\$/TEU)
철도	만주횡단철도 경유	10,950	20.4일	1,280
	러시아횡단철도 (부산~모스크바~베를린)	12,350	21.4일	
	몽골횡단철도 경유	11,250	21.4일	
해운	유럽(부산~로테르담~베를린)	20,500	34일	1,340~1,540
	중국(부산~상해)	913	-	298

자료: UN ESCAP, Development of Asia-Europe Rail Container Transport Through Block-Trains, 1999.

■ 목표

- 분단된 한반도의 연계뿐만 아니라 단절된 동북아 공간 복원
- 동북아지역 협력 인프라 구축
- 한러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평화 및 동북아 정치적 발전 및 경제적 이익 도모

■ 방법

- 의사결정기구·사무국·전문가그룹으로 이루어진 ‘(가칭)남·북·러 철도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러간의 TKR-TSR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다양한 채널구축의 일환 및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과정으로서 근시안적 대러외교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로서의 대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에너지만 가져오는 나라로서의 상대가 아닌 정치, 문화 등의 정책적 교류 활성화

4. 한해 및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 현황 및 문제점

- 당의 일본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은 ‘일본의 과거 전쟁에 대한 책임’에 근거해서 ‘재무장화의 부당성’을 논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 등을 포함해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책임 표명과 사죄 그리고 한일 협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상(재일동포 등)에 대한 처리 등의 촉구가 일반적인 것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추궁의 성격만 강하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지나친 한반도 중심의 접근이 가져오는 인식상의 한계에서 벗어나 일본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당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독도문제에 대한 입장을 매듭지었음.

■ 목표

-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수립을 위한 전단계로 일본의 과거사 책임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표명과 사죄를 통해 교과서문제, 독도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 아시아중시외교를 지향하는 일본민주당정권과 동북아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일 양국의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방안 모색.

■ 방법

- 2차대전 시기 ‘대동아공영’이라는 제국주의적 명분을 가지고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폭력적 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주된 피해자인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인신적 피해에 대한 일본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공식사과와 피해배상을 이끌어 내는 것임.
- 국회에서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법안을 통과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임.
- 한편으로는 일국가 차원을 넘어서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는 연대를 통해 과거사 해결과 평화를 지향하는 동북아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5. 재외동포에 대해 역사성을 갖고 전향적인 정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재외국민은 해외거주, 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분단을 겪었기 때문에 국적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재외동포들이 있다. 일본에서 아직 무국적상태에 있는 조선적 동포, 최근에 국적회복신청을 한 중국동포, 나아가 북한주민을 광의의 한국민으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탈북자의 문제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음. 무엇보다도 독립운동 등 한국 근대사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서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던 조선족 동포가 갖고 있는 역사성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진보적 관점에서의 전향적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임.

1. 재외동포현황 총계

(단위 : 명)

연도별 지역별	2007	2009	2011	백분율(%)	전년비 증감율(%)
아 주 지 역	4,040,376	3,710,553	4,063,220	55.90	9.50
일 본	893,740 ①(296,168)	912,655 ②(320,657)	904,806 ④(326,671)	12.45	-0.86
중 국	2,762,160	2,336,771 ③(1,923,329)	2,704,994	37.21	15.76
기 타	384,476	461,127	453,420	6.24	-1.67
미 주 지 역	2,341,163	2,432,634	2,521,470	34.69	3.52
미 국	2,016,911	2,102,283	2,176,998	29.95	3.55
캐 나 다	216,628	223,322	231,492	3.18	3.66
중 남 미	107,624	107,029	112,980	1.55	5.56
구 주 지 역	645,252	655,843	656,707	9.03	0.13
독립국가연합	533,976	537,889	535,679	7.37	-0.41
유 럽	111,276	117,954	121,028	1.66	2.59
중 동 지 역	9,440	13,999	16,302	0.22	16.45
아프리카지역	8,485	9,577	11,072	0.15	15.61
총 계	7,044,716	6,822,606	7,268,771	100	6.54

- ① 1952~2005년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 ② 1952~2008년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 ③ 2000년도 중국 전국인구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 ④ 1952~2010년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2.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단위 : 명)

지역별 자격별	재 외 국 민				시민권자 (외국국적)	총 계
	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 학 생		
아 주	1,361,698	520,252	680,133	161,313	2,701,522	4,063,220
일 본	578,135	461,627	96,146	20,362	326,671	904,806
중 국	369,026	4,161	307,142	57,723	2,335,968	2,704,994
기 타	414,537	54,464	276,845	83,228	38,883	453,420
미 주	1,290,496	603,402	559,920	127,174	1,230,974	2,521,470
미 국	1,082,708	464,154	512,938	105,616	1,094,290	2,176,998
캐 나 다	128,826	85,951	22,084	20,791	102,666	231,492
중 남 미	78,962	53,297	24,898	767	34,018	112,980
구 주	116,784	23,644	53,920	39,220	539,923	656,707
독립국가연합	12,137	420	9,303	2,414	523,542	535,679
유 럽	104,647	23,224	44,617	36,806	16,381	121,028
중 동	16,163	20	15,509	634	139	16,302
아프리카	10,883	1,573	8,072	1,238	189	11,072
총 계	2,796,024	1,148,891	1,317,554	329,579	4,472,747	7,268,771

출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2011년 기준

■ 목표

-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법령제정 및 정책수립

■ 방법

- 외교통상부의 개혁: 재외동포에 대한 법령 및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외교통상부가 변화하지 않으면 주춧돌없이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법 또는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의 지원이 필수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외교통상부가 별다른 인적, 물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보아 이러한 작업과정은 오히려 외교부의 몸집 키우기로 전락할 수 있기에 외교통상부의 개혁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행정 편의적, 자의적 해석을 벗어난 합리적 사고와 역사적 각성을 바탕으로 동포를 차별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할 것임.
- 재외동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

II. 평화외교, 녹색외교, 공영외교를 통해 미국 등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를 극복하고 진보적 국제연대를 실천

공약

평화외교, 녹색외교, 공영외교를 통해 미국 등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를 극복하고 진보적 국제연대를 실천

1. 번영과 상생의 지구촌을 위한 평화·녹색·공영외교
2. 이란(중동)지역과의 녹색외교 및 공영외교 실현
3. 진보정권이 만개(滿開)한 중남미국가들과의 공영외교를 통한 국제연대 실천

1. 번영과 상생의 지구촌을 위한 평화·녹색·공영외교

■ 현황 및 문제점

- 탈 식민이 시작된 지 수 십년이 경과했음에도 세계질서는 여전히 미국 등 강대국 지배 상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 대표적 국제기구인 UN과 그 산하 기구의 경우, 2차대전 종전 당시의 국제질서를 반영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그 개혁의 방향도 독일, 일본 등 신흥 강대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으로 왜곡되어 전개되고 있음. 이런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다시 국제 사회에서의 그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그 결과는 강대국의 자의적 개입에 의한 국제분쟁의 지속, 남반구를 중심으로 한 저개발국들의 과도한 부채와 빈곤의 지속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인간 문명과 생태계 대부분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 국제 연대와 외교적 노력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미국 등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추종하면서 단기적 국익 추구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황. 패권에 추종하는 군사개입, 아제국주의적 착취 및 경제규모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의 대외

원조,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기회주의적 처신과 핵 발전소 수출을 통한 지구 생태계 위협 등이 그 예임.

- 외교의 중심축을 적극적인 평화외교·녹색외교, 대외원조의 확대와 공영의 국제경제질서 추구로 전면시켜야 함(평화외교는 해외파병 금지로 같음함).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은 단기적 이익, 가시적 성과 위주에 머물므로써 ‘수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통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국제규범에 못 미치고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일정한 개선을 보인 것은 사실. 그러나 2012년 현재 GNI 대비 0.15%에 머무는 등 비슷한 경제 수준과 규모의 국가에 비해 절대적 지원액이 현격히 낮음. 게다가 구속성 원조와 유상원조 비율이 2010년 가입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높고(양자 간 원조 중 유상원조 비율 37%:10% 등), 소수 대기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낮고 비공개 정보가 많은 등 보편성, 효과성, 투명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
- 1인당 개인소득 900달러 미만 등의 최빈국은 1971년 24개국에서 2011년 현재 48개국으로 오히려 증가. 최빈국들의 부채 규모는 2009년 현재 1600억 달러 수준. 이자료만 매년 수십억 달러 지출.

■ 목표

- 강대국 중심의 패권적·위계적 세계질서 극복
- 강대국과 약소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공존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질서 구축

■ 방법

- 1) 유엔 및 IMF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 추진
 - 상임이사국 중심 안보리의 민주화와 총회의 권능 강화 등 유엔의 민주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 IMF 등 미국의 패권을 제도화하는 국제기구의 민주화 추진
- 2)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외교 전개
 - 교토의정서 이후 후속 체제의 조기 성사 노력

- 지속가능성에 있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와 외교 활동 전개

3) 대외원조 증액과 개발(발전) 지원 방향으로의 개혁

- 공적개발원조(ODA)를 UN 권고수준인 GNI 대비 0.7%까지 단계적 증액 추진.
- 자원 개발 등과 연동하지 않은 원조 소요 국가나 단체의 필요에 입각, 장기적 자생을 돕는 개발(발전) 원조 시행. 원조청 설치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조 시행.
- 어린이 교육기회 제공을 전제로 최빈국 부채 전면 탕감.

4) 동아시아 차원 공존·공영의 통화·물류·에너지 공동체 형성을 필두로 공정무역, 공생의 국제 경제협력 추진

- 동아시아 통화·물류·에너지 공동체의 형성
 - 동아시아통화공동체 : 통화 스와프의 확대를 넘어 AMF(동아시아통화기금) 구성
 -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 : 철도 연결, 러시아 천연 가스의 공동 이용을 위한 가스관 건설 등
 - 동아시아 비핵·재생 에너지 협력 기구 구축 : 탈핵의 장기 목표, 핵발전소의 해체 이전의 사고 예방대처 등 안전성 제고 방안 및 정보 공유, 재생 에너지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과 공동 투자 등
 -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 : 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지역 내 낙후 국가에 대한 개발 지원

2. 아랍(중동)지역과의 녹색외교 및 공영외교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해 아랍지역에서의 민주화변혁운동은 단지 독재타도라는 정치적 현상에 그치지 않는 사상혁명이며 ‘새로운 틀의 21세기 혁명’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중동은 주지하다시피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의 세계전략상 핵심이익이 교차하는 곳임.
- 아랍의 민주화란 단지 정치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또 과거에는 중동 전반의 경제 구조가 유사했지만 민주화를 통해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 경제적인 특성이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음. 그리하여 왕족, 독재 군부의 최고 권력자가 발주와 낙찰을 결정하던 관행에 벗어나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마련할 것임. 더불어 아랍권은 이제 석유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데 전력할 것으로 전망됨.
- 이같이 민주화를 통해 다양성이 커지면서 아랍권도 앞으로 정당정치에 기반을 둔 다원화 사회로 진화할 것이기에 향후 아랍권에 들어설 새로운 정치역학의 틀에 민중중심적인 진보적 관점에서 녹색외교 및 공영외교 실현을 위해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임.

■ 목표

- 다양화되어 가는 아랍 국가들과 쌍무적, 동반자적 관계수립
- MB식의 기만적인 국내용 자원외교가 아닌 녹색외교 및 공영외교 수립

■ 방법

- 앞으로는 아랍 국가들과 쌍무적,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과거처럼 민주화나 인권보다는 우리만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할 것임.
- 석유 수입, 상품 및 플랜트 수주 등에 집중해 온 한국과 서방 기업의 진출 방안은 이제 바뀌어야 할 것임. 단순한 상품수출 혹은 플랜트 수주의 틀에서 벗어나 조인트벤처를 통한 제조업 분야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로비와 인맥에 의존한 수주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플랜트 수주 방안도 수립

해야 할 것임.

- 보다 동반자적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른 새로운 중장기 진출 전략이 마련된다면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녹색외교 및 공영외교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3. 진보정권이 만개한 중남미국가들과의 공영외교를 통한 국제연대 실천

■ 현황 및 문제점

- 작년 6월 페루대선에서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중남미지역은 명실상부하게 진보진영이 만개하고 있음. 현재 중남미대륙에서는 11개국에서 진보세력이 집권하고 있음. 고물가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던 브라질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톨라 브라질 대통령의 성공기에 힘입어 중남미 지역에서 중도 진보세력의 인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
- 지난 페루대선에서 반신자유주의 후보가 당선된 것은 아주 크고 다양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음. 우선 90년대부터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신자유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반헤게모니적 대안적 사회운동이 강력하게 부상하면서 퍼진 정치, 사회적 변혁의 흐름에 상당한 힘을 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중남미 주요국 집권자 정치 성향

국가	지도자(집권시기)	정치 성향
페루	오안타 우말라(2011)	중도 좌파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2010)	"
우루과이	호세 무히카(2009)	"
엘살바도르	마우리시오 푸네스(2009)	"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2008)	"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	"
칠레	세바스티안 피녜라(2010)	중도 우파
멕시코	펠리페 칼데론(2006)	"
쿠바	라울 카스트로(2011)	강경 좌파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2007)	"
니카라과	다니엘 오르테가(2007)	"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2006)	"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1998)	"

자료: 서울경제(2011)

- 톨라정부는 정치적 대립보다는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치를 펼쳤음. 톨라의 노동자당은 2002년에는 변화를 위한 선택에 힘입어 집권했지만, 2010년 대선에서는 변화가 아닌 안정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음. 진보정당이 안정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톨라와 노동자당의 집권 8년이 만들어낸 새로운 정치지형 변화임에 틀림없을 것임.
- 지난 10년간 중남미에서는 변화의 새로운 주역들이 등장했음. 이들을 대변하는 진보정부들

이 집권하면서 이 대륙은 더욱 민주적으로 변했음. 경제가 다시 성장을 시작했고, 사회의 최하층 서민들의 삶도 현저히 개선됐음.

또한, 이제 중남미는 더 이상 미국의 뒤뜰이 아님. 중남미 국가들의 통합운동으로 이 대륙에 제2의 독립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 브라질은 바로 통합하는 중남미를 대표하고, 남반구 빈국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부상하고 있음.

■ 목표

- 미중패권이 세계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가장 부각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지역통합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반신자유주의적인 진보정권이 만개한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공영외교를 통한 국제연대 실천

■ 방법

- 세계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미국 등 부국중심의 신자유주의 도그마에서 벗어나게 하고 개도국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도록 연대
- 그리하여 세계 여러 기구회의에서 공동전선을 구성하며 세계금융기구들의 개혁, 달러체제의 개편, 국제연합의 개혁, 기후 및 환경문제 등 다양한 의제들에 적극적으로 연대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청년세대 공약

1. 청년

2. 청소년

연구위원 손우정(roots96@hanmail.net)

청년 공약

공약

1. 19대 국회 1호 법안은 반값등록금 법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법인전입금 확충의무화/사립대학에 법적 운영경비부담 의무화/교육재정 확충/국립대재정회계법 반대/국립대 수업료 기존 등록금의 50%미만으로 인상

2. 대학을 대학답게! 국립대 체제개편으로 교육공공성 확보!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권역별 계열특성화에 기반 한 국립대 확장전략

3. 일자리 늘리기 5대 전략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공무원, 교사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원/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공공부문, 대기업5%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4. 실업부조 도입으로 청년층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보험법 개정/청년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5. 국가부터 '좋은 일자리 육성' 으로 고용의 질 Upgrade

좋은 일자리 육성계약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개정)/대기업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6. 고용불안 Down! 기본생계보장

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 엄격 제한

7. 노동약자 노조설립, 이제 국가가 지원을!

단기 단순노동, 비정규노동 등 노동약자를 위한 노조 육성 프로젝트/청년희망센터 건립

8. 주거 걱정 Zero! 청춘을 위한 다섯 가지 주거대책!

20대 청년을 위한 1인가구용 임대주택 확대공급/1인가구용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대학 기숙사 건립 지원/소득별 임대료 차등/35세미만 1인가구 전세자금 융자

9. 청춘 낭비? 군대개혁, 화끈하게 제대로!

사병임금대폭 인상/복무기간 단축/군인권법제정과 군 옴부즈맨 도입/군대 내 사상검열 폐지/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10. 청년! 이제 '정치'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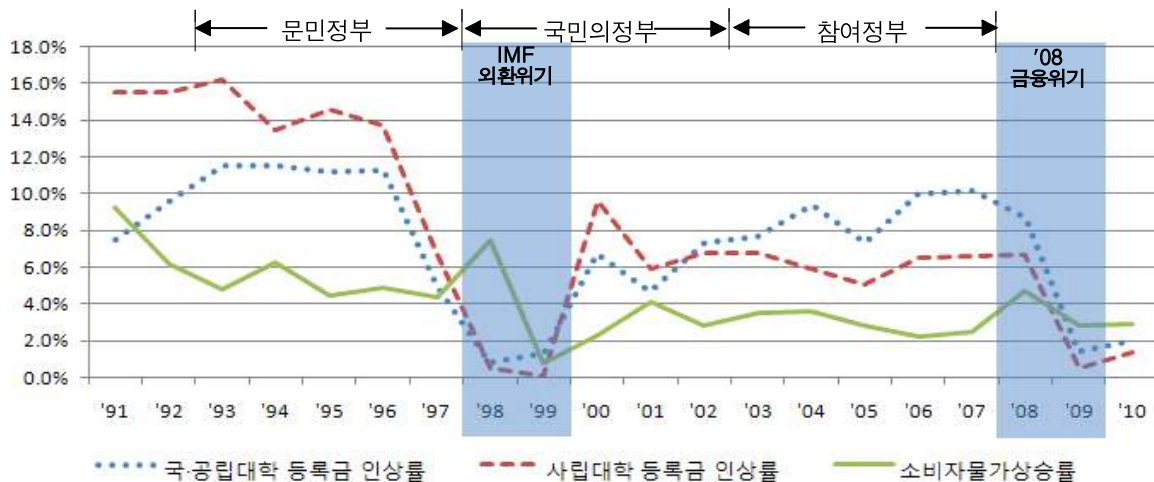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이 동일화(만18세)/공약금제도 개선/청년의원 할당제 도입

1

19대 국회 1호 법안은 반값등록금 법안으로!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인상되어와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음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한국 고등교육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음

구분	OECD 평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GDP 대비 비중(고등교육 시장 규모)	1.5	2.6
고등교육 비용 중 정부부담(국공립 운영, 사학지원) 비중	72.2	24.6
정부부담분의 GDP 대비 비중	1.1	0.6

자료: OECD(「Education at a Glance 2011」, 2008년 기준 분석)

- 따라서 막대한 등록금은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구분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1인당 등록금	754만 원	445만 원
등록금 수입	○ 등록금 수입: 총 9조 9,786억 원 - 수업료 9조 6,444억 원(96.7%), 입학금 3,342억 원(3.3%)	○ 등록금 수입: 총 1조 5,660억 원 - 기성회비 1조3,253억 원(84.6%)
등록금(기성회비)비중	교비회계 수입(16조214억 원)의 62.3%	기성회회계 수입(2조 1,401억 원)의 61.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사학진흥재단

■ 목표

- 반값등록금 즉시 실시
- 19대 제1호 법안을 반값 등록금으로!

■ 방법

- 반값등록금을 위한 19대 국회 전략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 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등록금 반값 실현 방안 개요(권영길 의원)

정부책임등록금제 도입! 고등교육 문제 해결!

정부지출		대학재정		고등교육 문제 해결
		수입	지출	
	=>	대학 등록금 반액(6.1조)	교직원 인건비(7.3조)	=> 대학등록금 반액
고등교육재정교부금 (12.9조)	재정 지원		정규교원 총원 및 시간강사 처우 개선(3조)	해결 교원 총원률 확보 및 시간강사 문제 해결
	=>		교육환경개선 및 연구력 증대(2.8조)	=>
법정부담금 (0.2조)				
총 13.1조		대학 직접 지원		교육 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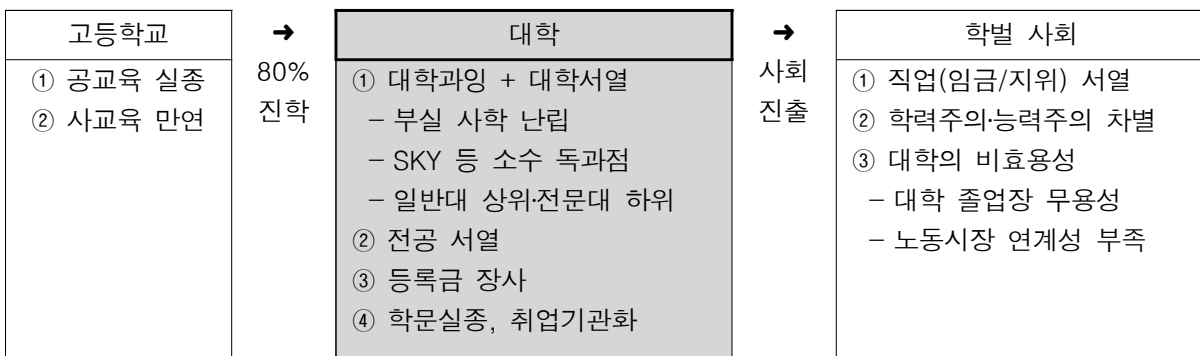
- 국립대 특화 전략
- 불법화된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합쳐 합법화하려는 국립대재정회계법 반대!
- 수업료를 기존 국립대 등록금(일반회계+기성회계)의 50%를 넘지 한도록 제한

※ 세부 사항은 교육분야 공약 참조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에서 대학 문제는 초중등교육을 비롯해 고용시장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 현재 대학은 질 낮은 고용시장에 비해 과잉되어 있으며 피라미드 형 서열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
- 교육의 질 또한 매우 낙후하며 단순 취업 준비기관으로 전락

한국 대학의 비효율적 기능과 폐단



■ 목표

- 불필요한 대학진학 없이도 차별 받지 않는 노동시장 건설
- 권열별 계열 특성화에 기반 한 국립대 확장전략(서울대 전국화 전략)

■ 방법

1.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제정 이유를 거창하게 밝히며, ‘차별금지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언론의 극렬한 반대로 학력,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

죄 및 보호처분 삭제

- 2010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수평적 학력(학벌)이 빠져 있는 ‘학력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이마저도 통과되지 못함
-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직적 학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 교육수준에 따른 동질혼이 세계 최고 수준. 불필요한 대학진학 없이도 사회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문화적 의식개혁 병행
-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직업을 가지면서 고등교육 학습이 용이하도록 평생교육체제 마련 => 각 대학에 일정 정원수 이상의 야간강좌 개설
- 기대효과
 - 불필요한 학력 과잉을 억제함으로써, 대학-대학생수가 일정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유도=> 부실 사립대학 퇴출, 국립대 체제로의 편입 조건 마련
 -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
 - 불필요한 사교육비 축소 유도

2. 권역별 계열특성화에 기반 한 국립대 확장전략

- 국립대 간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이른바 ‘3통’ 방안) 실시
- 부실·부패 사학 철폐 => 국립대로 편입
- 각 권역별로 특성화 계열 집중 육성
 - 수도권은 비인기·기초학문 중심, 지역은 인기·응용학문 중심
 - 특성화 계열 국립대 우선 무상등록금 실시
 - 특성화 계열 선정은 국토균형발전계획과 연계
- 장기적으로 사립대는 특성화 대학을 제외하고 국고 지원 중단, 자율성 보장

■ 재원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

※ 대학체제 개편 관련 공약은 교육 분야 참조

■ 현황과 문제점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의 양적 증대도 필요함
- 그러나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공공부문과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창업분야, 녹색분야가 되어야 함

■ 목표

-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
- 해당 분야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적극 개선

■ 방법

1.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 한국의 노동시간은 2010년 8월 현재 주당 평균 45시간으로 OECD국가들 중 월등히 높은 상황, 산술적으로 OECD국가의 평균 노동시간인 주당 36시간으로만 노동시간을 줄여도 4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
- 현재 유명무실화되어있는 연장근로 주당12시간 제한규정 강화 및 엄격한 적용
- 주야맞교대제 폐지 및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의 전환
- 공공기관, 대기업에서부터 노동시간단축을 시작하고 점차 중소기업까지 확대함.

2.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 청년층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내 환경(생태계 및 환경보호 감시, 생태복원, 생태관광, 생활환경), 문화(문화시설관리 및 안내/해설, 문화재 보호 및 안내/해설), 교육(사회공공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해설강사, 방과후교육, 청소년교육),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지도 및 관리) 보육/돌봄(보호자 없는 병원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 외주나 민간위탁의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직접고용·직접책임 강화

3. 공무원, 교사 OECD평균 수준으로 증원(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개정)

- 한국의 국민 대비 공무원수는 OECD 평균수치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민생 관련 공무원수는 28분의 1 수준.
- 현재 공적영역의 간접고용을 안정적인 정규직화 및 준공무원하고, 실질적인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수를 OECD국가의 평균수준으로 늘림.
- 교사 1인당 학생수 또한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 6.5명, 중학교 6.4명, 고등학교 3.2명이 초과하고 있어, 양질의 교육실현을 위해 교사증원은 필수적
-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전략에 따라 교사 정원 약 4만 4천여 명(초·중·고 포함) 확대 필요
- 방과후교육의 질적강화 시스템 마련과 이를 위한 방과후교사 증원, 교사들의 행정업무 축소를 위한 교육행정공무원의 확대 추진.

4.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청년창업기금 1조원 조성(무담보 저리 장기투자)
-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지원
- 청년창업기금 1조원 조성시 최소 5천개 청년소기업창업 및 2만5천개 일자리 창출

5. 공공부문, 대기업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공기업)과 대기업이 매년 신규고용의 5%를 청년들을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 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금을 강화
-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기대효과: 매년 7만개 이상의 신규일자리 창출

■ 현황과 문제점

- 정규직의 82~98%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31~33% 수준
- 실업률 급증으로 고용안전망을 확대·강화해야 함. 특히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소득 근로자층의 고용보험가입확대로 잦은 실직으로 인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함.
- 청년의 경우 대학을 다니는 중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졸업 이후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구직을 희망, 준비하는 실업자의 형태로 존재함.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가입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청년실업자처럼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안 되는 경우 실업부조 도입 등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함.

■ 목표

- 청년 층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에 대한 생활지원과 안정적인 구직활동 촉진

■ 방법

○ 고용보험법 개정

- 구직급여 수급요건완화(피보험단위기간 현재180일->120일로 축소), 구직급여 수급일수 연장(현재 90~240일->180~360일로 연장) 및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이후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자영업자 등에게 최저임금 8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지급(실업부조)
- 청년 문화예술인도 노동자성 인정, 고용보험 적용
- 직업교육프로그램 확대제공

○ 청년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사업장, 전일제(주당 평균 36시간 이상) 노동자 최저임금 130%이하 임금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최대80% 감면
- 10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50%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청년실업의 근본 문제는 양적인 일자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 때문
-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20-29세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고용률보다 하락(고용률 통계 발표 이후 처음)

20대 고용율과 전체 고용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29세	61.2	60.2	60.0	59.1	58.2	58.2	58.5
전체	59.7	59.7	59.8	59.5	58.6	58.7	59.1

-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의 양적 생산에 맞춰져 있기 때문. 고학력 대졸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고용율을 높일 수 없음
- 청년실업의 근본 해결은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맞춰져야 함(중소기업 인력부족율은 여전히 2~3% 내외를 기록 중. 문제는 최악의 질)

■ 목표

-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등 고용의 질이 낮은 기업이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
-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고용의 질 향상이 고용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

■ 방법

- “좋은 일자리 육성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근거, 국가와 계약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일정 수준의 고용의 질 지표를 충족시켜야만 입찰자격 부여하도록 강제함

- 핵심지표: 고용기회, 고용안정, 능력개발, 소득불평등, 근로조건, 고용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 참여·발언(노동조합 보장), 사회보장 등
- 원청만이 아니라 하청기업에도 동일 기준 적용

o 대기업 불공정거래 규제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일자리의 질 개선

-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원확대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규제강화
- 중소기업지원법, 불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 및 관리감독, 처벌강화

■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 치솟는 물가와 주택대란 속에서 청년층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사회양극화를 줄여나가고,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층을 비롯한 저임금노동자들이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함.
- 또한, 공식 비정규직 600만 시대(실질 비정규직 800만 이상), 2030 청년층의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임
-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0만원으로 정규직(272만원)의 절반수준(49.3%).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32~37%,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적용률은 17~33%에 불과하여 심각한 고용불안, 생활불안 상황에 놓여 있음

■ 목표

-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보장
- 청년 층 고용안정 보장

■ 방법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을 전체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
-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미준수 시 처벌강화

○ 비정규직 업적 제한

- 비정규직고용을 허용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시,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인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폐지, 민간기업 비정규직 25% 축소(OECD평균수준으로) 및 정규직화
- 정규직전환지원 및 공공부문 외주용역을 확대하는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 대기업-중소기업 하청관계 규제강화, 불법하도급 패널티적용 및 대기업 직고용 확대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차별 시 처벌강화

■ 현황과 문제점

- 2010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9.8%, 조합원수는 1,643천 명. 이중 교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조직률은 8.6%
- 이런 조직률은 OECD 주요국가 중 최하위권임. 또한 우리나라보다 조직률이 낮은 나라의 경우엔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낮은 조직률을 상쇄하고 있음.
-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규모와 고용형태별 노조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노조 조직현황과 소득양극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조합원 수(천 명)			조합원 구성비(%)			조직률(%)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4인	15	11	26	0.8	0.6	1.3	2.9	0.4	0.8
5-9인	52	16	68	2.6	0.8	3.4	5.5	0.9	2.4
10-29인	250	37	287	12.6	1.9	14.5	13.6	2.0	7.7
30-99인	429	41	470	21.6	2.1	23.7	20.1	3.3	13.9
100-299인	376	32	408	18.9	1.6	20.6	30.1	8.7	25.2
300인 이상	703	23	726	35.4	1.2	36.6	42.8	8.1	37.7
전규모	1,825	160	1,985	91.9	8.1	100	21.9	1.9	11.9

- 2007년 노동패널학술대회에서는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비조합원은 32.6%, 노조수요는 42.8%, 노조공급부족은 31.4%로 분석되어 개별노동자의 노조가입의사가 낮아서 조직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의 태도와 법·제도의 미비가 낮은 조직률의 원인으로 나타남.
-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목표

- 시간제 아르바이트, 청년 층 등 노동약자의 노조설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 함

■ 방법

○ 단기 단순노동(알바), 비정규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위한 노조 육성 프로젝트

-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는 국가가 사무실과 상근자 인건비 지원
- 조합원 30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국가기관, 국유건물, 지자체 공실 등을 활용하여 노조 사무실 제공
- 비정규직 평균임금으로 3인 이내의 상근자 임금 제공
- 지원 기간은 1년, 노조활동심사 결과에 따라 1차례 연장 가능
- 2013년 50개를 시작으로 점차 지원 대상 확대
- 국선변호사 풀을 활용한 무료 법률지원 보장

○ ‘청년희망센터’ 건립

- 고용, 교육, 문화, 사회안전망 등 종합적인 청년권익실현을 지원
- 청년층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관
- 고용 등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개념으로 정신적, 문화적 지원사업 병행
- 광역시 차원의 청년희망센터 건립 후 각 시군구별 센터로 확대해 나감(중앙정부와 매칭펀드)

■ 재정

○ 1개 노조 지원 비용

- (2011년 비정규직 평균임금 134만8000원 × 3인 = 4,044,000원) × 12개월 = 48,528,000원

○ 100개 노조 지원 시

- 4,852,800,000원(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주도한 ‘한식세계화예산’의 1/5 수준)

○ 법률적 근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개정하여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노동조합육성법을 제정함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대학교 재학생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23%, 서울지역은 재학생대비 15.4%(일반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11.4%)에 불과함.
- 특히 서울지역은 서울소재 54개 대학재학생)의 53%가량인 14만 명이상이 지방출신학생임을 감안할 때 대학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임. (서울소재 54개 대학의 학생정원은 약 27만 명임).
- 서울 YMCA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의 41%가 고시원 또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으며 52%가 최저주거기준이하의 열악한 주거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부담액은 전기, 가스요금 등을 제외하고서도 월세 30만 원이상 ~ 50만원미만을 부담하는 학생이 65%나 됨.
- 1인 가구가 23%로 증가하였음. 특히 1인가구중 직장인을 포함하여 2030세대는 20대가 29.7%, 30대가 26.2%로¹⁴⁾인데 이들은 대학생은 물론이고 직장이 있다하더라도 소득, 자산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층임
- 최근 저렴한 도심 주택이 사라지고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득과 자산이 없는 20~30대 1인가구는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됨
- 서울시는 다가구 재건축 또는 매입후 저소득대학생에게 시세의 20~30%에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용인원이 268실로 너무 적고, 국토해양부와 LH에서도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월세위주로 단기 거주하는 대학생의 실정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실적도 3,369건에 불과

■ 목표

-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공급
- 기숙사 부족 해결
-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대책마련

■ 방법

14) 2010년 조사통계로 대체해야함

1. 20대 청년을 위한 1인가구용 임대주택 확대공급

- 지역별 전체 공공임대주택공급비율 20%로 확대
- 대학가주변, 2030청년세대 밀집지역의 경우 1인가구용 임대주택 공급확대

2. 1인가구용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 주택공급계획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세우는 주택공급계획에 임대주택공급계획과 함께 청년노동자와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원룸형 주택공급규모를 포함시켜 발표

3. 대학기숙사 건립 지원

- 특히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해당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사업으로 진행함.
- 대학과 공공기관의 협약을 통해 기숙사건립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경우 출연금정도에 따라 입주자 선발권을 공공기관이 가짐
- * 조선대의 경우 전남지역 지자체에 출연을 요청, 1천만 원에 1명씩 해당지역출신자를 입주시키고 있음

4. 소득별 임대료 차등

- 대학생 : 수입이 없음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주변시세의 30%~50%
- 대학생이 아닌 20대 : 시설퇴소자, 청년실업자(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정규직(도시노동자 월 평균임금 이하)으로 구분하여 소득에 따라 주변시세의 30%~80%까지 다양화
- 고시원거주자의 97%를 포함해 전체 52%이하의 최저주거기준 이하 거주 청년세대 주거지원을 확대

5. 35세미만 1인가구 전세자금 융자

-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35세미만 청년층의 전세자금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남성에게 군대는 피해가기 어려운 곳일 뿐만 아니라 평생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소
- 민주화 이후 군대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폐쇄적 권위주의가 강하게 뿌리 내려 있음
- 군대는 인생을 낭비하는 곳이거나 권력에 순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민주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함
- 또한,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곳이라기보다 양심과 가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 목표

- 사병 임금 대폭 인상
- 복무기간 단축: 즉시 18개월로 재단축! 2020년까지 12개월로!
- 군 인권법 제정과 군 ombudsman 제도 도입, 군대 내 사상검열 폐지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 방법

1. 사병 임금 대폭 인상

- 평화체제 전환 시 실시할 모병제의 토대 구축.
- 군 복무기간 단축과 병행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복무기간 단축 및 그와 연동된 병 관리 차원의 장교와 부사관 감축만으로도 사병 인건비 인상을 위한 재정 충당은 충분히 가능
- 미군에 비해 과다한 장성 수 감축, 고가 무기 등 군 조달사업의 투명화 등 군 개혁, 평화체제 진전에 따른 군축이 병행되면 대대적 군비감축도 가능

예). 월 100만원 인상시 연 1,200만원 X 20만명=2조 4천억원 소요

- 2010년 군인인건비 중 장교·부사관 인건비는 93.1%로 약 7조원에 달함. 17만 5천여 명의 장교·부사관을 1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2010년 기준 약 3조원 감축 가능.

2010년 군인인건비와 인원 및 비율

	군인인건비(억원)		인원수(명)	
장교	3조 4,319.29	45.7%	71,440	11.4%
부사관	3조 5,615.76	47.4%	104,524	16.6%
병	5,162.42	6.9%	452,923	72.0%
계	7조 5,097.47 *	100%	628,887	100%

2. 복무기간 단축: 즉시 18개월로 재단축! 2020년까지 12개월로!

- o 2012년부터 매년 1개월씩 순차적으로 복무기간 단축하면 2020년에는 12개월로 단축 가능(원래 국방개혁 2020에 의해 총원 50만명에 맞춰 18개월 목표로 단축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1개월로 조정).
- o 2020년까지 군 총원 30만~35만명(사병 총 인원 20만명 내외) 수준 적절. 감축에 맞춰 12개월로 복무 단축. 현대 군이 필요한 전문성은 부사관 등의 충원으로 충분히 가능. 대만은 중국과 대치중인 현재도 12개월 수준. 평화체제 진전과 함께, 2020년 이후 실질적인 모병제 전환의 토대 구축.

3. 군 인권법 제정과 군 ombudsman 제도 도입, 군대 내 사상검열 폐지

- o 독서·정보 검색·청취 및 시청의 자유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유권의 보장, 전시 작전 지휘 외의 부당한 명령이나 가혹 행위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 인권법을 제정.
- o 군대내 폭력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군 ombudsman’ 제도를 도입.
- o 안보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감시와 역할 강화, 시민 인권기구의 감시와 조언 보장, 인권기관에 의한 군 인권 교육 강제.
- o 군인복무규율에 헌법에 대한 복종, 시민의 안전 최우선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군대 내 사상검열 등 구시대적 행태 폐기 명문화.

4.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 o 이명박 정부 들어 무산된 대체복무제 즉각 도입.

- 국제인권기구의 표준에 맞게, 다양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징벌적 성격이 없으면서도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1.5배의 기간을 복무하도록 추진.
- o 2020년 징집가용 인원 28만 5천명. 현역 복무 사병 20만명 외에 8만 5천명 정도의 인원 여유. 2030년 징집가용 인원 20만명. 평화체제 완전 정착 시 예상되는 병력 감축이나 모병제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면 광범위한 대체복무 도입으로 인한 복무 인원 부족 등의 논리는 타당성 결여

■ 현황과 문제점

- 선거권은 만19세, 피선거권은 만25세로 청년층의 요구를 직접 대변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30세 미만은 유권자의 40.9%를 차지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2.3%에 불과
- 현행 선거법 상 공탁금제도 또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의 직접적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는 5억 원,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 원,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 원,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 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 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200만 원

■ 목표

-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가로 막는 연령제한, 경제적 장벽을 해소 함

■ 방법

-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이 동일화(만18세)
- 공탁금제도 개선(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 지원)
- 청년의원 할당제 도입

청소년 공약

공약

1. 만18세로 선거연령 변경! 청소년 선거권 보장!

선거법 개정

2. 청소년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노동법 개정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년 노동조건 개선/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엄격한 적용, 감시/학교 단위별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

3. 위기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대

위기청소년들과 접근성을 높인 자치구별 청소년 문화공간(청소년 카페) 확대 설립/위기 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문가들의 직업 훈련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성교육을 위한 자치구별 담당 청소년지도사 배치 제도화/넓은 시설의 청소년쉼터 및 수련관을 청소년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개조 추진

4. 제도교육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확보!

제도교육 밖 청소년 교육지원법 제정/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제도교육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대안교육센터 건립/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 인정

5.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전담기구 설치

현재 여성가족부 내 구성되어있는 청소년 정책관을 분리하여, 대통령산하 또는 국무총리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승격, 설치/국가차원의 청소년 전담기구 위상에 맞는 실.국.부서의 전면 개편/국가예산 중 청소년 육성분야 예산 전폭적 확대/일반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및 참여를 보장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전담기구와 각 시.도 지자체,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소년정책 공동 추진 체계 마련/'보호' 차원의 청소년 정책 탈피, '주체적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연구 및 실현

1

만18세로 선거연령 변경! 청소년 선거권 보장!

■ 현황

-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만19세로 규정
-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정치참여 의식은 굉장히 높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해오고 있음
- 해외 사례에서도 대부분 18세 이하 선거연령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연령이 만19세 이상인 국가는 매우 드문 사례
- 이러한 국제적 변화와 흐름에 발맞추어 만19세보다 선거연령을 더 낮추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함

■ 목표

- 선거연령 만18세 이상으로 변경,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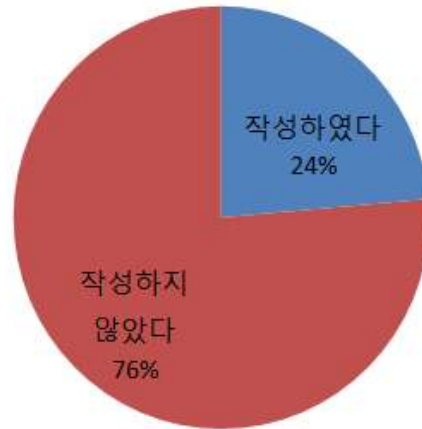
- 선거법 개정

■ 현황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의 수는 1,765만 명이며, 878만 명이 정규직이고, 887만 명이 비정규직
-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10명중 2명은 취업을 하고, 진학하는 학생들도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노동자가 됨.
- 지난 6월 전교조 산하 참교육 연구소가 주최하여 전국 고등학생 1681명의 노동현실 실태조사를 실시 한 결과 10명중 4명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노동인권 교육이나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본 학생 10명중 8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들 중 절반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으며, 실수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도 있고, 사고의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많음

		문9) 지난 1년간(2010년 7월 ~ 2011년 6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나요?						집단합계	
		① 현재 하고 있다		② 해본 적 있다		③ 해본 적 없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176	10.5%	449	26.9%	1046	62.6%	1671	100%
나이	16세이하	27	8.3%	64	19.7%	234	72.0%	325	100%
	17세	56	8.9%	170	27.0%	403	64.1%	629	100%
	18세이상	92	13.0%	212	30.1%	401	56.9%	705	100%
지역	대도시	62	7.6%	205	25.2%	546	67.2%	813	100%
	중소도시	62	13.1%	130	27.4%	282	59.5%	474	100%
	읍면지역	48	13.2%	105	28.9%	210	57.9%	363	100%
구분	인문계	13	1.9%	128	18.4%	553	79.7%	694	100%
	전문계	142	16.3%	291	33.5%	436	50.2%	869	100%
	특목고	2	20.0%	4	40.0%	4	40.0%	10	100%
	종합고	10	18.9%	13	24.5%	30	56.6%	5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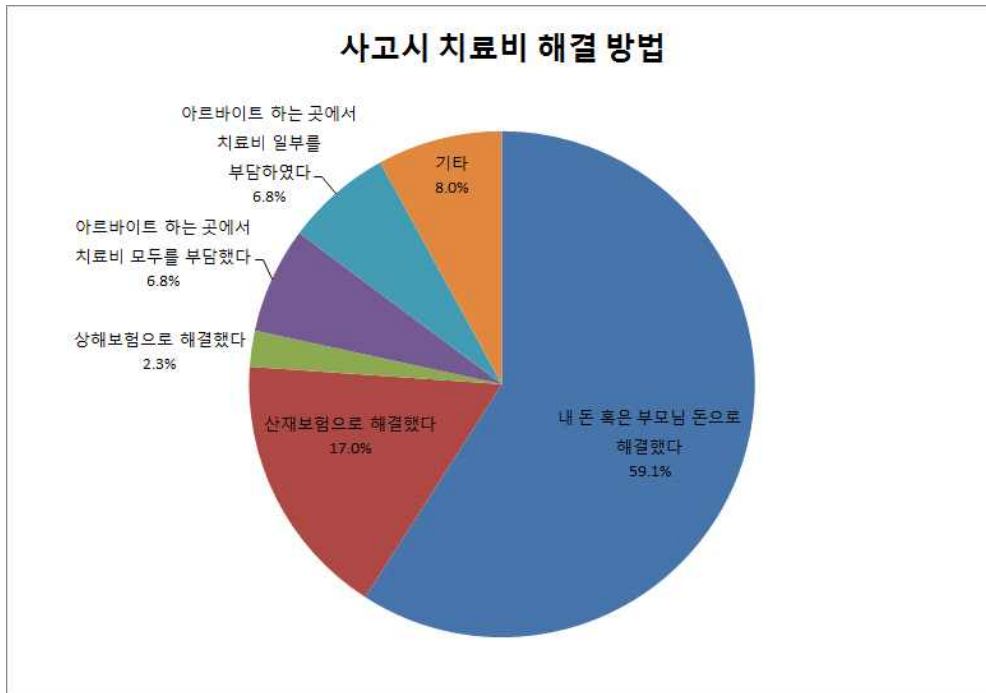
근로계약서



최저임금실태 : 주중



[출처 :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구소 고등학생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출처 :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구소 고등학생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 목표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 방법

- 노동법 개정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년 노동조건 개선
-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엄격한 적용, 감시
- 학교 단위별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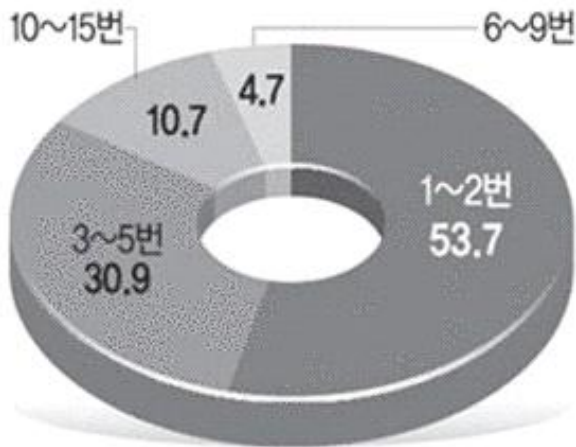
3

위기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대!

■ 현황

- 위기청소년 매년 몇 만 명씩 증가 추세. 청소년 우울증, 청소년 범죄도 날로 늘고 있음.
- 위기청소년에 대한 국가정책으로는 청소년쉼터, WEE센터 등이 있지만 청소년쉼터는 전국에 몇 십 개뿐이며, 학교부적응 청소년과 접근성이 떨어짐. 상담을 이용하려면 몇 달 동안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못되고 있음.
- 청소년 우울증과 범죄가 늘어가지만 상담센터 설립, 학교 내 CCTV설치 등 미봉책 뿐,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음
- 위기청소년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갈 곳 없고 쉴 곳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전문지도사 배치가 필요함

가출패 경험 횟수 (단위:%)



자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서울 중고등학생 가출 현황

(단위: 명)

	남자	여자	합계
07년	877	1687	2564
08년	976	1928	2904
09년	995	1779	2774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박영석 기자 / 20111101
@yonhap_graphics(트위터)



■ 목표

○ 위기청소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 방법

- 위기청소년들과 접근성을 높인 자치구별 청소년 문화공간(청소년 카페) 확대 설립
- 위기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문가들의 직업 훈련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성교육을 위한 자치구별 담당 청소년지도사 배치 제도화
- 낡은 시설의 청소년쉼터 및 수련관을 청소년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개조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가정 및 학교환경에 의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는 청소년들은 매년 6~7만 명이지만, 이 중 극히 일부만이 대안교육과 홈스쿨링 등 원하는 교육을 받고 있음

〈표 : 제도교육 밖 청소년 현황〉

구분	초등	중등	고등	계
2009	17,644	19,675	34,450	71,769
2010	11,634	15,736	34,540	61,910
2011	18,836	18,866	38,887	76,589

-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 질병,가사,품행,학교, 학습부적응,기타 등의 사유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 통계임.(입학면제자 포함)
- * 2008~2009년 고등 통계는 일반계, 전문계를 합한 통계임
- * 2010년 고등 통계는 일반계,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를 합한 통계임.

- 학생들이 제도교육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 질병·가사·품행·학교부적응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학교를 떠나거나,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에 대한 실망으로 스스로 제도교육 밖으로 나오는 것임.
- 헌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기본권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포괄하는 종합적 기본권이 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 의한 공교육 이외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국가가 원하는 교육만이 아닌 개인의 삶과 가치지향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해야 함

■ 목표

- 제도교육 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권 보장, 대안교육 확대

■ 방법

- 제도교육 밖 청소년 교육지원법 제정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제도교육 밖 청소년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교육센터’의 지역별 설치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에 대한 학력 인정

■ 현황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차원 전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부 내 부서로 개편되면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구로 전락
- 이와 더불어 2012년 청소년예산이 삭감 제출되고, 청소년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전문 사업들도 축소되면서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은 더욱 미비한 상태임

여성가족부의 2012년 예산요구안 중 성범죄 예방 사업비

구분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안	삭감
성범죄 청소년 치료·성매매 피해 청소년 재활	12억원	0원	전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7억3,600만원	0원	전액
성범죄 예방교육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원	27억2,600만원	21억2,900만원	5억9,700만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187억6,900만원	170억6,700만원(법무부조정안)	17억원

<출처: 한국일보, 2011.07.20>

■ 목표

- 청소년 육성분야 예산 확대
- 청소년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 할 청소년위원회를 독자적 기구로 복원
- 청소년 보호 사업 또는 보여 주기식 사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책정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 배치

■ 방법

- 현재 여성가족부 내 구성되어있는 청소년 정책관을 분리하여, 대통령산하 또는 국무총리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승격, 설치
- 국가차원의 청소년 전담기구 위상에 맞는 실. 국. 부서의 전면 개편
- 국가예산 중 청소년 육성분야 예산 전폭적 확대
- 일반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및 참여를 보장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전담기구와 각 시. 도 지자체,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소년 정책 공동 추진 체계 마련
- '보호' 차원의 청소년 정책 탈피, '주체적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연구 및 실현